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31-01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주관연구기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동연구기관: 명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단국대학교

2015. 7.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07. 31.

주관연구기관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 : 허근영
연구보조원 : 김인혜
 / : 조은주
 / : 김정민
보조원 : 박유정

공동연구기관명 : 명지대학교
공동연구원 : 기정훈
공동연구원 : 송재일
연구보조원 : 손경찬
 보조원 : 남성우

공동연구기관명 : 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완순

공동연구기관명 : 단국대학교
공동연구원 : 이해경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자연친화적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정원산업은 원예부분, 특히 화훼 및 도시농업이 주도하는 도농융복합산업임
 - 정원산업은 원예·산림·조경의 융·복합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큰 선진국형 농산업 분야이나, 관련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화훼산업의 외연 확대 및 신사업 분야 개척을 위해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관련 기초연구 필요
 -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은 사실상 19세기 중반 영국과 영국식민지들(오늘날 미국 및 영연방)에서 부유한 노동계층의 왕성한 정원활동으로 출현하게 되었음
 - 21세기 정원은 초화정원(Flower garden)이란 정원양식을 가지고 있음
 - 정원산업은 화훼산업이며 도시농업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음
 - 오늘날 화훼산업은 생산 및 판매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및 정원관광을 통한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및 산업화 현황 등 조사 분석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국가들이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의 기원과 지속적 발전을 주도해 왔음
 - 따라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동향 및 산업화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원 재료 및 서비스, 정원관광 등의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방안 등
 - 오늘날 정원산업은 정원용 식물, 도구, 가구 등의 정원 재료, 정원 조성, 관리 등의 정원 서비스, 정원용품의 구매, 정원방문 등의 정원관광 등으로 구분됨
 - 창업의 방향은 정원 재료 및 서비스, 정원관광 등에서 조사 및 연구 필요

II. 주요연구내용

2.1.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 정원의 개념 및 현황
 - 정원(garden), 공공정원(public garden), 식물원(botanic garden), 수목원(arboretum), 도시텃밭(allotment garden),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 공원(public park) 등과의 상호 비교 및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정원 및 그 하위개념들의 재정의
 - 국내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원 조성현황
-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 국내를 포함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원산업의 범위 및 업종 정립
 - 정원산업 종사자·시장규모 등 업계 현황
-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국내 도시농업법, 수목원법 등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영국,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식물원 등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

2.2. 정원산업 발전방안

2.2.1. 정원산업 연구범위

- 정원 재료 및 서비스
 -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 정원관광

2.2.2.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 정원산업 시장전망 및 비전
 - 영국 및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정원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영국 정원산업의 벤치마킹을 통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

2.2.3.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기존법 개정안 또는 별도 정원법(안) 제정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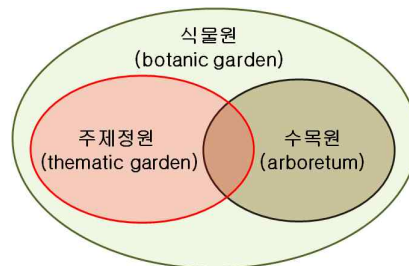
- 도시농업법 및 수목원법의 개정안
- 도시농업법, 수목원법 등을 포괄하는 정원법(안) 제정안
- '16년도 신규사업 제안
 - 「정원법(가칭)」 제정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정 또는 제정에 관련한 연구
 -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련한 연구
 - 정원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화훼단체 등 민간참여에 관련한 연구

III. 주요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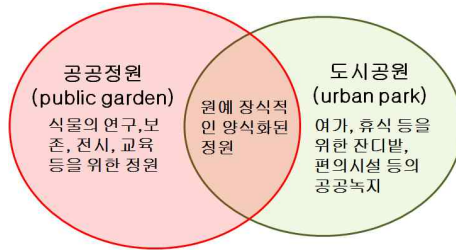
3.1. 정원의 개념 및 현황

3.1.1. 정원의 개념

- 정원의 정의
 - 정원은 개인 또는 공공의 즐거움과 유익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이며 민간정원과 공공정원으로 구분된다.
 - 민간정원(private garden)은 꽃, 채소, 허브, 과일 혹은 관상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이다.
 -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가지는 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식물원, 수목원, 대중에게 개방되는 민간정원 등을 포함한다.
- 이용목적에 따른 정원의 구분
 - 민간정원
 - 공공정원: 다목적정원, 장식정원, 보존정원, 대학정원, 치유정원, 주제정원, 축제정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 민간정원
-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분



○ 공공정원과 도시공원의 구분



○ 식물원, 수목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의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식물원 (botanic garden)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
수목원 (arboretum)	식물원의 일종 또는 식물원의 하위 개념으로서 수목을 중심으로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공동체정원 (community garden)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
도시텃밭 (allotment garden)	도시 내 일정한 지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할당된 소규모 토지들로서 때때로 대중에 대한 식물 전시, 원예실무 교육 등을 수행함

3.1.2. 국내외 정원 조성현황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 조성현황

구분	특징	
	공공정원	민간정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은 789개소임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 및 역사유적은 National Trust, English Heritage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은 20,200,000개소가 있음(MINTEL, 2003) <input type="checkbox"/> 5,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됨 <input type="checkbox"/> 공개되는 민간정원들은 National Gardens Scheme(NGS), British Red Cross,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e 등의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은 133개소임 <input type="checkbox"/> Royal Botanic Gardens 등과 같은 주요 정원들은 대부분 주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20,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2015년까지 비영리 단체인 Open Gardens Australia(OGA)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최근에는 주(state) 단위의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운영됨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은 114개소임 <input type="checkbox"/> 주요 정원들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대부분은 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왕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New Zealand Gardens Trust와 캔터베리 원예협회(Canterbury Horticultural Society) 등과 같은 지역 원예단체에 의해서 운영됨

○ 우리나라 정원 조성현황

구분	특징	
	공공정원	민간정원
우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에 등록된 공공정원은 44개소임 □ 2010년대 후반에는 118개소가 될 것임 □ 대부분이 수목원의 형태를 가짐 □ 국·공립 수목원 및 식물원은 식물 보존 중심의 임무를 수행함 □ 국·공립 수목원 및 식물원의 재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존하며 전시, 교육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성을 위한 활동은 미약함: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부족함 □ 국·공립 공공정원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사립 공공정원은 개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됨 □ 공공정원의 대중공개(open garden)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은 없음 □ 공공정원의 개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 다만, 대부분의 공공정원들이 1990년대부터 조성되어서 다양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거형태로 민간정원의 대부분은 베란다 정원의 형태를 가짐 □ 서울 등의 대도시 주변 교외지역에서 민간정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개인들이 직접 또는 시·군 등의 지원으로 이루지고 있음 □ 영국의 National Gardens Scheme(NGS)과 같이 전문화된 비영리 단체가 부재함

3.1.3.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 정원산업의 범위는 정원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원용 식물, 비료 및 농약, 도구, 가구 등의 정원재료, 정원 조성, 관리 등의 정원서비스 그리고 정원, 정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정원관광으로 한정됨, 즉 정원재료, 정원서비스, 정원관광으로 한정됨
- 정원관광을 제외한 영국 정원산업의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대략 연간 90억 파운드(15.9조 원)이며, 대략 28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짐
 - 정원센터의 매출액은 연간 대략 50억 파운드(8.7조 원)이며, 정원식물로 대략 15억 파운드(2.6조 원) 그리고 정원가구로 대략 6.5억 파운드(1.1조 원)가 소비됨
 - 전국에 걸쳐 139개 상점들을 운영하는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대형 유통업체인 Garden Centre Group의 매출액은 264백만 파운드(3,048억 원)임
 - 정원산업을 지원하는 원예유통협회(HTA) 등과 GLEE 정원산업 박람회 등이 있음
 -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정원잡지인 The English Garden, Gardener's World 등이 있음
- 정원관광을 제외한 일본의 정원산업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정원식물

에서 4.2조 원이며 화단용 정원식물의 생산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초본과 장식용 식물들의 품종개발 및 등록이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있음

- 원예식물들은 80% 이상이 대형 유통점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음
- 정원용품들은 홈엔가든 유통업체들에서 2012년 기준으로 총판매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에서 1989년 이래로 정원관광은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들의 하나가 되었음
 - 영국 정원들은 2009년에 39.1백만의 방문자들을 유인하였음(내국인 33백만 명 그리고 외국인 6.1백만 명)
 - 장래 민간정원 및 농장 방문이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호주에서 정원관광은 15세 이상의 호주 인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활동으로서 38.5%는 적어도 매년 한 개의 식물원을 방문함
- 뉴질랜드는 국가적 규모의 데이터 수집은 없지만, 개별적인 정원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정원관광이 세계적인 수준임
-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생산액은 약 11,966억 원, 유통액은 14,693억 원, 소비액은 약 828억 원이며, 총생산액은 27,487억 원으로 대략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임
 - 정원산업 생산액은 원예분야 1.1조 원, 조경 및 산림분야 1,155억 원, 그리고 기타분야 11억 원임
 - 정원재료 유통은 원예 분야는 8,845억 원, 조경 및 산림 분야는 945억 원 정도로 산정됨
- 정원관광은 국가적 규모의 데이터 수집은 없지만, 개별적인 정원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임
 - 공공정원 방문, 플라워/정원 박람회 관람, 정원교육이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몇몇 공공정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00,000명 미만의 방문자수를 가지는 공공정원으로 보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원 전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방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1.4.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수목원, 정원 관련 법체계

- 2015년 수목원 및 정원법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기존의 수목원법을 정원까지 확대시켜 정원을 추가 규율한 입법으로서, 수목원과 정원의 개념이 명쾌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입법목적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정원은 원예산업이 주된 영역으로 수목이 주된 영역인 수목원을 포괄하는 영역인데, 하위개념인 수목원이 상위개념인 정원을 포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외국에서 정원은 주택에 딸린 정원을 제외하고 공동체 정원은 도시농업의 영역에서 농림부의 소관이며, 영국의 경우 규식물원의 담당부처는 농림부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이 현재 농림식품부의 소속되어 있기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 도시농업법 등 도시텃밭이나 도시정원과 관련된 농식품부 소관법령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권한 쟁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원산업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거나 수목원 및 정원법을 대폭 개정함이 필요하다.
-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개념이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산업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원법을 계기로 “6차산업=현대적 농업”이라는 범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업=1차산업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의 6차산업은 정책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6차 산업 종사자들은 농업인으로 대우받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현대적 의미의 농업에 맞는 법체제로 전환 필요

- 2002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주말농원 용도의 소규모 농지 취득을 인정하고 주말농원용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하였다. 이후 2007년 도시농업법에 따른 도시농업활동의 확장으로 전통적 농업(1차산업~생산 중심)에서 현대적 농업(6차산업~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농업농촌 기능 중심으로 농업을 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영리목적의 농업생산활동을 해야 농업이고, 그러한 생산공간이 농촌이라고만 한정하여 농림부의 업무영역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농업기능, 농촌기능이 있다면 다 농림부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농업은 비영리이고 도시공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도시농업법은 농림부 소관법률이다. 기존 관념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선진국의 농업농촌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잘 해결되는 기능중심의 접근방법이 있기에 비교적 적은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정원도 전통적인 농업개념에는 맞지 않지만, 현대적인 농업개념에는 잘 부합하고 정원산업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농업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능 중심으로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것은 선진국에서 농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농업을 정의하고 있다(Code rural):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농업의 정의를 또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에서 재배작물이나 축종이나 마릿수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영농일수를 90일, 영농면적을 1000㎡,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등으로 열거 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열거식 정의방식과 달리 프랑스에서 농업과 농업인 정의는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무엇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법 적용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프랑스에서 농업의 정의는 농업법전 L.311-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 농업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애주기(life-cycle)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 또는 여러 단계의 일련의 활동” 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 “농업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농업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도 농업활동에 속한다.”
- “농업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 사업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에서 농업인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확장활동, 농촌관광 활동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 농업생산의 모든 형태: 예, 포도 재배, 원예, 수목 재배
- 농업의 모든 양식: 기존의 가축 (소, 염소, 양, 말 등), 특수 가축(양봉,

이국적인 애완동물 등), 선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고기, 갑각류 등 바다 낚시 활동 등, 승마 체험 활동(교육 활동), 임업 작업

- 농업 활동의 확장: 농산물의 가공, 포장, 마케팅
 - 관광 활동: 농장시설, 농장 캠핑장, 승마농장, 농가 숙박시설
 - 농업 계약자: 관개, 제방 작업, 식물과 동물의 생산주기, 농지 개선 작업, 위생 작업, 배수 작업, 조정, 시골 별장 산업,
 - 농업 보험 에이전트: 농업인공제조합(AMA)의 임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 정원산업도 6차산업으로서 농산업(Agri-business)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기능 중심의 현대적 농업으로 변화되는 입법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수목원 정원법의 소관부처를 둘러싼 갈등

- 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간으로서 휴식, 건강증진 및 놀이의 생활공간이자 한 나라의 정원 및 건축문화가 드러나는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원산업의 진흥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분야로서, 이와 같은 정원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럼에도 과거 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부 법령은 있으나, 정원진흥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관기관 및 관련 법령은 없던 실정이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 이후 정원 및 정원정책의 소관에 관하여 부처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개념 속에 정원을 포함하고 있고, 정원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조성되어 휴식과 정서 함양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서,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주택·도로·해안·하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에 관한 정책은 도시와 주택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고 주장하였다.
- 다음 환경부는 산림청의 직무범위와 입법과정에서 정원의 개념이 기존의 수목원 또는 식물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 중복이 우려되므로 수목원, 식물원, 공원, 정원과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관리 주체를 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매모호한 경우 환경부가 국립공원처럼 정원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조경관련단체의 경우 정원의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원산업의 지원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통계법」 제22조와 통계청 고시 2007-53호에 따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정원조성공사, 정원수 식재 등은 조경건설업과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들었다.
- 끝으로 그동안 수목원을 관리하던 산림청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목원 개념 속에 정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국립수목원에서조차 정원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산림청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과 이를 위한 주관기관 지정과정에서 전남 순천시는 여러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담당업무가 아니거나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동 박람회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을 산림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농진청을 배제한 입법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원에 대해 산림청과 농진청이 공동으로 관장하도록 농림식품부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2.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3.2.1.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영국의 큐 가든과 위슬리 정원은 식물원의 본래 기능에도 충실하며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진입부에 위치시키고 있음
- 에든버러 식물원은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유리온실의 관람에 대해서는 방문

자들에게 8,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9년에 진입부에 새롭게 건축된 John Hope Gateway에서는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도입하였고, 환경, 식물, 생태에 대한 교육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원 관련 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 시드니 식물원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인접하여 무료로 입장함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받아들이지만,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정부는 예산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며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있음

- 영국 정원들이 2000년대에 진입부에 상업적 공간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던 것처럼 호주 정원들 역시 진입부에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의 아침고요수목원과 제이드가든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진입부에 상업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정원문화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방문객들, 즉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정원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원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정원용품에 대한 수요가 적음

- 제한적으로 선물, 기념품, 분화 등을 위주로 한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국내외 정원들의 입장료, 입장객, 재정 현황

구분	입장료 (원)	입장객 (만명)	재정	비고 예산(억원)
큐 가든	26,500	195	정부 52%, 입장료 등의 수익 27%	935
에든버러 식물원	무료	80	지방정부가 97% 정도를 지원함	158
위슬리 정원	23,600	80	왕립원예협회가 운영, 재정자립 100%	(사립)
시드니 식물원	무료	380	주정부 45%, 보조금, 상품 판매 등 46%	391
오클랜드 식물원	무료	50	정부가 대부분 지원함	(자료없음)
아침고요수목원	9,000	90	개인 운영	(사립)
제이드가든	8,500	13	기업체 운영	(사립)

○ 정원들의 접근성은 결국 방문자 수와 관련되는데, 큐 가든과 시드니 식물원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방문자 수도 상대적으로 많음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시설이 우수하며 두 개의 정원들은 순환버

스를 운영하여 방문자 수가 많음

○ 국내·외 정원들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정원들은 이색적인 식물들의 보전 및 전시가 많으며, 따라서 기후대에 따라서 식물종을 분류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중국식 및 일본식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역사성을 지닌 정원을 조성하고 있음
- 호주의 시드니 식물원은 도시공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호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주요한 장소에 전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은 실용적이며, 뉴질랜드에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고, 멸종위기 식물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정원조성 사례를 보여주는 정원들을 전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원들은 원예장식적인 정원, 정원양식을 나타내는 정원, 놀이를 위한 정원 등을 조성 및 전시하고 있음

○ 국내·외 정원들의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구분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큐 가든	매우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를 운영함	식물을 위주로 한 주제공원 기후대를 고려한 주제공원 중국식, 일본식 정원조성 역사성을 지닌 정원조성
에든버러 식물원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함 교육공간이 있음	실용적인 정원조성 교육전시 지역공동체 참여 정원조성 자생식물 정원조성 중국식, 일본식 정원조성 역사성을 지닌 정원조성
위슬리 정원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함	원예장식적인 정원조성 원예실무를 위한 정원조성 왕립원예협회 홍보 정원조성 가정용 정원조성 사례전시
시드니 식물원	매우 양호	상품 판매 공간 없음	도시공원(urban garden)과 유사 자생식물 정원조성
오클랜드 식물원	양호	정보제공 공간 있음 교육공간이 있음 카페를 운영함 상품 판매 공간 없음	실용적인 정원조성 광범위한 자생식물 정원조성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기법 전시 어린이 생태학습을 위한 정원조성
아침고요수목원	매우 양호	식물 및 정원용품을 판매함	원예장식적인 정원조성 테마정원 조성 자생식물 정원조성
제이드가든	매우 양호	기념품을 판매함 레스토랑을 운영함	유럽 양식의 정원조성 상업적인 정원조성

-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공정원은 먼저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며, 공공정원(public garden)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의 목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원예장식적인 정원 조성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 정원의 공간구성은 먼저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상업적 공간조성을 진 일부에 위치시킴
 -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을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유리온실들을 도입함
 - 다양한 문화권, 특히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정원양식들을 정원에 도입함
 -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생식물들 및 한국정원양식을 포함시킴
 - 가정의 정원활동 장려를 위한 실용정원 사례를 전시하는 정원들의 조성

3.3.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3.3.1. 정원산업 시장전망 및 발전 방안

-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 영국의 정원시장은 계속 새로운 형식과 범주와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원활동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들의 정원에 대한 흥미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40대 후반~50대에 있는 수백만의 잠재적 추가 소비자들이 기대된다. 전통적인 상점과 인터넷 유통망의 경계는 또한 점점 낮아져 소비자들은 점차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품들을 공급하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상점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정원사업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 일본의 정원활동 시장은 2012에 2% 정도의 성장을 나타냈다. 시장규모는 3조1700억원에 달한다. 일본의 정원 환경은 일본 내 정원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정원관련 식물과 용품의 지출액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홈앤가든 전문 유통업체들(Home and garden specialist retailers)은 정원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유통업체이고 2012년에 총 판매액의 78%를 차지하였다. 일본 정원활동 시장은 매우 파편화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정원활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2011년 지진의 결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접 식물을 재배하는 경향을 띠며 앞으로
도 계속될 전망이다.

○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

-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공정원을 유지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일은 쉽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입 창출에 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원관광을 위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 방문 또는 참여
- 재정적 경영: 수익과 지출
- 조직적 측면의 경영: 인적 자원, 회원제, 자원봉사제도
- 마케팅과 소통
- 공동체에 대한 봉사활동과 교육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 정원산업은 화훼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성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정원산업이 부딪히고 있는 당면과제들은 세계 경제적 위기, 노령인구의 증가, 젊은 소비자층의 경향, 온라인 정보, 서비스 방식의 변화 및 기후변화 등이다. 그러나, 영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 정원관광의 새로운 전략들

- 외국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정원관광의 새로운 전략들은 지역사회로의 외연 확대, 종다양성 교육의 기회 제공, 상업적 기능 확대와 다양한 외부 자금원 확보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 우리나라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생산부문의 정원산업 인식부족 및 정부의 적절한 지원체제 미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관련 조직 및 통계 미비와 관련 분야들 간의 협력체제가 없다는 점도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식물종 보유국의 보호정책 역시 도전이 된다.
- 정부의 정원관련 총괄 조직 구축 및 생산조직 인프라 제공 및 관련 통계조사 실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총괄조직은 국가정원과 공공정원을

발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에서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산업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하며 정원산업과 유통산업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aT센터의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3.3.2. 정원 관련 신규사업 및 연구 제안

○ 국내 정원산업 통계 연구

- 최근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원산업에 대한 통계구축을 통해서 산업 지원과 정책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산업의 성장 및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Experian 기업의 모자이크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활용한 국내 정원 관련 인구의 사회경제적 구분에 따른 전략 및 정책 연구

- 영국 HTA (2012)는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의 인구 코호트 그룹별 정원관련 필요와 경제적 규모 등을 조사하고 이를 모자이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표현함.
- 우리도 이와 같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원의 수요와 이에 맞는 공급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3.4. 정원진흥기본계획

○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방향, 근거, 성격, 주요내용

- 산림청은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를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목원법’이라 한다)에 편입시켜 추후 전국단위의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 수목원법을 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고, 2015년 7월 21일 시행예정에 있다.
- 이러한 수목원법 등으로 인해서 그 고유영역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올바른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서 정원 관련 산업들과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와 정원의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원발전과 확대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진흥 기본계획은 민간 및 공공정원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 근거: 「수목원·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이고, 현재 이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은 정원의 확충 및 정원 사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수목원·정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성격: 정원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발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의 종합 계획으로서 국가정원 및 공·사립·학교정원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제시한다.
- 내용: 정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원 지원 및 정원 간 교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원 정보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 정원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 정원 관련 국내 여건 변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추구에 따른 정원의 수요 증가, 순천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문화, 휴양, 체험, 치유 및 복지의 공간으로서 정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 정원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발굴.
- 정원 관련 해외 여건 변화: 공공정원의 개념 대두와 점진적 확대, 정원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한 정원산업의 확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 강화

○ 정원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정원 및 정원산업에 대한 국내외 여건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및 운영 ✓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의 경영능력 부족 ✓ 정원관련 통계의 부재 ✓ 관련 행정조직의 부재 ✓ 관련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 정원관련 농가의 인지도 부족 ✓ 현재 정원관련 시설 및 투자 부족 ✓ 정원산업 유통체계 미비
기회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증가 ✓ 우리나라 전통의 정원문화 존재 ✓ 정원관련 자생식물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의 필요성 ✓ 국제협약 등으로 인한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 필요성 ✓ 정원관련분야(원예, 조경, 산림)에 기존 유통체계의 존재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 기존 유통 관련 기관들의 정원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p style="text-align: center;">강화 전략[S+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 경영개선 및 공공정원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연구개발 증대 ✓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정원산업을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돌파 전략[W+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원 관련 지원 인프라 확충 ✓ 정원 관련 통계, 행정조직 마련 ✓ 정원 관련 예산의 마련 및 투자 ✓ 전통정원 확산, 정원자생식물 보호,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 경영상황 악화 ✓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정책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육성 전략[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을 통한 정원산업자원 ✓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개선 ✓ 기후변화대응 정원 관련 식물생태계 보존전략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우회 전략[W+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산업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례 제정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필요

○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 비전: 미래형 농업을 주도하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원과 커뮤니티 정원의 기반 확립
- 목표: 정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
- 전략과 전략별 과제 (6대 전략, 19대 과제)

- ①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 ①-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 ①-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①-3 국가정원 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 ② 정원 관련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 ②-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 ②-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 ②-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 ②-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③ 정원을 통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화
 - ③-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 ③-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③-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충
- ④ 정원의 물적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 ④-1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 ④-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 ④-3 국가정원 지원 및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 ④-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 ⑤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 강화
 - ⑤-1 정원산업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 ⑤-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 ⑤-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 ⑥ 정원산업을 위한 전통정원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
 - ⑥-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 ⑥-2 해외 정원 기술교류

○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정원 산업 범주	범주별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현황, 전략 및 계획과 전망			
		장점	문제점	SWOT 분석 전략	정원산업진흥계획 (19대 과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관련 식물 및 재료·용품 및 소재 생산 산업 -정원 연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조성관련 기술력 우수 -우리나라 전통 정원문화 존재 -정원관련 자생식물 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의 필요성 대두 -국제협약 등으로 인한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 필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능가의 정원산업인지도 낮음 -정원시설 정부투자 부족 -민간정원 경영능력 부족 및 경영상황 악화 -정원산업 생산통계 부재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정원 경영개선과 공공정원 확산 위한 자원체계 구축 -우리나라 전통정원 연구개발 및 지원 증대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내 정원 관련 생산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생산 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전통정원 확산, 정원자생식물 보호,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정원 관련 식물생태계보존전략 -정원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1)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1) -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4) -국가정원 자원,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4)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6)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관련 식물 등 재료·용품 및 소재 유통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관련분야(원예, 조경, 산림) 기존 유통체계의 존재 (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존 유통관련 기관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산업 유통통계 부재 -정원산업 유통체계 미비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산업과 유통산업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aT센터의 역할 부여 -국내 정원 관련 유통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유통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정원산업 홍보 및 마케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5)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 조사의 정기적 시행 (5)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관광 -정원 연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정원관련 법률과 정부지원 활성화 -국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산업 소비통계 부재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문화 확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산업에 체험, 교육 등을 포함하는 6차 산업전략수립 -국내 정원 관련 소비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소비 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을 통한 정원산업지원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자원체계 개선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1)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충 (3)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4)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5)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에서 보여준다. 이 표는 전략의 시행기간과 전략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시행기간이 단기이고 중요도가 ‘상’ 인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이 된다.
- 단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2-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1)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가 포함된다.
- 중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3-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2) 해외정원기술 교류가 포함된다.
-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4-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다.

중요도 \ 기간	상 (중요도 높음)	중 (중요도 보통)	하 (중요도 낮음)
단기 (2015-16)	(2-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1)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1-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1-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5-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6-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2-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 전체계 구축
중기 (2017-19)	(3-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2) 해외정원기술 교류	(1-3) 국가정원 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2-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4-3) 국가정원 지원 및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장기 (2019 이후)	(4-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4-1)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3.5. 정원산업발전을 위한 수목원 및 정원법의 개정

3.5.1. 개정 방향: 원예산업이 주도하는 정원법

- 농업법적 시각에서 정원 개념의 재검토 : 수목원 개념과 차이를 중심으로
- 수목원 및 정원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원의 관리주체가 산림청인가 농촌진흥청인가 하는 점이다. 개정도 그에 맞추어 논의가 진척되어야 하기에, 선결문제로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 2015년 수목원 정원법에서 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제1호).
- 이에 반하여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제2호).
- 수목원 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해석하면, 수목은 일반적으로 樹木, 즉 목본 식물을 의미하지만, 수목원법에서는 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하는 초본·목본 산림식물 중 목본류를 지칭하고, 수목원이란, 이러한 산림식물 중 수목을 중심으로 수집, 증식, 보존, 관리, 전시, 연구하는 법정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정원은 산림식물까지 포함하여 식물 전반을 전시, 재배,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수목원보다 정원에서 관리하는 식물이 다양하며 넓기에, 수목원의 상위 개념이 정원임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목원은 특수한 식물인 산림식물을 수목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원에 대하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수목원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산림식물 중 수목이 주된 공간이 수목원이다. 반대로 원예산업이 주된 공간이 정원이다. 이를 법적 시각에서 보면, 주된 물건인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 물건인 종물이 따라간다는 주물(主物)-종물(從物) 법리와 부합하는 논리이다. 예를 들면 본체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별도의 화장실도 함께 처분되고, 시계 본체와 시계줄은 시계본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물의 성질과 소유권자에 따라 그 전체 물건의 성질과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 민법상 “주물(主物)-종물(從物) 이론“을 토대로 생각하면, 정원은 원예산업

(꽃과 풀)이 주된 공간인 반면, 수목원은 임업(나무)이 주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산림청과 농진청의 사무분장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순천만 정원도 산림식물인 수목이 주가 아니므로 정원에 속할 것이고 산림청이 아니라 농진청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나 해석과도 일치한다.

3.5.2. 정부조직법에 따른 사무분장

-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두며, 산림에 관한 사무를 위해 산림청을 두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6조).
- 정부조직법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타법개정]” 제32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권한 위임 사항에 따르면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서 농업농촌분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임업분야는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분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먼저 대통령령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소속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즉 원예와 축산분야는 농촌진흥청 주관업무라는 의미이다.
- 다음 역시 대통령령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는 산림청의 관장 사무가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등을 둔다. 임업분야는 산림청 주관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3. 해결: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산림청(수목원)-농진청(정원)으로 사무분담

-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산림청(수목원)-농진청(정원)으로 사무 분담을 한다. 권한분쟁이 생기거나 모호한 부분은 농식품부가 조정역할을 발휘한다.
- 정원산업은 농업의 6차산업화, 현대적 선진국형 농업으로 국민의 자가치유,

교육이나 관광, 환경과 소비자보호 문제해결에 순기능하는 핵심산업으로 타 부처보다 농식품부가 주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원의 관리주체는 아주 중요하다. 과거 대부분이 농촌영역이고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주된 공간인 국립공원의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확정되고, 말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서 오랜 시간 주무부처였다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데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정원에서는 그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될 것이다. 정원에 대하여 산림청을 비롯하여 농업계 내부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부나 국토부가 관리를 자임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해결하고 보면, 현재 수목원 및 정원법에서 많은 조항들이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제명, 정원의 정의,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정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서 원예산업의 주도성 확보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 론	3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15
2.1 정원의 개념 및 현황	15
2.2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75
2.3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96
III.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109
3.1 해외정원 사례연구	109
3.2 국내정원 사례연구	144
3.3 시사점 도출	151
IV.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157
4.1 해외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157
4.2 해외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	161
4.3 해외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178
4.4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185
4.5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	193
V. 정원진흥 기본계획	199
5.1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방향, 근거, 성격, 주요내용	199
5.2 정원 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	200
5.3 정원산업 SWOT 분석	205
5.4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208
5.5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209
5.6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251

VI.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안	255
6.1. 기존법 개정안 또는 별도 정원법(안) 제정안	255
6.2. 정원관련 권한 분쟁시 해결책	307
VII. 결 론	315
참 고 문 헌	335

표 목 차

표 2-1. 공동체정원과 도시텃밭의 구분 및 정의	21
표 2-2. 이용목적에 따른 정원의 구분 및 정의	22
표 2-3. 영국 큐 가든, 호주 시드니 식물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식물재료에 따른 공간구성	26
표 2-4.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분 및 정의	27
표 2-5. 공공정원과 도시공원의 구분 및 정의	30
표 2-6. 식물원, 수목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 도시공원의 정의	35
표 2-7. 1543부터 1901년까지 식물원 조성 현황	38
표 2-8. 1900년 이전까지 미국의 식물원 조성현황	39
표 2-9. 공공정원의 기원 및 변천	41
표 2-10.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민간정원의 기원 및 변천	57
표 2-11. 영국의 공공정원 분포	58
표 2-12. 호주의 공공정원 분포	60
표 2-13. 호주 퀸즐랜드 브리스베인에 위치한 Mt. Coot-tha Botanic Gardens의 방문자 분석	61
표 2-14. 뉴질랜드의 공공정원 분포	62
표 2-15.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 조성현황	64
표 2-16. 미국의 조경 및 공공정원 조성배경	66
표 2-17.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 목록화된 우리나라의 식물원 및 수목원 분포	67
표 2-18. 산림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수목원 분포	68
표 2-19. 우리나라 정원 조성현황	74
표 2-20. 2005-2006년 일본의 종자 신품종 출원 및 등록 현황	86
표 2-21. 정원산업의 주요 분야	91
표 2-22. 정원산업의 분야별 통계(2013년 기준)	91
표 2-23. 주요 선진국의 도시농업 추진사례	106
표 3-1. 국내외 정원들의 입장료, 입장객, 예산, 재정 현황	152
표 3-2. 국내외 정원들의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153
표 4-1. 우리나라 화훼의 품목별 생산금액 추이(2009-2013)	180
표 4-2. 우리나라 조경재의 품목별 생산금액 추이(2009-2013)	180
표 5-1. 주요 국가의 국립정원, 공공정원, 참여정원	201
표 5-2. 정원 및 정원박람회 해외 사례	202
표 5-3. 고양시 꽃박람회 최근 통계현황	203
표 5-4. 정원 및 정원산업 SWOT 분석	207

표 5-5. 정원산업 국내 현황, SWOT 분석 전략 및 정원산업 진흥계획과 시장전망 ...	210
표 5-6. Master Gardener 교육관련 통계	249
표 5-7.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252
표 6-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68

그림 목 차

그림 2-1. 미국 뉴욕시의 GrowNYC의 Open Space Greening 프로그램	20
그림 2-2. 미국 뉴욕시의 GrowNYC의 Open Space Greening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원활동	20
그림 2-3. 미국 뉴욕시의 GrowNYC의 Open Space Greening의 일환인 공동체정원 프로그램	21
그림 2-4. 영국 큐 가든(Kew Garden)의 공간구성	23
그림 2-5. 호주 시드니 식물원의 공간구성	24
그림 2-6.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공간구성	25
그림 2-7.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의 공간구성	28
그림 2-8. 미국 달라스 수목원 및 식물원이 2008년 9월 17일 달라스 시의회 커뮤니티 미팅에 제출한 미국 달라스 시의 시장과 시의원에게 보내는 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의 보고자료	31
그림 2-9.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과 토타라 공원의 지역적 구분	32
그림 2-10. 뉴질랜드 토타라 공원의 공간구성	33
그림 2-11. 영국 리젠트 공원(Regent' s park)의 공간구성	34
그림 2-12. 호주 센테니얼 공원(Centennial park)의 공간구성	34
그림 2-13. 15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유럽지역 식물원 조성 현황	37
그림 2-14. 전 세계에서 식물들과 정원들의 분포(Rae, 1996)	41
그림 2-15. 태드캐스터(Tadcaster) 근처의 브리튼 아보트(Britton Abbot)의 코티지 전경과 가드네스크(Gardenesque) 정원양식의 배틀스덴(Battlesden) 정원	43
그림 2-16. 제킬(Gertrude Jekyll)의 먼스테드 우드(Munstead Wood) 전경과 6월의 정원(June Garden) 초본배식도	45
그림 2-17. 19세기 후반 식민지 정착민의 주택 및 정원	47
그림 2-18. 1844년에 그려진 호주 빅토리아의 식민지 감독관인 라 트로베의 정원	48
그림 2-19. 뉴질랜드 티마루 시 박물관에 소장된 1875년 티마루 도시계획도의 일부분 ...	50
그림 2-20. 뉴질랜드 와이카토 지역에서 본드에 의해서 설계된 코티지 정원	51
그림 2-21. 뉴질랜드 초화정원 만들기에 게재된 당시의 전형적인 코티지 정원설계 ...	52
그림 2-22. 1958년 12월에 뉴질랜드 Home and Building이란 잡지의 표지에 게재된 캘리포니아 스타일 정원	53
그림 2-23. 파머스가 제안한 1970년대 정원디자인	54
그림 2-24. 1980년대 뉴질랜드 도시지역의 독립적이고 개인화된 민간정원: 1980년대 초기부터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적 정원들은 도시거리를 외면하고 가족과 자신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하였음	56

그림 2-25.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도시 이미지 브랜딩(branding)을 정원의 도시라고 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음	63
그림 2-26. 우리나라 정원의 조성배경	65
그림 2-27. 우리나라 수목원 및 식물원 분포	69
그림 2-28. 우리나라 식물원 및 수목원들의 개원년도 분포	70
그림 2-29.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읍성의 전경(위)과 민간주택 및 텃밭(아래)	71
그림 2-30.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더그림’이라는 대중에게 개방하는 민간정원의 전경	72
그림 2-31. 국제적 수준의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네트워크 방식	73
그림 2-32. 2009-2011년 정원식물 판매현황	78
그림 2-33. 2009-2011년 정원관리용품 판매현황	79
그림 2-34. 2009-2011년 정원여가용품 판매현황	80
그림 2-35. 영국의 10대 정원센터인 Garden Centre의 전국분포	81
그림 2-36. 영국의 10대 정원센터들의 연간 매출액	82
그림 2-37. 영국의 주요 정원산업 지원기관	84
그림 2-38. 영국의 최대 정원산업 박람회인 GLEE의 경제성 분석	84
그림 2-39. 영국의 정원잡지들	85
그림 2-40. 1990-2008년 일본의 정원식물 판매현황	85
그림 3-1. 큐 가든 빅토리아 정문(Victoria Gate)	110
그림 3-2.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Victoria Plaza)	110
그림 3-3.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 정원식물·화분 판매장	110
그림 3-4.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 종자(seeds) 판매장	111
그림 3-5.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 정원용품 판매장	111
그림 3-6.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전경	112
그림 3-7.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내부에서 생육하고 있는 대형 열대 및 아열대 식물들	112
그림 3-8.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상층부 이동통로	112
그림 3-9.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지하 해양생물 전시실	113
그림 3-10. 큐 가든 지중해 정원과 윌리엄 왕의 사원(King William’s Temple)	113
그림 3-11. 큐 가든 지중해정원으로부터 이동통로 위의 수목 열식과 온대식물온실	114
그림 3-12. 큐 가든 온대식물 온실(Temperate House) 내부에 설치된 표지판에서 전 세계 지역별 온대식물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음	114
그림 3-13. 큐 가든 파고다 통경선에서 바라본 중국식 파고다(Pagoda)	115
그림 3-14. 큐 가든 일본식 관문과 정원	116
그림 3-15. 큐 가든 Rhizotron and Xstrata Treetop Walkway에서 수목원(arboretum)을 조망할 수 있음	116
그림 3-16. 큐 가든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외부 전경	117

그림 3-17. 큐 가든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건조한 열대지역의 선인장 및 다육식물 전시	117
그림 3-18. 큐 가든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습윤한 열대지역의 열대우림식물 및 수생식물 전시	118
그림 3-19. 큐 가든 수련 온실(Waterlily House)	118
그림 3-20. 큐 가든 Davies Alpine House	118
그림 3-21. 에든버러 식물원의 공간구성	119
그림 3-22.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2층에 위치한 휴게 및 전시공간	120
그림 3-23.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진입부에 위치한 상점	120
그림 3-24.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정원식물 판매장	121
그림 3-25.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내부의 교육공간	121
그림 3-26.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내부에 설치된 에든버러 식물원에서 진행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보타닉 일러스트 자격증 및 전문학사 교육과정	121
그림 3-27.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내부에 설치된 에든버러 식물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공동 체 프로그램 안내: 식용정원 프로젝트	122
그림 3-28.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의 그린 빌딩을 위한 구성요소에 관한 안내판	122
그림 3-29. 에든버러 식물원 내 비치(beech) 생울타리 및 초본 경계식재 전시	122
그림 3-30. 에든버러 식물원 Queen mother's memorial garden의 공간구성을 설명하는 안내판	123
그림 3-31. 에든버러 식물원 Queen mother's memorial garden 내부의 머틀(myrtle)로 조성된 미로	123
그림 3-32. 에든버러 식물원 사례정원에서 진행 중인 식용정원 프로젝트 안내판 ...	124
그림 3-33. 에든버러 식물원 사례정원에서 진행 중인 식용정원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엌정원	124
그림 3-34. 에든버러 식물원 스코틀랜드 건강정원 및 안내판	125
그림 3-35. 에든버러 식물원 중국식 정원(Chinese Hillside)	125
그림 3-36. 에든버러 식물원 암석정원(Rock Garden)	126
그림 3-37. 에든버러 식물원 암석정원에 설치된 일본 및 일본식물 안내판	126
그림 3-38. 에든버러 식물원 고산온실(Alpine House) 및 마당정원(Courtyard)	127
그림 3-39. 에든버러 식물원 빅토리안 팜 하우스 및 유리온실과 화석정원	128
그림 3-40. 에든버러 식물원 비정기적인 예술 전시를 위해서 화랑으로 활용되는 인버레이스 주택(Inverleith House) 전경	128
그림 3-41. 위슬리 정원의 진입부 전경	129
그림 3-42.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배치도	130

그림 3-43.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식물 판매장	130
그림 3-44.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용토 및 정원용품 판매장	130
그림 3-45.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종자 판매장	131
그림 3-46. 위슬리 정원의 공간구성	131
그림 3-47. 위슬리 정원 연구소(Laboratory)	132
그림 3-48. 위슬리 정원 유리온실(Glass House)	132
그림 3-49. 위슬리 정원 유리온실(Glass House) 주변 호수와 북미 초지정원	132
그림 3-50. 위슬리 정원 7개의 단풍나무 정원(Seven Acres) 주변의 연못에 조성된 중국식 정자(Chinese Pavilion)	133
그림 3-51. 위슬리 정원 분재 산책로(Bonsai Walk)	133
그림 3-52. 시드니 식물원의 공간구성	136
그림 3-53. 시드니 식물원 Government House Gate	136
그림 3-54. 시드니 식물원 Government House Gate를 통하여 직접 식물원으로 진입하는 보행통로	136
그림 3-55. 시드니 식물원 Opera House Gate	137
그림 3-56. 시드니 식물원 Palm Grove Center Garden Shop	137
그림 3-57. 시드니 식물원 Australian Native Rockery	137
그림 3-58. 시드니 식물원 허브정원(Herb Garden)	138
그림 3-59. 시드니 식물원 오리엔탈정원(Oriental Garden)	138
그림 3-60. 오uckland 식물원 후아카이와카(Huakaiwaka) 방문자 센터	140
그림 3-61.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 공간구성	141
그림 3-62.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멸종위기 식물정원	142
그림 3-63.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자생식물정원 아이디어	142
그림 3-64.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야자수 산책로(Palm Walk)	142
그림 3-65.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Potter Children' s Garden에 식재된 자생식물	143
그림 3-66.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Potter Children' s Garden에서 부모의 보호 속에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있음	143
그림 3-67.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아프리카정원(African Plants Collection)	143
그림 3-68. 뉴질랜드 오uckland 식물원의 암석정원(Rock Garden)	144
그림 3-69. 아침고요수목원의 공간구성	145
그림 3-70. 아침고요수목원 하늘나라(Flower Shop) 식물판매장	146
그림 3-71. 아침고요수목원 산수경온실(Green House)	146
그림 3-72. 아침고요수목원 침엽수정원(Conifer Garden)	146
그림 3-73. 아침고요수목원 무궁화동산	147
그림 3-74. 아침고요수목원 야생화정원(Wild Flower Garden)	147
그림 3-75. 아침고요수목원 하경정원(Sunken Garden)	147

그림 3-76. 제이드가든(Jade Garden) 주출입구 전경	148
그림 3-77. 제이드가든(Jade Garden) 기념품점	148
그림 3-78. 제이드가든(Jade Garden) 이탈리아 정원(Italian Garden)	149
그림 3-79. 제이드가든(Jade Garden) 고산온실(Alpine Greenhouse)	149
그림 3-80. 제이드가든(Jade Garden) 은행나무 미로원(Ginkgo Maze)	150
그림 3-81.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나무놀이집(Tree Deck Garden)	150
그림 3-82.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드라이가든(Dry Garden)	150
그림 3-83.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이끼가든(Moss Garden)	151
그림 3-84.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웨딩가든(Wedding Garden)	151
그림 4-1. 일본 가구의 화훼, 식물, 정원용품 지출액	159
그림 4-2. 우리나라 화훼생산금액(1990-2013)	179
그림 4-3. 우리나라와 영국의 정원식물재료 생산금액 추이(2009-2011)	180
그림 5-1. 금새우난초와 한라솜다리	212
그림 5-2. 유전자원보관	213
그림 5-3. 유전자원보관	215
그림 5-4.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216
그림 5-5. 정원식물자원의 확보, 보전, 평가, 공유, 활용 등을 위한 선순환 구조	219
그림 5-6. 꽃누르미(압화)	221
그림 5-7. 순천정원박람회	221
그림 5-8. 가드너 양성	224
그림 5-9. 가드너 교육수료식	224
그림 5-10. 실내정원(밖) 전경의 모습	230
그림 5-11. 실내정원(안) 전경의 모습	231
그림 5-12. 분재교육 현장	236
그림 5-13. 템플스테이	236
그림 5-14. 2014 재외공관 현황	246
그림 5-15. 한국문화원의 하늘정원의 모습	246
그림 5-16. 한국마스터가드너 증가의 비전	250
그림 5-17. 한국 마스터가드너 협회 조직도	250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자연친화적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
 -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보면, 정원 및 정원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일부 기관에서 정원산업을 국토개발, 도시계획 등의 대규모 건설공사로 오해함
 - 한편, 산림청은 기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구 수목원법)을 2014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로 개정, 2015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됨: 산림환경보존 방식으로 유희적인 화훼·원예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이것은 다시 정원산업을 포함한 화훼·원예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큼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정원산업은 원예부분, 특히 화훼 및 도시농업이 주도하는 도농융복합산업임
 - 정원산업은 원예·산림·조경의 융·복합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큰 선진국형 농산업 분야이나, 관련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화훼산업의 외연 확대 및 신사업 분야 개척을 위해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관련 기초연구 필요
 -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은 사실상 19세기 중반부터 가시화되었고, 영국과 영국 식민지(미국 및 영연방)에서 John Loudon의 Gardenesque 양식, William Robison의 Wild garden 양식, Gertrude Jekyll의 Cottage garden 양식과 함께 전개되며 오늘날에는 초화정원(Flower garden) 양식과 함께 사실상 화훼산업의 일환으로 발전됨
 - 따라서, 정원산업은 곧 화훼산업의 일종임
 - 과거 화훼박람회 등의 화훼산업이 단지 화훼의 생산, 전시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정원박람회 등의 새로운 화훼산업은 문화 및 관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lifestyle)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제 화훼산업은 단순 생산 및 판매에서 문화 및 관광산업을 통한 6차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및 산업화 현황 등 조사 분석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정책용역과제로 수행된 「정원분야의 원예 주도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해석 및 대응 제언」에서 정원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살펴보면(허근영 등, 2015),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국가들이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의 기원과 지속적 발전을 주도해 왔음
- 따라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동향 및 산업화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원소재의 유통 및 전시와 기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방안 등
 - 정원산업은 과거 귀족 및 신혼중산층의 생활양식에 대한 노동계층의 동경으로부터 시작됨
 - 노동계층의 정원활동은 대중을 겨냥한 정원산업의 발전을 가져옴
 - 오늘날 정원산업은 정원 재료, 조성 및 관리, 전시, 교육, 연구, 관광 등으로 다양함
 - 따라서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방향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 정원의 개념 및 현황
 - 정원(garden), 공공정원(public garden), 식물원(botanic garden), 수목원(arboretum), 도시텃밭(allotment garden),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 공원(public park) 등과의 상호 비교 및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정원 및 그 하위개념들의 재정의
 - 국내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원 조성현황
-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 국내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원산업의 범위 및 업종 정립
 - 정원산업 종사자·시장규모 등 업계 현황
-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국내 도시농업법, 수목원법 등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영국,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식물원 등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

2) 정원산업 발전방안

□ 정원산업 연구범위

○ 정원 재료 및 서비스

-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 정원관광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 정원산업 시장전망 및 비전

- 영국 및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정원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기존법 개정안 또는 별도 정원법(안) 제정안 작성

- 도시농업법 및 수목원법의 개정안
- 도시농업법, 수목원법 등을 포괄하는 정원법(안) 제정안

○ '16년도 신규사업 제안

- 「정원법(가칭)」 제정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정 또는 제정에 관련한 연구
-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련한 연구
- 정원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화훼단체 등 민간참여에 관련한 연구

1.2.2. 연구방법

1)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1) 정원의 개념 및 현황과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 연구계획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답사 중 수집한 서적 및 사진자료의 종합분석 및 선행연구결과를 통한 정원 및 하위개념의 정의

□ 연구절차 및 내용

○ (1단계) 국내외 정원 관련서적의 문헌고찰

- 19세기 영국 정원사 연구
- 19세기 호주, 뉴질랜드 식민지 정원사 연구

- 국내 정원사 연구
- (2단계) (답사 완료된) 사례들의 종합분석
 - 21세기 영국 주요 정원 및 정원용품점 답사(2012)
 - 21세기 호주, 뉴질랜드 주요 정원 답사(2006-2011)
 - 21세기 국내 주요정원 답사(2014)
- (3단계) 온라인 정보검색을 통한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분석
- (4단계) 정원산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 분석
 - 영국,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제도 및 정책을 중심으로
 - 국내 법령정보, 학술정보 등을 중심으로
- 조사결과 및 분석
 - 현대적 개념의 정원 및 하위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영국 및 영국 식민지 정원사, 21세기 정원의 유형별 특징, 문헌상의 정의를 교차 분석함
 -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분석을 토대로 정원산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정원산업 업계 현황을 구조화함
 - 정원법(가칭) 제정을 위해서 영국 등의 국외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법제도 및 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원법(가칭)의 기초자료를 마련함

(2)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연구계획
 - 국내 정원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조사를 위한 선행연구검토, 관련자료 수집 및 정책·법률을 검토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원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관련자료 수집 및 정책·법률을 검토
 -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서 정원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
- 연구절차 및 내용
 - (1단계) 국내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 (2단계) 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3단계)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종합분석
 -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로부터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 및 주요 파악
 - 정원산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책여부와 정책간 마찰 여부 등을 확인
 -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 실효성 및 관련 법률 간의 조율 필요성 파악

□ 조사결과 및 분석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원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원산업 정책의 미래를 살펴보고 선진적인 정책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국내 정원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원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법률, 정책들 간의 조율의 근거를 마련함
- 정원산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2)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연구계획

- 답사조사가 완료된 영국 큐 가든, 위슬리 가든, 에딘버러 가든 등, 호주 시드니 가든 등,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 등에서 답사자료와 함께 관련한 논문, 학술지 등 문헌을 조사 분석 및 연구함
- 답사조사가 완료된 국내 아침고요식물원, 제이가든 등에서 답사자료와 함께 관련한 논문, 학술지 등 문헌을 조사 분석 및 연구함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정원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전략적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절차 및 내용

- (1단계) 2006-2012 답사조사가 완료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들에 대한 사진자료 등 답사자료 분석 및 문헌연구
- (2단계) 답사조사가 완료된 국내 아침고요식물원, 제이가든 등에 대한 사진자료 등 답사자료 분석 및 문헌연구
- (3단계) 국내외 정원들의 비교연구를 통한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정원 육성을 위한 전략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

□ 조사결과 및 분석

- 국내외 우수정원들에 대하여 정원의 역사, 조성 및 관리, 식물보존 및 연구, 전시, 교육, 공공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진자료 분석 및 문헌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정원 육성을 위한 전략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

3)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

□ 연구계획

- 총괄적인 정원산업 시장전망 분석
- 정원식물 등 재료 및 용품 관련 시장전망 분석
- 정원관광 관련 시장전망 분석
- 정원교육 관련 시장전망 분석

□ 연구절차 및 내용

- (1단계) 국내외 관련 경제분석 보고서, 학술지 등의 정보검색 및 분석을 통한 총괄적 정원산업 시장전망 분석
- (2단계) 국내외 시장통계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원 재료 및 용품 시장전망 분석
- (3단계) 일반에게 공개되는 공공정원 및 민간정원의 정원방문 등 정원관광에 관련한 보고서 및 학술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원관광 시장전망 분석: 영국 NGS(national garden scheme) 등을 중심으로
- (4단계) 영국 큐 가든(Kew garden) 등 국외 정원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정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원교육 시장전망 분석

□ 조사결과 및 분석

- 도농간의 상생뿐만 아니라 보건 및 위생, 여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활양식(lifestyle)을 위한 정원산업의 필요성 인식 증진 방안 분석
- 식물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연구 및 개발
- 새로운 생활양식의 보급을 위한 정원 및 정원문화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분석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분석
- 정원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4) 정원진흥 기본계획

□ 연구계획

- 정원진흥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정원의 조성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의 규모와 종류 등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함
- 정원에 대한 지원 및 정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및 법적 기반

을 마련함

- 정원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정원의 확대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함

□ 연구절차 및 내용

- 정원진흥 기본방향과 목표, 전략 수립

- 최근 수목원법 등으로 인해서 그 고유영역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올바른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이를 통해서 정원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원발전과 확대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그 근거법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
- 성격: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원칙으로 함
- 수립주체: 농촌진흥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단 필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기관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정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원 지원 및 수목원간 교류에 관한 사항, 정원 정보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정원의 조성현황에 대한 검토

- 정원의 규모별 현황
- 정원의 종류별 현황
- 정원의 시설별 현황
- 정원의 지역별 현황
- 정원에 대한 국내외 여건변화 및 SWOT 분석

- 정원에 대한 지원 및 정원 간 교류를 확대

- 정원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
 - 정원 관련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 정원을 통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화
 - 정원 물적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 정원산업을 위한 글로벌 생물자원 협력 체계 강화
- 정원 간 교류를 확대
 - 국내 정원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 해외 정원과의 인적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 아시아 지역 정원 국제조직 구성 및 교류
- 법 및 제도 정비
 - (가칭)정원법 제정 및 검토
 - 조직확대 및 기능강화
- 정원에 대한 정보화 및 활용
 - 정원 및 정원산업, 정원교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정원기능 확대 및 사업화 등에 활용
- 조사결과 및 분석
 - 정원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최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과 정원산업에 이정표가 되어 올바른 정원문화와 정원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함
 - (가칭)정원법의 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개발을 위한 정원진흥계획이 되어야 함

5)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연구계획
 - 원래 수목원의 조성 및 활용방안은 법률 제12416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음. 하지만 “순천만 정원사업”을 계기로 “정원 및 정원산업”도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게 되었음. 그래서 산림청의 주도로 법률 제1302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이 제정·공포되어 2015년 7월 21일자로 시행예정임. 하지만 동법은 기존 「수목원법」에 “정원”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며, 산림청의 정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인정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음. 따라서 기존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절차 및 내용
 - (1단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내용 조사
 - 기존 「수목원법」의 입법과정 및 내용
 - 「수목원·정원법」의 국회 입법과정 조사
 - 「도시농업법」 등 유사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내용과 「수목원·정원법」의 비교 분석
 - (2단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외국입법례 비교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서양의 정원 입법례 조사
- 일본, 중국 등 동양의 정원 입법례 조사
- (3단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문 분석 및 대안 제시
 - 「수목원·정원법」의 조문 내용 분석
 - 「수목원·정원법」의 개정안 제시
 - 가치 「정원법」의 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안 마련

□ 조사결과 및 분석

- 2015년 7월 시행예정인 「수목원·정원법」은 개정할 필요 있음
- 첫째, 수목원과 정원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동일 법령에 단순 포괄하여 규정한 점
 - 둘째, 그동안 산림청이 수목원의 관리감독 주체였던 것은 타당하지만, 산림청이 단독으로 정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셋째, 「수목원·정원법」은 ‘정원교육’, ‘정원산업’, ‘정원지원센터’ ‘정원전문가’ 등 포괄적인 개념이 많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음
- 따라서 2015년 7월 시행예정인 「수목원·정원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함
 - 첫째, 「수목원·정원법」의 개정이 필요함. 특히 ‘산림청장’ 이 주체인 부분은 ‘농진청장’ 으로 변경 필요
 - 둘째, 「수목원·정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제언
- 별도 「정원법」의 제정을 제안함
 - 첫째, 정원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목원법과 도시농업법 등 관련 법률들을 통합한 정원법 법안 제시
 - 둘째, 해외 입법사례의 원용을 통해 규제는 최소화하되(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합리적 규제 가미), 지원은 최대화하는 법령 체계 구축
- '16년 신규사업의 제안
 - (법제도) 「정원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개정 또는 제정에 관한 연구: 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도시농업법 개정 등
 - (민간참여) 도시미화운동을 위한 화훼, 원예, 정원 관련 민간단체 조직, 정원공개 등을 위한 정원체계(Garden scheme) 수립 및 정원관광 자원화에 관한 연구
 - (정원박람회) 국내 화훼박람회, 정원박람회 등을 연계한 선진문화 창조형 화훼·정원 국제박람회계획에 관한 연구

II.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2.1. 정원의 개념 및 현황

2.2.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2.3.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II.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2.1. 정원의 개념 및 현황

정원의 정의는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에 따르면 '열매들, 꽃들 그리고 채소들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A piece of ground usually close to a house for the growing of fruits, flowers and vegetables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그러나 이와 같은 정원의 정의는 고전적 개념이며, 오늘날에는 민간정원(private garden)에 대한 정의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이론과 같은 절대적인 개념의 정의는 불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개념의 정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어진다. 오늘날 존재하는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앞서 언급한 '열매들, 꽃들 그리고 채소들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 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할 것이다.

일례로, 공공정원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식물원(botanic garden)의 개념 정의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89년에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Botanical Gardens Conservation Secretariat(BGCS), 그리고 World Wildlife Fund(WWF)는 식물원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그리고 식물들이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정원' 이라고 정의하였다: a garden open to the public and where the plants are labelled(IUCN-BGCS and WWF, 1989). 이와 같은 식물원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Benfield(2013)는 정원들에서 행해지는 보존 작업으로 유추된 첫 번째 정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2000년에 식물원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는 정의가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BGCI)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BGCI는 식물원이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있는 식물들에 대한 서류화된 수집들을 보관하는 연구기관' 이라고 정의하였다: Botanic gardens are institutions holding documented collections of living plants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conservation, display, and education(Wyse Jackson and Sutherland, 2000). 이와 같은 정의는 앞서의 정의와 비교하여 볼 때, "전시(display)" 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식물원에 초청되거나 또는 전시 관람을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식물원의 개념 정의에 정원방문이 통합적 요소로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1989년과 2000년의 식물원에 대한 개념 정의의 변화를 살펴볼 때, 당시 사

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개념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예, 조경, 산림 등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원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정원을 다시 구분하고 정의함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정원의 개념을 마련하고자 한다.

2.1.1. 정원의 개념

정원은 개인 또는 공공의 즐거움과 유익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이며 민간정원과 공공정원으로 구분된다(허근영 등, 2015). 민간정원(private garden)은 꽃, 채소, 허브, 과일 혹은 관상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한다.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가지는 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식물원, 수목원, 대중에게 개방되는 민간정원 등을 포함한다.

1) Benfield(2013)에 의한 정원의 구분과 정의

미국 중부 코네티컷 주립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Benfield(2013)는 Whse Jackson and Sutherland(2000)의 공공정원 분류에 대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목적 정원(multi-purpose garden)은 원예학과 원예실무 분야에서 넓은 영역의 활동을 가지는 기관; 연관된 식물표본실과 실험실을 가지고 특별히 분류학 분야의 연구 그리고 대중 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춘 기관; 일반적으로 주(state)에서 지원됨;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식물원이 이에 해당된다.

장식정원(ornamental garden)은 서류화된 다양한 식물들의 수집을 가지는 매우 아름다운 시설물; 최근에는 연구, 교육 또는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몇몇 장식정원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들이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됨;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의 롱우드 정원이 이에 해당된다.

역사정원(historical garden)은 의약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최초의 정원; 몇몇 정원은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됨; 이와 같은 정원들의 많은 수는 여전히 약용식물 보존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날에는 약용식물의 수집 및 보존과 약용식물들에 대한 대중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Padua Botanic Garden이 이에 해당된다.

보존정원(conservation garden)은 대부분 식물보존을 위한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에 개발되었음; 몇몇 정원들은 재배되는 수집종들 외에 자연식생을 포함하거나 또는 자연식생지를 가지고 있음; 자생식물 정원들이 포함됨; 대부분의 보존정

원은 대중 교육의 역할을 담당함; 오만의 Oman Botanic Garden이 이에 해당된다.

대학정원(university garden)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물원; 많은 대학정원들은 대중들에게 공개됨; 영국 옥스퍼드 식물원이 이에 해당된다.

동·식물정원(combined botanic and zoological garden)은 동물원과 식물원을 함께 운영하며 최근 식물수집 역할을 재부과하고 있음; 식물수집은 전시된 동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 및 개발되고 있음; 일반 대중들에게 서식처에 대한 해설은 중요한 요소임; 미국의 Jacksonville Zoological and Botanic Garden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물유전자원정원(agrobotanical and germplasm garden)은 보존, 연구, 육종, 농업을 위한 경제적 가치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식물들에 대한 서식지 외 수집의 기능을 담당함; 농업 또는 임업 연구소와 연결된 실험장소임; 실험실 내 육종과 종자검정 시설을 가지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정원들의 대부분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음; 영국의 Wakehurst Place가 이에 해당된다.

고산정원(alpine or mountain garden)은 대부분 유럽과 몇몇 열대지역 국가들의 산악지역에 위치함; 산지와 고산식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음; 열대지역 국가들의 경우, 아열대와 온대식물들의 재배를 위해서 조성됨; 몇몇 고산정원은 저지대에 위치한 식물원들의 위성정원임; Republic of Georgia의 Tbilisi에 있는 Bakhtiari Botanic Garden이 이에 해당된다.

야생정원(natural or wild garden)은 보호되거나 관리되어지는 자연 또는 반자연 식생지를 가지고 있음; 대부분은 보존과 대중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며 자생식물 서식지를 포함함; 미국의 매사추세츠 Framingham에 있는 Garden in the Woods와 New England에 있는 Wildflower Garden이 이에 해당된다.

원예정원(horticultural garden)은 종종 원예협회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관리되며 대중에게 공개됨; 정원전문가 실무연습, 식물육종, 식물등록, 정원식물 품종보존을 통한 원예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됨; 영국 왕립원예협회(RHS) 위슬리 가든이 이에 해당된다.

주제정원(thematic garden)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관련된 또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식물들 또는 일반적으로 교육, 과학, 보존, 전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식물들로 특성화된 정원임; 난, 장미, 철쭉, 대나무, 다육식물 정원들 또는 민속식물, 약용식물, 분재, 토피어리, 나미정원, 식충식물, 수생식물과 같은 주제들을 가진 정원들을 포함함; 멕시코의 Oaxaca Botanic Garden이 이에 해당된다.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은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임; 미국 뉴욕에 있는 환경 관련 공공기관의 Open Space Greening(OSG)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정원(private garden)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소유된 정원이지만 때때로 대중의 관람을 위해서 공개됨; 미국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Garden Conservancy Gardens이 이에 해당된다.

축제정원(festival garden)은 축제와 이벤트를 위해서 개발된 정원임;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전시와 같은 경향이 있음; 1992년 미국 오하이오 콜럼부스의 Ameriflora가 이에 해당된다.

휴양지정원(resort garden)은 숙박시설, 회의, 편의시설 등과 같은 휴양시설로 구성된 복합물에 초점을 맞춘 부속물로서의 정원임; 정원은 휴양지에서 얻어지는 경험 속에 필수적 요소임; 미국 조지아의 Pine Mountain에 있는 Callaway Gardens가 이에 해당된다.

묘지정원(cemetery garden)은 고인들의 무덤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묘지정원이 가지는 원예적 특성은 그 자체로서 방문하고픈 목적지로 만들어 줌; 미국 매사추세츠 캠프리지에 있는 Mount Auburn Cemetery가 이에 해당된다.

치유정원(quiet/healing garden)은 식물이 가지는 치유적 특징과 정원이 가지는 휴식, 고요함 등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위치한 정원이다.

사의(寫意)정원(spiritual and cosmic garden)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힘들을 상징화하고 대변하고자 이용되는 디자인과 그에 따른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 정원이다.

2) 공동체정원과 도시텃밭의 구분과 정의

앞서 언급된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과 도시텃밭(Allotment garden)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두 가지 정원들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얼롯먼트(Allotment)’란 개념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1500년대 후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하에서 제1차 인클로저¹⁾(Enclosure) 운동으로 인한 공유지 소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소작인의 코티지(cottages)²⁾에 접한 일정 구획의 대지에 대한 명칭으로서 사용되었다. 소작인은 할당된 면적의 땅을 관리하고 재배하는 일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지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인식하고 있는 시스템은 19세기에 그 근원을 가지며, 당시 식량 마련을 위해서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대지의 한 면적 또는 한 구획을 얼롯먼트정원(allotment garden)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실상 얼롯먼트정원(allotment garden)은 가난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극

1) 인클로저(Enclosure)란 목축 또는 농지정리를 위해서 경작지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한다. 15~16세기에 전개된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양모생산 증대를 위해서 공유지를 목장으로 전환했던 것이고, 18세기에 전개된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지주들에 의한 농지정리였다.

2) 영국에서 기원한 코티지(cottage)란 용어는 본래 중세 농장 노동자의 주택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 교외지역의 소규모 주택 또는 별장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고 뉴질랜드에서는 정착 초기부터 단층의 소규모 주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김인혜와 허근영, 2008).

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쟁기간 중에 견강한 식량생산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정원가들을 위해서 얼럿먼트정원(allotment garden)의 가치와 역할은 변화되었다. 얼럿먼트정원(allotment garden)은 이제 도시 거주자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이며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개인들과 함께 정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맛있고 건강한 식물을 생산하는 장소로 대변된다(Lavelle and Lavelle, 2014). 따라서 오늘날 얼럿먼트정원(allotment garden)은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개념과 유사하며, 도시텃밭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어로서 텃밭의 사전적 의미는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을 의미한다.

얼럿먼트정원(allotment garden)과 유사한 대지의 분배 체계들이 비록 그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도 존재한다. 북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예를 들면,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이란 용어가 사용되며, 반면에 유럽 전역에는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 가족정원(family garden), 사회정원(social garden) 또는 작업정원(work garden)이라고 불린다. 앞서 Benfield(2013)는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을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이라고 정의하며, 미국 뉴욕에 있는 환경 관련 공공기관의 Open Space Greening(OSG)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Open Space Greening(OSG)은 1975년 Liz Christy에 의해서 설립된 GrowNYC의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이며, 일종의 정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전반에서 공동체정원들(community gardens), 도시농원들(urban farms), 학교정원(school gardens), 그리고 빗물 수확 시스템들(rainwater harvesting systems)을 조성하고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www.grownyc.org/openspace). 여기서, 우리는 GrowNYC가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과 도시농장(urban farm)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GrowNYC는 76개의 공동체정원들을 조성하였거나 또는 재생하였으며 그리고 식용식물을 재배하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유휴지를 도시농업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학교들, 공공주택협회들, 그리고 마을공동체들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과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rowNYC가 수행 중인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 프로그램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거나 재생하며, 유휴지를 공동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공간들로 조성하고자 학교들, 공공주택협회들, 그리고 공동체 그룹들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마을녹화 프로젝트(neighborhood greening projects)와 공동체 미화 프로젝트(community beautification project)에 관련한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그림 2-1). 이것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은 공동체의 상호작용 증진, 도시녹화, 도시미화를 위한 공동체 정원활동의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그림 2-2,3).

OPEN SPACE GREENING

Founded by Liz Christy in 1975, GrowNYC's garden program builds and sustains community gardens, urban farms, school gardens, and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across New York City.

GrowNYC has created or rejuvenated 76 community gardens and continues to work with schools, public housing associations, and neighborhood groups to transform vacant land into urban agriculture destinations - vibrant civic spaces that grow food, provide valuable open space, and serve as dynamic classrooms for NYC school children. We've also taken the lead in bringing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to community gardens.

In 2010, GrowNYC and the Mayor's Fund to Advance New York City launched Grow to Learn: The Citywide School Gardens Initiative, a one stop resource for any public school looking to build, sustain, and program a school garden.

Our Grow Truck program delivers free tool loans to neighborhood greening projects and our Annual Plant Sale provides at-cost Greenmarket vegetable, herb, and flower starters to community gardens, schools, and block associations.

그림 2-1. 미국 뉴욕시의 GrowNYC의 Open Space Greening 프로그램(www.grownyc.org/openspace)



그림 2-2. 미국 뉴욕시의 GrowNYC의 Open Space Greening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원활동(www.grownyc.org/openspace): (위)공동체의 상호작용; (중간)도시농업; (아래) 공동체정원활동



그림 2-3. 미국 뉴욕시의 GrowNYC의 Open Space Greening의 일한인 공동체정원 프로그램(www.grownyc.org/openspace/community-gardens)

종합하여 볼 때, 영국의 얼럿먼트(allotment)에서 기원한 미국의 공동체정원(communitiy)은 오늘날의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도시농원(urban farm)과는 다소 차이를 가지며 구분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정원(communitiy garden) 및 도시텃밭(allotment garden)의 구분 및 정의는 표 2-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1. 공동체정원과 도시텃밭의 구분 및 정의

구분	공동체정원(communitiy garden)	도시텃밭(allotment garden)
목적	공공의 가치 추구, 공동체 상호작용 증진, 도시녹화, 도시미화 등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맛있고 건강한 식물생산, 개인의 정원활동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등
정의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	도시 내 일정한 지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할당된 소규모 토지들
활동	공동체가 함께 채소, 허브, 화훼, 정원식물 등을 재배하며 도시녹화, 도시미화 등을 수행하는 정원활동	도시 내 공유지에서 일정하게 할당된 토지에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식용 식물을 재배하는 정원활동
유사성	도시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공유지에서	행해지는 정원활동임
차이점	공공성이 강조됨 도시환경개선: 도시녹화, 도시재생, 도시미화 등을 위한 원예 장식적 정원활동임	개인 및 가족의 건강과 위생이 강조됨 개인의 소비를 위한 농작물 생산을 위한 생산적 정원활동임

3) 이용목적에 따른 정원의 구분과 정의

Benfield(2013)와 Whse Jackson and Sutherland(2000)에 의한 정원의 구분과 정의를 수정 및 보완하고, 공동체정원과 도시텃밭을 구분하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원 현황을 고려하여 표 2-2와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서 정원을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표 2-2. 이용목적에 따른 정원의 구분 및 정의

정원	민간 정원	꽃, 채소, 허브, 과일 혹은 관상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
	공공 정원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가지는 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식물원, 수목원, 대중에게 개방되는 민간정원 등을 포함함
	다목적정원	원예학과 원예실무 분야에서 넓은 영역의 활동을 가지는 기관; 연관된 식물표본실과 실험실을 가지고 특별히 분류학 분야의 연구 그리고 대중 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춘 기관
	장식정원	서류화된 다양한 식물들의 수집을 가지는 매우 아름다운 시설물; 최근에는 연구, 교육 또는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보존정원	대부분 식물 보존을 위한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에 개발되었음; 몇몇 정원들은 재배되는 수집종들 외에 자연식생을 포함하거나 또는 자연식생지를 가지고 있음; 자생식물 정원들이 포함됨; 대부분의 보존 정원은 대중 교육의 역할을 담당함
	대학정원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식물원을 유지함; 많은 대학정원들은 대중들에게 공개됨
	치유정원	식물이 가지는 치유적 특징과 정원이 가지는 휴식, 고요함 등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위치한 정원
	주제정원	한정된 범위 내에서 관련된 또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식물들 또는 일반적으로 교육, 과학, 보존, 전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식물들로 특성화된 정원임; 난, 장미, 철쭉, 대나무, 다육식물 정원들 또는 민속식물, 약용식물, 분재, 토피어리, 나미정원, 식충식물, 수생식물과 같은 주제들을 가진 정원들을 포함함
	축제정원	축제와 이벤트를 위해서 개발된 정원임;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전시와 같은 경향이 있음
	공동체정원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
	도시텃밭	도시 내 일정한 지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할당된 소규모 토지들; 때때로 대중에 대한 식물 전시, 원예실무 교육 등을 수행함
민간정원	개인으로서의 도시민들에 의해서 소유되지만, 때때로 대중의 관람을 위해서 공개됨	

4)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분과 정의

영국 큐 가든(Kew Garden), 호주 시드니 식물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을 살펴보면,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분과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759년에 개원한 큐 가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살아있는 식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3만 종류 이상의 식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7백만 종류 이상의 식물표본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에는 75만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식물삽화는 175천 점 이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적지(World Heritage Sites)의 하나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그림 2-4에서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야자류 온실(Palm House)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미정원, 매자나무 골짜기(Berberis Dell), 숲속의 빈터(Woodland Glade), 미국삼나무 숲(Redwood Grove), 수련 연못(Waterlily Pond), 소나무 재배원(Pinetum), 보존지역, 야생동물보존센터, 대나무 정원, 철쭉정원, 아잘레아정원, 목련정원, 올레미 소나무(Wollemi Pine), 은행나무, 겨울정원, 숲정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4. 영국 큐 가든(Kew Garden)의 공간구성

호주 시드니 식물원은 1816년에 개원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적 연구기관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식물학 연구소이다. 그림 2-5에서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베고니아 정원, 허브정원, 장식정

원, 열대우림 산책로, 야자 숲, 호주 자생식물 암석원, 장미정원, 다육식물원, 시드니 고사리온실, 울레미 소나무(Wollemi Pine), 동백나무정원 등으로 구분된다.

뉴질랜드 정원은 1840년대 영국 남부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정원문화에 기원하고 있다(김인혜와 허근영, 2008). 오클랜드 식물원은 1973년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공식적으로 1982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그림 2-6에서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방문자센터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클랜드 경계식재(Auckland Border), 뉴질랜드 자생식물 정원(NZ Plants), 식용식물정원(Edibles), 뉴질랜드 멸종위기식물정원, 다년생식물정원(Perennials), 자생식물 배식 아이디어(Native Plants Ideas), 야자류(Palms), 곤드와나 수목원(Gondwana³) arboretum), 뉴질랜드 자생수목 숲(NZ Native Forest), 목련정원, 동백나무정원, 봄 초화류정원(Spring Blossom Valley), 아프리카정원, 암석원, 침엽수원(Conifers), 허브정원, 셀비어정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5. 호주 시드니 식물원의 공간구성

3) 곤드와나(Gondwana)는 현재의 남반구의 땅 전체를 포함하던 과거의 초대륙이다. 남극,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오스트레일리아-뉴기니, 뉴질랜드를 비롯,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아대륙을 포함한다. 곤드와나라는 이름은 인도 중북부의 지명에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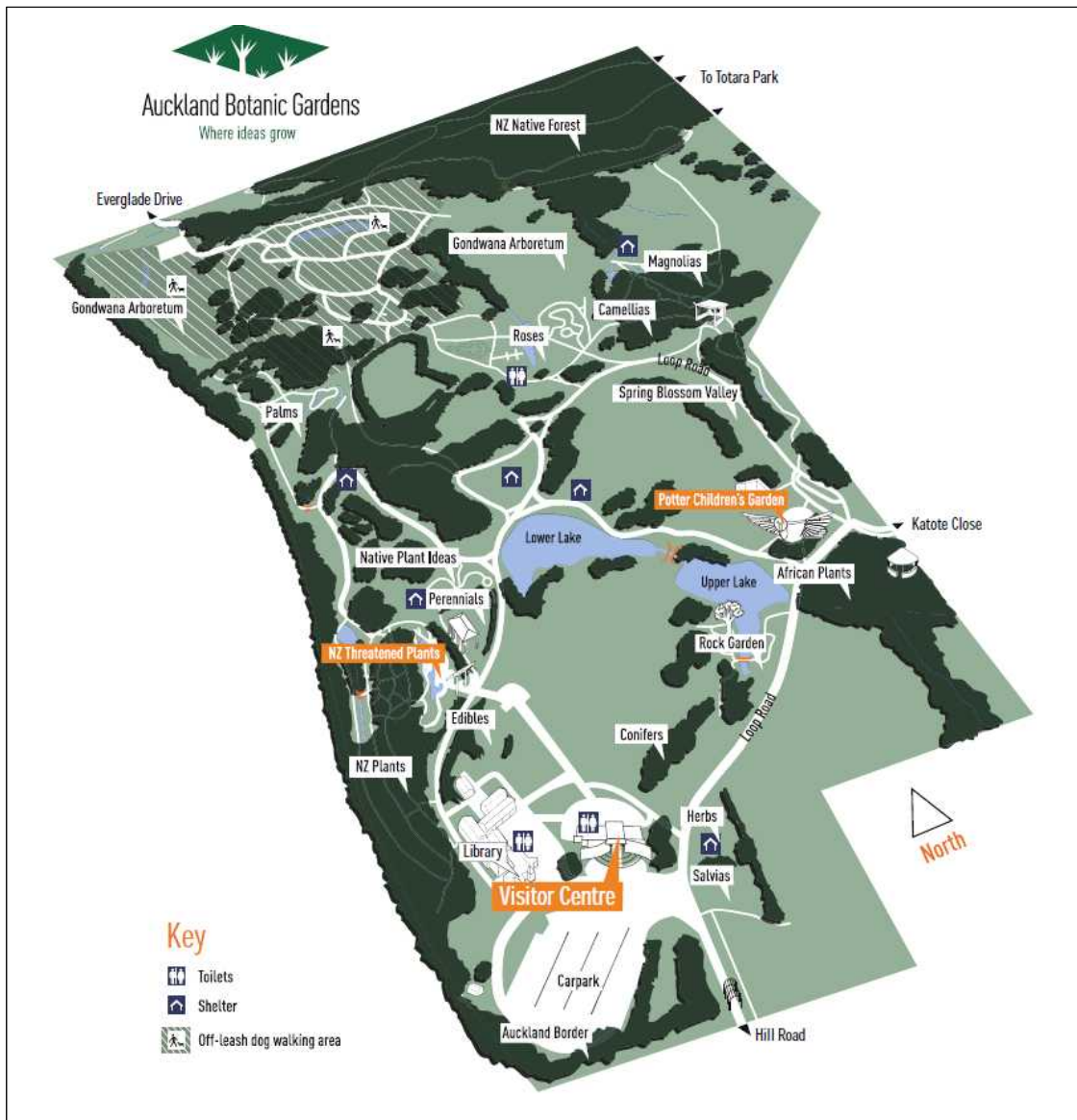


그림 2-6.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공간구성

앞서 열거된 영국 큐 가든(Kew Garden), 호주 시드니 식물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식물재료에 따른 공간구성요소들을 표 2-3과 같이 분류해보면, 식물원이라는 공간 내에 수목원과 주제정원이 공간구성요소로서 존재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표 2-4와 같이 식물재료에 따라서 정원을 식물원(botanic garden), 수목원(arboretum), 주제정원(thematic garden)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식물원(botanic garden)은 본래 대학 내에서 약용식물 연구를 위해서 조성되었으며, 점차 수집, 보존, 연구 등을 위한 식물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식물자원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수목원(arboretum)은 식물원의 일종 또는 식물원의 하위 개념으로서 산림지역 또는 그 주변에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주로 수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 보존, 연구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주제정원(thematic garden)은 한정된 범위에서 관련된 또는 유사한 식물들을 관리하는데 특성화된 정원으로 본래 약용식물정원(physic garden), 고사정원(alpine garden)처럼 독립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식물원 또는 수목원의 공간구성요소들의 일부로서 조성되고 있다. 이 정원들의 종속관계를 나타내자면, ‘식물원 > 수목원 > 주제정원’, 또는 수목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식물원 > 주제정원’ 이 될 것이다.

표 2-3. 영국 큐 가든, 호주 시드니 식물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식물재료에 따른 공간구성

구 분	초본식물	목본식물		열대 또는 아열대식물	기타
		관상	보존		
큐 가든	수련연못	장미정원, 철쭉정원, 아잘레아정원, 목련정원, 매자나무 골짜기, 소나무 재배원, 대나무정원	울레미 소나무 (Wollemi Pine), 은행나무, 미국삼나무 숲 보존지역, 숲정원	야자류 온실 (Palm House)	숲속의 빈터, 야생동물보존센터, 겨울정원
시드니 식물원	베고니아 정원, 허브정원, 장식정원, 호주 자생식물 암석원, 다육식물원, 시드니 고사리온실	장미정원, 동백나무정원	울레미 소나무 (Wollemi Pine)	열대우림 산책로 야자 숲	
오클랜드 식물원	허브정원, 샬비어정원, 식용식물 정원, 다년생식물 정원, 봄 초화류 정원, 암석원, 뉴질랜드 자생식물, 뉴질랜드 멸종위기식물 정원, 자생식물 배식 아이디어, 아프리카정원	목련정원, 동백나무정원, 침엽수원	뉴질랜드 자생수목 숲 곤드와나 수목원	야자류	오클랜드 경계식재

표 2-4.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분 및 정의

구분	식물재료	정의
식물원 (botanic garden)	다양한 식물자원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
수목원 (arboretum)	수목을 위주로 함	식물원의 일종 또는 식물원의 하위 개념으로서 수목을 중심으로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주제정원 (thematic garden)	한정된 식물 위주로 함	한정된 범위 내에서 관련된 또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식물들 또는 일반적으로 교육, 과학, 보존, 전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식물들로 특성화된 정원임; 난, 장미, 철쭉, 대나무, 다육식물 정원들 또는 민속식물, 약용식물, 분재, 토피어리, 나미정원, 식충식물, 수생식물과 같은 주제들을 가진 정원들을 포함함
비고 (종속관계)		

표 2-3과 4의 구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립수목원(Korea National Arboretum)을 살펴보면, 본래 수목원으로 조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식물원으로 확장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국립수목원은 광릉 주변 산림보존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국립수목원, 2015). 1913년에는 이 숲을 임업시험림으로 지정하여 묘포가 설치되었고, 1929년에는 임업시험장 광릉출장소가 설치되어 숲을 관리하였으며, 1976년 1월에는 출장소가 임업시험장 중부지장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하고 산림박물관을 건립하여 1987년 4월5일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산림욕장을 개장하였고, 이어서 1991년에는 산림동물원을 개원하여 산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 숲의 보존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로 제기되면서 1997년부터는 산림욕장을 폐쇄하였으며 현재는 입장객수와 입장일을 부분제한하고 있다. 또한 식물자원의 확보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에는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수목원과를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 신설 개원하였다. 또한 산림생물연구의 기초가 되는 표본의 수집·보존과 연구를 위해 2003년 11월 7일에 산림생물표본관을

개관하였다. 그림 2-7에서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본식물로 구성되는 백합원, 작약원, 약용식물원, 식·약용식물원, 수생식물원, 양치식물원, 돌나물과 식물보존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습지식물원이 있으며, 관상 및 보존을 위한 목본식물로 구성되는 무궁화원, 만병초원, 화목원, 관목원, 덩굴식물원, 관상수원, 난대식물온실, 전나무숲, 침엽수원, 숲생태관찰로가 있고, 열대식물로 구성되는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등이 있다.



그림 2-7.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의 공간구성

앞서 제시한 영국 큐 가든, 호주 시드니 식물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과 함께 국립수목원을 식물재료에 따라서 공간구성요소들을 비교해보면, 이 식물원들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산림동물 보전원과 비밀의 뜰, 마을정원, 소리정원, 손으로 보는 정원 등의 정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더 광범위한 공간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립수목원은 광릉 주변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자원

및 서식지 외 산림생물자원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원예장식용 식물들을 거의 보유 및 전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수목원은 산림지역의 초본 및 목본 식물과 산림동물을 보존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명칭은 수목원(arboretum)보다는 국립 동·식물원 또는 국립 식물원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공공정원(public garden)과 도시공원(urban park)의 구분과 정의

도시공원(urban park)은 공공정원(public garden), 특히 식물원 및 수목원과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공원(urban park)과 공공정원(public garden)에 대한 개념적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에서 공원을 정의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도시공원(urban park)과 공공정원(public garden)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첫 번째 공원(park)은 중세시대 왕과 귀족들의 사냥을 위해서 조성된 “English deer parks” 였다. 당시 공원은 게임을 즐기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변에 담장과 두터운 생울타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원은 16세기부터 대저택과 전원주택 주변에 위치한 경관미를 갖춘 개인 소유의 공원으로 발전하였다. 케이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과 같은 정원가들에 의해서 공원의 자연적 경관미가 더욱 향상되었다. 점차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개인 소유의 사냥터는 대중을 위한 장소로 전환되었고, 산업혁명과 더불어 공원은 도시와 마을에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되는 공공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 활동은 도시공원(urban park)에서 중요한 이용이 되었으며, 탁월한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립공원(national park)로 지정되어 보호되었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공원은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개방된 공간의 면적; 공원 안에는 자연적 또는 반자연적 상태, 또는 식재된 상태일 수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유희를 위해서 또는 야생생물 또는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마련되는 지역; 암석들, 토양, 물, 식물상(flora) 및 동물상(fauna), 잔디밭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건물들과 운동장들과 같은 인공물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en.wikipedia.org).

우리나라에서 공원(park)은 오락과 휴식을 위해 따로 조성되는 넓은 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자연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 공공녹지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산책,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넓은 장소라고 정의한다.

표 2-5. 공공정원과 도시공원의 구분 및 정의

구분	공공정원(public garden)	도시공원(urban park)
목적	식물의 이용을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됨	도시민에게 오락, 휴식 등의 야외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됨
정의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가지는 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원	공공녹지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산책,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넓은 장소
활동	운영 및 관리자들은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하며 방문자는 휴식, 여가, 감상 등을 즐김	이용자는 오락, 휴식, 운동, 산책, 놀이 등을 즐기며, 운영 및 관리자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 및 편의시설들을 운영 및 관리함
유사성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식물들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음	
차이점	전문화된 인적구성 및 임무를 가지는 기관의 성격을 가짐: 식물의 이용을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	도시 거주자들에게 휴식, 산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적 성격을 가짐: 도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물 및 편의시설이 운영 및 관리되는 자연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 녹지
비고 (종속관계)		

앞서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가지는 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식물원, 수목원, 대중에게 개방되는 민간정원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공공정원(public garden)이 가지는 기능 중에 식물에 대한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도시공원(urban park)의 조성목적과 유사하게 대중에게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

거나 또는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공공정원은 도시공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조성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정원과 도시공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공공정원은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지만, 도시공원은 도시 또는 마을 거주자들의 오락과 휴식을 위해서 조성된다. 따라서 영국의 큐 가든, 우리나라 국립수목원 등과 같이 공공정원들이 공원 내에 위치하거나 그 주변에 위치할 수 있지만 표 2-5와 같이 추구하는 가치, 목적, 운영 등에서는 도시공원과 차이를 나타낸다.

공공정원(public garden)과 도시공원(urban park)의 구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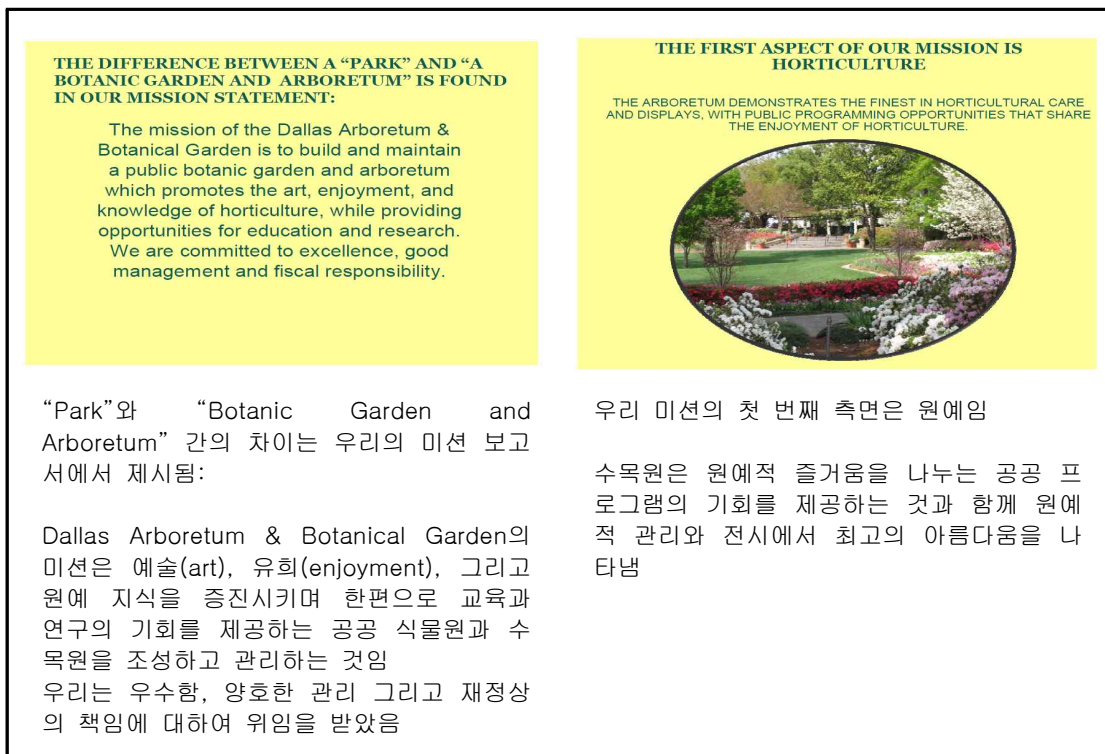


그림 2-8. 미국 달라스 수목원 및 식물원(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이 2008년 9월 17일 달라스 시의회 커뮤니티 미팅에 제출한 미국 달라스 시의 시장과 시의원에게 보내는 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의 보고자료

먼저 미국 달라스 수목원 및 식물원(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이 2008년 9월 17일 시의회 커뮤니티 미팅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공정원과 공원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그림 2-8). 보고서에는 “공원(park)” 과 “식물원 및 수목원(botanic garden and arboretum)” 간의 차이는 그들의

임무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들의 임무는 예술(art), 유희(enjoyment), 그리고 원예 지식을 증진시키며 한편으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식물원과 수목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최우선 임무는 원예이며, 수목원은 원예적 즐거움을 나누는 공공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원예적 관리와 전시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달라스 수목원 및 식물원이 공원과 같이 단지 시민들의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개방된 공간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림 2-9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 및 그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식물원에 근접하여 위쪽으로 토타라 공원(Totara park)이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식물원(botanic garden)이 공원(park)과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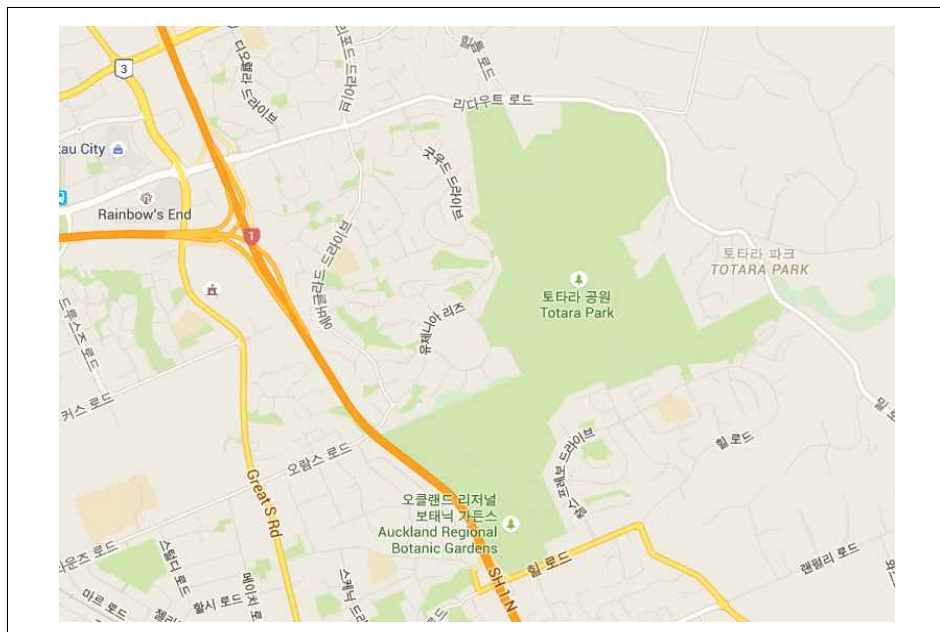


그림 2-9.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과 토타라 공원의 지역적 구분

그림 2-10에서 토타라 공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산책로, 수영장, 개울숲길, 야생생물, 바비큐장, 테니스장, 놀이장, 승마장, 산악자전거길 등으로 구분된다. 이것들은 앞서 그림 2-7에서 오클랜드 식물원이 뉴질랜드 자생식물 정원(NZ Plants), 식용식물정원(Edibles), 뉴질랜드 멸종위기식물정원, 다년생식물정원(Perennials), 야자류(Palms), 곤드와나 수목원(Gondwana⁴) arboretum), 뉴질랜드 자생수목 숲(NZ

4) 곤드와나(Gondwana)는 현재의 남반구의 땅 전체를 포함하던 과거의 초대륙이다. 남극,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오스트레일리아-뉴기니, 뉴질랜드를 비롯,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아대륙을 포함한다. 곤드와나라는 이름은 인도 중북부의 지명에서 왔다.

Native Forest), 목련정원, 동백나무정원, 봄 초화류정원(Spring Blossom Valley), 아프리카정원, 암석원, 침엽수원(Conifers), 허브정원, 셀비어정원 등으로 구분된 것과 많은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뉴질랜드 토타라 공원의 공간구성

뉴질랜드 토타라 공원(Totara park)과 같은 공간구성은 영국의 왕립공원(Royal Park)인 리젠트 공원과 호주의 센테니얼 공원(Centennial Parklands)에서 나타난다. 영국은 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과 별도로 리젠트 공원을 포함하여 11개소의 왕립공원을 지정하여 대중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림 2-11에서 리젠트 공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비록 Queen Mary's Garden, Avenue Garden, English Garden, Winter Garden 등의 정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원들은 장식적이고 유희적 목적의 양식화된(stylized) 정원들이며, 대부분의 공간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위한 잔디밭과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 그림 2-4에서 영국의 큐 가든이 야자류 온실(Palm House), 장미정원, 매자나무 골짜기(Berberis Dell), 미국삼나무 숲(Redwood

Grove), 수련연못(Waterlily Pond), 소나무 재배원(Pinetum), 보존지역, 야생동물보존센터, 대나무정원, 철쭉정원, 아잘레아정원, 목련정원, 올레미 소나무(Wollemi Pine), 은행나무, 겨울정원, 숲정원 등으로 구성된 것과 많은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영국 리젠트 공원(Regent's park)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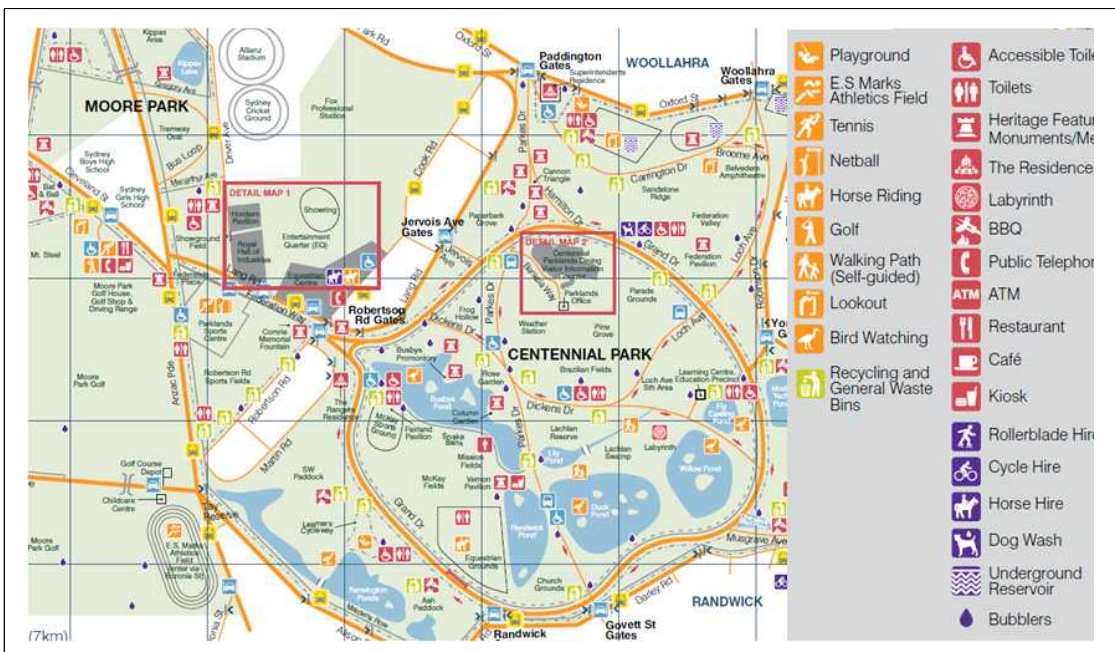


그림 2-12. 호주 센테니얼 공원(Centennial park)의 공간구성

호주의 센테니얼 공원(Centennial Parklands)은 양쪽으로 Queens 공원과 Moore 공

원과 접하고 있으며 그림 2-12에서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운동장, 테니스장, 넷볼장, 승마장, 골프장, 산책로 등으로 구분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여름과 겨울 중의 공원 이용, 애완견과의 산책,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 2-5에서 호주 시드니 식물원이 베고니아 정원, 허브정원, 열대우림 산책로, 야자 숲, 호주 자생식물 암석원, 장미정원, 다육식물원, 시드니 고사리온실, 울레미 소나무(Wollemi Pine), 동백나무정원 등으로 구성된 것과 많은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6) 적요: 식물원, 수목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 도시공원의 정의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식물원, 수목원, 공동체정의, 도시텃밭, 도시공원의 구분과 정의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 및 요약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식물원, 수목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 도시공원의 정의

구분	정의
식물원 (botanic garden)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
수목원 (arboretum)	식물원의 일종 또는 식물원의 하위 개념으로서 수목을 중심으로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공동체정원 (community garden)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
도시텃밭 (allotment garden)	도시 내 일정한 지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할당된 소규모 토지들로서 때때로 대중에 대한 식물 전시, 원예실무 교육 등을 수행함
도시공원 (urban park)	공공녹지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산책,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넓은 장소

2.1.2. 국내의 정원 조성현황

앞서 정원은 개인 또는 공공의 즐거움과 유익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이며 민간정원과 공공정원으로 구분된다고 정의하였다(허근영 등, 2015). 또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개인들의 정원활동과 정원방문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들의 정원활동과 정원방문은 또한 민간정원과 공공정원의 조성 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먼저 연구범위를 국내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한정하고 정원산업 측면에서 공공정원과 민간정원을 구분하여 국내·외 정원 조성현황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1) 공공정원의 기원 및 변천

(1) 16-17세기

서양의 첫 번째 식물원은 Luca Ghini에 의해서 1543년에 이탈리아 피사(Pisa)에 세워졌는데, Rae(1996)는 당시 많은 대학들이 식물원 조성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연구에 기초한 의약품을 가르치며 치료제로서 식물들을 이용하려는 교수들은 대학 근처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유용 야생식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물원을 조성하였다.

피사(Pisa)의 식물원은 파두아(Padua)(1545)의 식물원에 의해서 빠르게 답습되었는데, 식물원은 대학의 한 부분으로서 조성되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1년에 60,000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파두아(Padua) 식물원의 설립은 빠르게 플로렌스(Florence)에 있는 정원들(1545), 볼로냐(Bologna)에 있는 메디치(Medici) 가문의 대저택 정원(1547), 그리고 취리히(Zurich)에 있는 정원들(1560)에 의해서 뒤따라졌다. 16세기 유럽에서 정형식 식물원들의 빠른 설립은 단지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인하였다.

유럽 전역으로 식물원들의 확산은 정원들이 파두아(Padua)로부터 남프랑스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로 확산되는 것처럼 지리학적으로 팽창하는 형태의 고전적 방식을 나타냈는데, 1655년에 스웨덴 읍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의 식물원 설립과 함께 스웨덴과 같은 먼 북쪽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Benfield, 2013).

식물원의 본래 조성목적은 의약학적 목적을 위한 약용식물들의 연구 및 생산이었지만,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매우 활력 넘치는 탐구정신에 기인하여 모든 식물들은 고유한 선천적 가치와 특성을 위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비의약용 식물들이 연구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집되어 식물원에 도입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정원들에 도입되었던 수선화와 히야신스였다. 오스만 터키의 술탄이만(Suleiman) 황제 시대에 오스트리아 대사관이었던 Ogier de Busbcq에 의해서 수선화와 히야신스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정원에 심겨지게 되었다. 이들 정원들로부터 식물들은 더욱더 북쪽으로 확산되어 네덜란드까지 이르렀다. 네덜란드, 프러시아, 그리고 영국의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성장

은 다음 250년 동안 정원들의 진화에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고, 제국주의 시대에 정원 조성을 활성화시켰다.

(2) 18-19세기

16세기 동안에 조성된 식물원의 총수는 10개소 정도였다(그림 2-13). 뿐만 아니라 1750년까지도 유럽에는 단지 29개소의 식물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식물원의 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McCracken(1997)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식물원들에 대한 선구적 정원은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태어났다. 식물학 분야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적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서 식물원 조성은 사회·문화적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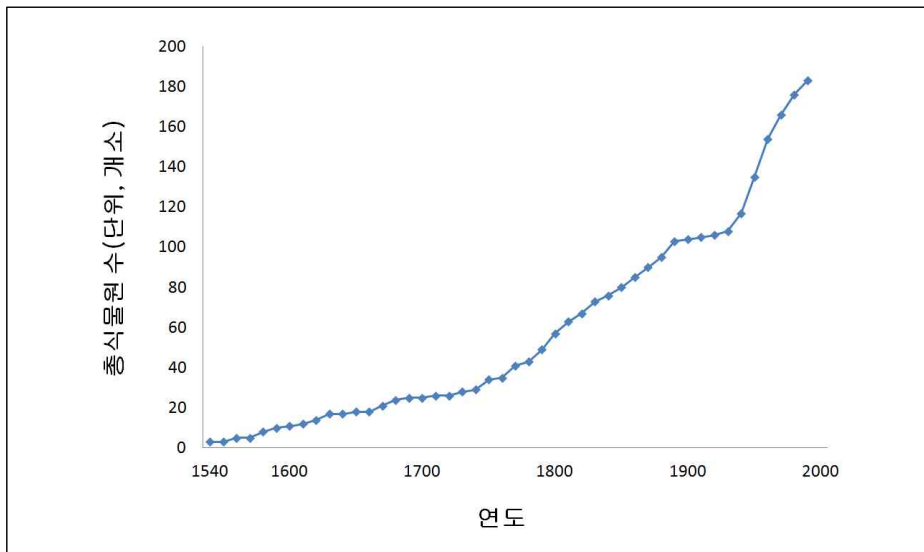


그림 2-13. 15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유럽지역 식물원 조성 현황

식물학적 탐구는 당시 스웨덴 읍살라(Uppsal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린네⁵⁾(Carl Linnaeus)에 의해서 주도되어 식물계(plant kingdom)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멀지 않아서 다른 지역들에서도 식물계에 대한 더욱더 정형화된 연구들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대학들과 연관되지 않았던 초기의

5) 읍살라(Uppsala) 대학의 의약학 신입 교수로 부임한 린네(Carl Linnaeus)는 1655년에 조성되었던 식물원을 1741년에 대칭 기법으로 정원설계하여 복원하였고, 이 정원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그의 저서인 종 식물분류학(*Species Plantarum*)은 읍살라(Uppsala) 대학에 재직 중에 집필되어 두 권의 작품으로 1753년에 첫 출판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현대적 식물명명법의 최초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원들과는 다른 것이었고, 강력한 교육적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18세기 중엽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식물원 조성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영국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McCracken(1997)은 1792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제국에는 단지 4개의 공공정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1837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 22개의 공공정원들까지 조성되었지만 단지 10개 정원들만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을 시작하며 50년간에 폭발적으로 식물원을 조성하였다. 1901년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마감하기까지 전 세계에는 441개의 식물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15개는 영국 식민지들에 조성되었다(표 2-7).

표 2-7. 1543부터 1901년까지 식물원 조성 현황

구분	식물원 수	식민지 내 식물원 수	비고 (%)
유럽	226		
영국 제국	126		
호주/뉴질랜드		28	25
인도/스리랑카/미얀마		28	25
아프리카		21	18
서인도제도/중남미		21	18
캐나다		7	6
피지/몰타/세이셸/세인트 헬레나		5	4
말레이시아/싱가포르		5	4
UK	26		
대륙 제국 (오스만/러시아/합스부르크/청나라 등)	25		
기타	38		
계	441	115	

출처: McCracken(1997)

식물원은 식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의 응용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성되었다. 그 당시에 작성된 식물원의 보고서들은 킹코나⁶⁾(cinchona), 고

6)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이 원산지이며, 이 속(genus)에 속하는 종류 중 4종이 오랜 동안 자바·인도·실론(지금의 스리랑카)에서 심어왔다. 나무껍질은 가공 처리하여 말라리아·심장박동장애·열병·진통을 치료하는 데 쓰는 퀴닌과 퀴니딘 등의 약품을 만는데 사용된다.

무나무(rubber), 차나무(tea) 등과 같은 식물들의 생산에 대한 식물원의 역할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음료 또는 의약품의 연구 및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열대정원들은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영국 상류계층들의 상당한 재력과 중산층의 출현은 이국적인 관상식물들에 대한 요구를 창출시켰다. 이 시기에 그들 소유의 정원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 비전문가들에게 식민지의 정원은 새롭고 탐구적인 교육을 위한 식물들의 원천이 되었다. 중국, 남아시아, 그리고 특히 남아프리카로부터 온 식물들은 영국의 장식적 정원들과 아마추어의 정원들 모두를 위해서 매우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새롭고 이국적인 식물들의 유입은 지배계층들에 의해서 수입되는 식물들을 구경하기 위한 대중들의 열정적인 정원관광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정원들을 관람하기 위한 전원주택들로의 관광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식민지 정원들 자체에 대한 정원관광의 증가를 발생시켰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McCracken(1997)은 1870년대부터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 정원들마다 1년에 300,000명의 방문자들을 가졌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이 숫자는 오늘날 정원방문자들 수와 상당히 비교할만한 수준이다.

영국 식민지 정원들의 중심이 되며 그리고 모든 새로운 관상식물들과 상업용 식물종들의 수집을 위해서 설립된 켄싱턴(Kensington)의 큐 가든(Kew Gardens)이 1841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고, 그리고 1846년에 리치몬드 철도의 개통으로 방문자 수는 1851년에 325,000명으로 급증하였고 그리고 1900년에는 1백만 명을 넘어섰다. 대중에게 개방되어진 식물원들은 당시 레크레이션과 여가를 위한 장소들이 되었으며, 신속하게 상업적 역할보다 더 많은 여가, 감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초창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정원들을 설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식물원 설립이 다소 지연되었다. 미국 혁명 후에 새로운 국가를 위한 식물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 식물원은 새로운 국가의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인식되었고, 1798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G. Washington)이 처음으로 국립식물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국립식물원에 대한 조지 워싱턴의 꿈은 1850년에 실현되었다. 표 2-8은 미국의 주요 정원들이 1900년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8. 1900년 이전까지 미국의 식물원 조성현황

명칭	위치	조성 연도
Bartram's Garden	Philadelphia, Pennsylvania	1728

George Lundy Memorial Botanical Garden	Peoria, Illinois	Early 1800s
Mount Auburn Cemetery	Cambridge, Massachusetts	1831
Haverford College Arboretum	Haverford (Phily), Pennsylvania	1833
Woodland Arboretum	Dayton, Ohio	1841
Cave Hill Cemetry	Louisville, Kentucky	1848
Villanova University	Villanova, Pennsylvania	1849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1849
US Botanic Garden	Washington, DC	1850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loomington, Illinois	1850
Missouri Botanical Garden	St Louis, Missouri	1859
Government House	Victoria, British Columbia	1865
Arnold Arboretum	Jamaica Plain (Harvard), Massachusetts	1872
W.J. Beal Botanical Garden	East Lansing, Michigan	1873
Cincinnati Zoo and Botanical Garden	Cincinnati, Ohio	1875
Mt Holyoke College Botanical Garden	South Hadley, Massachusetts	1878
City of Toronto, Dept Parks and Rec.	Toronto, Ontario	1879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essee	1879
Cleveland Metro Parks Zoo	Cleveland, Ohio	1882
Highland Botanical Park	Rochester, New York	1888
Zoo Atlanta	Atlanta, Georgia	1889
University of California Botanical Garden	Berkeley, California	1890

출처: Benfield(2013)

(3) 20세기 이후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BGCI)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위해서 개방된 수많은 민간정원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148개 국가들에서 2,500개 이상의 공공 식물원들 및 수목원들이 있다고 평가한다(Benfield, 2013; Rae, 1996). 그러나 세계적인 정원들의 대부분은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있다(그림 2-15). 서유럽에는 500개 이상의 식물원들이 있고, 북미에는 3,503개 이상의 정원들이 있으며, 동아시아와 남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정원들이 있다.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아시아에는 작은 수의 식물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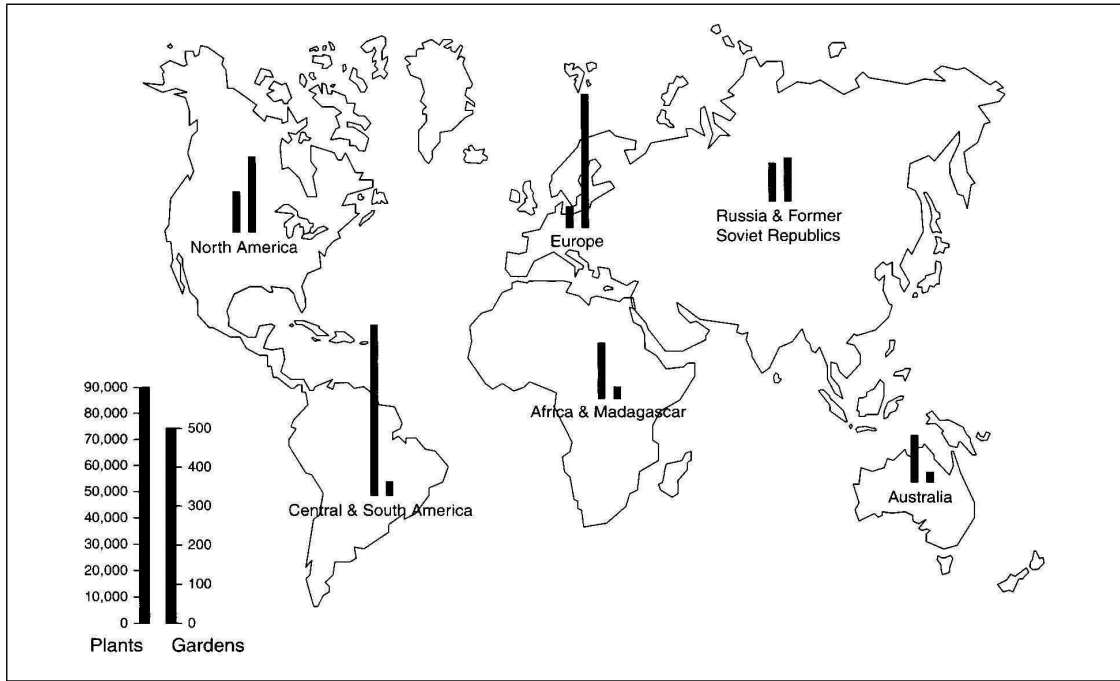


그림 2-14. 전 세계에서 식물들과 정원들의 분포(Rae, 1996)

(4) 적요: 공공정원의 기원 및 변천

앞서 16세기부터 20세기 이후까지 공공정원의 기원 및 변천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공공정원의 기원 및 변천

시기	공공정원
16-1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의 첫 번째 식물원이 1543년 이탈리아 피사(Pisa)에 설립됨 □1655년 스웨덴 읍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식물원 설립 □연구소재가 약용식물에서 모든 식물로 확대됨: 오스만 터키의 수선화와 히야신스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식물원에 도입됨
18-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학적 탐구는 스웨덴 읍살라 대학 교수인 린네(Linnaeus)에 의해서 식물계(plant kingdom)로 확대됨 □대학과 분리된 상업목적의 식물원들이 조성됨 □19세기부터 영국이 식물원 조성을 주도함 □식물의 상업적 응용연구에서 이국적 관상식물 연구까지 확대됨 □전 세계로부터 식물을 도입하고 육종함 □1841년 영국 큐 가든이 대중에게 개방됨 □1846년 리치몬드 철도의 개통으로 1851년 325천명, 1900년 1백만명으로 방문자 급증 □영국 및 식민지 식물원의 방문자 증가 □1850년 미국국립식물원 설립
20세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으로 148개 국가들에서 2,500개 이상의 식물원 및 수목원이 있음

2) 민간정원의 기원 및 변천

앞서 민간정원(Private garden)은 ‘민간정원(private garden)은 꽃, 채소, 허브, 과일 혹은 관상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정원의 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에는 에덴과 같은 낙원 또는 관념적 유토피아를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중세에는 왕과 귀족의 권위를 나타내고 사교와 예술적 유희를 위해서 조성되었고, 근대에는 신혼 산업자본가들이 왕과 귀족의 생활양식을 모방하고 그리고 부유한 노동계층은 다시 상류사회 및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여가, 건강, 사교 등을 위한 교양을 갖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대중적인 정원과 정원활동은 근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세기부터 영국 및 영국 식민지들에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정원활동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원 식물, 용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19세기부터 영국 및 영국 식민지들에서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원 및 정원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19-20세기 영국 코티지(cottage) 정원

a. 코티지(cottage) 정원의 기원

본래 코티지(cottage) 정원은 14세기 중엽 흑사병 이후에 출현하였으며, 지주(landlord)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소작인(tenant)이 식용을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소규모 주택인 코티지(cottage) 주변에서 식물을 재배하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14세기 코티지(cottage)에 거주하였던 소작농민들이 오늘날 영국의 장식적이고 양식화된(stylized) 영국 코티지 정원(English Cottage Garden)의 선구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기원은 ‘교외정원(suburban garden)’ 이었다고 본다(Hyams, 1970). 초기 정원은 먼저 자유인이고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 소유의 작은 주택을 소유한 사회계층이 출현한 도시 또는 도시에 가까운 마을에 있었다. 초기 정원들의 주변에는 또한 정원 식물,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였고, 그곳에 전원지역의 농민들은 허브와 채소를 공급하였다.

b. 19세기 전반 로우던(Loudon)⁷⁾의 가드네스크(Gardenesque)

7) Loudon은 작은 Lanarkshire 농부의 아들로 1773년에 출생하였다. 1803년 그가 20살이 될 때 Loudon은 영국으로 가서 조경 정원가(landscape gardener) 및 종묘가와 함께 일하였다. 1809년에 아마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Oxfordshire에 ‘Tew Park Farm’ 을 구입하여 그곳을 젊은 농부들을 위한 학교로 만들었

도시들에서는 새로운 정원양식의 소규모 교외정원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전원지역의 코티지(cottage) 정원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런던, 맨체스터, 브리스톨(Bristol) 등으로 새롭게 이주한 도시거주자들은 경제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였다. 반면에 전원지역의 코티지(cottage) 정원은 과거와 동일하게 생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었으며 세기가 지나면서 전원지역의 거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해졌다. 이 두 가지 정원들은 미(美)적 향유를 위한 장식정원과 경제적 필요를 위한 생산정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15는 생산정원과 장식정원의 일례를 보여 준다. 그림 2-15의 좌측 그림은 1797년에 작성된 팜플렛에 삽입된 태드캐스터(Tadcaster) 근처에 위치한 브리튼 아보트(Britton Abbot) 소유의 코티지(cottage) 전경인데, 당시 전원지역의 코티지(cottage)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소박한 코티지(cottage)에 속한 대부분의 정원은 과실과 채소 생산을 위해서 활용되었고 일부에서 양봉과 허브를 재배하였다(Scott-James, 1981). 그림 2-15의 우측 그림은 로우던(Loudon)의 가드네스크(Gardenesque) 정원양식을 나타내는 배틀스덴(Battlesden) 정원의 전경을 1814년에 회화로 나타낸 것이다. 가드네스크(gardenesque) 정원양식에 따라서 진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가지는 각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상수, 관목, 초화를 근접하여 식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식재하고 있다. 가드네스크(Gardenesque) 정원양식은 ‘상호 연결되지 않는 아름다움들의 혼돈’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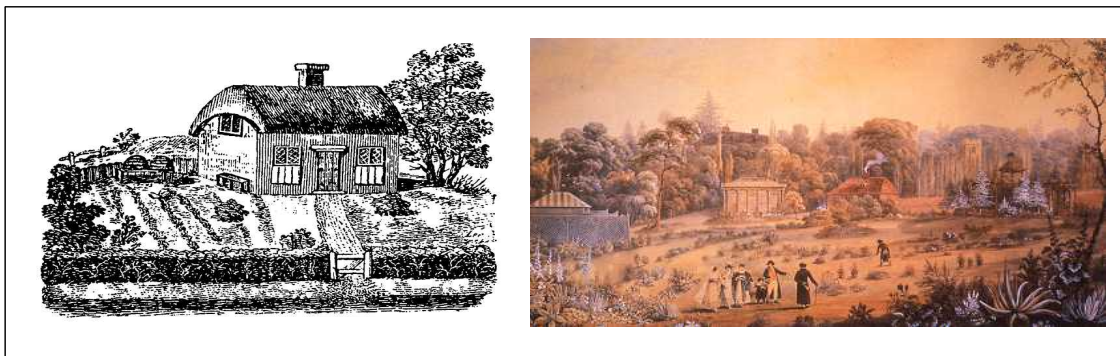


그림 2-15. 태드캐스터(Tadcaster) 근처의 브리튼 아보트(Britton Abbot)의 코티지 전경(좌측)과 가드네스크(Gardenesque) 정원양식의 배틀스덴(Battlesden) 정원(우측)

19세기 전반기에 새로운 종류의 소규모 민간정원들을 만들어내는 현장에는 3가

다. 이 도전은 상당히 금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은 1812년에 북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하였다. 영국에 돌아와서 성공한 원예 저널리스트가 되었고 1819년에 그는 다시 남유럽을 여행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Encyclopaedia of Gardening’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Loudon의 ‘Encyclopaedia of Gardening’ 은 1822년에 성공적으로 출판되었고 그는 다음에 ‘an Encyclopaedia of Agriculture’ 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새로운 ‘Encyclopaedia’ 는 1825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1826년에 ‘the Gardeners’ Magazine’ 을 창간하고 그리고 5년간 출판하였다. 1830년에는 ‘a Manual of Cottage Gardening’ 을 발간하였다.

지 동력이 있었다. 정원가 로우던(John Claudius Loudon), 새로운 원예 출판물, 원예 단체들이다. 사실상, 도시지역의 코티지(cottage) 정원이라고 부르는, 즉 말하자면 소규모 교외정원들의 빠른 증가에 대하여 로우던(Loudon)의 서적들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분명히 그것은 또한 전원지역의 코티지 거주자들(cottagers) 중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

c. 19C 후반 제킬(Gertrude Jekyll)의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영국식 코티지 정원(English Cottage Garden)은 정원을 사랑하는 지식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원풍의 정원양식들로 표현된 민간정원들(cottage gardens)로부터 기원한다. 19세기 후반 코티지(cottage) 정원들에서 식물들과 그것들을 조화롭게 조합하는 자연스런 배식방법과 같은 코티지(cottage) 정원의 아름다운 사례들을 유효하게 적용시킨 정원가가 바로 제킬(Gertrude Jekyll)이었다. 제킬(Gertrude Jekyll)은 사실상 ‘코티지(cottage)’라는 주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례들을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Massingham, 1966).

최근 사회적 관심은 도시공원(urban park)에서 다시 공공정원(public garden) 또는 민간정원(private garden)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런 변화 속에서 제킬(Gertrude Jekyll)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Wood, D. and M. Wrigley, 2006). Massingham(1966)의 연구에 의하면, 그녀는 폭넓은 독서와 문화를 가진 숙녀였다. 자연스럽게 음악뿐만 아니라 그래픽 예술교육을 받았으며 문학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옛 코티지(cottage) 조성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행하여 보는 실험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례로, 그림 2-16의 위쪽 그림에서 제킬(Gertrude Jekyll)이 고향인 Surrey에서 일부 숲을 구입하여 1896년에 자신이 직접 완성한 ‘먼스테드 우드(Munstead Wood)’라는 주택 전경을 볼 수 있다. 그 아래 도면은 그녀가 먼스테드 우드(Munstead Wood)를 조성하던 중에 머물렀던 오두막(hut) 주변의 ‘6월의 정원(June Garden)’ 배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6월의 정원(June Garden)의 초화 배식도는 코티지(cottage) 정원의 미(美)에 대한 그녀의 인식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킬(Gertrude Jekyll)의 정원미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책으로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고, 대저택의 정원들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고향인 Surrey의 코티지(cottage) 정원들에 대한 친밀함으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녀의 정원에 대한 관심은 로빈슨(William Robinson)에 의해서 매우 자극되었다. 비록 코티지(cottage) 정원에 대한 그의 영향은 단지 간접적이지만, 그의 코티지(cottage) 정원에 대한 인식은 제킬(Gertrude Jekyll)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결과적

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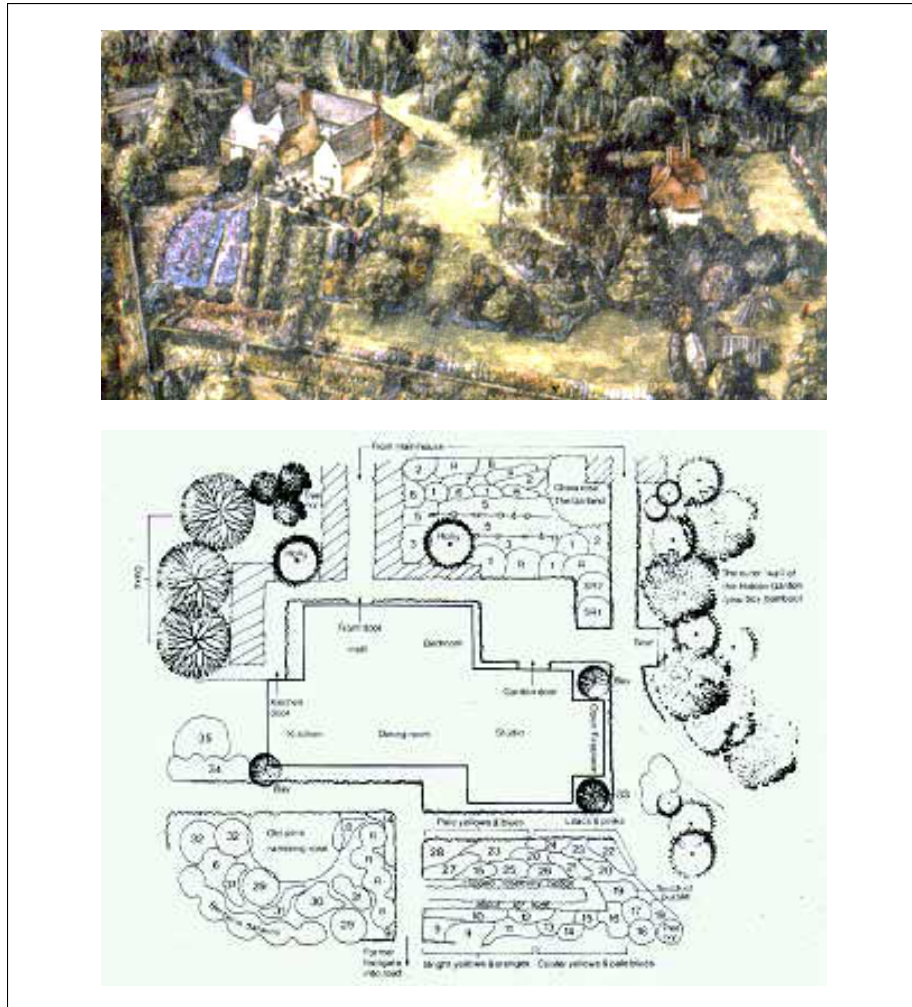


그림 2-16. 제킬(Gertrude Jekyll)의 먼스테드 우드(Munstead Wood) 전경 (위)과 6월의 정원(June Garden) 초본배식도(아래)

로빈슨(Robinson)은 성직자이며 준남작인 신부 Sir Henry Hunt Johnson-Walsh의 대규모 호화 정원에서 정원관리인으로 그의 직업 인생을 시작하였다. 그가 21살이 될 때, 그는 최고 책임정원가이며 그리고 값비싼 이국적인 식물들로 채워진 대규모 온실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에 그는 런던 리젠트 공원(Regent's Park)의 왕립식물협회정원(Royal Botanic Society's garden)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정원용 초본식물수집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 정원조성의 미래를 위하여 두 가지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는 야생화와 영국 전원지역에 대하여 상당한 사랑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런 경관을 양식화하여 모방하는 '야생정원(wild garden)'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Alland, 1982). 표본식물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원지역을 돌아다니는 여정 중에 로빈슨(Robinson)은 자연스럽게 상당히 많은 코티지(cottage) 정원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자연정원(natural garden)’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제킬(Gertrude Jekyll)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쳤다.

로빈슨(Robinson)은 정형적인 정원조성을 혐오하였다. 그는 팩스톤(Paxton)을 상징시키는 정원양식을 혐오하였다. 그는 그것을 ‘빵을 만드는 작업(pastry-work)’과 같은 정원양식, 즉 빵을 만들 듯이 인위적으로 꾸미는 정원양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직접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것은 1871년에 발간된 ‘정원(The Garden)’ 이었고, 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행되고 있다. 그것은 상류계층의 정원가들을 위한 잡지였고 원예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8년 후에 ‘정원활동(Gardening)’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다. 그것은 소규모 교외정원의 정원가들을 위한 것이었고, 여러 해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로빈슨(Robinson)은 제킬(Gertrude Jekyll)을 만났다. 그녀는 ‘정원(The Garden)’이라는 정원잡지를 위해서 집필을 시작하였고 이것은 부유층과 중간층의 정원 조성에서 코티지(cottage) 정원양식을 도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킬(Gertrude Jekyll)은 로빈슨(Robinson)의 자연적인 식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그녀가 로빈슨(Robinson)이 주장하는 자연의 축소판과 같은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의 형태에 대하여 집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술가로서 제킬(Gertrude Jekyll)은 어떤 규칙을 부여하는데 열중하였다. 꽃들의 색상과 형태는 결코 충돌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판단은 단순화, 선의 순수함 그리고 부피의 비례를 고려하는 장인적 측면에서 형성되었다. 제킬(Gertrude Jekyll)의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은 바로 정원이 예술임을 실현하고 있었다. 옛 코티지(cottage) 정원으로부터 제킬(Gertrude Jekyll)은 자연의 단순한 매력을 차용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는 정원양식을 만들었다. 암석원 조성을 포함하여 정원조성에서 ‘자연’의 단순함에 대한 계획된 표현은 마침내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의 자아의식을 만들었다.

(2) 19-20세기 호주 및 뉴질랜드 민간정원

a. 식민지 정착 초기

식민지 정착 후 조성된 초기 소규모 민간정원들은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 초기 정원들은 생존을 위한 정원이었고, 따라서 채소, 곡식, 과일이 재배

되었으며 몇 가지 약용식물들이 재배되었다. 야생동물, 도둑, 이탈한 소, 양과 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주민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가장 우선 요구되었다. 내부로 구획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밭으로 나뉘어졌다. 대부분 정원들의 전체적인 크기는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림 2-17에서 19세기 후반 식민지 정착민의 코티지(cottage) 정원을 볼 수 있다. 주변에는 이미 목재 울타리가 조성되었고 식량생산을 위한 식물들과 취미를 위한 초화들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통로는 울타리 출입구와 현관문을 직선으로 연결하며 그리고 집, 우물, 부속건물, 마구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한 구획과 직선의 접근로는 식민지 정착민들의 의식 깊은 곳에서 이들을 이끄는 문화적 관습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림 2-17. 19세기 후반 식민지 정착민의 주택 및 정원

b. 변화의 시기

식민지 정원들은 영국의 사회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생산방식, 생활양식, 부의 분배, 급격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선된 기술들에 의해서 식민지 정원가들은 새롭고 저렴한 많은 식물들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정원의 허드렛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수많은 편리한 고안품들이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830년 버딩(Budding)의 특허기술인 잔디깎기 기계였다(Wood and Wrigley, 2006).

새로운 양식의 정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서적과 잡지를 참고하였

다. 저렴하고, 대량으로 인쇄된 많은 사례들을 가진 자료들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들 전역에 배포되었다. 그것들은 새로운 식물들의 발견들, 새로운 장비, 비료들, 살충제, 정원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졌다. 로우던(Loudon)의 아이디어들이 가장 유명하였으며 널리 익혀졌다. 로우던(Loudon)의 모든 서적들은 영국 식민지에서도 읽혀졌다. 이들 정원서적들은 식물들이 정원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시켰고 그 역할과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식물자체가 연구와 전시를 위한 구성물임을 인식시켰다. 이들 정원서적들이 표방하는 주장들은 초화정원(flower garden)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반영하는 많은 지역신문들과 서적들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그림 2-18. 1844년에 그려진 호주 빅토리아의 식민지 감독관인 라 트로베(La Trobe)의 정원

그림 2-18은 1844년 호주 빅토리아 식민지의 감독관이었던 라 트로베(La Trobe)의 주택전경이다(Wood and Wrigley, 2006). 전체적으로 로우던(Loudon)의 가드네스크(gardenesque) 정원양식을 표현하고 있다. 초승달 모양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잔디를 제거한 후에 조성된 화단들, 표본식물처럼 분리되어 식재된 수목들과 관목들을 볼 수 있다. 19세기가 지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영국령의 전진 기지에서 점차 도시화된 국가들로 변화하면서 전원풍의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에서 초화정원(flower garden)으로 변화되었다.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로빈슨(William Robinson)의 *Alpine Flowers for English Gardens*(1870), *The Wild Garden*(1870), *The English Flower Garden*(1883)이었다. 이들과 동시대에 있는 작품들은 Mrs Rolf Bolderwood와 같은 지역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녀의 *The Flower Garden in Australia*와 *A Book for Ladies and Amateurs*(1893)는 권위는 다소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력 있는 작품들이었다(Nottle, 1992). 19세기 말엽까지 초화정원(flower garden)은 중산층에서 조성되었고 대도시와 마을의 도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c. 식물학적 탐험과 식물육종

19세기 영국 식민지에서 정원에 존재하는 풍부한 초화류의 증거는 그 시기의 종묘 목록집과 정원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묘목록집과 정원잡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중적인 가격으로 읽혀졌다(Nottle, 1992). 대부분의 간행물들은 일본, 중국, 티벳, 페루, 파타고니아 또는 시베리아부터 최신의 식물들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심지어 가정정원 애호가들도 식물수집에 참여하였고 원예신문들의 교신란은 수집가들이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바하마스, 알프스 또는 피레네로부터 식물들을 수집하여 도착하였다는 편지로 채워졌다. 종자, 구근, 괴경, 뿌리, 식물체들의 도입과 유통이 거대한 종묘원과 부유한 개인 수집가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도입된 식물들 중에서 강건하게 자라는 식물들이 신속하게 번식되어 널리 배포되었다. 유효한 식물종들의 빠른 증가에 동반된 것은 식물육종의 발달이었다. 당시 Seedsman's 목록집을 추적해보면, 가정 정원가들은 수백 가지 종과 품종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종묘상은 다양한 초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실수, 수목 등도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뉴질랜드 종묘상들의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몇몇 초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집을 만들어야 할 만큼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국화는 70종, 버베나(verbena)는 40종, 펜스테몬(penstemon)은 21종, 다알리아(dahlia)는 45종, 페라고니움(pelargonium)은 60종 이상, 카네이션(carnation)은 34종, 후크시아(fuchsia)는 35종, 그리고 장미는 149종에 이르렀고, 이들의 대부분은 영국의 전통적인 식물이었으며 뉴질랜드에서 널리 선호되고 이용되었다(Bradbury, 1995).

영국 식민지 정원가들은 이 거대한, 심지어 경이로운, 식물재료들 모두를 잘 활용하였으며,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식물들을 열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새로운 식물들의 꽃, 잎, 습성들에 대한 가치가 당시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되었으며, 원예출판물을 통하여 다양한 정원에서의 이용 가능성이 소개되었다. 비록 당시에 너무 지나친 토피어리 형태와 과도한 이색적인 화단구성이 공공정원들과 부유층의 대저택에서 행해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시 정원가들이 식물들로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는 정원과 식물들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 그 시기의 서적, 잡지, 목록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19세기 가정원에 및 소주택 정원에 대한 태도는 식물수집가들과 육종가들에 의해서 열려진 ‘꽃’이라는 보물상자의 활용에 대한 그들의 열정, 실험정신, 향유를 볼 수 있다.

d. 잔디밭의 출현

정원에서 잔디밭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단지 매우 웅대한 건축물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잔디밭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 외의 건축물들은 매우 거칠게 잘라진 자생의 초지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초지밭은 건조기에는 갈색으로 변화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선호할만한 채소, 유실수, 진귀한 초화를 정원에 식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엽부터 마을과 도시들이 대규모화되면서 그리고 망사의 관수시설들이 세워지면서 잔디밭은 더욱 일반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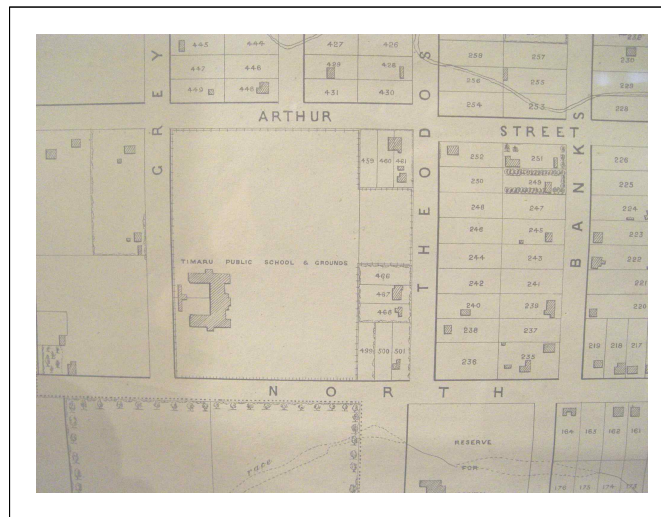


그림 2-19. 뉴질랜드 티마루 시 박물관에 소장된 1875년 티마루 도시계획도의 일부분

그림 2-19는 1875년도에 작성된 뉴질랜드 캔터베리 지역의 티마루(Timaru) 도시 계획도인데, 격자형 가로망과 직각으로 규격화된 주택부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잔디밭은 정원 내 존재하였던 여러 가지 공간들을 점령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원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잔디깎기 기계의 성능이 더욱 개선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정원의 형태는 잔디깎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단순화되었다. 정원 설계를 단순화시킨 또 다른 관리적 측면은 경계를 벗어나는 잔디의 왕성한 생육이었다. 대부분의 잔디들은 왕성하게 자랐고 정원에서 행해지는 재래식 테두리 정리는 별 효과가 없었다. 더욱 강력한 방법들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단단한 긴 철판으로 잔디밭의 테두리를 두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손도끼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더 저렴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예리한 삽으로 잔디 주변에 깊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렬한 손도끼 작업이 테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e. 민간정원의 시간적 변화

그림 2-20은 본드(Charles Frederick Bond)가 1892년에 뉴질랜드 와이카토(Waikato) 지역의 정원들을 관찰한 후 초화, 채소, 과수가 심겨진 이상적인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의 설계를 제안한 것이다(Bond, 1892). 이 디자인은 단순화된 직선과 세심한 공간분할을 나타내고 있으며, 코티지(Cottage) 전면에는 소규모의 화단이 그리고 측면에는 빨래 건조나 놀이를 위한 잔디밭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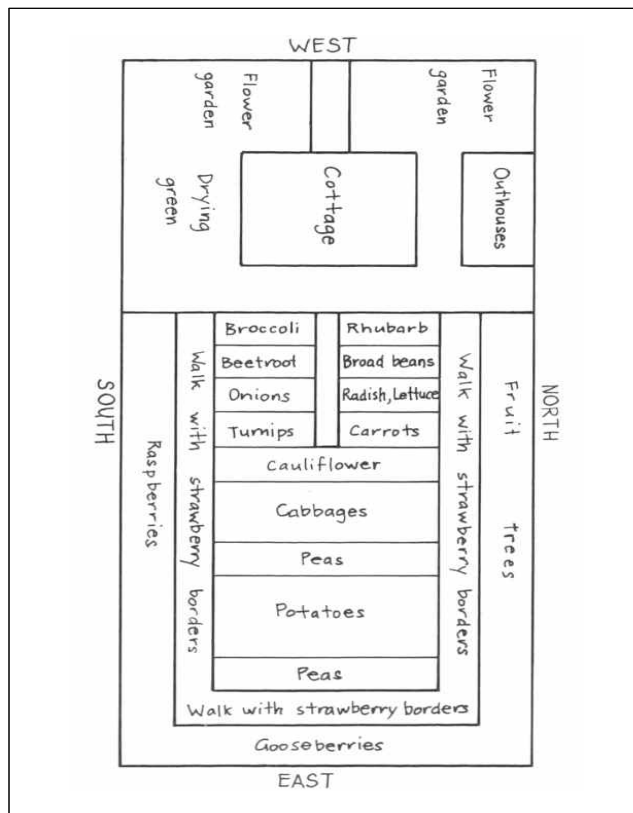


그림 2-20. 뉴질랜드 와이카토 지역에서 본드에 의해서 설계된 코티지 정원(Bond, 1892)

1919년 뉴질랜드 초화정원 만들기(Flower Gardening in New Zealand)라는 서적에 실린 정원디자인은 당시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정원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21). 초화, 채소, 과수는 코티지(cottage) 주변에서 더 이상 양립하지 않고 별개의 단위로 분할 식재되었고 다년생 초본의 혼합식재는 일년초의 열식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주택 전면에 반원형의 자동차 통로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부유층의 대저택에서 나타나던 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Young and Hay,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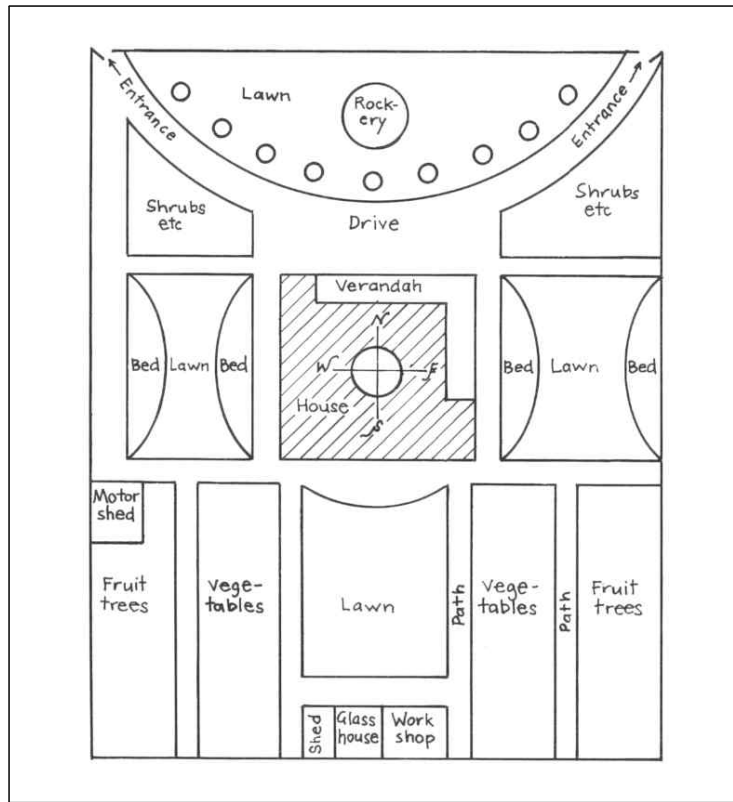


그림 2-21. 뉴질랜드 초화정원 만들기에 게재된 당시의 전형적인 코티지 정원설계(Young and Hay, 1919)

정원양식의 변화와 다양화 속에 소규모 정원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양식이 뉴질랜드에 나타났다. 도시의 빠른 성장 및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교외지역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뉴질랜드 정원양식이 형성되었다. 교통의 발달은 도심 밖의 거주를 가능하게 하였고 교외지역은 중산층의 유토피아(utopia)가 되었다. 교외정원(suburban garden)은 초본식물 경계, 정형적인 장미정원, 신화에 나오는 짐승의 동상, 전정된 생물타리, 테라스 등과 같이 대규모 정원이 가진 특징들을 포함하였지만 소형화된 형태를 취하였다. Murphy는 소형화된 정원에 적합한 식재방법을 소개하였는데 1/4 또는 1/8 에이커 구획의 교외 정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dwarf conifer, rhododendron, small magnolia 등과 같은 성장이 느린 관목을 권장하였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외래 수종보다는 재배가 용이하고 환경에 적합한 100종의 자생 수종을 추천하였다(Barnett, 1993). Tannock은 교외 정원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잔디밭을 조성할 것과 장미의 독립식재를 추천하였고, 정착기의 생산적인 코티지(cottage) 정원이 쇠퇴하고 소규모의 장식적인 교외정원 양식이 새롭게 출현하였음을 알렸으며 정원가들이 동참하도록 재촉하였다(Tannock, 1916).

1920년대 교외에서 발생한 오늘날의 별장과 같은 형태의 방갈로(bungalow)는 많

은 도시 생활자들의 생활표준이 되었고 개인정원을 직접 조성·관리하는 정원활동은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교외 방갈로는 작은 규모의 정원을 필요로 하였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재정적인 이유나 취향 때문에 정원을 직접 설계하였다. 정원 관련 정기 간행물들은 정원을 직접 설계하는 독자들에게 정원 설계, 색상과 식물의 조합, 통행로, 경계, 잔디밭 조성 등의 기술을 제시하였다(Bradbury, 1995). 이러한 사례들에서 정원의 주요통로들은 가능한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낮은 장식용 담장들은 암석과 잡석들로, 높은 담장은 가벼운 철재 레일과 패널로 조성하며 생울타리는 높이가 1m를 넘지 않도록 제안되었다.

한편 도시 미화 및 지역 계획과 관련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이 시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미국 도시미화운동(American City Beautiful movement)을 모델로 하는 의제(agenda)로 ‘아름다운 가정에 아름다운 생각들(Beautiful Thoughts in a Beautiful Home)’, ‘정원, 문명의 절정(Gardens, the Climax of Civilization)’ 과 같은 언론 기사들을 통하여 정원활동을 지지하였으며 정원을 높은 담장 뒤에 숨기는 대신 도로 쪽에서 보이게 설계하도록 주택 소유자들에게 권유하였다(Bradbury, 1995).

194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정원은 중요한 가족 활동의 대상이었고 주택 전면에는 초화정원 그리고 후면에는 채소원과 실용적 공간들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정원활동은 여가활동이라기보다는 노동으로 인식되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정원의 생산적 기능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보편적이었지만 쇠퇴하고 있었으므로 (Leach, 1984) 대규모 채소정원들은 샐러드용 채소와 허브를 위한 소규모의 채소정원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2-22. 1958년 12월에 뉴질랜드 Home and Building이란 잡지의 표지에 게재된 캘리포니아 스타일 정원 (Home and Building, December, 1958)

‘주택과 정원은 가족의 여가를 위해서 조성되며 정원은 여가시간 중에 노동을 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의식을 표방하는 캘리포니아 양식(Californian style)을 비롯한 미국 정원양식들은 각종 출판물들을 통하여 뉴질랜드 정원양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Strewe, 1958). 일례로, 정기 간행물 ‘Home and Building’ 의 1958년 12월 표지는 차양이 드리워진 테라스, 다양한 모양의 의자, 이동식 바비큐 시설, 미국의 Coca-cola처럼 보이는 음료수가 놓여있는 테이블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그림 2-22),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소위 ‘생활양식(lifestyle)’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미지들이었다.

1970년대에 파머스(Stanley J. Palmers)가 제안하였던 정원디자인은 이와 같은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Palmers, 1974). 이 디자인을 살펴보면 후정(backyard)의 용도가 바비큐, 파티오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후정에 개방적인 기능이 추가되면서 전정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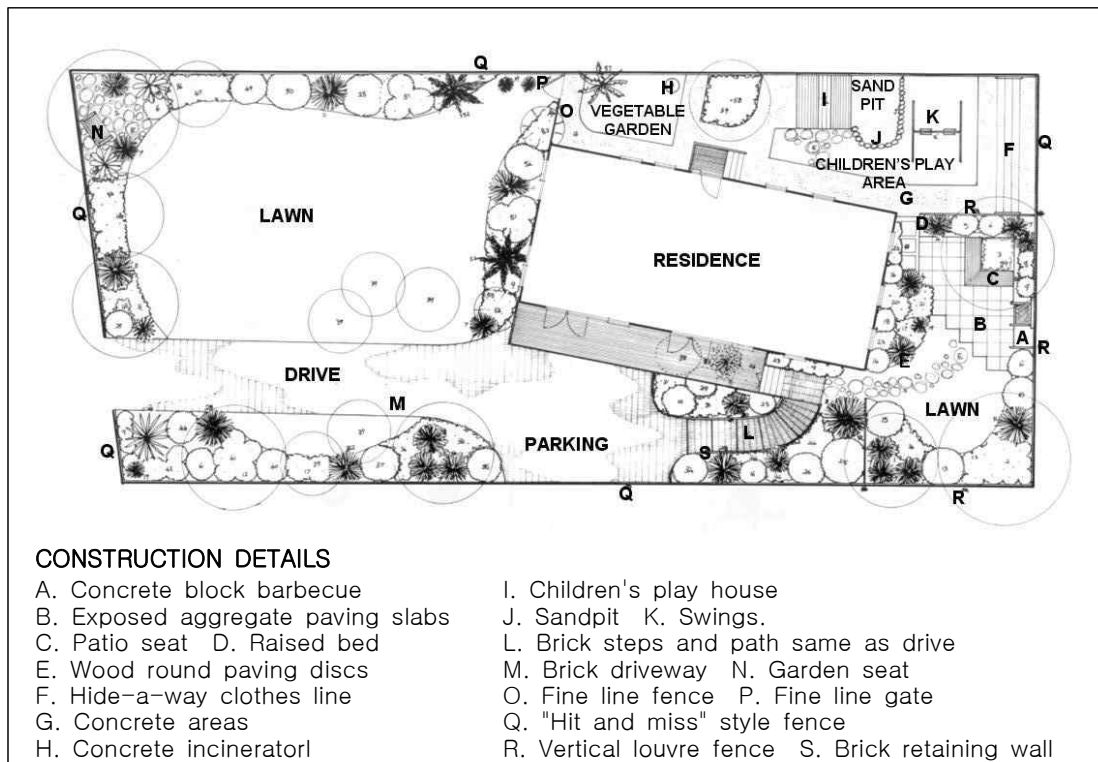


그림 2-23. 파머스가 제안한 1970년대 정원디자인(Palmers, 1974)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텔레비전, 비주얼 아트, 영화, 건축물을 통하여 형상화되는 새로운 문화는 정원양식에도 나타났다. 또한 택지면적 축소, 주택밀도 증가, 교외지역의 택지개발과 같은 토지이용 변화는 새로운 양식의 정원을 유도하였다.

비교적 큰 부지에서 정원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소위 ‘pocket handkerchief backyard’ 라고 불리는 소형화된 정원과 직면하게 되었고 주택전면에 정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나타났다(Barnett, 1993). 이것은 과거 정원양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된 형식이었고, 1970년대 이후 뉴질랜드 정원의 전통적 특성들은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꾸준히 대체되었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뉴질랜드 정원을 대표할 정원양식은 불명확하게 되었고 많은 정원양식들이 혼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본질적인 특징인 다원주의에 의한 결과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은 역사주의, 절충주의, 종교주의와 같은 다양한 관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전문화된 정원산업은 정원가들에게 뉴질랜드 정원디자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뉴질랜드 정원은 더욱 강한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다. 1988년에 출판된 ‘A History of New Zealand’의 마지막장 ‘The Search for a National Identity’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인들은 미국과 호주처럼 신세계이며 태평양 문화권에 있음을 자각하였고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Sinclair, 1988). 태평양 문화권은 뉴질랜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원가들은 원주민인 마오리(Maori)의 문화적 특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환경보호운동은 국제적 관심이 되었는데 환경보호주의(environmentalism)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어졌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 유행하였던 자갈정원(pebble garden)이 1970년대에는 자연정원(natural garden)으로 대체되었다. 붉은색과 흰색의 화산재 토양을 식재층 위에 깔아주는 자갈정원(pebble garden)은 식물을 물체로 간주하며 생태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현대적 가드네스크(gardenesque) 양식이라고 인식되었던 반면, 자연정원(natural garden)은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생식물의 이용을 특징으로 하는 정원양식이었다(Bradbury, 1995).

자생정원(native garden) 조성은 1970년대에 활성화되어 어느 때보다 많은 자생식물들이 생산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더욱 선호되었다. 1980년대를 통하여 녹색운동은 뉴질랜드 정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속성(sustainability)은 1990년대의 표어가 되었다.

풍요와 물질주의(materialism)는 대규모 정원 시대를 열었다. 여기서 ‘대규모’란 정원의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규모를 의미하였다. 오래된 수목은 새로운 수목으로 교체되고 관수시설, 자동문, 보안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며 정원은 종래의 전통 양식을 벗어나 독창적인 개성 표현의 절정을 이루었다. Harry Turbott, Andrew Geddes, Brian Halstead와 같은 조경가들은 1970년대를 지나오며 뉴질랜드 정원양식

에 영향을 미쳐왔던 여러 가지 정원양식들의 융합을 시도하였다(Bradbury and Woodside, 2005).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정원은 독립, 평등, 개인주의를 반영하였다. 초기 교외정원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계되어 평등과 사회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1980년대 초기 정원들은 거리를 등지고 개인적 생활공간인 주택을 향하게 되었다(그림 2-24).

이 시기에 뉴질랜드 정원산업은 놀랍게 성장하였는데 인스턴트 정원상품들이 붐을 이루었고 슈퍼마켓이 종묘상을 대체하게 되었다. 편리함과 신속성을 제공하였던 정원용품들의 가격은 매우 높았으므로 주택에서 정원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후정(Backyard)은 정원산업에서 상업적 이익의 핵심이 되었고 주택의 가치 향상 측면에서 정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원예가, 종묘상, 정원가, 정원용품매장(garden center), 옥외용 가구업체, 수영장 시공업체, 잔디 및 정원 관리업체는 후정 조성에 집중하였고, 정원용품 매장이 성장을 이루어 ‘Palmers Garden World’ 라는 정원용품 업체는 1993년 북섬에 30개 이상의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Bradbury, 1995). 식물은 생산품이 되었고 정원가들은 소비자가 되었으며, 소매상들은 정원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원활동 교육과 유행 선도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림 2-24. 1980년대 뉴질랜드 도시지역의 독립적이고 개인화된 민간정원: 1980년대 초기부터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적 정원들은 도시거리를 외면하고 가족과 자신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하였음

자아의식과 정체성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원가들은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정원양식을 소개하는 미디어에 의해 유도된 공동체들과 연결고리를 가졌다

(Eagleton, 1985). 1990년대에 ‘물질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욱 정신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사회 공동체들과 함께 정원가들은 자연과 물질주의(materialism) 문화를 융합하였다. 종다양성의 원리, 지속가능한 토지 시스템의 논리, 국가적 미에 대한 요구,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 외국 정원양식들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인하여 정원에서 풍부한 문화적 가치들의 표현이 논의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정원에서는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것들에 대한 절충 또는 재생이 시도되었고 지중해 스타일, 일본 스타일, 캘리포니아 스타일, 자연정원, 아열대 아시아 태평양 정원과 같은 정원양식들이 조각조각 연결된 형태로 뉴질랜드 정원에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에 옮겨진 영국식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은 근원지인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뉴질랜드만의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을 형성하였다.

(3) 적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민간정원의 기원과 변천

앞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민간정원의 기원 및 변천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민간정원의 기원 및 변천

시기	민간정원
19세기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원지역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인접한 소규모 코티지 정원들(cottage gardens)이 존재함 □19세기 전반에 장식적인 교외정원이 출현함 □19세기 전반에 로우던(Loudon)의 ‘가드네스크(gardenesque)’라는 정원양식이 출현하고, 원예 출판물이 흥행하며, 원예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함 □영국의 정원양식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원양식에 기원이 됨
19세기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기 후반 제킬(Jekyll)의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이라는 정원양식이 출현함 □‘코티지 정원(cottage garden)’은 ‘초화정원(flower garden)’ 정원양식으로 발전함 □호주, 뉴질랜드에서 영국 정원서적이 유행하였고 현지 정원가들의 정원서적도 출판되고 흥행함 □식물학적 탐험과 식물육종이 왕성하였음 □민간정원에서 잔디밭이 유행함
20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정원의 생산적 기능은 점차 축소되었음 □1950년대부터 후정은 테라스, 바비큐 등으로 채워진 유희적 공간이 됨 □1970년대 이후 택지면적이 축소하며 정원의 규모도 축소됨; 조경산업이 전문화됨; 풍요와 물질주의로 많은 예산을 정원, 특히 후정에 투입함 □다양한 정원양식들의 절충이 시도됨 □1993년에 ‘Palmer's Garden World’라는 정원용품 업체는 뉴질랜드 북섬에 30개 이상의 새로운 매장을 개장하였음

3) 주요국가의 정원 조성현황: 영국, 호주, 뉴질랜드

(1) 영국

Garrod et al.(1993)은 영국에는 40개의 식물원들이 있다고 하였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와 ‘헬리간의 잃어버린 정원(Lost Gardens of Heligan)’과 같은 정원들을 포함하여 57개를 식물원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스코틀랜드에 10개, 웨일즈에 3개, 북아일랜드에 1개의 식물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Gardenvisit.com(2015)은 789개의 공공정원들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표 2-11).

표 2-11. 영국의 공공정원 분포

명칭	개소	명칭	개소	명칭	개소
Bedfordshire	8	Greater Manchester	2	Oxfordshire	18
Berkshire	7	Hampshire	19	• Rutland	2
Buckinghamshire	12	Herefordshire	15	• Shropshire	10
Cambridgeshire	8	Hertfordshire	18	• Somerset	35
Cheshire	20	Isle of Wight	7	• South Yorkshire	4
Cornwall	38	Kent	39	• Staffordshire	8
Cumbria	17	Lancashire	14	• Suffolk	15
Derbyshire	13	Leicestershire	4	• Surrey	31
Devon	26	Lincolnshire	10	• Tyne and Wear	3
Dorset	24	Merseyside	5	• Warwickshire	14
Durham	7	Middlesex	4	• West Midlands	6
East Sussex	15	Norfolk	25	• West Sussex	22
East Yorkshire	5	North Yorkshire	23	• West Yorkshire	10
Essex	12	Northamptonshire	19	• Wiltshire	17
Gloucestershire	26	Northumberland	15	• Worcestershire	9
Greater London	122	Nottinghamshire	6		
합계			789		

출처: www.gardenvisit.com, 2015

영국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2개의 가장 큰 기관들은 100개의 정원을 가진 National Trust와 특별히 역사유물로서 단지 35개의 정원들 분류하고 있는 English Heritage 이지만, 그러나 1983년에 설립된 ‘English Heritage Register of Historic Parks and Gardens of Special Historic Interest in England’는 최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원들과 함께 1,600개 이상의 장소를 분류하고 있다. 모든 정원들을 대중에 개방하지는 않으며, 많은 정원들은 National Trust에 의해서 운영된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영국에는 적은 수의 식물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전 세계에서 대중에게 개방하는 가장 많은 수의 민간정원들을 가지고 있다. Liovska(2013)는 영국에서 5,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하였다. Thompson et al.(2003)은 민간정원들이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 보다 영국에서 대지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지역의 도시공원(urban park) 또는 더 최근에는 정원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원센터(garden center)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Taylor, 2008) 정원들은 높은 수준부터 낮은 수준까지의 관리로 전환되었고, 노동집약적인 계절별 화단조성체계와 매우 정성들여 짧게 깎은 불링그린 잔디밭들에서 ‘자연주의형’ 다년생 경계식재까지로 전환되었다(Hunningher, 2001). 오늘날 영국은 개인 소유의 정원을 가진 일반적이지 않은 높은 수준의 주택들을 가지고 있다. MINTEL(2003)의 연구에 따르면, 20,200,000개의 정원들이 있고 그리고 전원지역의 대부분 모든 중년층(49%)은 정기적으로 정원활동에 참여한다. Bhatti and Church(2004)는 정원활동은 연령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세하게 여가의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60-69세는 61%가 매월 기준으로 정원활동을 하는 반면에 20-24세는 단지 20%가 매월 기준으로 정원활동을 한다고 하였다(Bhatti & Church, 2000).

소규모 민간정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며, 단지 정원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쾌한 하루를 보내려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매력적이다. 정원활동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욕구의 중요성처럼 민간정원을 개방하고 있는 전원지역들에서 지역 공동체 의식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다.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걸친 National Gardens Scheme(NGS)은 대부분 소규모 민간정원들 3,700개 이상을 개방하고 750,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을 받아들인다(NGS, 2012). British Red Cross와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e도 유사한 체계를 가진다(Fox & Edwards, 2008). 더욱이 지역적으로 많은 개별 마을들은 일반적으로 기부를 위하여 NGS 접근방식과 조화를 이루며 정원개방체계를 가진다.

(2) 호주

호주의 정원들은 이민자들, 특히 영국 이민자들의 기원과 양식에 기인한다. 그러나 규모와 위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륙의 광대함은 자생종들과 도입종들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창조하고 있다. 2007년에 호주 국립식물원들은 호주에 있는 169개의 정원들과 수목원들을 목록에 올려놓았다. 그것들은 태평양에 있는 Norfolk Island 뿐만 아니라 모든 7개 주들(stat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org)는 Wilson et al.(2006)의 자료를 보완하여 2015년에 133개의 정원들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표 2-12)..

표 2-12. 호주의 공공정원 분포

명칭	개소	명칭	개소	명칭	개소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3	Queensland	33	Victoria	27
New South Wales	37	South Australia	13	Western Australia	10
Northern Territory	3	Tasmania	5	External Territory	2
합계			133		

출처: en.wikipedia.org, 2015

국립 식물원은 호주의 수도인 켄버라에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방문객을 가지는 정원들은 시드니에 있는 Royal Botanic Gardens and Domain(3개의 지리학적으로 분리된 정원들로 구성됨)과 멜버른에 있는 Royal Botanic Gardens이며, 각각 매년 38백만 명과 1.6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인한다. 켄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식물원은 508,895명의 방문객을 받는다.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들은 한 개의 식물원을 가지며,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정원 네트워크 모두에 대하여 독특한 점은 대도시들에 있는 대부분의 정원들은 정부의 소유이며 그리고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 두 나라의 정원들은 정원관광에서 최대의 방문객 수를 나타낸다.

호주에서 식물원은 환경의 보존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식물원은 보존에 대한 공동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보존에 대한 태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대중들의 보존에 대한 노력들을 지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Ballantyne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정원 방문자들은 보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흥미를 가지고, 덜 전념하며, 배우는데 덜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원방문 동기들은 식물들에 대한 아름다움과 희귀성에 대한 감상,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사용된 정원 디자인 그리고 조경 기술들에 대한 흥미, 정원들의 경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감탄, 야외 활동의 즐거움을 포함한다(Connell & Meyer, 2004). 또한 정원 공간들의 평화로움 및 평온함, 정서 및 회복 등의 유익함이 사람들을 공공정원들로 유인하는 특징들로서 설명되어진다(Bennett & Swasey, 1996; Council Heads of the Australian Botanic Gardens, 2005; Darwin-Edwards, 2000). 정원들을 방문하는 또 다른 이유들은 레크레이션, 놀이, 사회적 상호작용(Bennett & Swasey, 1996; Darwin-Edwards, 2000); 영감을 얻으려는 욕구(Bennett & Swasey, 1996); 휴식과 독서의 기회를 포함한다(Bennett & Swasey, 1996; Crilley & Price, 2005). 여가를 목적으로 정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가,

라이프스타일(lifestyle)과 정원활동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증가하는 인기, 현대 미디어에서 환경적 이슈들의 증가하는 신문보도는 또한 정원방문에 대한 증가하는 인기와 연계되어있다(Connell, 2004; Connell, 2005).

식물원은 그들의 지역 내에서 찾아오는 정규적인 방문자들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국내와 외국 관광객을 유인한다. 식물원은 그 자체로 유명한 관광 어트랙션들로 받아들여지며, 지역 내에 관광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일종의 지속가능한 형태를 제공한다(Sharpley, 2007). 퀸즐랜드 주(Queensland state)의 브리스베인(Brisbane)에 있는 Mt. Coot-tha Botanic Gardens에서 150명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적 인식, 흥미 그리고 방문동기에 대한 연구결과 중에서 방문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퀸즐랜드 주(Queensland state) 내에서 다른 도시로부터 온 방문자들은 10%, 다른 주들(interstates)로부터 온 방문자들은 8%, 해외로부터 온 방문자들은 9%였다(표 2-13). 73%를 차지한 브리스베인(Brisbane) 거주자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정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그 중에 2/3는 4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1/2 이상은 10회 이상 방문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61%) 또는 연인(21%)이며, 가족 그룹은 일반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아이들을 포함하였다(각각 48%과 29%). 단지 150명의 참여자 중에 3명만이 혼자 방문하였다. 일반적인 연령 그룹은 30-39살이었고(32%), 그 다음으로 40-49살이 뒤를 이었다(25%). 식물원이 주로 노인들을 유인한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과는 달리, 60세 이상의 방문자들은 표본 중의 단지 13%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장 높은 방문이 25-35세의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35-44세의 연령층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적인 흐름들과 비슷하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표 2-13. 호주 퀸즐랜드 브리스베인에 위치한 Mt. Coot-tha Botanic Gardens의 방문자 분석

거주지	첫 번째 방문자 (방문경험이 전혀 없음)	방문빈도가 낮은 방문자 (예전 1-3회 방문함)	방문빈도가 높은 방문자 (예전 4회 이상 방문함)	합계
지역 내	15명 (14%)	21명 (20%)	68명 (66%)	104
타 지역	24명 (60%)	8명 (20%)	8명 (20%)	40
합계	39명	29	76명	144

출처: Ballantyne et al.(2008)

멜버른(Melbourne)과 빅토리아(Victoria)에는 많은 훌륭한 민간정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민간정원들은 1987년에 호주 빅토리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인 Open Gardens Australia(OGA)에 의해서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그러나 정원방문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OGA는 재정문제로 2015년 6월에 운영이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영리목적의 ‘My Open Garden’ 뿐만 아니라 주(state) 단위의 ‘Open Gardens SA’, ‘Open Gardens Victoria’ 등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OGA에 의해서 매년 대략 650개소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개방되었고 275,000명의 방문자들을 유인하였다. 지난 30년간, OGA는 거의 20,000개소의 정원을 대중에게 개방하였고, 입장료로 6백만 호주달러(50.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민간정원의 입장료는 보통 성인 1명 당 5 호주달러(4,200원)이며, 입장료 수익의 35%는 정원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지정한 자선단체에게 지급되었고, 65%는 OGA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되었다. OGA 운영기금의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시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2006년 말까지 조성된 공동체정원(community garden) 프로젝트 기금은 8십만 호주달러(6억7천만 원)였고, OGA가 민간정원을 개방한 이후로 정원소유자들이 지원한 자선기금은 3.5백만 호주달러(29.6억 원)였다.

(3) 뉴질랜드

Benfield(2013)는 뉴질랜드에는 12개의 식물원이 있다고 하였다: Auckland Botanic Gardens; Bason Botanic Gardens, Whanganui; Botanical Gardens, Napier; Christchurch Botanic Gardens; Dunedin Botanic Gardens; Hamilton Gardens; Gisborne Botanical Gardens; Oamaru Botanic Gardens, Oamaru; Otari-Wilton’s Bush, Wellington; Queenstown Gardens; Timaru Botanic Gardens, Timaru; Wellington Botanic Gardens.

표 2-14. 뉴질랜드의 공공정원 분포

명칭	개소	명칭	개소	명칭	개소
North Island					
Northland	10	Hawke’s Bay	2	Christchurch-Canterbury	14
Auckland	19	Taranaki	18	Waitaki	2
The Coromandel	1	Manwatu	2	Lake Wanaka	1
Hamilton-Waikato	5	Whanganui	2	Fiordland	0
Bay of Plenty	2	Wairarapa	2	Central Otago	1
Eastland	1	Wellington	5	Queenstown	2
Rotorua	2	South Island		Southland	4
Lake Taupo	4	Nelson	4	Denedin-Coastal Otago	8
Ruapehu	0	Marlborough	3	Stewart Island-Rakiura	0
		West Coast	0		
합계			114		

출처: www.gardens.org.nz, 2015

한편으로 New Zealand Gardens Trust(NZGT)는 표 2-14와 같이 114개의 정원들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New Zealand Gardens Trust, 2015). 또한 뉴질랜드 공식 관광 대행기관인 Destination New Zealand는 61개의 민간정원들을 목록화하고 있다. 이 정원들의 대부분은 동쪽 해안선, 크라이스트처치의 북쪽, 오클랜드 시내와 주변 지역에 있다. 호주와 매우 유사하게 뉴질랜드 정원들은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들은 한 개의 식물원을 가지며, 대도시들에 있는 대부분의 정원들은 정부의 소유이고,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뉴질랜드 정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많은 정원들이 더니든, 크라이스트처치, 웰링턴 등에서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주요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장소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거주자들에 의해서 매우 왕성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진입부를 가지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Christchurch Botanic Gardens)은 400,000명의 도시인구 중에서 300,000명과 250,000명의 국제 관광객들 - 매년 대략 550,000명의 방문자들을 포함하여 1년에 약 1.2백만 명의 방문자들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림 2-25에서 도시이미지 브랜딩(branding)을 ‘정원의 도시(garden city)’ 라고 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Christchurch City Council, 2015). 마찬가지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웰링턴 식물원은 매년 1.2백만 명의 방문자들을 받는다. 정원은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반면에 웰링턴 내의 다른 지자체 소유의 정원들에는 50십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을 받아들인다.



그림 2-25.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도시 이미지 브랜딩(branding)을 정원의 도시라고 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음
(www.christchurch.org.nz/about/gardencity.aspx)

인구 335,800명인 지역에 위치하는 해밀턴 정원(Hamilton Botanic Gardens)은 전 세계의 더 커다란 정원들과 동등하게 매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700,000명

이상이다. 시 외곽에 위치하여 주요한 고속도로의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목적지로 서의 정원(destination garden)으로 인식되며 관광객들이 잠시 방문하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 2004-2005년에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Consultants Ltd가 수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1.3백만 명이 방문하며, 그 가운데 50%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정원 방문자들의 50%는 지역민이고 25%는 외국인,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중국, 한국, 말레시아, 일본, 그리고 인도)이었다. 또 다른 전문 회사인 Horwath HTL Asia Pacific과 Waikato 대학은 2005년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별개의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만약 1.3백만 명의 방문객수가 정확하다면 해밀턴 정원(Hamilton Botanic Gardens)이 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대략 23백만 뉴질랜드달러(173.5억 원)이 된다고 하였다.

북섬 와이카도(Waikato) 지역과 남섬의 캔터베리(Canterbury) 지역에는 몇몇 훌륭한 민간정원들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기금마련을 위해서 민간정원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다.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정원 소유자들의 단체인 New Zealand Gardens Trust와 캔터베리 원예협회(Canterbury Horticultural Society) 등과 같은 지역 원예단체들에게 의해서 민간정원들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있다.

4) 적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 조성현황

앞서 언급된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공공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현황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 조성현황

구분	특징	
	공공정원	민간정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은 789개소임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 및 역사유적은 National Trust, English Heritage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은 20,200,000개소가 있음(MINTEL, 2003) <input type="checkbox"/> 5,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됨 <input type="checkbox"/> 공개되는 민간정원들은 National Gardens Scheme(NGS), British Red Cross,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e 등의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은 133개소임 <input type="checkbox"/> Royal Botanic Gardens 등과 같은 주요 정원들은 대부분 주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20,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2015년까지 비영리 단체인 Open Gardens Australia(OGA)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최근에는 주(state) 단위의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운영됨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원은 114개소임 □주요 정원들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며, 대부분은 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왕성하지 않음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New Zealand Gardens Trust와 캔터베리 원예협회(Canterbury Horticultural Society) 등과 같은 지역 원예단체에 의해서 운영됨
---	--

5) 우리나라의 정원 조성현황

앞서 유럽 및 영연방 국가들에서 공공정원 및 민간정원의 기원 및 변천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서 주요국가로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정원 조성현황을 분석하였다. 이것에 근거하여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원 조성현황을 20세기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정원 조성배경

우리나라 정원 조성배경을 ‘정체성 및 전통’ 과 ‘서구화 및 현대화’ 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식화하면 그림 2-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과거로부터 중국과 일본의 정원문화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근대정원에 영향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일찍이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여 영국 등 유럽의 영향에 의해서 근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미국의 도시공원(urban park), 교외주택정원(suburban garden),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등과 같은 북미 현대조경 및 정원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당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과 국제화 수준이 높았던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정원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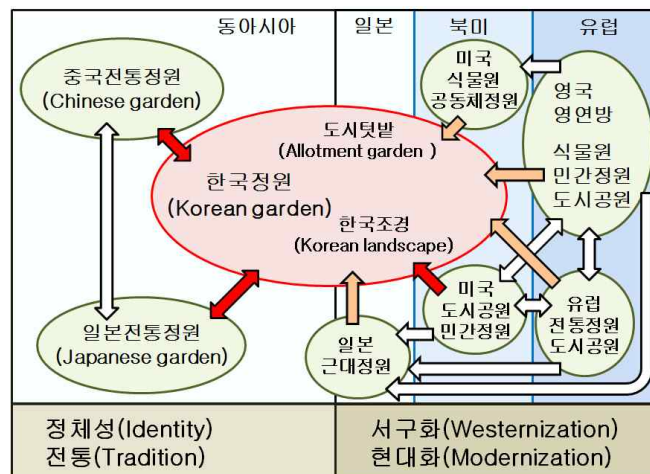


그림 2-26. 우리나라 정원의 조성배경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20세기 말까지는 일본의 정원을 지양하였고, 직접적으로 미국의 도시공원(urban park), 교외주택정원(suburban garden),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등과 같은 북미 현대조경 및 정원문화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정원을 기원으로 하고 있었으며, 독특하게 신대륙이라는 황무지 속에서 광역적 지역개발 또는 도시계획으로서 조경을 발전시켰고, 뉴욕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와 같은 도시공원을 조성하였다. 여기서 간략하게 미국의 조경 및 공공정원 조성배경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표 2-16. 미국의 조경 및 공공정원 조성배경

시기	미국의 조경 및 공공정원 조성배경
18세기	초창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정원들을 설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식물원 설립은 다소 지연되었다. 미국혁명 후에 식물원은 새로운 국가의 중요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인식되었고, 1798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G. Washington)이 처음으로 국립식물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19세기	국립식물원에 대한 조지 워싱턴의 꿈은 1850년에 실현되었다.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반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과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공공정원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 정원디자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20세기 전반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정원은 유럽의 전통 -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초기 유럽에서 이주한 첫 세대는 그들이 배워온 원리들에 따라서 북미에서 정원을 조성하였다. 그 이후에 미국 정원가들은 유럽으로부터 도착한 서적들로부터 정원디자인을 배웠다.
20세기 후반	1950년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이 조경디자인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주도권은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발달한 국토개발, 도시계획 등과 함께 발전한 조경분야의 전문 직업을 통하여 얻어졌다. 미국 조경가들은 또한 도시계획에서 주도적인 그룹이었다. 미국 조경은 유럽의 정원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여 국토개발, 도시계획 등의 특성을 가지며, 또한 여전히 정원디자인과 더 폭넓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조경에 있어서는 강력하지만, 그러나 정원디자인에 있어서는 그다지 주도적이지는 못하다. 미국인들은 정원활동을 대단히 사랑하지는 않지만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는 정원에서 작업하기에 너무 덥거나 또는 너무 추워서 상대적으로 북유럽에서처럼 정원활동을 즐기지는 않는 듯하다. 미국은 또한 귀족적인 정원 유산들이 부족하고 많은 미국의 공공정원들은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식물원처럼 운영된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강한 자아의식과 함께 지역성, 상징성, 전통, 향토, 민속 등에 관련한 한국전통정원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였고, 한편으로 서구적인 또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회문화로서 정원디자인, 정원활동, 조경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탐구가 북미에서 유럽, 특히 영국과 북유럽으로 옮겨졌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여 일본을 통하여, 그 이후에는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문화를 접해 왔지만, 21세기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아시아 신흥강국으로서 직접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International Money Fond, 2015).

(2) 정원 조성현황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는 전국에 43개의 식물원 및 수목원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표 2-17). 산림청의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14)에서 2013년 전국 수목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44개의 수목원이 분포하고 있다(표 2-18). 또한 조성중(28개소), 미등록(31개소), 또는 계획중(2개소)인 공공정원들과 자생식물원들을 포함하면, 국립정원 6개소, 공립정원 42개소, 사립정원 42개소, 학교정원 6개소, 자생식물원 21개소, 기타 1개소로 총 118개소가 분포하게 될 예정이다(그림 2-27). 공공정원의 지리적인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공립 및 사립정원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정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 영·호남을 중심으로 산지와 해안가에 자생식물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상대적으로 사립 정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 2-17.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 목록화된 우리나라의 식물원 및 수목원 분포

명칭	개소	명칭	개소	명칭	개소
서울	1	충남	6	전북	3
인천	1	대구	1	광주	0
경기도	13	경북	3	전남	1
강원도	3	부산	1	제주도	4
충북	0	울산	1		
대전	1	경남	4		
합계			43		

출처: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www.kabga.or.kr, 2015)

표 2-18. 산림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수목원 분포

명칭	개소	명칭	개소	명칭	개소
국립수목원(1개소)					
서울		충남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경기도	1	경북		전남	
강원도		부산		제주도	
충북		울산			
대전		경남			
공립수목원(22개소)					
서울	0	충남	3	전북	1
인천	2	대구	1	광주	
경기도	4	경북	1	전남	1
강원도	3	부산	1	제주도	1
충북	1	울산			
대전	1	경남	2		
사립수목원(18개소)					
서울		충남(세종시 1개소)	4	전북	1
인천		대구		광주	
경기도	7	경북	1	전남	1
강원도	2	부산		제주도	
충북		울산	1		
대전		경남	1		
학교수목원(3개소)					
서울		충남		전북	1
인천		대구		광주	
경기도	2	경북		전남	
강원도		부산		제주도	
충북		울산			
대전		경남			
합계			44		

출처: 산림청(2014)

국립 및 공립의 공공정원 대부분은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에 개원한 화성우리꽃식물원, 조성중인 국립DMZ자생식물원,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울릉자생식물원이 식물원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다. 사립 공공정원, 즉 대중에게 개방하는 민간정원들은 1983년에 개원한 한택식물원과 고은식물원과 같이 식물원, 정원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자생식물원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공공정원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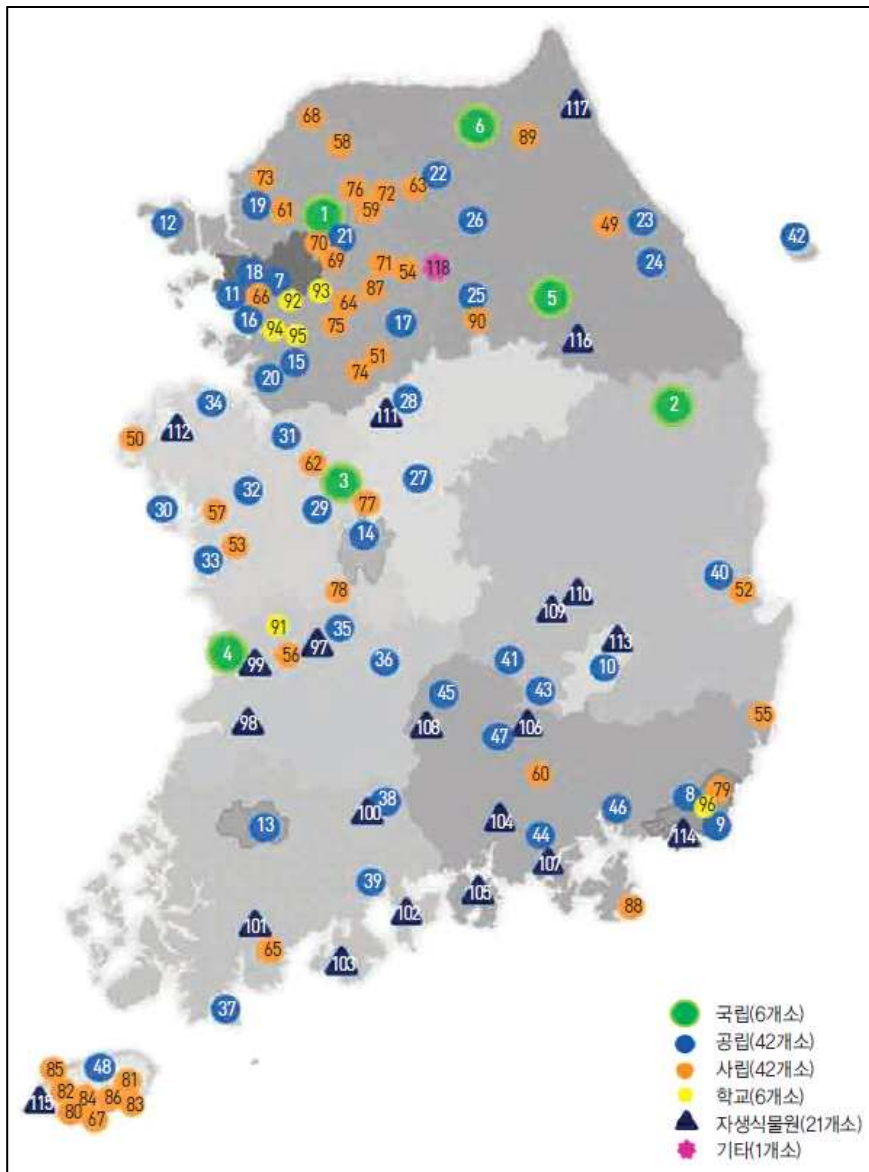


그림 2-27. 우리나라 수목원 및 식물원 분포(조성중 또는 미등록 포함)
(산림청, 2014)

우리나라 공공정원들의 대부분은 20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표 2-18에서 산림청에 등록된 44개 공공정원들의 개원년도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서울대수목원과 기청산식물원이 개원하였고, 1990년대부터 개원수가 증가하여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7개소(84%)가 개원하였다. 또한 조성중인 28개소가 2010년대에 조성을 완료하고 개원한다면, 2010년대에만 41개소가 개원한 것이며 되며, 이것은 전체 개원수의 5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공정원들이 21세기 초반에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서구화된 공공정원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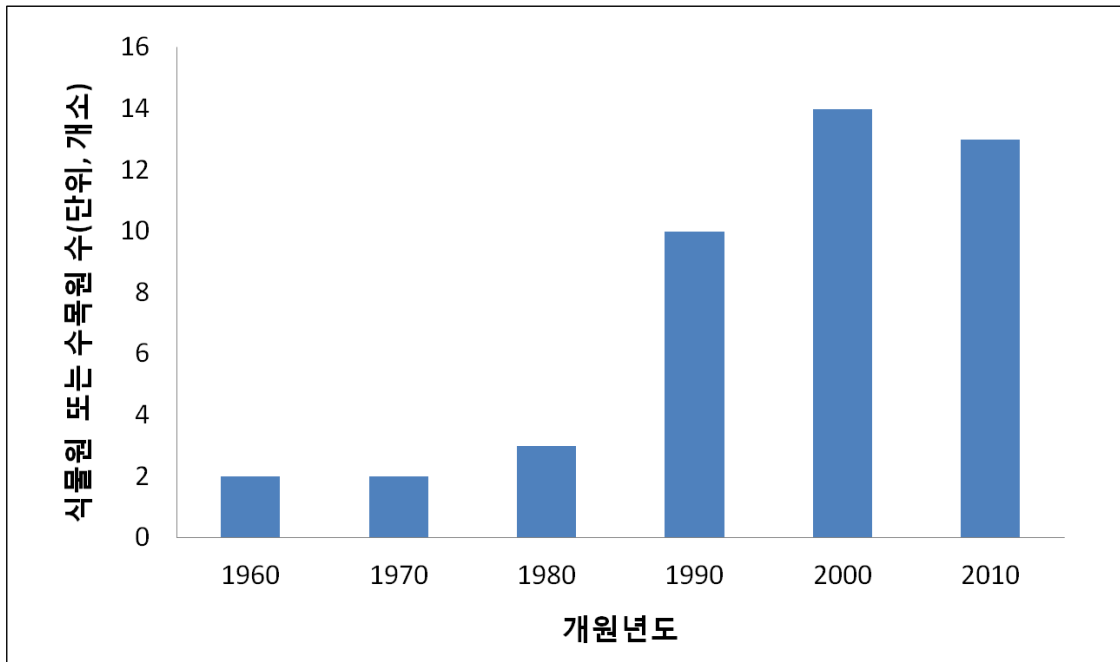


그림 2-28. 우리나라 식물원 및 수목원들의 개원년도 분포

우리나라의 민간정원, 즉 귀족, 양반 등이 아닌 평민들의 정원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농가주택 또는 그 주변에 조성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으로 ‘텃밭’이라고 명명되었다. 그림 2-29에서 조선시대 전기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읍성⁸⁾(樂安邑城)의 전경과 주택에 인접한 텃밭을 볼 수 있다.

현대적 개념의 민간정원 조성 및 정원활동은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1970년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획기적인 주거환경의 변화로 취미원예(가정원예)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을 다녀오거나 외국서적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규모 주택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식물을 재배하며 감상하던 가정원예는 점차 장식적인 정원의 조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개인의 정원활동은 더욱더 활성화되었다.

20세기 말엽에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정원 및 정원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김인혜와 허근영, 2008). 생활공간 주변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도시공원들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개

8) 고려시대 후기부터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선시대 태조 6년(1397)에 처음 쌓았고,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4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돌로 다시 성을 쌓아 규모를 넓혔다고 한다. 읍성의 전체 모습은 4각형으로 길이는 1,410m이다. 동·서·남쪽에는 성안의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성의 일부분이 성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성안의 마을은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당시 생활풍속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1908년까지 존속하였던 낙안군의 중심지였다.

인 소유의 민간정원을 만들려는 시도를 거듭해오고 있다. 실제로 실내식물을 이용한 용기재배, 베란다 간이화단 등과 같은 실내정원 활동뿐만 아니라 교외 및 전원 지역에서 직접 전원주택을 짓고 정원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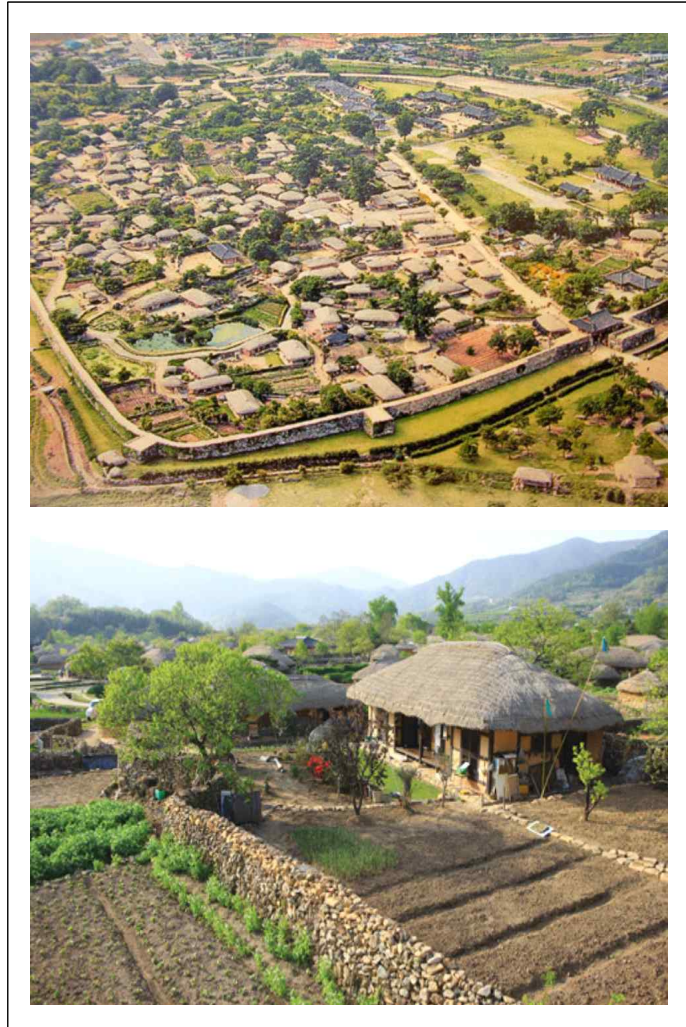


그림 2-29.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읍성의 전경(위)과 민간 주택 및 텃밭(아래)

출처: 서정일(2009); 한국관광공사(2015)

우리나라의 유희적이고 장식적인 민간정원의 대부분은 사실상 실내정원, 구체적으로 베란다 정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1970년 전체 주택의 88.5%에 달하던 단독주택은 2005년에는 19.8%로 감소하였고, 주차장 규제가 강화된 2003년부터는 신규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다고 하였다(이성창 등, 2009).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주

택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도 아파트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교외지역에서는 꾸준히 ‘전원주택’ 이라고 불리는 단독 주택들과 함께 교외정원들(suburban gardens)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등에는 최근에 많은 민간정원들이 조성되고 있다. 일례로, 그림 2-30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더그림(The Green)’ 이라는 민간정원인데, 이곳의 정원 소유자는 장기간 개인적으로 정원활동을 즐기다가 2014년부터 대중에게 입장료를 받고 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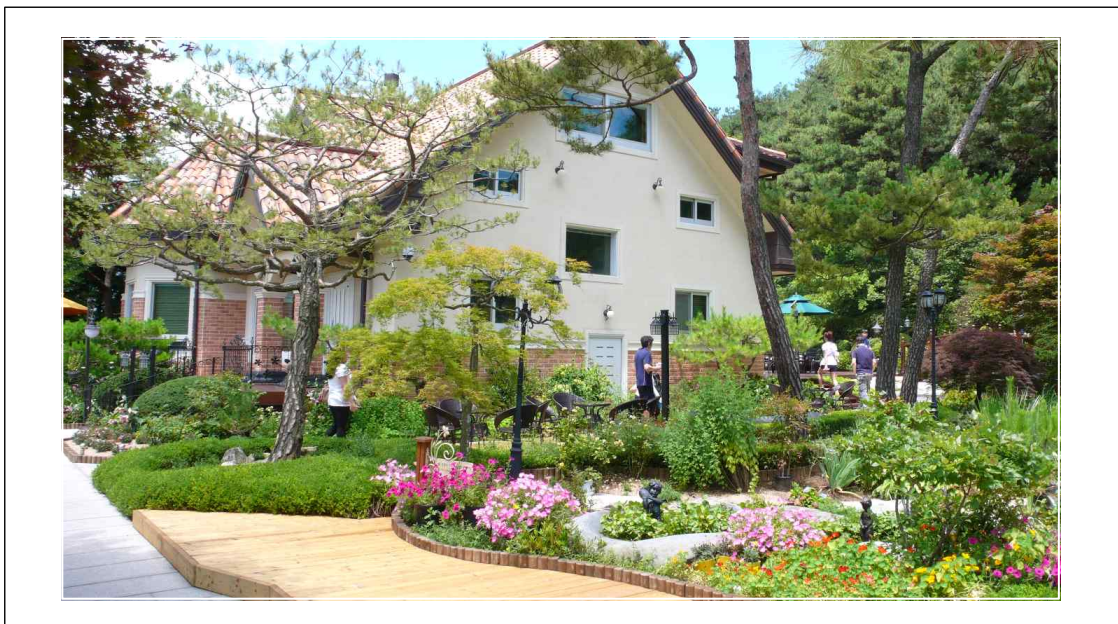


그림 2-30.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더그림(The Green)’이라는 대중에게 개방하는 민간정원의 전경

(3) 적요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원 조성현황 및 문제점

20세기 우리나라의 정원 조성은 앞서 그림 2-26에서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초반에는 제국주의 시대의 팽창하는 유럽, 특히 영국의 문화를 기원으로 하는 일본의 근대정원에 영향을 받았고, 20세기 후반에는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에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국토개발 과정에서 정원으로부터 도시공원 또는 조경을 발전시킨 미국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오늘날에도 일본의 현대정원과 미국의 현대조경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한국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2-31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통하여 또는 미국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의 정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의 여러 국가들과 직접적인 정원문화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근원적인 정원문화를 이해하여 K-Pop과 같은 창조적인 절충주의(eclecticism) 양식의 국제적 수준의 한국정원을 도

출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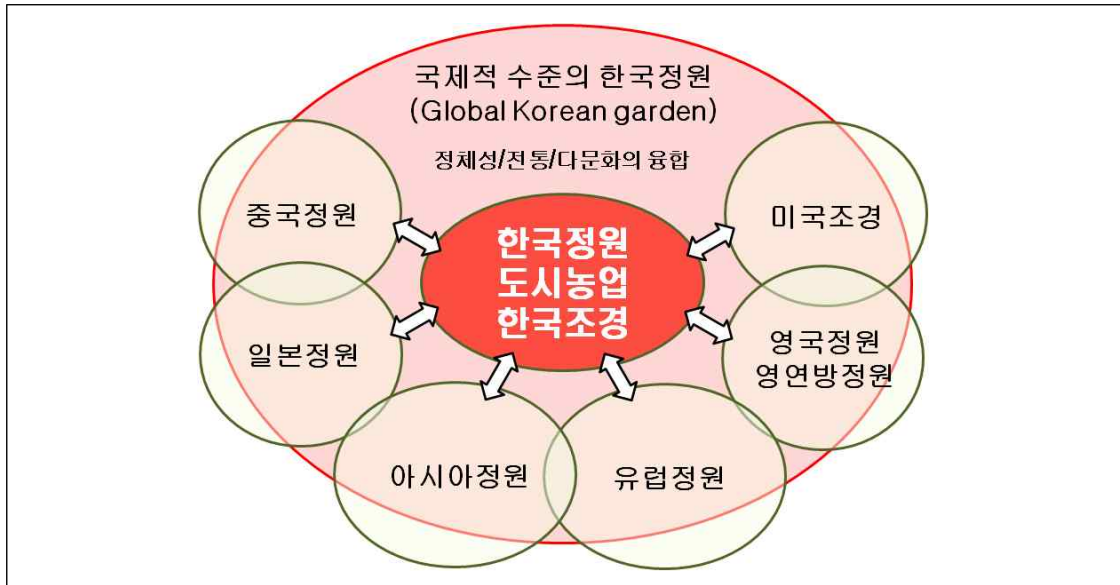


그림 2-31. 국제적 수준의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네트워크 방식

오늘날 영국이 최고 수준의 정원문화를 가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림 2-31과 같은 방식을 통한 절충주의 양식의 정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18세기까지 영국은 유럽 본토와 분리된 섬나라로서 문화적으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19세기 영국 빅토리안 시대에 국가의 역량이 강화되며 로우던(Loudon), 로빈슨(Robinson), 제킬(Jekyll) 등과 같은 정원가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남유럽과 북유럽을 여행하며 정원양식들을 보고 배우고, 이것들을 다시 영국이라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들과 절충을 시도하며, 그 결과물들을 정원잡지 등과 같은 정원서적들과 정원단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빅토리안 정원양식을 만들어내고, 영국, 영연방 등으로 영국정원을 유행을 시켰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영국정원은 이탈리아정원, 프랑스정원과 같이 오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19세기부터 발전한 절충주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정원문화를 발전시켜 왔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감각을 가진 정원 또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정원은 지역성, 전통문화 등과 같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세계화가 필요하다. 국제적 감각을 가진 정원문화를 가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훌륭한 생활양식(lifestyle)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고, 국가의 위상, 국가의 이미지 등을 높

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원 조성 및 정원활동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정원 또는 국가정원과 같은 공공정원(public gardens)의 조성이며, 두 번째는 도시농업이라는 도시텃밭의 조성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조경이라는 도시재생과 같은 도시경관의 조성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정원은 산림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도시텃밭은 농촌진흥청의 원예특작과학원 내 도시농업과에서 주도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같은 도시경관의 조성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효과적인 정원의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원 조성현황을 요약해보면, 표 2-19와 같다.

표 2-19. 우리나라 정원 조성현황

구분	특징	
	공공정원	민간정원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산림청에 등록된 공공정원은 44개소임 <input type="checkbox"/> 2010년대 후반에는 118개소가 될 것임 <input type="checkbox"/> 대부분의 수목원의 형태를 가짐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수목원 및 식물원은 식물 보존 중심의 임무를 수행함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수목원 및 식물원의 재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존하며 전시, 교육 등을 통한 자체 자원조성을 위한 활동은 미약함: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공공정원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사립 공공정원은 개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됨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의 대중공개(open garden)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은 없음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의 개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input type="checkbox"/> 다만, 대부분의 공공정원들이 1990년대부터 조성되어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주거형태로 민간정원의 대부분은 베란다 정원의 형태를 가짐 <input type="checkbox"/> 서울 등의 대도시 주변 교외지역에서 민간정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개인들이 직접 또는 시·군 등의 지원으로 이루지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National Gardens Scheme(NGS)과 같이 전문화된 비영리 단체가 부재함

산림청에 등록된 공공정원은 44개소이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118개소가 될 것이다. 공공정원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개인들이며, 국·공립 정원들은 식물보존 임무에 집중하고 있고, 사립 정원, 즉 대중에게 개방하는 민간정원들은 식물전시에 집중하고 있다. 국·공립 정원들의 재정은 대부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며, 민간정원들의 재정은 입장료, 레스토랑 운영, 선물용품 등의 판매, 숙박 등으로 자체 조달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일부를 충당한다. 대부분의 공공정원들은 1990년대부터 조성되어서 상업적 식물연구, 식물교육 및 전시 등의 정원 자체 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마케팅, 홍보, 경영 등의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또한 민간정원 및 개인의 정원 활동에 관련한 통계자료 수집이 미흡하며 민간정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전문화된 기관이 부재하다.

또한 정원 조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원에 대한 요구는 단지 도시 거주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김인혜와 허근영, 2008). 지금까지 농촌지역 거주자들에게 복지제도는 단지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농촌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노령화되었으며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경제적 생산성은 더욱 열악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산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원지역에 민간정원뿐만 아니라 정원 체험 중심의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원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뿐만 아니라 문화적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의 정원 조성 및 개인 또는 공동체의 정원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정원산업의 범위 및 현황

정원산업은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서 정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 속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원산업은 사실상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산업혁명과 식민지 개척을 통하여 경제가 성장하며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동자 계층의 정원활동 참여로 출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정원활동의 대중화가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을 출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영국 본토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당시의 영국 식민지등에서 개인의 정원활동이 증가하며 정원재료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정원 관련 서적들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며 대규모 정원산업이 출현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열정은 주택의 경계를 넘어서 정원방문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다. 대중적인 정원방문에 대한 열정은 이웃의 정원, 전통주택의 정원 등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식물원 및 수목원, 화훼박람회, 정원박람회, 전

통정원 등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유럽, 북미, 오스트랄아시아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의 매력적인 민간정원 및 공공정원은 오늘날 자국의 방문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방문객들을 유인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정원관광은 정원산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2.1. 정원산업의 범위

정원산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정원산업의 최종 소비자인 대중적인 정원가들의 정원활동과 정원관광(또는 정원방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원가란 현재 정원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정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원활동 및 정원관광의 정의를 통하여 정원산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정원활동은 대지 위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며 식물을 심고, 정원을 관리 또는 운영하며, 정원 속에서 감상, 사교, 휴식 등의 여가를 즐기는 행위; 정원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 또는 재료, 정보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원 또는 정원용품점을 방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자면, 21세기의 정원활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원활동뿐만 아니라 정원관광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정원관광은 ‘정원(garden)’이라는 자연을 소재로 한 창작물을 가진 지역에서 구매, 관람 또는 생각에 잠기거나 교육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주거지로부터 벗어나 여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enfield, 2013). 정원관광은 식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화훼와 관련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 초점을 맞춘다.

- 식물원
- 정원과 역사적 장소
- 호텔, 리조트, 대형상가, 민간 및 공공 주택과 정원들
- 정원 쇼, 축제 등의 이벤트
- 특별함을 가진 정원들

따라서 정원산업의 범위는 정원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원용 식물, 비료 및 농약, 도구, 가구 등의 정원재료, 정원 조성, 관리 등의 정원서비스, 정원 및 정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정원관광으로 한정할 수 있다.

2.2.2. 주요국가 정원산업의 현황

먼저, 정원재료 및 서비스 시장의 세계적인 현황을 한승원 등(2012)의 ‘정원의 사회·경제학’을 통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2011년 세계의 정원산업은 1,865억 달러(210.6조 원)에 달하며, 2016년 2,193억 달러(247.7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Datamonitor, 2012). 이 가운데 정원에 들어가는 초본, 목본성 식물 및 토양(상토 등)의 시장이 전체 매출액의 56.1%를 차지하다.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북미(30.6%), 서유럽(27.4%), 아시아(22.7%), 동유럽(7.1%), 남미(4.3%)의 순이다.

시장 규모면에서는 북미가 가장 크지만, 연간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동유럽과 아시아가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2011년 미국의 시장규모는 571억 달러(64.5조 원)이나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황이며, 캐나다는 시장규모가 작지만 성장률이 4.8%로 높다.

서유럽의 영국은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정원가꾸기 산업도 침체를 겪고 있으며 2011년 시장규모는 56억 달러(6.3조 원) 수준이다.

아시아의 정원가꾸기 산업은 중국, 일본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며, 성장률도 세계 최고이다. 중국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손꼽히며, 시장규모는 196억 달러(22.1조 원) 수준이면서도 연간 성장률은 11.4%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택이 크지 않아 현관, 발코니를 이용한 정원가꾸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시장규모는 123억 달러(13.9조 원) 수준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상기하면, 비록 영국 정원문화가 서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앞선 정원문화를 뒤늦게 자국의 정원문화와 절충시켜 오늘날의 영국식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가장 먼저 대중적인 정원문화를 창출하였지만, 현대적 개념에서 북미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정원문화, 아시아의 일본 정원문화, 그리고 여기에서 생략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의 정원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하게 인식해야 사실은 대중의 정원문화 또는 생활양식(lifestyle)이 정원재료 및 서비스의 소비를 창출하며 결국 정원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현황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분

석하며, 부가적으로 일본의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원재료 및 서비스

(1) 영국

영국 원예유통협회 마케팅 위원회(HTA Marketing Committe) 회장인 Caroline Owen(2012)은 수백만 영국인들이 정원과 정원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정원산업의 경제규모는 대략 연간 90억 파운드(15.9조 원)이며, 대략 28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a. 정원재료

1969년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추정치로 1억 파운드(1,757억 원)의 식물들, 도구들, 다른 정원용품들이 소비되고 있었다고 한다(Constanine, 1981). 그러나 2011년에는 정원식물로 대략 15억 파운드(2.6조 원), 정원가구로 대략 6.5억 파운드(1.1조 원)가 소비되었다고 한다(HTA, 2012). 구체적으로 HTA(2012)는 Kantar Media TGI와의 공동 조사를 통하여 정원용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의 판매량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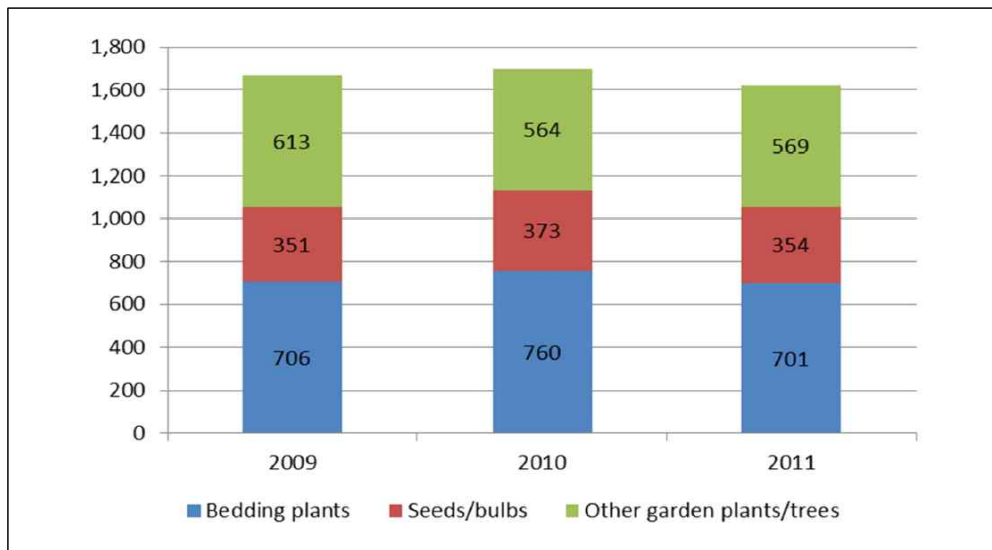


그림 2-32. 2009-2011년 정원식물 판매현황(단위, 백만 파운드)
출처: HTA/Kantarr Media TGI

먼저 정원식물(garden plants)은 화단용 정원식물(bedding plants), 종자 및 구근

(seeds and bulbs), 기타 정원용 식물 및 수목(other garden plants and trees)로 구분하며, 2011년에 각각의 판매량은 569백만 파운드(9,894억 원), 354백만 파운드(6,156억 원), 701백만 파운드(12,190억 원)이고, 총판매량은 1,624백만 파운드(28,240억 원)이었다(그림 2-32).

정원관리용품(garden care)은 비료 및 제초제(fertilisers and weed killers), 잔디깎기(lawn mowers), 전동식 정원도구(powered garden equipment), 수동식 정원도구(non-powered garden equipment)로 구분되며, 2011년에 각각의 판매량은 346백만 파운드(6,017억 원), 482백만 파운드(8,381억 원), 250백만 파운드(4,347억 원), 204백만 파운드(3,547억 원)이고, 총판매량은 1,282백만 파운드(22,293억 원)이었다(그림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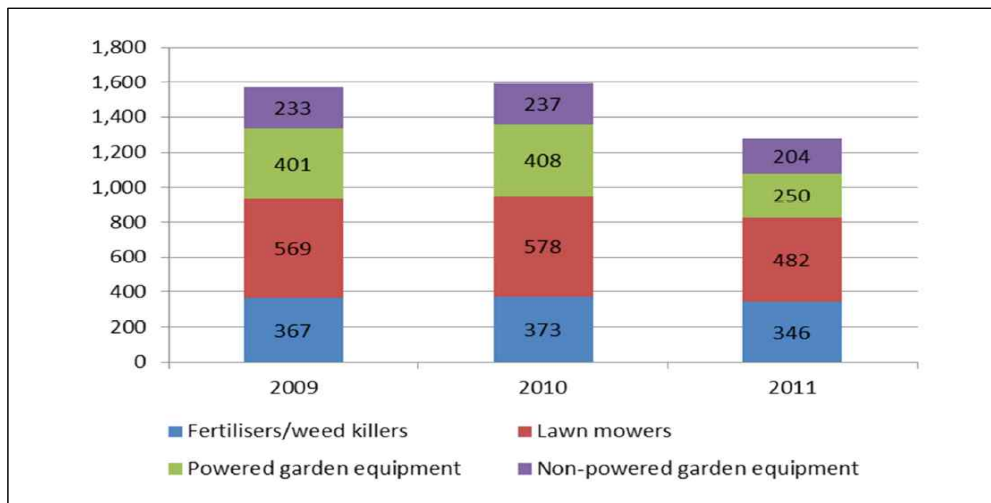


그림 2-33. 2009-2011년 정원관리용품 판매현황(단위, 백만 파운드)
출처: HTA/Kantarr Media TGI

정원여가용품(garden leisure)은 정원가구(garden furniture), 바비큐(barbecues)로 구분되며, 2011년에 각각의 판매량은 841백만 파운드(14,624억 원), 330백만 파운드(5,738억 원)이고, 총판매량은 1,171백만 파운드(20,363억 원)이었다(그림 2-34).

최근 정원재료의 판매 경향을 살펴보면, 종자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 종묘상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충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포용할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Twitter와 Instagram은 그들의 제품들에 대한 그림들을 발송하는, 특별한 제안들을 알리는, 또는 미래의 고객들에게 조언을 전달하는 종묘상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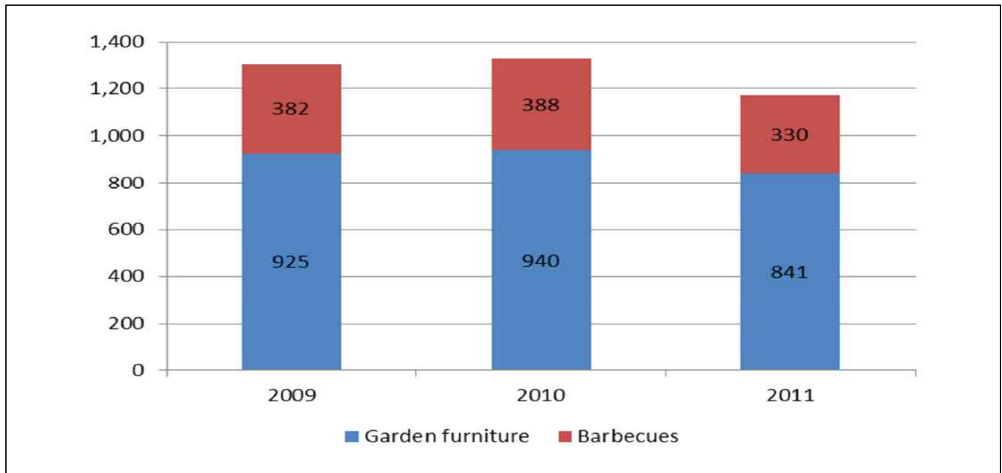


그림 2-34. 2009-2011년 정원여가용품 판매현황(단위, 백만 파운드)
출처: HTA/Kantarr Media TGI

정원가구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마치 디자이너들이 여러 해 동안 예측해왔던 것처럼, 정원은 주택의 확장, ‘outdoor room’ 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반응하여 정원센터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점차 고급화(고가 전략)하고 있다. 요즘 영국에서는 플라스틱 의자들과 테이블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반면에 더 많은 목재와 등나무 가구를 보게 된다.

정원용 창고(shed)와 같은 제품들은 가격 차별성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생필품이 되어가고 있다. 야외생활용 제품 판매는 더운 여름으로 인하여 2012년에 9%까지 증가하였다. 2012년에 민달팽이 제거용 펠릿들(pellets)이 습한 기후로 인하여 정원용품 부문을 강타하였다. 포장재, 담장 등과 같은 조경용 제품들은 성장이 없었고, 이 부문에서 분명한 혁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조류 사료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성장이 없는 한 해를 가졌다. 이것은 야생조류 사료의 가격 인하가 하나의 영향으로 보인다. 환경적으로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s) 살충제의 사용억제를 넘어서, 벌과 나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정원활동에 대한 요구는 유기적인 제품들의 판매 증가를 가져왔다. 피트(peat) 사용은 2012에 불량한 수확 후에 2013년에는 감소하였지만, 그러나 2013년 더운 여름 후에 2014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Defra의 연구결과는 피트(peat) 판매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것이다.

b. 정원센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정원을 가진 22백만 주택들의 관리를 위해서 영국 성인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전문 정원센터를 방문

한다. 정원활동에 관련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깊은 흥미를 가진 50대 이상의 그룹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들은 정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외용 가구와 건물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영국 정원 유통시장은 연간 대략 50억 파운드(8.7조 원)이다. 이 중에 대략 15억 파운드(2.6조 원)는 매년 정원 식물에 소비되며, 대략 6.5억 파운드(1.1조 원)는 정원 가구에 소비된다. MINTEL(2014)의 보고에 따르면, 영국에 정원센터는 추정치로 대략 1,000개소이고, 이 중에서 체인에 속한 정원 센터는 259개소이며, 전체 정원센터를 통해서 판매된 금액은 2013년에 대략 5.82억 파운드(1.1조 원)이다. 영국의 10대 정원센터들 중에서 B&Q는 정원용품들에 대한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이고, 반면에 Garden Centre Group은 전국에 걸쳐 139개 상점들을 운영하는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대형 유통업체이다(그림 2-35). 2011년 Garden Centre Group의 매출액은 264백만 파운드(3,048억 원)이었다(그림 2-36). 2013년에 정원센터의 판매는 6%가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정원센터를 통해서 판매된 조경 제품의 판매는 14%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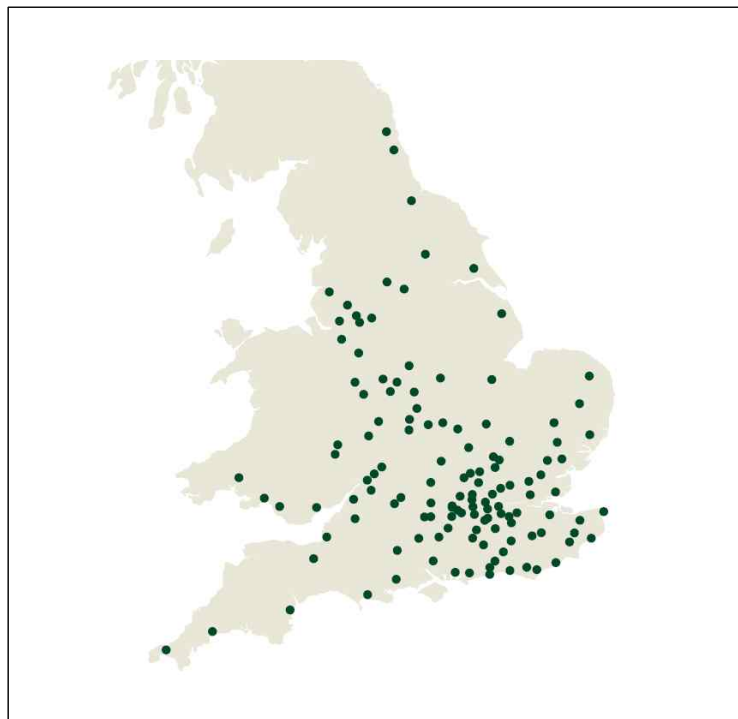


그림 2-35. 영국의 10대 정원센터인 Garden Centre의 전국분포
출처: Garden Centre Group(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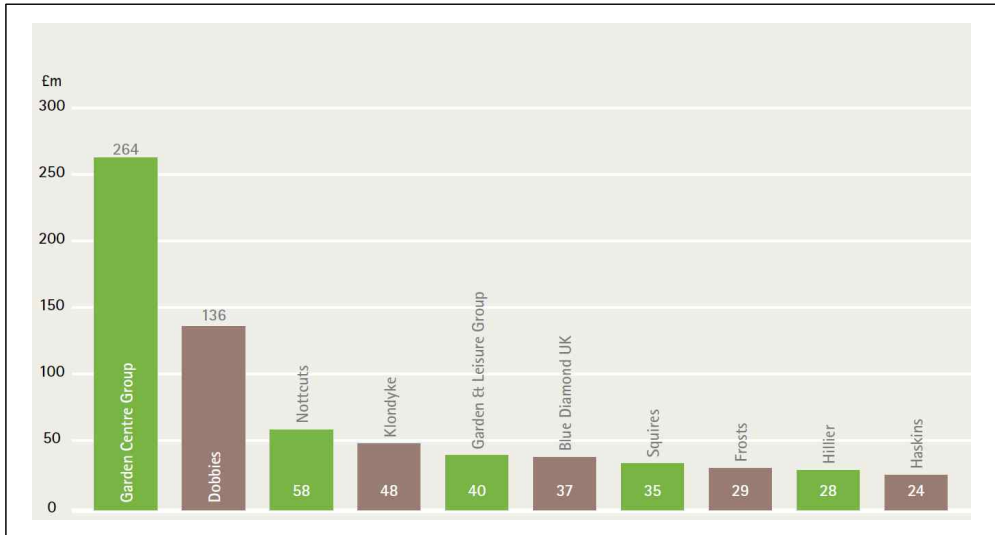


그림 2-36. 영국의 10대 정원센터들의 연간 매출액(단위, 백만 파운드)
출처: DIY Week, Garden Retail Leaders 2012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잠재력을 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년 이상 전부터 Next를 여전히 운영해오던 George Davies는 ‘Next gardening catalogue’를 착수하였다. 심지어 슈퍼마켓들도 정원용품과 식물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DIY 유통업체들은 정원이 주택의 광범위한 확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감지하였고, 그에 따라서 정원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왔다. 그리고 정원센터들은 생존을 위해서 합병하기 시작하였다. Tesco와 같은 슈퍼마켓 그룹들은 심지어 Dobbies(Dobbies Garden Centres)를 인수함으로써 정원산업 부문으로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다.

정원센터들은 2013년에 2011년과 비교하여 그 수가 19.3%로 증가하였다. 정원센터들은 경쟁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합병은 배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와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더 강력한 유통업체의 훈련들을 도입시켰다. 연중 사업을 가능하도록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발길과 충성도를 중요하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Dobbies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최고 고객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우수고객카드(loyalty card)를 이용한 초기 선구자였다.

소비자들의 관심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례로, 정원센터에서 선물들, 조리도구들과 같은 새로운 제품 라인들, 야외 가구와 바비큐들과 같은 커다란 아이템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또한 정원센터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개발되었으며, 정원센터는 12월 중에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는 진정한 목적지가 되었다.

Local Data Company에 의해서 Glee를 위해서 수행된 독점적인 연구는 수퍼마켓의 숫자가 2011년에 7,982개소에서 2013년에 8,379개소로 5%의 증가하였음을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일부분은 정원과 여가 시장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LDC(Lloyds Development Capital)는 정원센터들이 지난 3년간에 걸쳐 19.3%까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i2i Events Group, 2014).

오늘날 정원 부문에서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것은 인터넷이다. 많은 상점들은 또한 변화에 느리고, 인터넷은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겨냥하고 있다. 인터넷은 Amazon이나 eBay를 경유하여 많은 독립적인 판매를 위한 시장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집중투자 운영자들을 창출하고 있다. 옥잠화(daylily)를 찾는 것은 인터넷에서 마우스로 한 번 클릭하는 것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만약 Aberdeen에 살고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Cornwall에 있는 종묘상에게 제품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식물들을 배달받을 수 있다. 정원용 창고(shed)와 같은 제품들은 가격 차별성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생필품이 되어가고 있다. LDC가 말하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가장 큰 부문 중의 하나는 파티오(patio)와 정원 가구들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이었다.

정원 부문은 극심한 기후 때문에 높은 위험에 놓여있다: 지나치게 덥고, 습하거나 또는 추운 환경은 식물의 생존과 관련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2008년 이후로 영국 유통업체는 경기침체와 온라인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증가로 유발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야만 하였지만, 정원 및 여가 유통 부문에 대하여 심지어 더 중요한 도전은 기후변화에 있었다. 여러 해 동안의 특이한 기후는 정원센터들에게 거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2년과 2013년 봄철의 장기화된 한파는 더욱더 심한 불행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원센터들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였다. 봄/여름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정원센터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영역과 소비자 유인으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왔다.

c. HTA, GLEE 등의 정원산업 지원

영국의 정원산업은 1899년에 설립된 원예유통협회(Horticultural Trades Association, HTA)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HTA는 정원식물, 구근, 종자 등의 재배자들과 공급자들, 정원용품 생산자와 공급자들, 정원용품 소매점들과 조경전문가들, 광역적 범위의 서비스 공급자들과 연합으로 구성된 2,500개 이상의 산업체들을 대표하는 역동적인 원예유통협회이다. 그 외에도 그림 2-37과 같이 정원센터협회(Association of Garden Centre) 등 대표적인 정원산업 지원기관들이 있다.



그림 2-37. 영국의 주요 정원산업 지원기관

영국의 가장 큰 정원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인 Glee는 9,000명 이상의 국내·외 거래상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2013년에 참석자들의 71%는 이사들, 경영소유자들, 구매자들, 상점협회 회원들을 포함한 핵심 의사결정권자들로서 모든 정원센터협회의 회원들 중 99%가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구매자들의 35% 이상은 연간 4.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2-38).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은 59.6%가 새로운 제품들에 정보를 수집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급자들과의 만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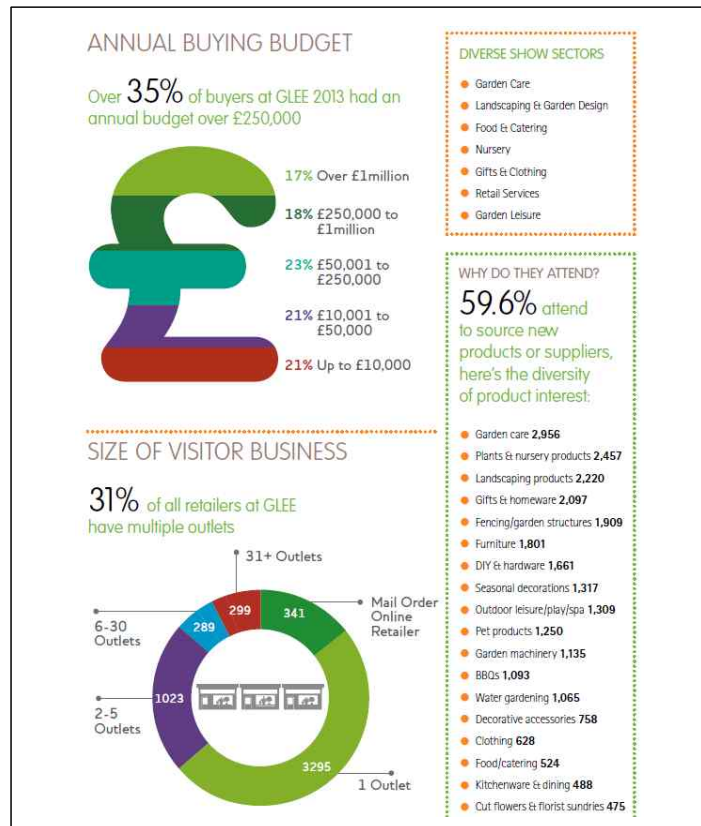


그림 2-38. 영국의 최대 정원산업 박람회인 GLEE의 경제성 분석

d. 정원잡지

일반적인 정원잡지로서 홈엔가든(House & Garden)이 있으며, 그 외에서 그림 2-39와 같은 정원잡지들이 정원센터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그림 2-39. 영국의 정원잡지들

(2) 일본

a. 정원재료

일본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훼 및 관상수 생산 국가이며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일본 원예식물 시장은 2007년에 대략 6조 원이며, 2011년에는 대략 9.5조 원(절화류 5.3조 원, 정원식물 4.2조 원)이었다(International Statistics Flowers and Plant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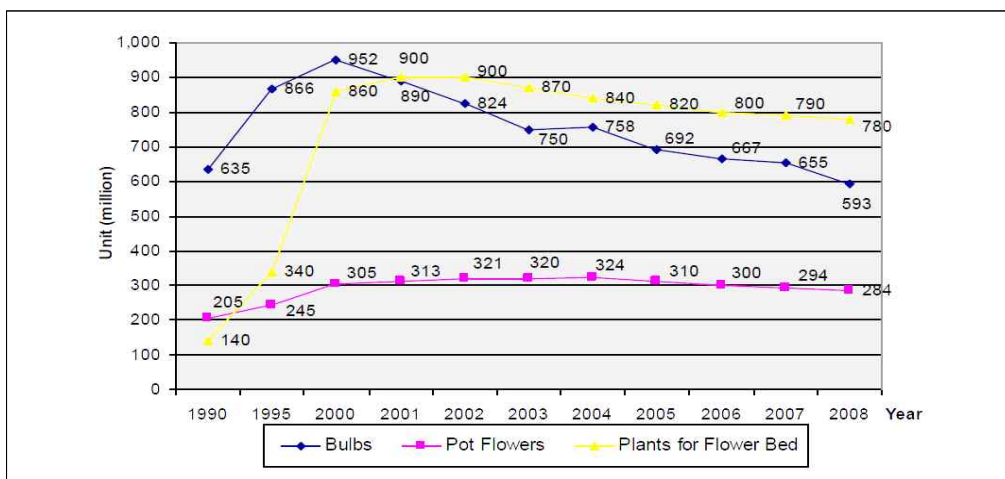


그림 2-40. 1990-2008년 일본의 정원식물 판매현황(단위, 백만본)
출처: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의 구근, 분화, 화단용 정원식물의 생산현황을 살펴 보면, 화단용 정원식물 생산이 2000년대 급격히 증가하여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에 구근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분화의 생산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40). 이와 관련하여 표 2-20에서 2005-2006년의 일본의 종자 신제품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초본식물과 관상식물들에서 상당한 신제품 출원 및 등록을 볼 수 있다.

표 2-20. 2005-2006년 일본의 종자 신제품 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출원		등록	
	2005	2006	2005	2006
식용작물(edible crops)	62	49	56	56
채소(vegetables)	68	86	48	61
과일(fruits)	47	50	35	55
사료작물(forage crops)	15	9	10	31
초본식물(herbaceous plants)	907	801	713	828
관상식물(ornamental plants)	273	264	220	158
수목(forest trees)	0	0	2	0
기타	13	13	29	46
합계	1,385	1,290	1,110	1,235

출처: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원예식물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생산자들의 고령화로 위축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의 화훼와 관상수들에 대한 열정은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다. 일본인들에게 화훼장식과 분재예술은 여전히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정원에 대한 붐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태풍 피해가 감소하며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가정에서 화훼와 관상수를 가지고 정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Motomura, 2010).

최근 정원재료의 판매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주거문화는 정원을 가지기 어려운 매우 소규모의 주택으로 집 주변에 화분들을 이용하여 정원활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화 소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주택개량을 위한 주요한 소비자는 전통적으로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가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주도한다. 많은 여성들은 취미로 DIY를 구매하여 기존의 가구들을 새롭게 페인트칠 하거나 새로운 가구를 제작하고 있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DIY에 대한 증가하는 유행은 지속될 것이다. 2017년 4월에 또 다른 부가세 상승은 새로운 가구 구매와 관련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DIY를 찾을 것이다.

노년층 소비자들의 정원활동에 대한 증가하는 인기는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짐으로, 일상적인 취미로서 정원활동이 일본의 노년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주요 소비자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서 도시에서 정원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건강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기인하여 소비자들이 발코니에서 포트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정원활동을 위한 전동 도구들은 2012년에 가장 유행하였는데, 4%의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체들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 가벼운 전동도구, 더욱더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도구들, 사용하기 쉬운 도구들을 제작하고 있다. 잔디깎기는 2012년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2%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정원산업이 일본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b. 정원센터

원예식물의 80% 이상이 대형유통점들에 의해서 유통된다. 일본의 정원 시장은 2012년에 2% 성장하였으며, 시장규모는 3,470억 엔(3.17조 원)에 이른다. 홈앤가든 전문 유통업체들은 정원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유통업체이고, 2012년에 총 판매액의 78%를 차지하였다. 또한 홈앤가든 전문 유통업체들은 2014년에도 성장을 기록했지만, 2014년 4월 부가가치세의 증가로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성장률은 2013년보다 낮았다.

일본 정원활동 시장은 매우 파편화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매우 파편화되고 경쟁이 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인 가정용 가구 유통업체인 Nitori Co Ltd는 2014년에 홈앤가든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유통판매가 홈앤가든에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가구들은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인터넷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많은 유통업체 중 Nitori Co Ltd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공격적인 상점 오픈 프로그램과 정원활동 관련 제품들의 항목을 확장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2) 정원관광

(1) 미국

정원관광은 오늘날 미국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 활동 중의 하나이다. 1999년 이전 5년 동안에, 미국인들은 매년 대략 40백만 미국달러(468억 원)의 정원관광을 하였거나 정원 관련 여행활동에 참여하였다(TIA, 1999). 미국인들의 20%는 정원관광을 갔고, 식물원을 방문하였으며, 정원 쇼 또는 축제에 참석하였

고, 또는 정원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미국공공정원협회(American Public Garden Association)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의하면, 2005년에 그들의 회원사 정원들의 방문자 수는 40백만 명을 넘었고, 이것은 라스베가스 또는 디즈니랜드/디즈니월드를 함께 방문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하였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1천만 미국 성인들이(미국 성인의 5%, 지난해 여행자들의 7%) 정원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원활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여행의 주요한 목적을 정원관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7%만이(2.7백만) 여행의 중요한 이유를 정원활동이라고 하였다. 가장 최근에 정원을 여행한 사람들의 84%는 정원활동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하지 않으며, 단지 여행 중 하나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방문 유형 측면에서, 식물원은 가장 인기 있는 정원 매력요소이며, 정원방문자들의 36% 또는 대략 14.36백만 명은 정원 쇼 또는 축제를 방문하였다.

(2) 영국

반복적인 방문을 배제하면, 영국 인구의 50% 이상이 매년 정원을 방문한다. 영국 정원들은 2009년에 39.1백만의 방문자들을 유인하였다고(내국인 33백만 명 그리고 외국인 6.1백만 명) 보고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유적지들이 연간 43.1백만 명의 내국인 방문자를 가지는데, 그 장소의 매력요소로서 중요한 부분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방문자들은 정원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방문자들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2006년에 VisitBritain는 86개의 정원들을 목록화하였지만, Stourhead와 Down House와 같은 중요한 정원들을 배제하였다. 2009년에 Stourhead는 384,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받았고, Down House는 80,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받았다.

2009년에 VisitBritain은 외국 방문자들에게 영국 방문 동안에 공원(park) 또는 정원(garden)을 방문하였는지 질문하였는데, 20%가 정원에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방문자들의 주요 상위 국적들은 프랑스, 독일, 미국, 스페인이고,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체코의 방문자들도 100,000명 이상이다. 더욱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방문자들의 거의 50%와 남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방문자들의 1/3이 정원을 방문하였다. 여름이 방문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더 오래 머무는 방문자들이 휴가 중에 정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1989년 이래로 정원방문은 영국 관광산업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들의 하나가 되었다. 2000-2003년에 정원방문은 모든 다른 관광 부문들을 능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유리한 기후조건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 다음 몇 년간은 다

소 혹독한 여름 기후를 가졌다. 장래 민간정원 및 농장 방문은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원방문은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관광 부문이 될 것이다.

(3) 호주 및 뉴질랜드

미국 또는 유럽의 식물원에 방문자 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에, 호주에서는 수월하다. 호주 정부는 캔버라에 있는 Australian National Botanic Gardens을 행정지휘하며 국립식물원의 많은 기능들을 조정하는데, 모든 식물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행하는 것이 그 중 한 가지이다. 1994년에 the Council of the Heads of Botanic Gardens in Australia는 호주 통계청에 식물원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의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하여 정원방문이 호주 관광 패턴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확인하였다.

15세 이상의 호주 인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활동으로서 38.5%는 적어도 매년 한 개의 식물원을 방문하고, 두 번째는 영화 관람이었다. 방문자들은 도시 거주자들이 우세하고(42.9% compared to 31.2%), 여성이 우세하다(41.3% versus 31.5%). 예상과는 달리, 식물원 방문자의 평균 연령은 상당히 젊고, 정원은 교육수준이 높은 방문자를 유인하며,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를 유인한다. 마지막으로, 호주 수도 지역 거주자(49.3%)와 서부 거주자가 식물원들에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47.9%). 비록 가장 낮은 방문 퍼센트를 나타냈지만, 37%의 타지마니아와 34%의 뉴사우스웨일즈의 거주자는 정원을 방문할 경향이 가장 높다.

뉴질랜드에서는 호주와 비교할 만한 하나로 모아지는 데이터 수집은 없지만, 개별적인 정원들로부터의 데이터는 정원방문이 세계적 표준까지 높은 것을 보여준다. 북섬 해밀톤 식물원(1968)은 연간 1.3백만 명의 방문자를 유인하고, 그들 중에 50%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다. 국적을 살펴보면, 방문자의 50%는 지역민이고, 1/4는 외국인, 대부분 아시아로부터(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인도), 1/4는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다. 남섬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1.2백만 명의 방문자들을 유인하고, 그 가운데 약 250,000명은 외국 방문자들이다. 웰링톤 식물원과 더니든 식물원은 각각 1.2백만 명의 방문자들과 881,554 명의 방문자들을 유인한다. 방문자 수가 많은 이유는 모든 정원들의 입장료가 무료이고 많은 정원들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도시공원들(urban parks)의 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2.2.3.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현황

앞서 정원산업의 범위는 정원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원용 식물, 비료 및 농

약, 도구, 가구 등의 정원재료, 정원 조성, 관리 등의 정원서비스, 정원 및 정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정원관광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정원산업에 초점을 맞춘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 및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원산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국내 통계자료들을 상관시켜 분석하여 정원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표 2-21과 같이 정원산업을 정원재료 생산 및 유통을 포함한 정원재료 및 서비스와 정원관광, 교육 등의 소비를 포함한 정원관광으로 나누고 각 범주를 원예, 조경, 산림분야로 나누어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등을 분석하여서 표 2-22와 같이 정원재료 생산액, 정원관광 경제성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실상 정원의 조성, 관리 등의 정원서비스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부재로 정원산업의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1) 정원재료 및 서비스

우선 정원산업의 생산분야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분야의 경우는 개인의 정원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화훼류, 채소류,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잔디 등이 포함된다. 더 세분화하면 화훼류 중에는 꽃을 잘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절화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2015)는 정원산업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그 생산액에서 제외하고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의 생산액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채소류, 옥수수, 감자, 고구마, 잔디 등은 정원산업에서 중요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액을 포함하였다. 둘째, 조경분야의 경우는 정원관련 재료, 용품, 소재의 생산액을 포함시켰다. 셋째, 산림분야의 경우는 조경분야와 겹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민간 및 공공정원 중심의 수목 생산액을 주요하게 포함시켰다. 조경·산림분야의 경우는 용재, 죽순, 죽재, 조경재가 포함되며, 조경재는 조경수, 분재, 야생화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공공정원 및 민간정원이 활성화되면 도시공원과는 달리 초본, 수목 중심의 정원이 형성될 것이며, 정원재료 생산액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정원산업의 기타 생산부문에는 정원 관련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정원산업의 유통분야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분야의 경우는 화훼, 채소, 잔디 등의 유통업을 포함시켰다. 둘째, 조경분야의 경우는 정원관련 재료, 용품, 소재 유통을 포함시켰다. 셋째, 산림분야의 경우는 정원식재용 임산물 유통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정원 관련 석재,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유통산업을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표 2-21. 정원산업의 주요 분야

정원산업의 범주		범주별 주요내용	원예분야	조경분야	산림분야	기타분야
정원재료 및 서비스	생산	-정원관련 식물 등 재료·용품 및 소재생산산업 -정원연구 및 교육	-개인 정원활동 중심: 화훼류, 채소류,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잔디 등	-정원조성 및 관리 중심: 관련 재료, 용품, 소재	-공공정원 및 민간정원 중심: 조경수, 아생화 등	-정원 관련 연구개발 -정원 관련 교육활동
	유통	-정원관련 식물 등 재료·용품 및 소재유통산업	-화훼, 채소, 잔디 유통업	-정원조성 및 관리 관련 재료, 용품, 소재 유통	-정원식재용 임산물 유통	-정원 관련 석재, 농기구, 비료, 농약 등
정원관광	소비	-정원관광 -정원연구 및 교육	-식물원 중심의 정원관광, 연구 및 교육	-공원, 역사정원, 생태정원 등의 정원관광, 연구 및 교육	-수목원 중심의 정원 관광, 연구 및 교육	-정원을 포함하는 시설의 관광

수집된 통계자료 분석에 의하면, 정원산업의 생산액은 약 11,966억 원, 유통액은 14,693억 원, 소비액은 약 828억 원이며, 총생산액은 27,487억 원으로 대략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정원산업의 생산액을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10로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 자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정원산업의 생산액은 원예분야 10,810억 원(농림축산식품부, 2014), 조경 및 산림분야 1,155억 원(통계청, 2015), 기타분야 11억 원이 포함된다. 유통액은 원예, 조경, 산림분야에서 농업유통비용 45%를 적용하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원예분야 8,845억 원, 조경 및 산림분야 945억 원 정도로 산정된다. 정원 관련 석재, 농약, 비료, 농기구 유통분야는 약 4,900억 원 정도가 된다.

표 2-22. 정원산업의 분야별 통계(2013년 기준)

정원산업범주	범주별 주요내용	원예분야	조경분야	산림분야	기타분야	생산액
생산	-정원관련 식물 등 재료·용품 및 소재생산산업 -정원연구 및 교육	10,810억원* (2014 농림축산주요통계, 2014 화훼재배현황 조사요령)	1,155억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1억원 (농림부 농업농촌가치제고 R&D 중에서 농진청과 산림청 연구비의 1/10)	11,966억원

유통	-정원관련 식물 등 재료·용품 및 소재유통산업	8,845억원 (농업유통비용 45% 적용, 2013년 유통실태종합)	945억원 (농업유통비용 45% 적용, 2013년 유통실태종합)	4,903억원*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14,693억원
소비	-정원관광 -정원연구 및 교육	828억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2)**			828억원

*전체 농업생산액의 10%를 정원산업에서 담당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함

**우리나라 전체 식물원과 수목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대체함

2) 정원관광

정원관광, 교육 등의 소비를 포함한 정원관광을 세분화하면 원예분야의 경우는 식물원 중심의 정원관광, 연구 및 교육, 조경분야의 경우는 공원, 역사정원, 생태정원 등의 정원관광, 연구 및 교육, 산림분야는 수목원 중심의 정원관광, 연구 및 교육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정원을 포함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의 관광을 포함시켰다.

정원관광의 경우는 호주처럼 국가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데이터 수집은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는 2012년에 분석한 우리나라 전체 식물원 및 수목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828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1) 공공정원 방문

공립 공공정원들의 방문자수는 대도시에 인접하여 입장료가 무료인 대구수목원 1,700,000명, 한밭수목원 1,120,000명이고, 반면에 입장료가 유료인 화성우리꽃식물원 168,000명, 완도난대수목원 102,000명이었다. 사립 공공정원들의 방문자수는 천리포수목원 195,000명, 한택식물원 118,000명, 고운식물원 100,000명, 평강식물원 132,000명, 제이드가든 133,000명으로 평균 100,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가지며, 반면에 원예장식적이며 정원양식들을 갖춘 아침고요수목원은 900,000명의 방문자수를 나타냈다. 몇몇 공공정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00,000명 미만의 방문자수를 가지는 공공정원으로 보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원 전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방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플라워/정원 박람회 관람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 국제박람회로 규모를 확대하여 2015년까지 9회 개최되었다. 2012년부터는 매

년 개최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초창기에는 화훼산업박람회가 성격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문화적인 화훼 및 정원전시, 화훼산업박람회, 공연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2년 51억, 2013년 35억, 2014년 35억이 소요되었다.

영국 첼시플라워쇼의 규모가 45,000m²인 것과 비교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는 150,000m²으로 3배 정도 큰 면적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자수는 2012년 568,339명, 2013년 553,912명, 2014년 451,002명으로 매년 평균 500,000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가진다. 그러나 첼시플라워쇼는 자선기금 마련 행사를 포함하여 가장 저렴한 입장료가 500,000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인 기준 입장료는 10,000원이다.

영국 정원박람회인 Glee와 유사하게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화훼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2012년 33,154천 미국달러(387억 원), 2013년 31,060천 미국달러(363억 원), 2014년 34,400천 미국달러(402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다.

(3) 정원교육

영국은 큐 가든, 위슬리 정원, 에든버러 식물원 등에서 유료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원교육은 농촌진흥청 마스터 가드너(Master Gardener) 프로그램, 산림청 수목원전문가 과정, 경기농림진흥재단 조경가든대학, 시민정원사 등의 정원문화교육, 서울시 조경아카데미, 서울정원사학교 등의 녹색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마스터 가드너(Master Gardener)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1973년에 시작하여 현재 50개 주(state) 중에서 49개 주가 참여하여 1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1996년에 시작하여 현재 10개 주 중에서 43개 주가 참여하여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여 국비로 2011년 제주농업기술센터를 필두로 하여 2012년 경기도농업기술원, 2013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2014년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마스터 가드너 프로그램 운영하여 2014년 207명의 마스터 가드너를 양성하였다(농촌진흥청, 2015). 또한 마스터 가드너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코디네이터(coordinator) 교육을 위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서울, 부산, 대구, 달성, 광주, 수원, 고양, 포천, 부여, 여수, 영주, 상주, 김해, 진주 등) 14명의 담당자를 선발하여 201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서 마스터 가드너 프로그램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관련 교육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이수시켰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또한 2015년도 마스터 가드너 프로그램의 예산 5억 원을 시군농업기술센터 10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안산, 청주, 천안, 상수, 김해, 제주)에 배정하였으며, 2015-2016년에 각 센터에서 연간 5천만 원의 국비예산으로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한 선진문화를 선도할 마스터 가드너를 양성하게 된다(오대민, 2015).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가 농촌진흥청장 허가번호 제129호로 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사업내용은 한국마스터가드너 이념과 철학 정립, 한국마스터가드너 프로그램 발전과 확산, 마스터가드너 관련 각종행사와 사업을 기획조정, 마스터가드너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활동,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과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이며, 초대 회장은 서울교육대학교 곽혜란 교수이다.

산림청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은 현재 산림청의 인증을 받은 국내 3개 수목원·식물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 인증을 받은 천리포수목원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은 산림청 국비지원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는 수목원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천리포수목원에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라펜트, 2014). 천리포수목원은 2009년 산림청으로부터 국내 최초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받기 전부터 수목원 전문가 양성을 시작해 2013년까지 총 20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조경가든대학은 2006-2015년 상반기까지 5,8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1인당 교육비는 650천원(재단 400천원/자부담 250천원)으로 운영되었다(경기농림진흥재단, 2015). 시민정원사는 2013-2014년에 306명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교육 인증을 받았고(경기도복지보전조례 제21조2항), 1인당 교육비는 750천원(재단 500천원/자부담 250천원)으로 운영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사업으로 5년간 150억 원을 투입하고 시민녹화 및 정원활동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간 700명씩 시민조경아카데미와 서울정원사학교 등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김완순, 2015).

2.2.4. 적요: 우리나라와 영국 및 일본과의 정원산업 현황 비교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에서 정원활동이 대중화되면서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이 출현하였다. 정원산업은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서 정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 속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원산업의 범위는 정원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원용 식물, 비료 및 농약, 도구, 가구 등의 정원재료, 정원 조성, 관리 등의 정원서비스 그리고 정원, 정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정원관광으로 한정된다. 즉 정원재료, 정원서비스, 정원관광으로 한

정된다. 또한 중요하게 인식해야 사실은 대중의 정원문화 또는 생활양식(lifestyle)이 정원재료 및 서비스의 소비를 창출하며 결국 정원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현황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며, 부가적으로 일본의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국 정원산업의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대략 연간 90억 파운드 (15.9조 원)이며, 대략 28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정원센터의 매출액은 연간 대략 50억 파운드(8.7조 원)이며, 정원식물로 대략 15억 파운드(2.6조 원) 그리고 정원가구로 대략 6.5억 파운드(1.1조 원)가 소비된다. 전국에 걸쳐 139개 상점들을 운영하는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대형 유통업체인 Garden Centre Group의 매출액은 264백만 파운드(3,048억 원)이었다. 정원산업을 지원하는 원예유통협회(HTA) 등과 GLEE 정원산업 박람회 등이 있으며,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정원잡지인 The English Garden, Gardener's World 등이 있다.

일본의 정원산업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정원식물에서 4.2조 원이며 화단용 정원식물의 생산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초본과 장식용 식물들의 품종개발 및 등록이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있다. 원예식물들은 80% 이상이 대형 유통점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다. 정원용품들은 홈엔가든 유통업체들에서 2012년 기준으로 총판매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원관광에 있어서 영국은 1989년 이래로 정원방문이 영국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되었다. 영국 정원들은 2009년에 39.1백만의 방문자들을 유인하였다(내국인 33백만 명 그리고 외국인 6.1백만 명). 장래 민간정원 및 농장 방문이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원방문이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관광 부문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매년 정원방문자들이 40백만 명을 넘었고, 1천만 미국 성인들은(미국 성인의 5%, 지난해 여행자들의 7%) 정원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호주에서 정원관광은 15세 이상의 호주 인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활동으로서 38.5%는 적어도 매년 한 개의 식물원을 방문하고, 두 번째는 영화 관람이다. 방문자들은 도시거주자들이 우세하고, 여성이 우세하다. 식물원 방문자의 평균 연령은 상당히 젊고, 정원은 교육 수준이 높은 방문자를 유인하며, 직업의 유무에 상관이 없이 모두를 유인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호주와 비교할 만한 하나로 모아지는 데이터 수집은 없지만, 정원방문이 세계적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현황은 영국처럼 정원산업에 초점을 맞춘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 및 분석이 미흡하여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원산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국내 통계자료들을 상관시켜 분석하여 정원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정원산업을 정원재료 생산 및 유통을 포함한 정원재료 및 서비스와 정원관

광, 교육 등의 소비를 포함한 정원관광으로 나누고 각 범주를 원예, 조경, 산림분야로 나누어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원산업의 생산액은 약 11,966억 원, 유통액은 14,693억 원, 소비액은 약 828억 원이며, 총생산액은 27,487억 원으로 대략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원산업의 생산액은 원예분야 1.1조 원, 조경 및 산림분야 1,155억 원, 기타분야 11억 원 정도이고, 정원재료유통은 원예분야 8,845억 원, 조경 및 산림분야 945억 원, 기타 4,900억 원 정도가 된다. 정원관광의 경우는 영국, 미국, 호주와는 달리 뉴질랜드처럼 하나로 모아지는 데이터 수집은 없다. 개별적인 정원들로부터의 데이터는 공공정원 방문, 플라워/정원 박람회 관람, 정원교육이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몇몇 공공정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00,000명 미만의 방문자수를 가지는 공공정원으로 보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원 전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방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3.1 영국 사례

영국에서 정원(garden)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산재하여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주택재정비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Part 1_The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ousing include any yard, **garden**, outhouse and appurtenances belonging to~)
- 주택법(Housing Act 1996):62 Minor definitions: Part I “dwelling” means a building or part of a building occupied or intended to be occupied as a separate dwelling, together with any yard, **garden**, outhouses and appurtenances belong to it or usually enjoyed with it.
- 지역 개발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 : **10 Acquisition of land**
(3) Where the land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2) forms part of a common, open space or fuel or field **garden** allotment, 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may acquire(by agreement or, on being authorised to do so by the Secretary of Statemm compulsorily) land for giving in exchange for

the land or, as the case may be , right acquired.

- 도시 계획법(Planning Act 2008) : 131 Commons, open spaces etc: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1) This section applies to any land forming part of a common, open space or fuel or field **garden** allotment. (12) “common” , “fuel or field **garden** allotment” and “open space”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section 19 of the Acquisition of Land Act 1981(c. 67)
- 자연환경 및 지역커뮤니티법(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Agriculture” includes horticulture, fruit growing, seed growing, dairy farming and livestock breeding and keeping, and the use of land as grazing land, meadow land, osier land, market **gardens** and nursery grounds.

주택법 및 주택재정비법에서 garden은 주택 내 옥외공간의 기능으로서의 garden을 주택법에 포섭하여 규정하였다. 주택법의 경우 우리의 민간정원에 해당하는 garden을 주택의 ‘從物’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개발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garden은 우리의 도시농업용 텃밭에 해당하며, 주로 임대용지로서의 garden allotment로서 이는 개방된 공간(open space)에 속하며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자연환경 및 지역커뮤니티법에서 농업은 원예, 과수 재배, 종자 발아, 농업 경영 및 방목업, 정원 시장 및 양묘원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법은 우리의 6차산업에 해당하는 영역을 농업의 범주로 넓게 잡고 있다.

영국에서 garden이라 함은 주택에 부속된 공간 또는 도시농업용 텃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더 넓게는 큐식물원과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다.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산림법이나 수목원법에 해당하는 산림법(Forestry Act 1991), 왕립공원법(Royal Parks (trading) Act 2000)에서는 별도로 garden을 규정한 조문은 없다.

요컨대 영국에서 정원·수목원·식물원 관련 법령은 없으며, 유명한 ‘Kew Gardens’의 경우 큐식물원 이사회는 정부가 정한 선에서 예산을 할당받기도 하는데, 큐식물원 이사회는 당연하게도 환경, 식품 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산하 Non-ministerial department 이사이다. 즉, **식물원의 주무부처는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환경식품농업부이다.**

2.3.2 미국 사례

1) 커뮤니티정원법(Community Gardens Act)

미국은 정원 전반에 대하여 다룬 직접적인 정원법은 아니지만, 정원활동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원법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한 관련법으로 연방법인 **커뮤니티정원법(Community Gardens Act)**이 있다. Community Garden 활동을 통해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1960년대부터 도시의 사회문제와 환경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커뮤니티가든 법(Community Gardens Acts)을 제정하여 커뮤니티가든들과 그것의 활동에 기금제공을 지원함.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 커뮤니티정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Home gardening and landscaping에 약 85백만 가구 참여, 가구당 450\$/년 정도를 가드닝에 지출한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공동체정원법(Community Gardens Law)**은 **도시농업법(The Urban Agriculture Program (718) 722-2891)**의 하위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즉 도시농업의 하위 개념으로 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특징이며, 공동체 정원은 **미 농무부(USDA)**가 주무부처이다.

커뮤니티가든 법(Community Gardens Act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의 목적은 아래의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 (1) 신선한 과일, 야채의 이용가능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돕기 위한 커뮤니티 가든을 설립하여
- (2)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하고
- (3) 커뮤니티가드닝의 중요성과 가치를 대중에게 교육 및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커뮤니티가든 법(Community Gardens Acts)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법률에 있어서:

- (1) "커뮤니티가든" 용어는 지역사회에 있는 개개인을 위한 가든을 의미한다.
- (2) "자격을 가지는 단체"(이하 자격단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비영리기관
 - (B) 공공단체
 - (C) 지역에서 발전한 기관
 - (D) 복미 원주민 또는 부족 집단
 - (E) 전문적, 교육적 또는 봉사를 위한 단체
 - (F) 주 또는 지방정부 또는
 - (G) 주 또는 지방정부 기관

9) 출처 : 미국 연방 제정법 회의체기구 홈페이지 - <http://www.ncsl.org/research/agriculture-and-rural-development/community-gardens-state-statutes-and-programs.aspx>

커뮤니티가든 법(Community Gardens Acts)에는 커뮤니티 가든을 위한 보조금(제4조), 보조금 및 비용의 지원 방법(제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커뮤니티가든 법(Community Gardens Acts)은 정원에 대한 국가주도의 관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도의 관리라는 특징이 엿보인다. 특히 국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정원에 관한 부분을 일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에서 커뮤니티 정원은 꽃 같은 채소, 식용이나 비식용(nonedible) 식물 등 모든 식물 등을 주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재배하는 정원을 말한다. 커뮤니티 정원은 과일과 야채를 저렴한 자원을 투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커뮤니티 정원은 또한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중요한 야외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 사회의 정원은 개별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 사이에 개인 투자의 감각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홍보를 통한 공중 보건 비용의 절감, 공공 공간의 미화 등도 있다. 커뮤니티 정원은 또한 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조류 기타 생물종에 대한 서식지 제공, 공기와 물 오염의 필터링 및 도시 “열섬” 효과를 퇴치하여 도시 지역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토지를 원예 공간으로 제공하고 일관성있는 자금 조달원,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규제 사항은 단순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정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공공 토지와 재원 관련 법령은 지역사회 정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공유지에 조성된 정원은 사유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정원에 비해 책임을 덜 부과하며, 개인 정원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우려는 낮아진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 노인이나 청소년 그룹과 같은 취약 집단, 우선 순위 정책의 개발을 통해 원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원예 활동을 장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드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주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 각주의 정원산업 지원정책

○ 캘리포니아 주

2013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제정된 법률 제551호에 따르면, 카운티 또는 도시 지역의 식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농업 인센티브 지대(UAIZ)을

설정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 생산을 위한 최소 5년간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동의하는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캘리포니아에서 관개 농경지의 평균 에이커를 기준으로 낮은 비율로 평가하여 내놓으며, UAIZ 프로그램에서는 도시나 카운티의 계약을 중도 종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취소 수수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 평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12804.5 § Cal. Gov. Code도 커뮤니티 정원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 Cal. EDUC. Code § 51795-51797는 학생 교육 차원에서 학교 정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부에서 학습 학교 정원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규제 자문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고 학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학교당“ 최대 2,500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1,000명 이상 학교의 학생들은 최대 \$ 5,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출의 6 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 기관은 사업활동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Cal.Gov.Code은 66477 (f)는 지방 자치 단체가 “레크리에이션 지역 사회 정원 조성을 위해 토지와 시설을 충당할 수 있는 법령이다.

○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시)

DC ST § 48-402은 자발적인 기부 및 협상 계약을 통해 도시의 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 내 공터의 포괄적인 목록을 만들고, 식품 생산과 도시 정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 생산과 도시 정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반 비용의 기부 및 재배.“에 관한 장려 프로그램이다.

○ 일리노이주

47 Ill. Adm. Code 120.110(b)(6)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연방 커뮤니티 서비스 포괄 무상 제공 프로그램(CSBG)의 하나로서 지역 사회의 정원을 조성하는 근거법령이다.

○ 매사추세츠 주

330 CMR 18.02는 1년 미만의 기간 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및 민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그룹, 조직, 지역 사회가 정원의 땅을 사용하도록 “원예그룹 형성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직접 또는 협력기관을 통해 기술적,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원활동을 하려는 그룹은 지자체에 개시일을 포함, 정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원 내에서 할당되는 농지는 저소득 노인과

가족, 그리고 7, 16 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우선 순위로 지정된다. 정원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무료로 배부될 수 있으나, 판매할 수는 없다. 정원사는 좋은 상태에서 정원을 유지하고 화학 물질 사용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뉴욕주

뉴욕주 농업 및 시장 법(New York's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제2조는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정원의 사무실을 만들어 빈 공유지에 정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빈 공유지에 접근하려면, 지역 사회 단체는 정원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지역 사회 원예 목적을 위해 빈 공공 토지의 식별에 도움이 커뮤니티 가든에 빈 공유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지역 사회 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 기관을 조정,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정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령은 New York Parks Grant Program과 연관되어 Community 원예 조직의 적격성을 환경과 관련된 공중 보건 문제나 환경 보전과 결부되어 있다.

Article 5, section 96 of McKinney's General Municipal Law는 토지를 소유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지역 사회 원예에 사용되는 계약, 임대, 수수료, 또는 합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사회 원예 목적을 위해 빈 공공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상이나 손상에 대해 보험으로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또한 가능한 땅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등 지방자치단체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이 “가능한 동등한 사용 기회를 얻도록 “ 청소년 또는 노인 프로그램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료, 퇴비, 지역 사회 단체 구입 가능 씨앗 등 한정된 자원에서 지자체의 기여나 다양한 원예 활동이 구현될 수 있다.

2.3.3. 독일

독일의 시민정원(Kleingärten)은 행정법에 의한 국토개발, 토지분할, 주택 및 대지, 소정원에 해당된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토개발에 관한 원칙 및 실행 등을 규정하는 국토개발정서법 및 동 명령이 국토개발에 관한 준거법이 된다. 연방산림법은 공원, 정원 식물과 식물 묘지 역사 보존 문제의 경우 보호숲, 휴양림 등으로 묶어 산림을 보호한다. 건축법, 도시계획법은 토지이용계획시 표기로 공원, 스포츠, 게임, 목욕, 녹지, 정원을 규정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와 달리 독립적인 수목원 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정원을 행정법상 국가의 행정행위의 대상 혹은 허가 대상으로 보는 특징이 있다.

2.3.4. 일본

일본은 우리와 달리 독립적인 수목원법 및 정원법은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공원 등, 도시공원 등의 공원에 관한 법은 제정된다. 먼저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에서 지역제공원(地域制公園)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대표되는 곳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公共団体)가 일정한 지역 내의 토지소유권에 관계없이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 제한 및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제2조 1항)’은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국정공원(國政公園), 도도부현립자연공원(都道府県立自然公園)을 말한다.

다음 도시공원법(都市公園法)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都市公園法) 제2조 및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 제11조 제1항 ~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에, 동법은 “도로(園路), 광장, 화단, 모래밭, 식물원, 동물원, 야외무대, 수영장, 진열관(陳列館), 매점,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부지라 한다. 공원은 주로 자연적 환경에서 휴식(休憩), 감상(鑑賞), 산보, 유희(遊戯), 운동 등의 레크리에이션 및 지진, 화재 등의 재해 시 피난 등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공지(公共空地)이다(도시계획운용지침, 6판, 國土交通省, 2011년 7월).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정한 분류는(규칙 제7조 제5항) 가구공원(街区公園), 근린공원(近隣公園), 지구공원(地区公園), 종합공원(綜合公園), 운동공원(運動公園), 광역공원(広域公園) 및 특수공원(特殊公園)이 있다.

특수공원(特殊公園)은 풍치공원(風致公園), 동물공원, 식물공원, 역사공원, 묘지공원(墓園) 등 특수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다른 도시공원은 면적, 배치 등에 관해 기준이 지정되어 있으나 특수공원은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

요컨대, 개인 소유한 정원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필요에 의한 公園 개념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시민농원 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농업용 텃밭인 시민농원이 전국적으로 3,382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산출되는 농산물은 영리 목적이 아닌 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운영은 지자체, 농협, 농업인 등이 하고 있다.

2.3.5.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평가

정원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정원’에 관한 단행의 제정법령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Community Gardens’ 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주택재정비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정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법학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점은 주지할 만하다. 즉 대륙법은 조문 중심이고, 관념적이며, 연역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함에 반하여, 영미법은 판례중심이며, 경험론적이며, 귀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정원에 관한 입법례에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관한 간접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은 ‘Community Gardens’ 에서 정원의 관념을 도출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자연환경 및 지역커뮤니티법에서 정원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하였다.

반면 대륙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관한 간접적인 규정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독일법에서는 국가기관이 행정적인 규제 및 허가의 대상으로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일본은 정원 대신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公園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영미법보다는 대륙법이 정원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대륙법에서의 정원 개념과 영미법에서의 정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주도인가, 私人 및 지역, community의 주도인가 하는 점이다. 즉 대륙법에서는 정원에 관한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려고 한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정원에 대해 私人 및 지역의 주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특히 ‘公’ 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정원에 대해 접근하는 독일과 일본의 정원규정은 시사점이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국가=개인’ 인 관념이 있다. 일본의 예로 들자면 전통적인 일본의 가정주택에서는 개인의 정원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사적인 정원은 법의 영역으로 확장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公園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법제화하려 한다.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일본의 국민성과 문화가 법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영미법에서 정원 개념은 영미인들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넓은 잔디와 화훼를 보유한 정원은 영미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다. 개인의 정원에서 지역사회로, 종교단체, 사회단체로의 정원으로 정원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원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와 독일과 일본의 문화는 다르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문화는 다르다. 우리에게 일본처럼 국가의 신민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넓은 국토를 소유한 미국처럼 개인의 정원이 일상화되어 있고 개인의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 일이 생활화 된 국가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이다. 그러므로 영미법상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륙법식으로 행정법적인 접근이

나 공원의 개념의 강조도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통한 우리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시사점을 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3.6. 도시농업법

1) 도시농업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도시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소득창출을 위하여 혹은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민 혹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경작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실천행위를 말한다.¹⁰⁾ 이에 기초하여 본 도시농업의 대상은 마을의 자투리 공간, 주택의 자투리 공간(유휴지), 하천부지, 다리 위, 도심공원, 건물벽면, 현관, 베란다, 발코니, 거실, 사무실, 옥상, 그리고 별도의 식물공장 운영을 위한 건축물 등 매우 다양하다. 주택, 사무실과 같은 개별 건물, 학교, 캠퍼스, 마을 등의 단지, 그리고 도시의 공공공간 등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1년 도시농업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져,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및 시책을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인 의미의 ‘도시농업’은 이와 관련한 법제를 갖춘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도시농업법 제2조)를 말하며, 영리목적의 활동이 제외되는 등 일반적인 의미의 도시농업보다는 작은 범위이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란 의미에서 도시농업은 도시가 만들어진 문명 이후 세계 전역에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확산에 따라 도시농업은 쇠퇴하고, 농업은 도시의 기능이 아닌 농촌의 기능으로 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금 도시농업이 확산되었다. 그러한 이유로는 초기에는 식량생산, 오늘날에는 도시환경 개선, 안전한 먹을거리, 아동교육, 치유 및 건강증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

10) 한편 도시농업학자인 Jac Smit는 자신의 저서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정의하는 도시농업은, “도시 또는 도시 인근의 토지와 수상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 Jac Smit, Urban Agriculture: Food, Jobs, and Sustainable Cities - 2001 Edition, FOREWORD, fund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http://www.jacsmit.com/book.html>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 정원을 갖지 못한 노동자계급 등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텃밭을 구획하여 임대해주는 ‘Allotment’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Gardening’에 중점을 두고 작물재배를 위한 목적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시로 거주하면서 식량을 생산하도록 정부에서 텃밭을 내주는 ‘Kleingarten’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곡물, 채소 등의 생산이 주된 목적이었다. 일본의 경우 ‘시민농원’ 제도가 있는데, 이는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 형태의 도시농업이다. 미국의 경우 ‘Victory garden’, ‘Kitchen garden’은 어린이들의 비만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원이며, ‘Community garden’은 주민들이 농사를 통하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마을농원, ‘Vertical garden’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층건물 형태의 식물공장이다.¹¹⁾ 쿠바의 경우 1990년대 구소련의 원조삭감,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가적으로 도시내 유기농업이 시작되었다.¹²⁾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도시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약 1/3은 도시 내부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 도시민의 여가 공간, 치유 공간,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부가적 기능이 오히려 주된 역할로 뒤바뀌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물공장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도시농업법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의 관심은 도시 환경적 문제 해결, 그리고 웰빙, 로하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자연과 접촉 기회 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 도시농업은 체험형(텃밭농원, 관광농원, 가정텃밭), 학습형(실습농장, 학교급식, 농업공원), 교류형(소비자생산자 연대, 소비자간 연대, 소비지 직판장, 1사1촌 운동 등), 순환형(도시의 남은 음식의 퇴비화사료화, 도농 순환형 농업 등) 등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을거리뿐 아니라 빗물의 흡수와 순환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등의 공학적 기능 또한 도시환경개선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도시농업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환경 개선, 도시녹화, 도시민의 정서 순화, 도시공동체 회복 등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각국마다 체계적인 법제를 완비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인 시도이며, 도시민의 농업·농촌

11) 미국의 퇴비를 활용한 도시농업에 관하여는 <http://epa.gov/recycle/composting.html> 또는 <http://www.mastercomposter.com>

12)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하여는 요시다 타로(안철환 옮김),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2002.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마련에 좋은 시민교육의 장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도시농업지원조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1년 도시농업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3) 해외의 도시농업

과거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악화된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최근 도시민이 도시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경제적으로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가져오는 한편, 도시 유휴지 활용을 통한 공간 이용의 효율화, 녹지 조성을 통한 도심온도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감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 정서 순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민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과 도시농장(City farm) 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¹³⁾ 각각 관련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표 2-23).

표 2-23. 주요 선진국의 도시농업 추진사례

독일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영국 얼롯트먼트(Allotment)	일본 시민농원(市民農園)
-농원수: 100만개(공유지) -임대: 25년(300㎡, 연 15~20유로) -판매 및 주거제한 (운영: 클라인가르텐협회) -법: 연방소정원법	-농원수: 30만개 -임대: 1년(253㎡, 연 15파운드) -판매 및 주거제한 (운영: 얼롯트먼트 조합) -법: 얼롯트먼트법	-농원수: 3,382개 -임대: 2~3년(24㎡, 연 3만엔) -영리목적이 아닌 판매허용 (운영: 지자체, 농협, 농업인) -법: 시민농원정비촉진법

13) 주요국의 도시텃밭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Kleingarten 100만개, 영국에서는 Allotment 30만개, 일본에서는 시민농원 3,400개, 미국 뉴욕에서는 옥상텃밭 빌딩 600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텃밭이 8,200개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Ⅲ.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3.1. 해외정원 사례연구
- 3.2. 국내정원 사례연구
- 3.3. 시사점 도출

III.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3.1. 해외정원 사례연구

3.1.1. 영국 큐 가든(Royal Botanic Gardens, Kew)

큐 가든은 서섹스(Sussex)의 Wakehurst Place에 있는 식물원과 함께 Royal Botanic Gardens, Kew에 의해서 운영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식물 연구 및 교육 기관이다. 테임즈 강변 위 리치몬드(Richmond)의 런던 큐 공원(Kew Park)에 있던 1759년에 조성된 외래식물 정원(exotic garden)을 확장하여 1840년에 설립되었다.

큐 가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물들을 수집하고 있다. 3만종 이상의 식물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식물표본집(herbarium)은 대략 7백만 종(species) 이상을 보존하고 있다. 750,000권 이상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며, 175,000개 이상의 식물그림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큐 가든은 7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환경국의 식품 및 지역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 의해서 재정 지원되는 독립적인 공공단체이다. 식물원 연구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3년제 학교를 운영 중이며 졸업생은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큐 매거진의 발간 및 국제적 차원에서 표본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전 세계 보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과 생물다양성협약(BCD)의 이행을 위한 보전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 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유산현장 관리계획, 유산보전계획,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였다.

큐 가든은 런던의 최고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고, 2003년에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연간 방문객수는 195만 명 정도이며 예산은 932억 원(정부보조 52%, 입장료 등의 수익 27%, 기부금 19%)이다.

1) 접근성 및 진입부

큐 가든은 ‘District Line & London Overground’의 큐 가든 역(Kew Gardens station)으로부터 0.5km에 위치하여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다. 기차역으로부터 큐 가든에 도착하면 15 파운드(26,5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빅토리아 정문(Victoria

Gate)을 통과하게 되며(그림 3-1), 이 때 가장 먼저 빅토리아 플라자 카페와 상점 (Victoria Plaza cafe & shop)을 만나게 된다(그림 3-2). 카페와 상점에서는 정원 관련 서적, 문구, 정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다(3-3,4,5).



그림 3-1. 큐 가든 빅토리아 정문(Victoria Gate)



그림 3-2.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Victoria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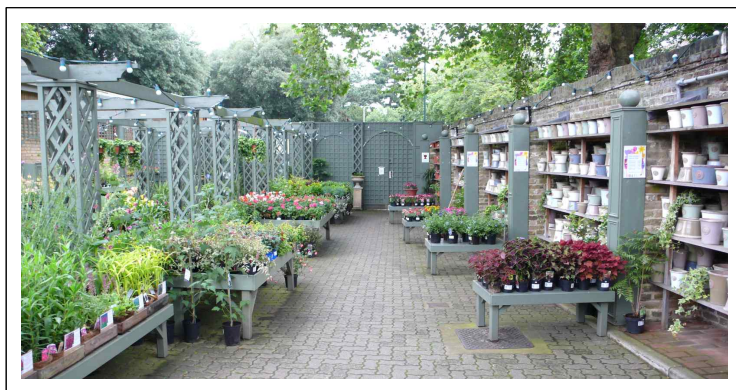


그림 3-3.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 정원식물·화분 판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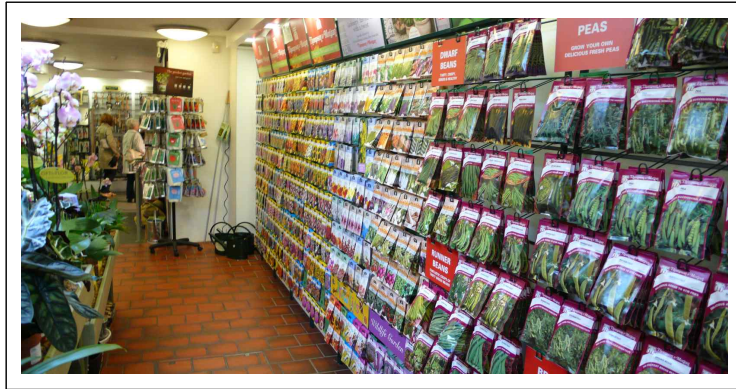


그림 3-4.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 종자(seeds) 판매장



그림 3-5. 큐 가든 빅토리아 플라자 정원용품 판매장

2) 주요 특징

(1) 팜 하우스(Palm House)

야자류와 열대·아열대 식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성된 가온시설을 갖춘 유리온실이다. Decimus Burton과 Nicole Burton에 의해서 설계된 팜 하우스는 1844년과 1848년 사이에 연철(wrought iron)로 제작된 첫 번째의 대형 구조물이었다. 진입부에는 프랑스 양식의 화문화단(parterre)이 있으며(그림 3-6), 뒤편에는 장미정원(rose garden)이 있다. 온실 내부에는 대형 야자들을 포함한 열대·아열대 식물들이 생육하고 있다(그림 3-7). 계단을 따라서 상층부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8). 뿐만 아니라 지하 전시실로 내려가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9).



그림 3-6.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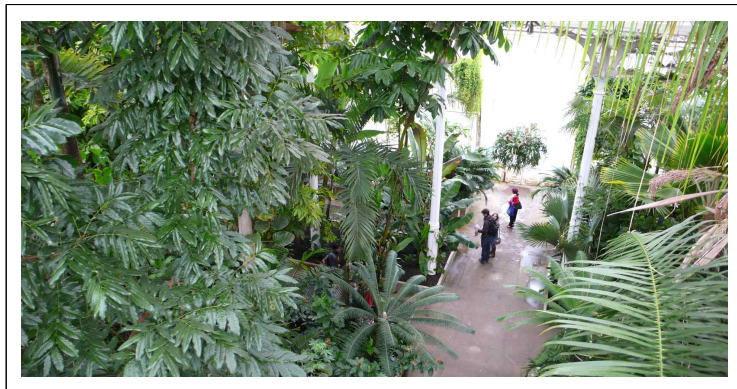


그림 3-7.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내부에서
생육하고 있는 대형 열대 및 아열대 식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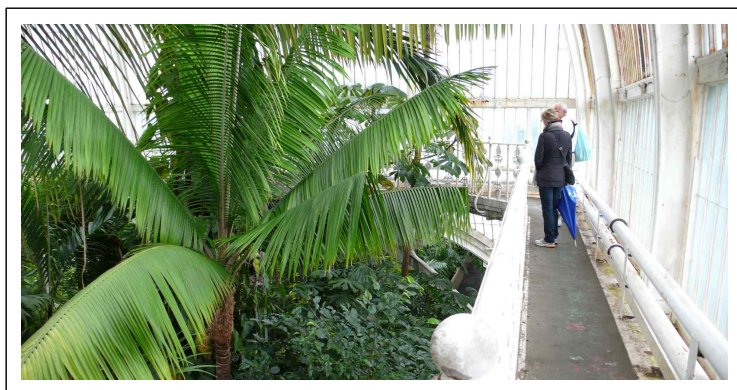


그림 3-8.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상층부
이동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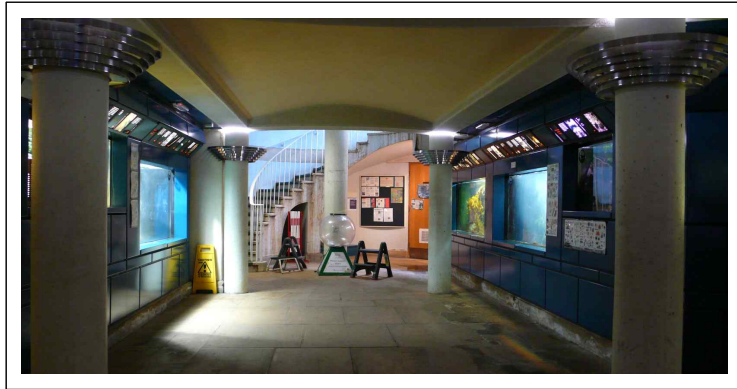


그림 3-9. 큐 가든 팜 하우스(Palm House) 지하 해양생물 전시실

(2) 지중해정원(Mediterranean Garden)

지중해정원은 팜 하우스(Palm House)와 온대온실(Temperate House) 사이에 있는 체리(Cherry) 산책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에 큐 가든이 조성한 지중해정원 중앙에는 윌리엄 왕의 사원(King William's Temple)이 있다(그림 3-10). 윌리엄 왕의 사원(King William's Temple)은 빅토리아 여왕이 윌리엄 4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윌리엄 4세의 건축가였던 Sir Jeffry Wyattville의 설계로 1837년에 건축되었다.

윌리엄 왕의 사원(King William's Temple) 서쪽에 2,000m² 면적은 전형적인 지중해 자연 서식지를 묘사하고 있다. 지중해 자연 서식지의 특징을 가지도록 정원을 조성한 큐 가든의 목적은 지중해 식물들의 경제적 이용들, 서식지가 지원하는 생명의 다양성, 서식지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노력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Royal Botanic Gardens, Kew, 2015). Stone pines(*Pinus pinea*), Tuscan olive trees(*Olea europaea*), Italian cypress(*Cupress sempervivens*)가 감귤류와 라벤더와 같은 관목들 위로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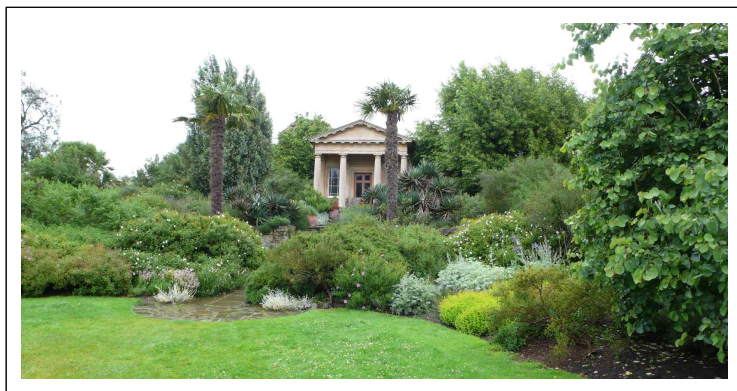


그림 3-10. 큐 가든 지중해 정원(Mediterranean Garden)과 윌리엄 왕의 사원(King William's Temple)

(3) 온대식물온실(Temperate House)

역사적인 건축물로서 1860년에 건립된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빅토리아 시대 유리온실이다(그림 3-11). 유리온실의 면적은 4,880m²이고 높이는 최고 19m이다. 전 세계에서 전례 없이 많은 식물들을 수집하였던 빅토리아 식물수집가들에 의해서 큐 가든은 많은 반내한성(semi-hardy) 온대식물들을 위한 유리온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시아, 아메리카, 오스트랄라시아(호주 및 뉴질랜드와 주변 폴리네시아 섬들), 남아프리카 원산의 온대식물들을 유리온실 내에서 구획 설정하여 보존 및 전시하고 있다(그림 3-12).



그림 3-11. 큐 가든 지중해정원(Mediterranean Garden)으로부터 이동통로 위의 수목 열식과 온대식물온실 (Temperat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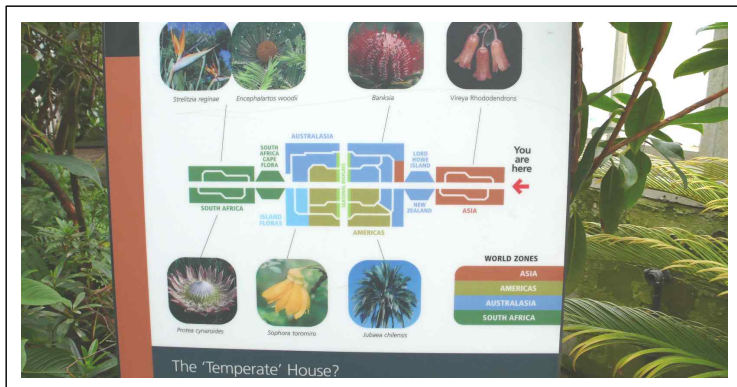


그림 3-12. 큐 가든 온대식물 온실(Temperate House) 내부에 설치된 표지판에서 전 세계 지역별 온대식물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음

당시 큐 가든의 운영자였던 Sir William Hooker는 새로운 유리온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1859년에 Palm House을 설계하였던 건축가 Decimus Burton에게 새로운 대형 온대식물온실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온대식물온실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63년에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온대식물온실은 전 세계로부터 도입된 많은 식물들로 빠르게 채워졌

고, 광범위한 온대식물들에 대한 연구와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때때로 산책을 위한 유리 온실로서 빅토리아 시대 유행을 따르고 있어서 ‘겨울 정원(Winter Gardens)’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온대식물온실(Temperate House)은 현재 복원을 위해서 폐쇄되어 있고, 2018년에 다시 대중에게 개방될 것이다. 복원작업을 통하여 향후 온대식물온실은 보존업무 이상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큐 가든은 공동체들과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을 위한 그리고 공동체와 참여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온대식물온실의 옥타곤들(octagons)은 식물연구에 초점을 맞춘 전시들을 제공할 것이다.

견습생들을 위한 교육은 10개 분야의 원예교육과 6개 분야의 온실 건축교육에서 실시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견습생 교육은 보원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매년 각 분야에서 2명이 채용될 것이다. 유리온실, 식물번식 및 보존, 일반 원예 및 육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온실 건축을 위한 광범위한 특별한 철재와 유리작업의 복원 기술을 경험하게 된다.

온대식물 온실의 복원작업을 위해서 Heritage Lottery Fund, Defra, Eddie and Sue Davies, Linbury Trust, Garfield Weston Foundation, Wolfson Foundation, J Paul Getty Jr Charitable Trust 등이 재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Horticultural and Construction Apprenticeships, Ingram Trust, CHK Charities Limited, Sandra Charitable Trust 등이 재정을 기부하였다.

(4) 중국식 파고다

큐 가든의 아이콘인 중국식(Chinoiserie) 파고다(Pagoda)는 1765년에 완공되었다(그림 3-13). 10층의 팔각형 구조물은 높이가 약 50m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복원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이다.



그림 3-13. 큐 가든 파고다 통경선에서 바라본 중국식 파고다(Pagoda)

(5) 일본식 관문과 정원

큐 가든의 일본식 관문(Japanese Gateway)은 일본 교토에 있는 Nishi Hongan-ji 관문(gateway)의 4/5 축소 모형이다(그림 3-14). 1910년 런던 White City에서 개최된 일본-영국 전시회에서 제작된 것을 다시 분리하여 1911년에 파고다 옆의 Mossy Hill에 다시 조립한 것이다. 일본식 관문 주변에는 일본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3-14. 큐 가든 일본식 관문과 정원

(6) Rhizotron and Xstrata Treetop Walkway

International Biodiversity Day 2008에 대중에게 개방된 Rhizotron and Xstrata Treetop Walkway는 온대식물온실(Temperate House)과 호수 사이에 있는 수목원(arboretum) 안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3-15). 런던 아이(London Eye)를 설계하였던 Marks Barfield Architects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높이 18m이고 길이 200m인 보행 통로는 방문자들에게 라임(lime), 스위트 체스트넛(sweet chestnut), 참나무(oak) 등의 수관 주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한다. 봄철에 개화하는 화목류의 꽃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조류, 곤충들, 나무에 붙은 이끼류와 곰팡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3-15. 큐 가든 Rhizotron and Xstrata Treetop Walkway에서 수목원(arboretum)을 조망할 수 있음

(7)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는 황폐화되어가는 26개의 소규모 건축물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다(그림 3-16). 큐 가든의 설립자인 Princess Augusta의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Princess of Wales인 Diana에 의해서 1987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는 하나의 지붕 아래서 10개의 컴퓨터로 통제되는 기후대들(climatic zones)을 가지는 큐 가든에서 가장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온실이다. 두 개의 주요한 기후대는 전 세계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조한 열대지역(dry tropics)’ 과 열대우림과 맹그로브(mangrove) 습지와 같은 생태계로부터의 습윤한 상태를 선호하는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 ‘습윤 열대지역(wet tropics)’ 이 있다(그림 3-17,18). 미기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8개 기후대들은 사막과 사바나 식물들을 포함하는 계절성 건조지역, 식육식물들, 고사리류, 난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림 3-16. 큐 가든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외부 전경



그림 3-17. 큐 가든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건조한 열대지역의 선인장 및 다육식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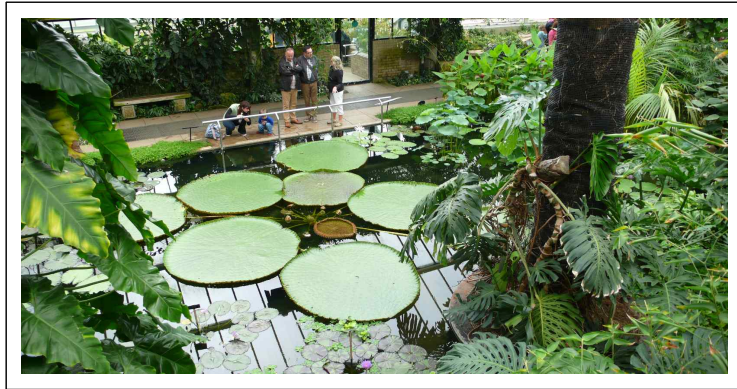


그림 3-18. 큐 가든 Princess of Wales Conservatory 습윤한 열대지역의 열대우림식물 및 수생식물 전시

(8) 기타

Rhizotron and Xstrata Treetop Walkway를 지나서 숲(Woodland), 레드우드(Redwood), 침엽수원(Pinetum), 철쭉정원, 대나무정원, 아잘레아정원, 목련 등의 수목원(arboretum)이 있으며, 팜 하우스(Palm House) 주변에 수련온실(waterlily house), Davies Alpine House 등이 있다(그림 3-19,20).



그림 3-19. 큐 가든 수련 온실(Waterlily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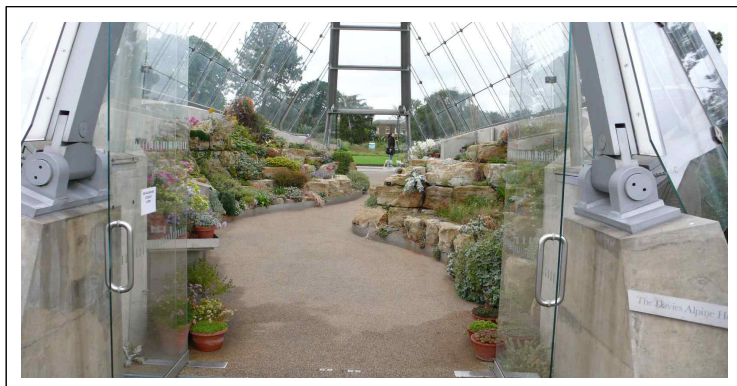


그림 3-20. 큐 가든 Davies Alpine House

3.1.2. 영국 에든버러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Edinburgh)

1670년에 약용식물원(physic garden)으로 조성되었다. 난류인 멕시코 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서안 해양성 기후를 가진 에든버러 식물원은 세계적인 식물학 연구, 식물보존, 교육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3-21). 15,000종 이상의 식물종과 3,000,000개 이상의 식물표본을 보유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재정 지원되는 독립적인 공공단체이며 등록된 자선단체이기도 하다. 에든버러 식물원은 다양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보전형 관광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대중들의 방문 유도 가능성이 높은 관광 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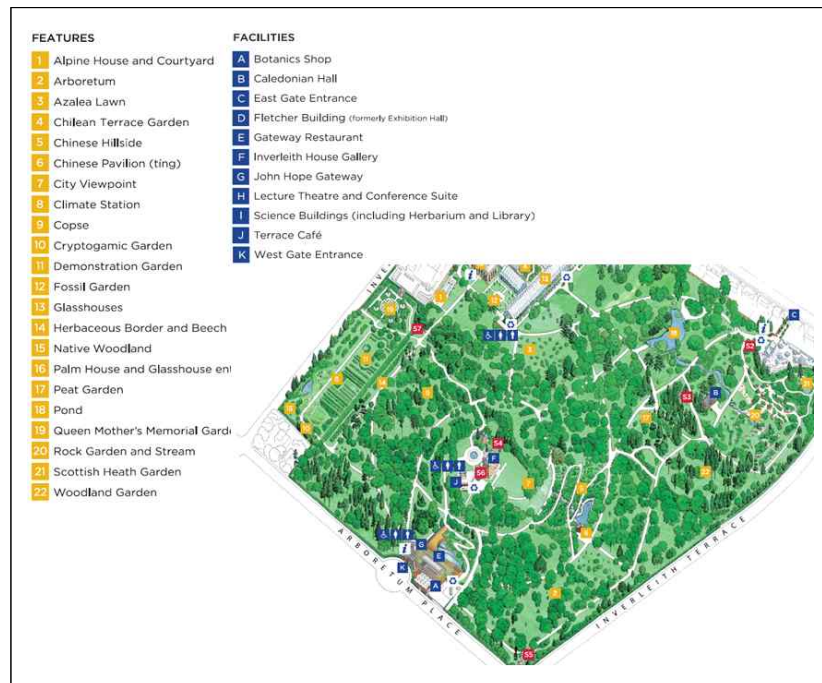


그림 3-21. 에든버러 식물원의 공간구성

1) 접근성 및 진입부

에든버러 Inverleith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Waverly Station에서 약 2.4km 떨어져 있어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다. 시내 중심부에서 버스이용이 가능하며, 시내 관광버스도 거쳐 가는 지점이고, 자전거나 도보 이용도 가능하며 주차장 시설이 있어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도 가능하다. 또한 중심부의 대표적인 관광자원들과 인접하여 향후 연계 관광 프로그램개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에든버러 성(Edinburgh castle), 프린지 축제(Edinburgh Festival Fringe) 등으로 에든버러에 방문

하는 사람들은 대략 1백만 명 정도이며, 에든버러 식물원의 연간 이용객수는 약 800,000명이다.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온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4.5 파운드(8,000원)이다.

진입부로서 2009년 10월에 새롭게 건축된 John Hope Gateway는 18세기 왕립 관리자인 Professor John Hope를 기념하여 명명되었다. 식물원의 중심시설로서 기본적인 전시, 안내, 교육,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다(그림 3-22,23,24,25,26,27). 건축물은 수동 환기(passive ventilation), 우수 재활용(rainwater recycling), 스마트 조명(smart lightening), 옥상녹화(green roof), 바이오매스 보일러(biomass boiler), 풍력발전기(wind turbine), 태양열 온수 패널(solar water heating panels), 태양광전기 패널(photovoltaic panels) 등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그림 2-28).



그림 3-22.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2층에 위치한 휴게 및 전시공간



그림 3-23.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진입부에 위치한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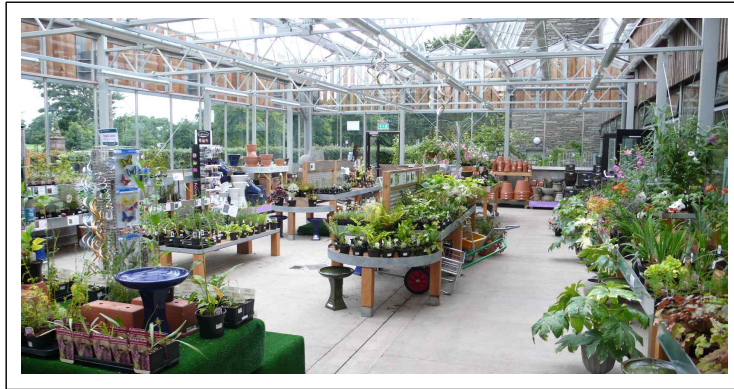


그림 3-24.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정원식물 판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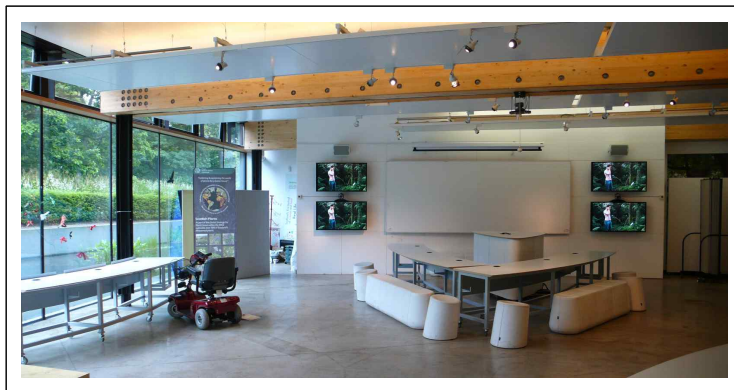


그림 3-25.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내부의 교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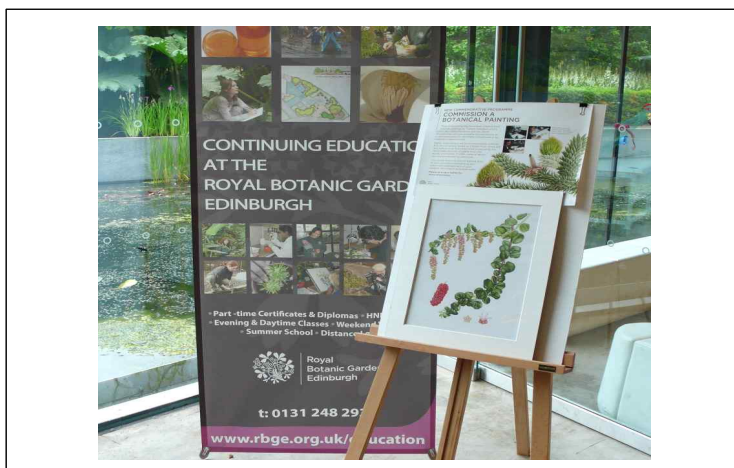


그림 3-26.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내부에 설치된 에든버러 식물원에서 진행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보타닉 일러스트 자격증 및 전문학사 교육과정



그림 3-27.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 내부에 설치된 에든버러 식물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안내: 식용정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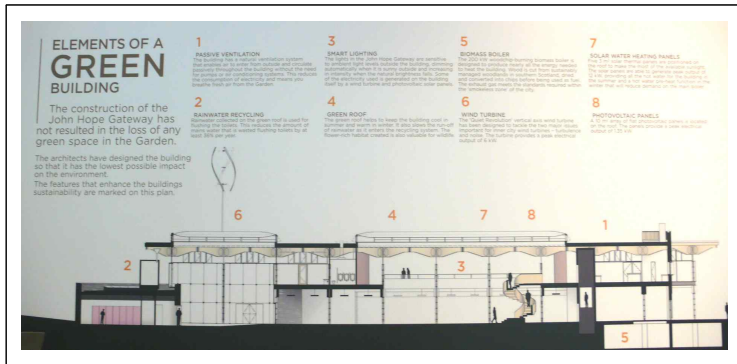


그림 3-28. 에든버러 식물원 John Hope Gateway의 그린 빌딩을 위한 구성요소에 관한 안내판

2) 주요 특징

(1) Herbaceous border and beech hedges

영국 정원양식의 특징 중 하나는 생울타리 및 초화류 경계식재이다. 그림 3-29는 비치(beech) 생울타리에 접하여 초화류 경계식재 사례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림 3-29. 에든버러 식물원 내 비치(beech) 생울타리 및 초본 경계식재 전시

(2) Queen mother's memorial garden

여왕의 어머니인 Elizabeth Bowes-Lyon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에 조성하였다(그림 3-30). 정원 내 4개의 공간은 여왕의 어머니가 다녔던 4개의 대륙(아시아, 유럽, 북미, 남반구)을 상징하며, 각 대륙을 원산지로 하는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중앙부의 미로는 협죽도과의 머틀(myrtle)로 조성되었는데 맞물리는 E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을 상징한다(그림 3-31). 정원의 중심에는 여왕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파빌리온(pavilion)이 있고 여기에는 기념패(commemorative bronze plaque)가 있다. 정원 구조물과 공간구분 동선의 포장(paving)은 Caithness stone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살리고 있다. Caithness는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옛주를 말한다. 정원이 가장 자리를 둘러싼 조각된 석판(tablet)은 여왕의 어머니와 연관된 협회(society), 자선단체(charity), 회사(company) 등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 역시 Caithness stone이 사용되었다.



그림 3-30. 에든버러 식물원 Queen mother's memorial garden의 공간구성을 설명하는 안내판



그림 3-31. 에든버러 식물원 Queen mother's memorial garden 내부의 머틀(myrtle)로 조성된 미로

(3) 사례정원(Demonstration Garden)

생울타리(hedge)로 구획이 나누어져 단일 주제의 정원공간(garden room)을 조성하고, 그 안에 서로 다른 형태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정원이다. 답사를 하였던 2012년에는 식용정원 프로젝트(edible garden project)가 진행 중으로 부엌정원(kitchen garden)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3-32). 영국의 부엌정원(kitchen garden)은 채소, 과일, 허브 사이에 초화를 식재하여 미적 효과를 높인다. 일부 공간은 도시텃밭(allotment garden) 형식으로 학교, 그룹에게 배정되어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들이 정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부엌정원(kitchen garden)에서 수확된 식물들은 식물원 내 레스토랑에서 식재료로 이용되어 시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홍보하고 있었다.



그림 3-32. 에든버러 식물원 사례정원에서 진행 중인 식용정원 프로젝트 안내판



그림 3-33. 에든버러 식물원 사례정원에서 진행 중인 식용정원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엌정원

(4) 스코틀랜드 건강정원(Scottish heath garden)

정원 내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및 생태적 서식처를 조성하고 있다. 건강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자생식물들을 식재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제공한다. ‘Flora

Celtica' 라는 유럽의 켈틱(Celtic) 국가들의 자생식물들에 대한 지식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목적의 국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생식물들과 전통적인 활용방법들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34).



그림 3-34. 에든버러 식물원 스코틀랜드 건강정원(우측) 및 안내판(좌측)

(5) 중국식 정원(Chinese hillside)

중국과의 공동작업으로 1997년에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중국 리지양 식물원(Lijiang botanic garden)을 설립하면서 지속적인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리지양은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적으로 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 에든버러 식물원은 중국 외 지역으로는 중국 원산 식물들을 가장 많이 수집 및 보존하게 되었다. 철쭉류(rhododendrons), 나리류(lilies), 용담(gentians), 앵초(primrose), 포피(poppies) 등을 포함하여 약 16,000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35. 에든버러 식물원 중국식 정원(Chinese Hillside)

중국식 정원 내 산언덕(hillside)의 표현은 리지양(Lijang) 근처 Jade Dragon Snow Mountain의 경사지(slope)를 연상하도록 설계되었다. 큐 가든과 마찬가지로 동양문화에 대한 호감과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형물이나 식재양식뿐만 아니라 원래 지역의 식물종 선정에 중점을 두어 중국의 경관을 재현하려고 시도하였다(그림 3-35).

(6) 암석정원(Rock garden)

식물원의 주요한 경관적 특징 중 하나로서 계절별로 다양한 색채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그림 3-36). 1871년 정원가인 James McNab에 의하여 처음 조성되었다. 당시 실제 고산식물들로 구성된 McNab의 암석정원은 당시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위틈으로 구불구불한 보행통로들, 계류, 폭포 등이 변화 있는 지형에 구획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산악지대에서 온 5,000종 이상의 식물들과 스코틀랜드 고산지역으로부터 선발된 식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암석정원에 일본과 일본 식물들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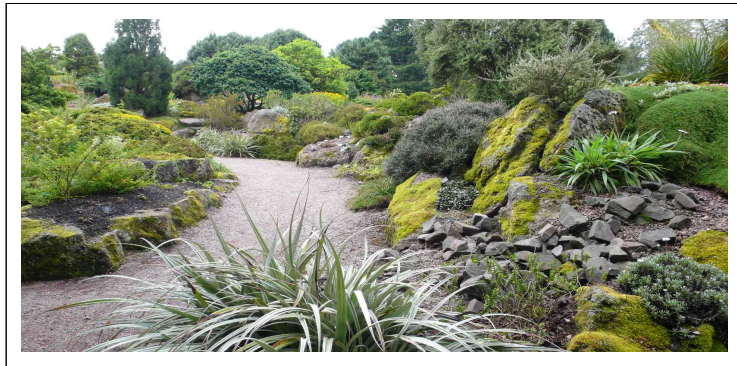


그림 3-36. 에든버러 식물원 암석정원(Rock Garden)



그림 3-37. 에든버러 식물원 암석정원에 설치된 일본 및 일본식물 안내판

(7) 기타

고산온실(Alpine House) 및 마당정원(Courtyard), 빅토리안 팜 하우스 및 유리온실(Victorian Palm House and Glasshouses), 화석정원(Fossil Garden), 인버레이스 주택(Inverleith House) 등이 있다. 먼저 고산온실은 고산식물들 중에서 야외에서 생육이 어려운 식물들을 위하여 제작된 유리온실이다. 암석정원에 적합한 왜성의 내한성, 내건성 등이 강한 식물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수집하여 보존 및 전시하고 있다.



그림 3-38. 에든버러 식물원 고산온실(Alpine House) 및 마당정원(Courtyard)

빅토리안 팜 하우스 및 유리온실(Victorian Palm House and Glasshouses)은 1858년에 완공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통양식의 팜 하우스(Palm House)이며, 유리온실의 주출입구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3-39). 큐 가든 팜 하우스와 유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로 온대산 야자류, 원시 고사리류, 난류 등이 보존 및 전시되고 있다. 온실에서는 10가지 이상 기후대들(climatic zones)의 식물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후적 특성에 맞게 조절된 온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열대수생식물 온실은 온실의 주요 전시공간 중 하나이다. 큐 가든 수련온실처럼 여름 동안 대형 수련으로 덮여 장관을 이룬다. 열대온실은 식물과 사람(Plants & People)이란 주제로 바나나부터 커피와 코코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식용작물들을 보존 및 전시하며, 식품산업, 의약품 연구 등에 의한 식물의 이동 및 열대식물로 생산되는 식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빅토리안 팜 하우스 및 유리온실(Victorian Palm House and Glasshouses) 주변에 위치한 화석정원은 영국에서 가장 큰 나무화석을 전시해 놓았고, 그 주변에 마당정원(Courtyard)을 조성해 놓았다. 화석정원은 비정기적인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림 3-39. 에든버러 식물원 빅토리안 팜 하우스 및 유리온실(우측)과 화석정원(좌측)

인버레이스 주택(Inverleith House)은 18세기 대저택으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랑 중 하나이다(그림 3-40). 비정기적으로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한다. 계절별로 전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때때로 식물원 야외 및 온실에서 전시회를 가지기도 한다. 주택의 뒤쪽에는 임시 전시와 휴게를 위한 잔디, 카페 등 편의시설이 있다. 화랑의 예술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정원 곳곳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명작가들의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일종의 식물원 내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0. 에든버러 식물원 비정기적인 예술 전시를 위해서 화랑으로 활용되는 인버레이스 주택(Inverleith House) 전경

3.1.3. 영국 위슬리 정원(RHS Garden Wisley)

런던의 남쪽 서레이(Surrey) English county에 있는 위슬리(Wisley)에 위치한 왕립 원예협회의 정원이며, 큐 가든 다음으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들을 받아

들이는 정원이다. 왕립원예협회는 위슬리(Wisley)를 포함하여 할로우 카르(Harlow Carr), 하이드 홀(Hyde Hall), 로즈무어(Rosemoor)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90명의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슬리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목표는 모든 연령의 방문객들에게 정원에 대한 영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래 위슬리 정원은 빅토리안 시대의 사업가이며 RHS 회원이었던 윌슨(George Ferguson Wilson)이 1878년에 243,000m²의 부지를 구입하여 설립된 정원이다. 그는 부지의 일정 구획에 ‘오크우드 실험정원(Oakwood Experimental Garden)’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재배가 곤란한 식물들을 성공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윌슨(Wilson)이 1902년에 사망한 후에 이탈리아 해안 피한지(Italian Riviera)에 유명한 ‘라 모르톨리아 정원(Garden La Mortola)’을 조성하였던 헨버리(Sir Thomas Hanbury)가 오크우드(Oakwood)를 구입하였고, 그는 1903년에 ‘라 모르톨리아 정원(Garden La Mortola)’과 ‘오크우드 실험정원(Oakwood Experimental Garden)’을 왕립원예협회에 제공하였다.

방문자 추이는 1905년에 5,250명, 1908년에 11,000명, 1920년대 후반에 48,000명, 1957년에 170,000명, 1978년에 400,000명을 초과하였고, 1985년에 500,000명, 1987년에 600,000명이었다.

1) 접근성 및 진입부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정도 거리에 있으며, 큐 가든이나 에든버러 식물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위슬리 정원의 주차장에서 진입부로 이동하여 성인 기준으로 13.2 파운드(23,600원)를 지불하고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기 전 또는 관람을 마친 후에 진입부에는 다양한 상점들과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그림 3-41).



그림 3-41. 위슬리 정원의 진입부 전경

진입부 주변 및 연구소(Laboratory) 내부에는 정원센터협회에 소속된 식물센터(Plant Center) 및 선물용품 상점이 있다(그림 3-42,43). 다양한 정원식물들, 종자 및 구근, 정원용품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RHS 회원들에게 정원활동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44,45).



그림 3-42.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배치도



그림 3-43.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식물 판매장



그림 3-44.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용토 및 정원용품 판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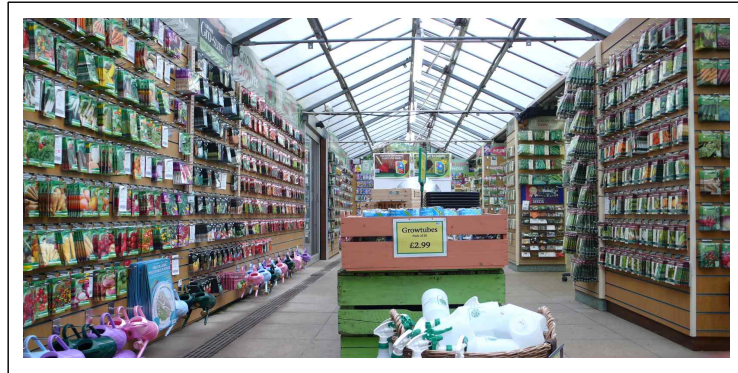


그림 3-45. 위슬리 식물 센터(Wisley Plant Center) 종자 판매장

2) 주요 특징

위슬리(Wisley)는 왕립원예협회에 의해서 오늘날 971,000m²의 대규모 부지 위에 조성된 다양성을 가진 정원이 되었다(그림 3-46). 정원의 중앙부에는 수많은 정형 및 비정형의 장식적인 정원들과 여러 개의 유리온실들이 있고, 정원 중앙부 주변에는 조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원들이 있다. 중요한 특징으로, 위슬리는 방문자들에게 정원 조성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정원들(model gardens)’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들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포장(trials field)’ 1개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과학적 연구와 원예실무연습을 위한 연구소(Laboratory)가 본래 1907년에 개소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증축되었다(그림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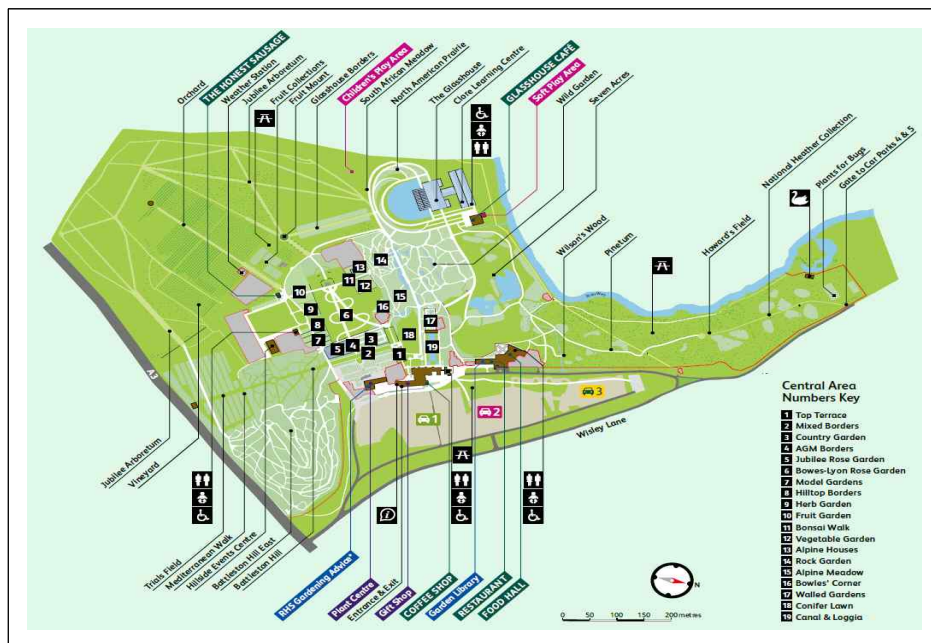


그림 3-46. 위슬리 정원의 공간구성



그림 3-47. 위슬리 정원 연구소(Laboratory)

2005년 4월 티치마쉬(Alan Titchmarsh)는 2백주년 기념 유리온실(Bicentenary Glasshouse) 건설을 착수하였다. 유리온실 조성 예산은 7.7백만 파운드(137.8억 원)이며 2007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온실은 3,000m²의 면적을 차지하며, 함께 조성된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온실은 사막, 열대, 온대 기후대를 대표하는 3개의 주요 식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3-49,50,51).



그림 3-48. 위슬리 정원 유리온실(Glass House)



그림 3-49. 위슬리 정원 유리온실(Glass House) 주변 호수와 북미 초지정원

큐 가든과 에든버러 식물원과 같이 위슬리 정원에서도 중국식 정원양식인 정자(Chinese Pavilion)와 일본식 정원양식인 분재 산책로(Bonsai Walk)가 도입되어 있다.



그림 3-50. 위슬리 정원 7개의 단풍나무 정원(Seven Acres) 주변의 연못에 조성된 중국식 정자(Chinese Pavilion)



그림 3-51. 위슬리 정원 분재 산책로(Bonsai Walk)

3.1.4. 호주 시드니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Sydney)

1987년에 블루 마운틴에 설립된 마운트 토마 식물원(Blue Mountains Botanic Garden, Mount Tomah)과 1988년에 캄벨타운(Campbelltown)에 설립된 마운트 아난 식물원(Australian Botanic Garden Mount Annan)과 함께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대중에게 개방되는 3대 주요 식물원들 중의 하나이다. 2003년부터 마운트 토마 식물원, 마운트 아난 식물원, 시드니 식물원에 접해있는 일종의 공원(Park)과 같은 도메인(The Domain, Sydney)과 함께 Royal Botanic Gardens & Domain Trust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본래 호주의 첫 번째 농장인 ‘나인 에이커스 인 콘(Nine Acres in Corn)’ 이 영국 해군의 군인이자 식민지 행정관이었던 필립 총독(Governor Authur Phillip)에 의해서 1788년에 설립되었다. 1817년에 식물학자인 프레이저(Charles Fraser)가 공식적인 식물수집과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821년 공식적으로 식물원 감독 임무를 맡으며 시드니 식물원은 호주 최초의 식물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에서 수집된 식물들의 보존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식물원 총면적은 640,000m²이며 현재 식물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300,000m²이고, 온실을 포함하여 18개의 주제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총 8,900여 종의 식물들과 75,000개의 식물표본을 보존하고 있다. 1986년에 캐릭 챔버스 교수(Professor Carric Chambers)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1996년까지 10년 동안 장미정원(1988), 양치식물 숲(1993), 허브정원(1994), 오리엔탈정원(1997년)이 대중에게 개장되었고, 희귀종, 멸종식물정원(1998년)을 조성하였다.

매년 대략 38백만 명이 방문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2013-2014년 운영관리비 예산은 46백만 호주달러(391억 원)이었다. 그 중에 20.4 호주달러(173.4억 원) 또는 대략 45%는 주정부 예산이다. 운영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정부의 시설비 예산은 9.1백만 호주달러(77.4억 원)였다. 보조금, 기부금, 상품 판매 및 서비스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2013-2014년 총수입 예산은 대략 21.3백만 호주달러(181.6억 원)이었다. 주정부의 수입의 주요원은 주차비, 장소 대여료, 시설 대여료, 판매, 보조금, 기여금이다. 환경문화유산국(The 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이 정보기술 지원, 금융 및 인력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3-2014년에 42개 프로그램에 66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48,672 시간 또는 1백만 호주 달러(8.5억 원)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러나 시드니 식물원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아래의 2015년 6월 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뉴사우스웨일즈(Sydney Morning Herald, New South Wales)에 ‘Sixteen staff lost in NSW budget cuts to Botanic Gardens funding’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시드니 식물원은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입 창출에 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드니 식물원은 이번 주에 전달될 추가적인 주정부 예산삭감에 따라서 상업적 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더 많은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번 예산삭감은 2015-2016년 말까지 16명의 전일제 직원 감원과 1.5백만 호주달러의 운영관리비 감축이 포함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의 대변인은 이번 예산 삭감은 60명의 일자리 또는 5명 중의 1명의 실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5명 중 1명의 해고, 과

학 프로그램들의 축소, 공원관리 축소는 식물원을 대중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더욱더 상업적 공간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2014년에 4십만 호주달러(3.4억 원)의 예산이 과학 및 공공 프로그램에서 삭감되었고, 9십만 호주달러(7.7억 원)가 공원관리에서 삭감되었다. 예산 삭감은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식물학자인 매벌리 교수(Professor David Mabberley)와 다른 몇몇 과학자들을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물원에서 발행된 과학 논문들의 수는 지난해 165편에서 110편으로 1/3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인 Mark Speakman은 운영관리비는 49백만 호주달러(146.5억 원)에서 47.5백만 호주달러(403.8억 원)로 감소하게 되지만, 시설비는 6.9백만 호주달러(58.7억 원)에서 22.9백만 호주달러(194.7억 원)로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전반적으로 26%에 가까운 예산 증액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1) 접근성 및 진입부

뉴사우스웨일즈 주(State of New South Wales, NSW)의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팜 코브(Farm Cove)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출퇴근, 관광 등을 위한 배들이 오가는 부두인 서클러 퀴(Circular Quay)가 주변에 있고, 주요한 도로들과 최근 건설 중인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 관광객들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한 번에 지하철을 타고 방문할 수 있다.

식물원의 전체적인 공간구성 특징은 영국 식물원들과는 달리 상당히 넓은 잔디밭이 주요 경관으로 나타나며, 온실을 포함하여 18개의 주제정원들이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그림 3-52). 주요한 진입부는 크게 2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곳은 공식적인 진입부라고 할 수 있는 Government House Gate이고(그림 3-53,54), 다른 한 곳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접한 Opera House Gate이다(그림 3-55). 마찬가지로, 영국과는 달리 진입부에는 상점, 카페, 교육을 위한 공간들이 없다. 단지 팜 그로브 센터(Palm Grove Center)에 조그마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 음식점 및 카페가 있다(그림 3-56). 시드니 식물원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입장료가 무료이며 상당히 많은 수의 국내외 방문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물원(botanic garden)과 도시공원(urban park)의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2. 시드니 식물원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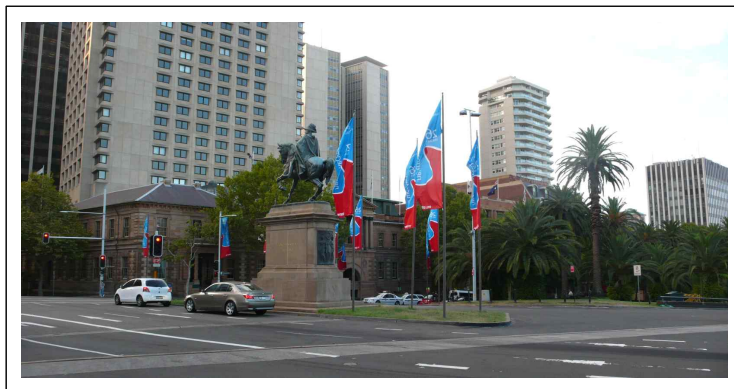


그림 3-53. 시드니 식물원 Government House Gate



그림 3-54. 시드니 식물원 Government House Gate를 통하여 직접 식물원으로 진입하는 보행통로: 정보 및 행사 알람판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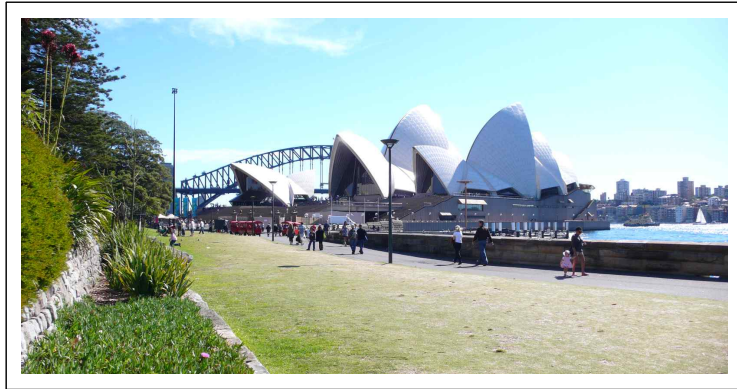


그림 3-55. 시드니 식물원 Opera House Gate



그림 3-56. 시드니 식물원 Palm Grove Center Garden Shop

2) 주요 특징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하고 Opera House Gate를 진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그림 3-57의 호주 자생식물 암석원(Australian Native Rockery)이다. 경관적 특징은 다른 주제정원들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게 넓은 보행통로 주변에 위치하며 휴게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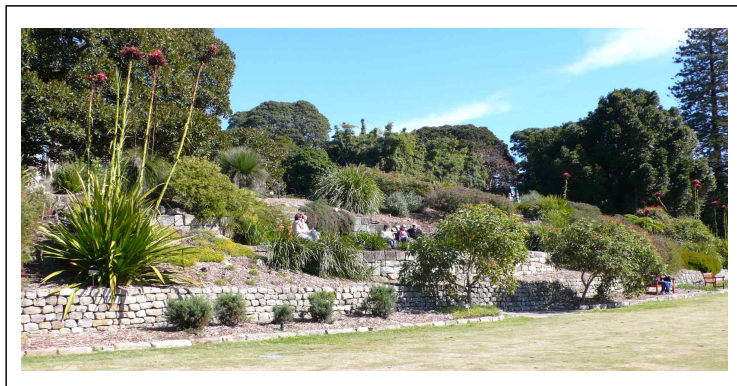


그림 3-57. 시드니 식물원 Australian Native Rockery

허브정원, 오리엔탈정원 등은 영국 식물원들과 같은 배식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원과 같이 이동하는 보행통로를 따라서 휴게공간과 연계되어 식물들의 배식하고 있다(그림 3-58,59). Government House 등과 같은 역사성을 가진 공간들이 정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58. 시드니 식물원 허브정원(Herb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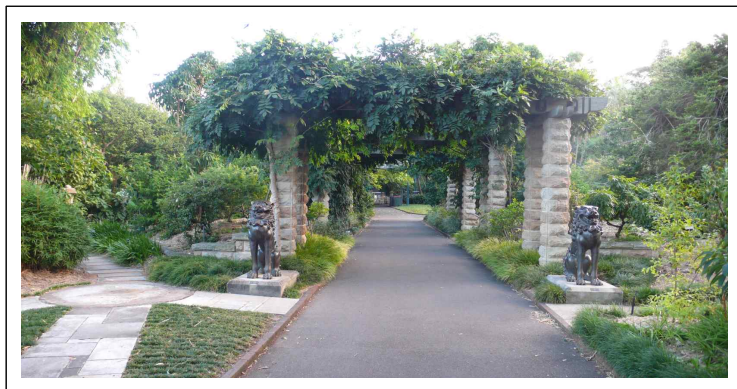


그림 3-59. 시드니 식물원 오리엔탈정원(Oriental Garden)

3.1.5.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Auckland Botanic Gardens)

오클랜드 시의 남쪽에 있는 마누레와(Manurewa)에 위치하고 있다. 식물원의 총 면적은 640,000m²이다. 본래 오클랜드 지역에 식물원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은 1926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오클랜드 지역 원예협회(Auckland District Horticultural Society) 회원들이 오클랜드의 관광자원으로서 식물원 조성을 제안하였다. 1928년 10월에 식물원 조성에 대한 보고서가 시의회 공원 위원회(Parks Committee of the City Council)에 제출되었고,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여서 식물원 조성을 목적으로 오클랜드 도메인(Domain)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할애하여 놓도록 하였다. 그

러나 그 후에 거의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1950년대에 식물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부지들이 조사되었다. 마침내, 1964년 마누레와(Manurewa) 교외지역에 있는 토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1968년 2월 9일에 Auckland Regional Authority는 마누레와(Manurewa)에 있는 Nathan Estate로부터 420,000m²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Manukau City Council이 Nathan Estate로부터 400,000m²의 토지를 구매하였다. 구입 후 토지는 방목을 위해서 임대되었고, 1970년에 토양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식물원 조성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과학자문위원회가 식물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였고, 이것은 1972년에 의회에 채택되었다. 1973년 2월 19일에 Auckland City Councillor, Tom Pearce가 첫 삽을 떴다. 조성 초기, 육묘장은 Hill Road frontage 동쪽 끝자락에 설립되었다. 1982년에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으며, 현재 10,000 종 이상의 식물들이 보존되고 있다.

오클랜드 식물원의 임무는 3가지이다. 첫 번째, 공동체의 웰빙과 식물의 감상에 기여한다. 두 번째, 전시하는 식물들을 통하여 지역의 온화한 기후, 다양한 경관, 그리고 다민족의 융합을 반영한다. 세 번째, 공동체의 요구와 흥미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식물들의 중요성에 관하여 영감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식물원의 임무와는 차이를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오클랜드 식물원은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보존이 주요한 임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건강, 요구, 흥미, 감상 등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원의 연구는 전통적인 식물의 상업적 활용보다는 주로 지역 환경에서 생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물들에 대한 동정(identifying)에 방향을 맞춰 왔다. 자생식물들, 수목과 관목들, 구근들과 숙근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해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서, 상당한 수의 식물재배 지침서들이 출판되었다. 1981년 이후로 “Gardening in Auckland - Horticultural advice for Auckland gardeners” 라는 식물재배에 대한 실용서적이 출판되고 있고, 방문자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많은 실험재배들이 Shrub Trial Garden에서 수행되어왔다. 여기에서 몇몇 조방적인 수집용 포장들이 수국(Hydrangea), 아잘레아(azalea), 말발도리 속(Deutzia) 그리고 다른 속들(genera)에 대하여 조성되었다. 최근에 식물재배용 지침서는 여전히 제작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물론 오클랜드 식물원은 식물보존, 특히 멸종위기의 뉴질랜드 자생식물들의 보존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1994년에 대략 50만 명이 방문하였다. 외국인 방문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영국이 78%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이 6%이며, 지속적으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방문자들

이 증가하고 있다.

1) 접근성 및 진입부

기차,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오클랜드에서 기차를 이용하면 5개의 기차역을 지나서 마누레와(Manurewa) 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하면 한 번 환승하여 도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도시와 공항에서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진입부에는 2005년에 완공된 현대식 건축의 후아카이와카(Huakaiwaka) 방문자 센터(그림 3-60)와 1992년에 완공된 원예자료들을 소장한 도서관 건물이 있다. 방문자 센터에는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 안내전시물(information displays), 카페, 사무실들이 있다. 식물원에서 수집한 식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미코(Miko) 카페에서는 정원들을 바라보면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다. 옥상 위에는 식생을 갖춘 저습지가 조성되어 오클랜드 식물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문자 센터 주변에 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텃밭관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도서관 건물은 Friends of the Auckland Botanic Gardens에 의해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며, 2,500권의 서적들과 많은 원예 저널 및 잡지들을 소장하고 있고, 카탈로그는 약 10,000개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3-60. 오클랜드 식물원 후아카이와카(Huakaiwaka) 방문자 센터

2) 주요 특징

오클랜드 식물원은 부드러운 경관을 가진 농지로부터 조성된 젊은 식물원이다. 온화한 기후는 광범위한 식물들의 전시를 가능하게 한다. 전반적으로 호주 시드니 식물원과 비교하여 영국식 식물원의 공간구성에 더 가까우며 동시에 뉴질랜드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실용적인 정원들과 지역성을 나타내는 자생식물들로 조성된 정

원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장미정원, 암석정원, 야자정원 등과 같은 정원들이 있으며, 멸종위기 식물정원 (Threatened Native Plant Collection), 자생식물아이디어정원(Native Plant Ideas), 곤드와나 수목원(Gondwana Arboretum), 자생수목 숲길(Native Forest Trail), 자생식물 표본 산책로(New Zealand Native Plant Identification Trail) 등과 같은 지역성을 나타내는 정원들이 있고, 식용정원, 도시텃밭, 도시림(Urban Trees) 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원들이 있다(그림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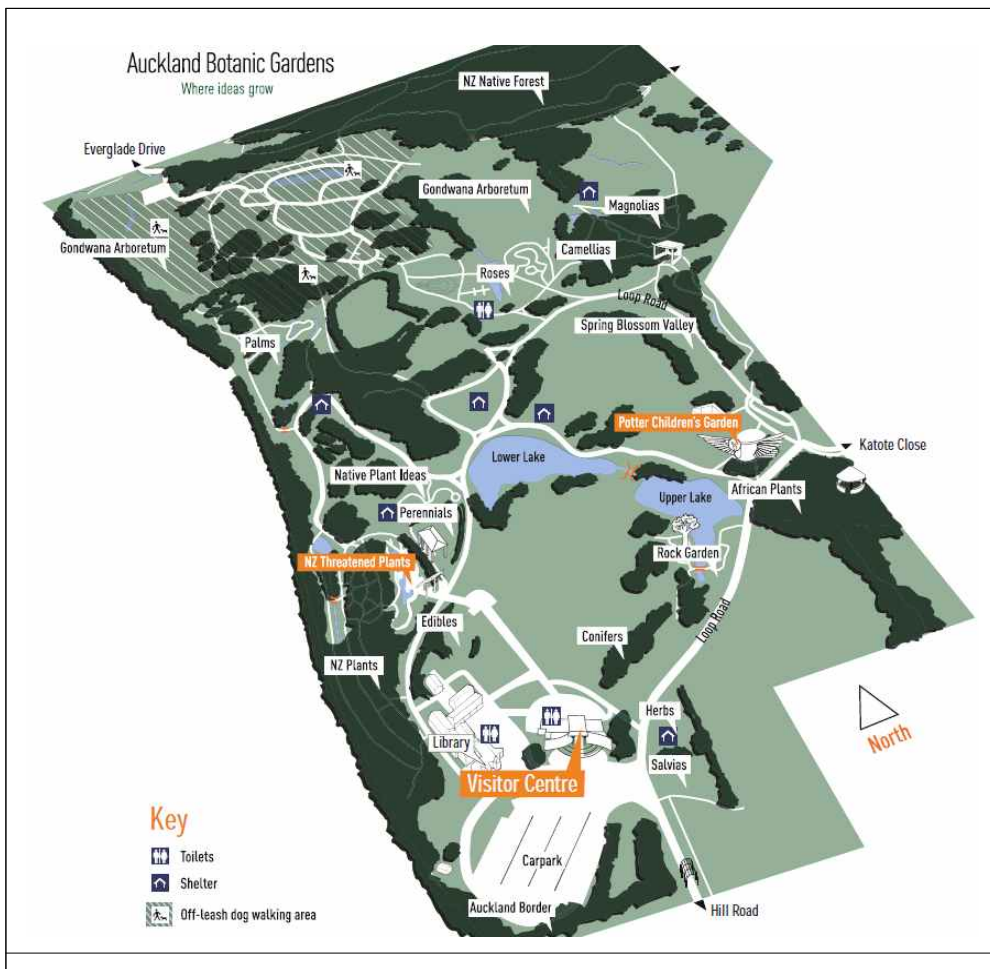


그림 3-61.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 공간구성

식물원에 들어가면 식용정원부터 시작하여 숙근초정원(Perennials)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자생식물들에 대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자생식물을 소재로 한 정원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림 3-66과 같이 2001년에 당시 뉴질랜드 수상이었던 헬렌 클라크(Helen Clark)에 의해서 조성된 멸종위기 식물정원(Threatened

Native Plant Collection)이 있다. 뉴질랜드 자생식물을 소재로 한 아이디어정원 (Native Plant Ideas)은 뉴질랜드 정원양식에 대한 영감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림 3-62).



그림 3-62.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멸종위기 식물정원 (Threatened Plants Collection)



그림 3-63.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자생식물정원 아이디어(Native Plant Ideas)



그림 3-64.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야자수 산책로 (Palm Walk)

오클랜드 지역의 온화한 기후로 유리온실이 아닌 야외에서도 아열대 야자수(Palm)를 감상할 수 있다(그림 3-63). Potter Children's Garden은 함께 방문한 부모들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뉴질랜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그림 3-64,65). 아프리카 정원에는 남아프리카의 다양한 초화들이 보존 및 전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뉴질랜드의 여러 식물원들에서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그림 3-67).



그림 3-65.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Potter Children's Garden에 식재된 자생식물



그림 3-66.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Potter Children's Garden에서 부모의 보호 속에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있음



그림 3-67.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아프리카정원 (African Plants Collection)

식물원 중앙부에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호수 주변으로 경사를 이용하여 변화가 많은 지형 위에 아열대 다육식물의 생육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암석정원(Rock Garden)을 조성 및 전시하고 있다.



그림 3-68.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의 암석정원(Rock Garden)

3.2. 국내정원 사례연구

3.2.1.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정원을 정의하고 모델을 제시하여 한국정원을 정립하며 한국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조성되었다. 식물원의 주요 임무는 식물 수집, 보전, 교육, 전시, 연구 등의 수목원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휴식과 심신의 치료에 기여하는 것이다(아침고요수목원, 2015). 더불어 식물원, 수목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며 자연을 관람하는 문화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정원이 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축령산 자락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은 1996년에 미완성 상태로 개원하여 오늘날에는 20여개의 주제 정원들 속에서 축령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자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증식, 보존하고 있는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과 도입식물을 포함하여 총 5,000여종의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야생화 정원 및 무궁화동산에는 우리나라 자생 야생화 1,0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5월말과 6월초에 가장 아름다운 아이리스 정원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인 독일계 아이리스 800여종이 피어난다. 암석지 사이에서 자라는 식물만 모아놓은 석정원에는 230여종의 각종 고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나라꽃 무궁화 20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그밖에

도 백두산의 희귀 야생화 300여종과 한국정원의 모란 40여종, 1,000여종의 작품성 높은 다양한 수목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7월 11일에 산림청에 사립수목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조성규모는 330,000m²이며, 2014년에 대략 900,000명이 방문하였다. 입장료는 성인기준으로 9,000원이다.

1) 접근성 및 진입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함께 수목원을 운행하는 순환버스의 연계로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국도가 인접하여 자가용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진입부에는 분재, 화분 등의 식물판매장인 하늘나라(Flower Shop)와 정원용품 및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인 허브나라(Herb Shop)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출입구를 지나서 아침고요갤러리와 아침고요수목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3-68,70).



그림 3-69. 아침고요수목원의 공간구성



그림 3-70. 아침고요수목원 하늘나라(Flower Shop) 식물판매장

2) 주요 특징

진입부 주변에 산수경온실, 알과인온실, 초화온실 등의 유리온실이 조성되어있으며(그림 3-71), 주제정원으로는 허브정원, 고산암석원, 석정원, 침엽수정원 등의 전통적으로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보전 및 전시를 위한 정원들이 있고(그림 3-72), 무궁화동산, 야생화정원 등의 지역적 특성 또는 자생식물 보전 및 전시를 위한 정원들이 있으며(그림 3-73,74), 한편으로 하경정원, 한국정원, 에덴정원, 정원나라, 약속의 정원 등의 원예 장식적인 정원들이 있다(그림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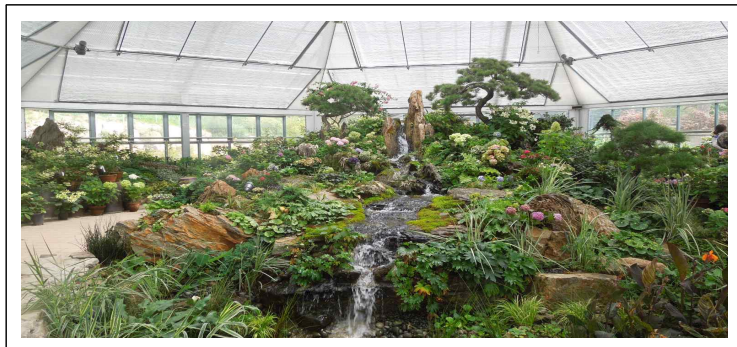


그림 3-71. 아침고요수목원 산수경온실(Gree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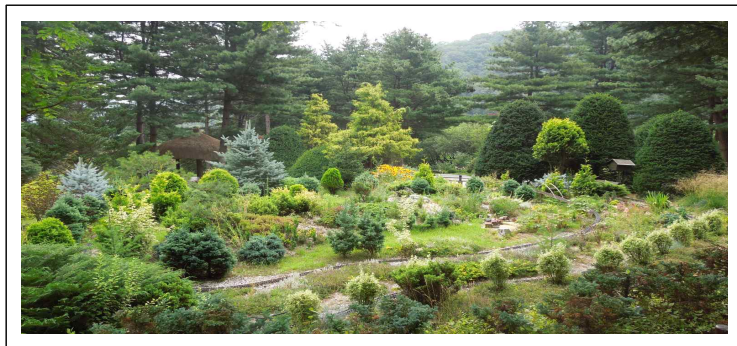


그림 3-72. 아침고요수목원 침엽수정원(Conifer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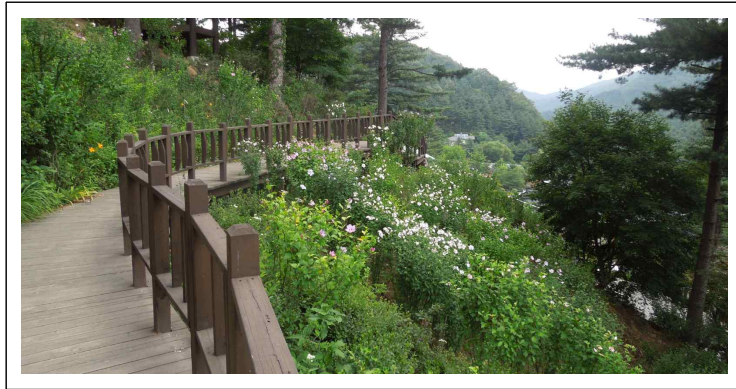


그림 3-73. 아침고요수목원 무궁화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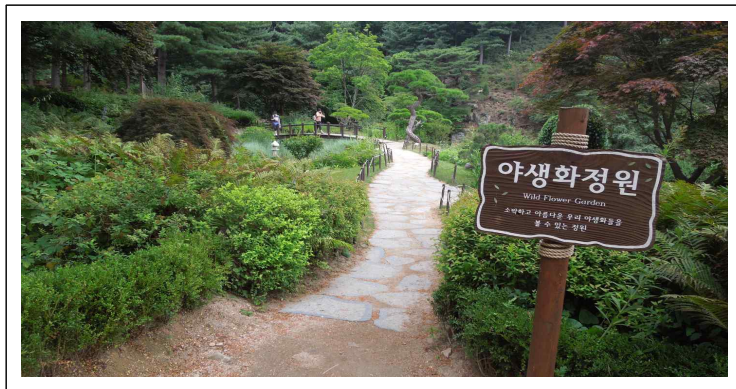


그림 3-74. 아침고요수목원 야생화정원(Wild Flower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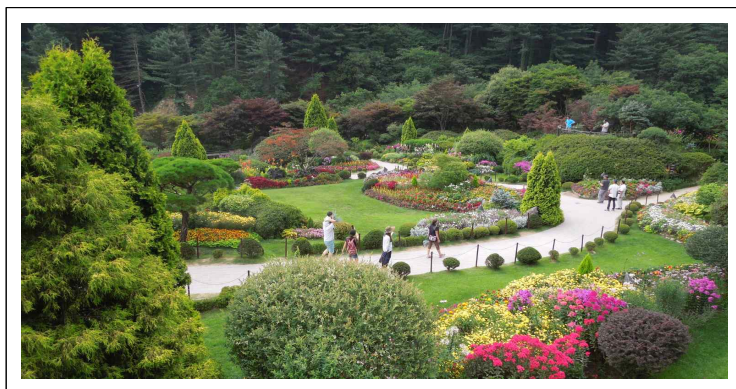


그림 3-75. 아침고요수목원 하경정원(Sunken Garden)

3.2.2. 제이드가든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는 조성 개념을 가지며, 중부지방에서 생육이 가능한 국내외 유용식물자원 수집을 통한 새로운 테마정원을 개발하여 자연생태 교

육장을 마련하고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써의 재정 자립형 명품 수목원을 추구하고 있다(제이드가든, 2015). 조성규모는 163,528m²이고, 만병초류, 단풍나무류, 비비추류, 목련류 등을 포함하여 총 3,904종의 식물을 수집 및 보존하고 있다. 2011년 5월에 대중에게 개방하였고, 2011년 4월 28일에 산림청에 사립수목원으로 등록되었으며, 2014년에 대략 13,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기준으로 8,500원이다.

1) 접근성 및 진입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함께 제이드가든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의 연계로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고속도와 국도가 인접하여 자가용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진입부에는 대규모 주차시설이 있으며, 주출입구를 지나면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점이 있다(그림 3-76,77).



그림 3-76. 제이드가든(Jade Garden) 주출입구 전경



그림 3-77. 제이드가든(Jade Garden) 기념품점

2) 주요 특징

주제정원으로 총 24개의 정원들이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정원양식을 나타내는 영국식 경계식재(English Border Garden)와 이탈리아안 가든(Italian Garden)이 진입주 근처에 있으며(그림 3-78), 고산온실, 이끼원 등의 지역적 특성 또는 자생식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정원들이 있고(그림 3-79), 은행나무 미로(Ginkgo Maze), 나무놀이집(Tree Deck Garden) 등과 같은 놀이를 위한 정원들이 있으며(그림 3-80,81), 드라이가든, 로도덴드론가든 등의 전통적으로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정원들이 있고(그림 3-82,83), 웨딩가든과 같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정원이 있다(그림 3-84).



그림 3-78. 제이드가든(Jade Garden) 이탈리아 정원(Italian Garden)



그림 3-79. 제이드가든(Jade Garden) 고산온실(Alpine Greenhouse)



그림 3-80. 제이드가든(Jade Garden) 은행나무 미로원 (Ginkgo Ma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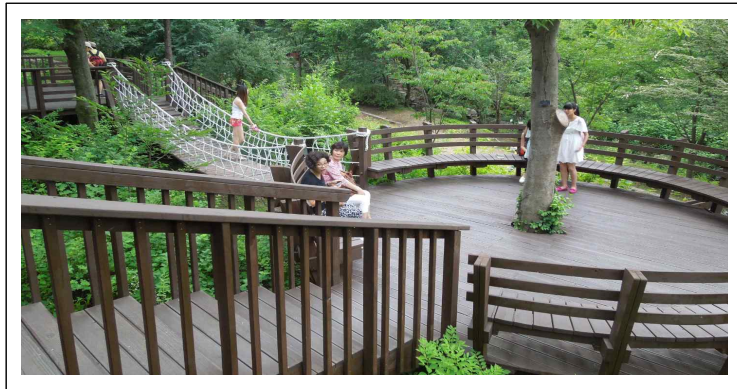


그림 3-81.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나무놀이집(Tree Deck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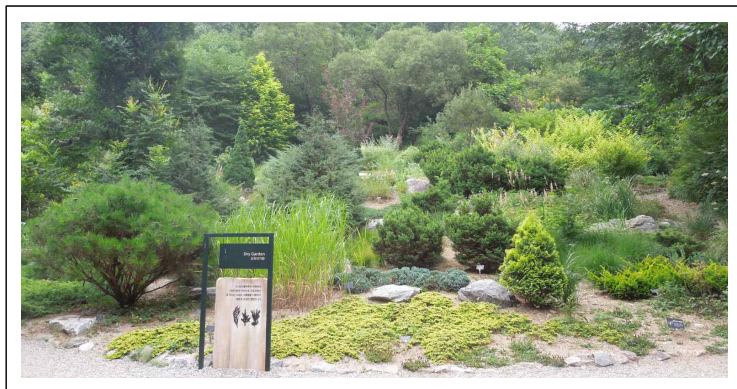


그림 3-82.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드라이가든(Dry Garden)



그림 3-83.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이끼가든(Moss Garden)



그림 3-84. 제이드가든(Jade Garden)의 웨딩가든(Wedding Garden)

3.3. 시사점 도출

사례로 제시된 정원들 중에서 영국의 큐 가든과 위슬리 정원은 식물원의 본래 기능에도 충실하며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진입부에 위치시키고 있다(표 3-1). 에든버러 식물원은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유리온실 관람에 대해서는 방문자들에게 8,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며 2009년에 새롭게 건축된 John Hope Gateway에서는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도입하였고, 환경, 식물, 생태에 대한 교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원 관련 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식물원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인접하여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방문객들 받아들이지만,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정부에는 최근 예산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많은 재

원을 투입하며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 정원들이 2000년대에 진입부에 상업적 공간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던 것처럼 호주 정원들 역시 진입부에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우리나라 아침고요수목원과 제이드가든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진입부에 상업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원문화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방문객들, 즉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정원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원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정원용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여 제한적으로 선물, 기념품, 분화 등을 위주로 한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제이드가든은 우리나라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외국 방문객들이 영화, 드라마에 등장하였던 촬영지 방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방문요구에 대응하여 상업적인 공간을 조성 및 홍보하고 있었다.

표 3-1. 국내외 정원들의 입장료, 입장객, 예산, 재정 현황

구분	입장료 (원)	입장객 (만명)	재정	비고 예산(억원)
큐 가든	26,500	195	정부 52%, 입장료 등의 수익 27%	935
에든버러 식물원	무료	80	지방정부가 97% 정도를 지원함	158
위슬리 정원	23,600	80	왕립원예협회가 운영, 재정자립 100%	(사립)
시드니 식물원	무료	380	주정부 45%, 보조금, 상품 판매 등 46%	391
오클랜드 식물원	무료	50	정부가 대부분 지원함	(자료없음)
아침고요수목원	9,000	90	개인 운영	(사립)
제이드가든	8,500	13	기업체 운영	(사립)

정원들의 접근성은 결국 방문자 수와 관련된다. 큐 가든과 시드니 식물원이 가장 접근성이 양호하며, 방문자 수도 상대적으로 높다(표 3-2). 물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교통시설이 우수하며 두 개의 정원들은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방문자수가 높은 편이다. 정원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영국 정원들은 이색적인 식물들의 보전 및 전시가 많으며, 따라서 기후대에 따라서 식물종을 분류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중국식 및 일본식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역사성을 지닌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호주의 시드니 식물원은 도시공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호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주요한 장소에 전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은 실용적이며, 다양한 자생식물들을 전시하고 있고, 멸종위기 식물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정원 조성의 사례를 보여주는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두 개의 정원들은 원예장식적

인 정원, 정원양식을 나타내는 정원, 놀이를 위한 정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3-2. 국내외 정원들의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구분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큐 가든	매우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를 운영함	식물을 위주로 한 주제공원 기후대를 고려한 주제공원 중국식, 일본식 정원 조성 역사성을 지닌 정원 조성
에든버러 식물원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함 교육공간이 있음	실용적인 정원 조성 교육 전시 지역공동체 참여 정원 조성 자생식물 정원 조성 중국식, 일본식 정원 조성 역사성을 지닌 정원 조성
위슬리 정원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함	원예장식적인 정원 조성 원예실무를 위한 정원 조성 왕립원예협회 홍보 정원 조성 가정용 정원 조성 사례 전시
시드니 식물원	매우 양호	상품 판매 공간 없음	도시공원(urban garden)과 유사 자생식물 정원 조성
오클랜드 식물원	양호	정보제공 공간 있음 교육공간이 있음 카페를 운영함 상품 판매 공간 없음	실용적인 정원 조성 광범위한 자생식물 정원 조성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기법 전시 어린이 생태학습을 위한 정원 조성
아침고요수목원	매우 양호	식물 및 정원용품을 판매함	원예장식적인 정원 조성 테마정원 조성 자생식물 정원 조성
제이드가든	매우 양호	기념품을 판매함 레스토랑을 운영함	유럽 양식의 정원 조성 상업적인 정원 조성

종합하며 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정원은 먼저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며, 공공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의 목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원예장식적인 정원조성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원의 공간구성은 먼저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상업적 공간 조성을 진입부에 위치시키고,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을 보전 및 전시하기 위한 유리온실을 도입하며, 다양한 문화권, 특히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정원양식들을 정원에 도입하고,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생식물 및 한국정원양식을 포함시키며, 가정의 정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원 사례를 전시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 4.1. 해외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 4.2. 해외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
- 4.3. 해외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 4.4.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 4.5.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IV.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4.1. 해외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4.1.1. 영국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

1) 정원재료 생산

정원센터에서 선물들, 조리도구들과 같은 새로운 제품 라인들과 그리고 야외 가구와 바비큐들과 같은 커다란 아이템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Gardman과 Salus는 모두 경영의 변화들을 가졌었고 그리고 2016년을 위해서 재정비하여 다시 인터넷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Gardman의 창립자인 Paris Solar에 의해서 운영되는 Smart Solar와 예전 Salus 운영 책임자인 Nick Davies의 새로운 정원 센터 공급자인 Crest는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2) 정원재료 유통

영국의 정원시장은 계속 새로운 형식과 범주와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Tesco, Waitrose와 Next과 함께 슈퍼마켓들과 변화가의 유통센터들은 지속적으로 정원활동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

정원시장을 겨냥하여 대형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소형 업체들을 구매하거나,파트너쉽을 만들거나, 또는 연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센터들이 맹렬한 속도로 다른 영역들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정원이 주택의 확장(outdoor room)이 되어감에 반응하여 정원 센터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이 점차 고급화로 이동할 것이다.

3) 정원 소비 및 서비스

피트(peat) 사용은 불량한 수확 후에 감소하였으나 더운 여름 후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Defra의 연구 결과는 피트 판매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의 정원에 대한 흥미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정원산업 부문에서 유행(흐름)은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40대 후반~50대에 있는 수백만의 잠재적 추가 소비자들이 기대된다. 이들은 비교적 건전한 연금과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즐길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원활동으로 인한 물리적 부

담을 최소화 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45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들 유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정원산업을 위한 중요한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인구 증가는 동시에 식물들을 재배한 새로운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노령화 되어 가는 많은 정원 소유자들이 점차 그들의 정원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찾게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새로운 기술들 또한 그것들을 포용하는 사업들을 위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정원 서비스들은 향후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영역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단지 오래된 정원들의 소유자들이 디자인, 조성 그리고 정원 관리 서비스를 찾는 데서 유도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야외 공간(outside room)’을 즐기기 원하는 그러나 지나치게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스스로 정원을 조성할 수 없는 더 젊은 주택소유자들에 의해서 유도될 것이다.

상점 내 구매는 또한 평면 스크린의 정보 전시, 터치스크린 정보 포인트들, 바코드/QR 코드 인식기 등을 활용하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종종 비교하는 정보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차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유도될 것이다. DIY, 욕실, 부엌, 정원, 가구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인 Homebase는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실내장식과 가구의 사진을 중첩시키며 소비현상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내장식과 가구를 배치하는 대상공간에 대한 개념이 파티오(patio)와 정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점과 인터넷 유통망의 경계는 또한 점점 낮아져 소비자들은 점차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품들을 공급하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상점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정원사업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Garden Centre Group은 ‘click and collect’ 서비스를 최근에 도입한 수많은 유통업체들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주요한 유통업체들에서 그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별개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지지될 수 없으며, ‘다채널 방식(multichannel)’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정원 서비스는 2020년까지 영국에서 정원 유통업체들의 거래액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1.2. 일본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

아시아의 정원가꾸기 산업은 중국, 일본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택이 크지 않아 현관, 발코니를 이용한 정원가꾸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시장규모는 123억 달러(13.9조 원) 수준이다.

1) 정원재료 생산

일본의 정원활동 시장은 2012에 2% 정도의 성장을 나타냈다. 시장규모는 3조 1700억원에 달한다. 일본의 정원 환경은 일본 내 정원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의 홈앤가든은 2014년에도 성장을 기록했지만, 성장률은 2013년보다 낮았는데, 2014년 4월 부가가치세의 증가로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은 이와 같은 유행에 반응하고 있다. 더 가벼운 전동도구, 더욱더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도구들, 사용하기 쉬운 도구들을 제작하고 있다. 잔디깎기의 경우, 2012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 성장하였는데 이는 정원산업이 일본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을 보면 비록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승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동안에도 정원관련 식물과 용품의 지출액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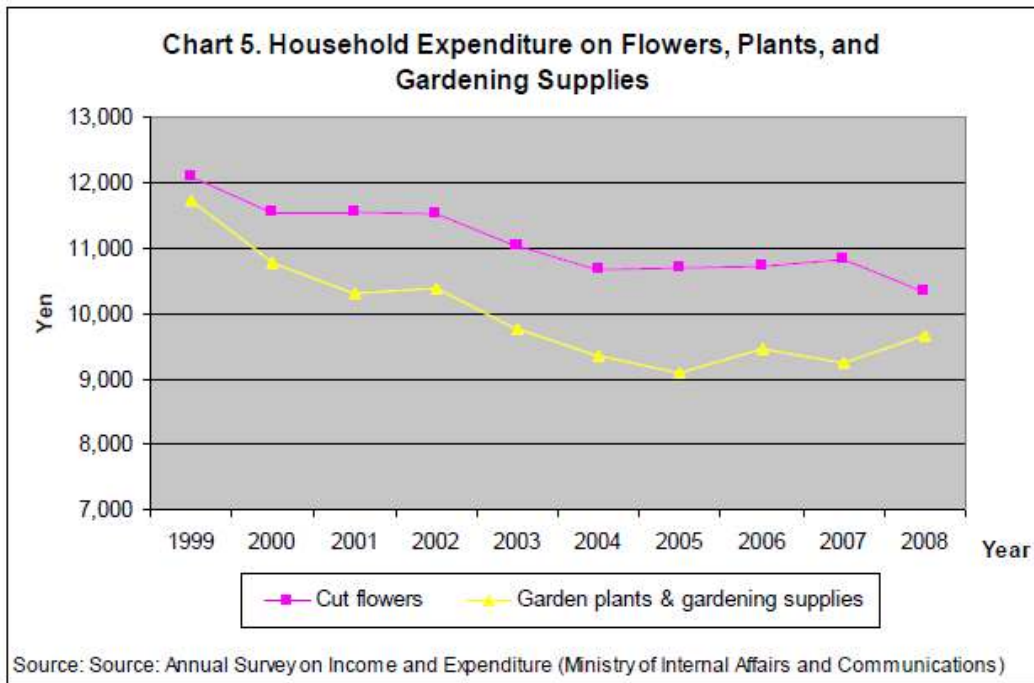


그림 4-1. 일본 가구의 화훼, 식물, 정원용품 지출액

2) 정원재료 유통

홈앤가든 전문 유통업체들(Home and garden specialist retailers)은 정원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유통업체이고 2012년에 총 판매액의 78%를 차지하였다. 일본 정원활

동 시장은 매우 과편화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수많은 유통업체 중 Nitori Co Ltd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공격적인 상점 오픈 프로그램과 정원활동 관련 제품들의 항목을 확장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일본에서 매우 과편화되고 경쟁이 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인 가정용 가구 유통업체인, Nitori Co Ltd는 2014년에 홈앤가든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유통판매가 홈앤가든에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가구들은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인터넷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정원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시장에 대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을 예상할 수 있다. 영국에서와 같이, 정원시장을 겨냥하여 대형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소형 업체들을 구매하거나, 파트너쉽을 만들거나, 또는 연합할 것이다.

3) 정원 소비 및 서비스

일본에서, 주택개량을 위한 주요한 소비자는 전통적으로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가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주도한다. 많은 여성들은 취미로 DIY를 취하고 있어 기존의 가구들을 새롭게 페인트 칠하거나 새로운 가구를 제작하고 있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DIY에 대한 증가하는 유행은 지속될 것이다.

노년층 소비자들의 정원활동에 대한 증가하는 인기는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017년 4월에 또 다른 부가세 상승은 새로운 가구 구매와 관련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DIY를 찾을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짐으로, 일상적인 취미로서, 정원활동이 일본의 노년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주요 소비자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서 도시에서 정원활동 문화의 발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건강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기인하여, 소비자들이 발코니에서 포트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정원활동을 위한 전동 도구들은 2012년에 가장 유행하였는데, 4% 성장을 보였다. 일본의 정원활동 산업은 2017년까지 연간 1%씩 성장할 것이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정원활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2011년 지진의 결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접 식물을 재배하는 경향을 띠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4.2. 해외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

호주 시드니 식물원과 영국 위슬리 가든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을 이해할 수 있다. 호주 시드니 식물원은 Royal Botanic Gardens & Domain Trust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은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매년 대략 38백만 명이 방문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2013-2014년 운영관리비 예산은 46백만 호주달러(391억 원)이었다. 그 중에 20.4 호주달러(173.4억 원) 또는 대략 45%는 주정부 예산이다. 운영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정부의 시설비 예산은 9.1백만 호주달러(77.4억 원)였다. 보조금, 기부금, 상품 판매 및 서비스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2013-2014년 총수입 예산은 대략 21.3백만 호주달러(181.6억 원)이었다. 주정부의 수입의 주요원은 주차비, 장소 대여료, 시설 대여료, 판매, 보조금 그리고 기여금이다. 환경문화유산국(The 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이 정보기술지원, 금융 및 인력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3-2014년에 42개의 프로그램에 66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48,672 시간 또는 1백만 호주 달러(8.5억 원)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러나 시드니 식물원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아래의 2015년 6월 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뉴사우스웨일즈(Sydney Morning Herald, New South Wales)에 ‘Sixteen staff lost in NSW budget cuts to Botanic Gardens funding’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시드니 식물원은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입 창출에 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드니 식물원은 이번 주에 전달될 추가적인 주정부 예산삭감에 따라서 상업적 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더 많은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번 예산삭감은 2015-2016년 말까지 16명의 전일제 직원 감원과 1.5백만 호주달러의 운영관리비 감축이 포함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의 대변인은 이번 예산 삭감은 60명의 일자리 또는 5명 중의 1명의 실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5명 중 1명의 해고, 과학 프로그램들의 축소, 공원관리 축소는 식물원을 대중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더욱더 상업적 공간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2014년에 4십만 호주달러(3.4억 원)의 예산이 과학 및 공공 프로그램에서 삭감되었고, 9십만 호주달러(7.7억 원)가 공원관리에서 삭감되었다. 예산 삭감은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식물학자인 매벌리 교수(Professor David Mabberley)와 다른 몇몇의 과학자들을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물원에서 발행된 과학논문들의 수는 지난해 165편에서 110편으

로 1/3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인 Mark Speakman는 운영관리비는 49백만 호주달러(146.5억 원)에서 47.5백만 호주달러(403.8억 원)로 감소하게 되지만, 시설비는 6.9백만 호주달러(58.7억 원)에서 22.9백만 호주달러(194.7억 원)로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전반적으로 26%에 가까운 예산 증액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영국 위슬리 가든은 영국왕립원예협회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영국왕립협회는 1804년 설립되었으며, 가드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원예의 우수성을 장려하는 동시에 식물에 대한 열정을 대중에게 공유되도록 돕기 위함이 설립목적이다. 협회의 한해 예산은 200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35백만 파운드(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조직과 규모가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 모범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주 수입원은 회원제, 플라워쇼, 출판, 교육, 가든 입장료, 기부 등에서 비롯된다(www.lafent.com).

따라서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상업적인 정원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원산업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4.2.1. 정원의 운영과 관리

오늘날 서양 세계에서 정원들은, 그리고 특히 많은 방문자들을 가지는 더 커다란 도시의 중심들에 있는 정원들은, 오늘날 중요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 뉴욕시에 있는 New York Botanical Garden의 연간 운영 예산은 53백만 미국달러 이상이며, 펜실바니아에 있는 Longwood Gardens의 기금은 현재 600백만 미국달러 이상이다. 유럽에서, 런던의 Royal Botanic Gardens in Kew는 2007년과 2008년에 51백만 파운드 이상을 발생시켰고, 호주에서, Royal Botanic Gardens and Domain Trust in sydney는 트러스트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174백만 호주달러의 자산과 그리고 정원 운영을 위한 18백만 호주달러의 운영 예산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정원들을 위한 재원들은 정부의 기금,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으로부터 얻어지는 반면에, 대부분의 정원들은 다방면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따라서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문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목적에서, 정원들은 최대의 방문자 수익, 방문자 수, 그리고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들은 그들의 임무들의 다른 부분들과 종종 통합되도록 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존 그리고 교육, 그리고 종종, 부가적으로,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들과 통합되어야만 한다.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운영의 철학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의 하나가 된다. 지속가능성은 점차 모든 관광산업이 노력하는 목표로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정원관광의 운영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정원의 현재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소위 벤치마킹이라는 증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와 그와 연관된 가장 실용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정원들의 경영과 운영을 살펴본다. 또한 오늘날 정원들의 마케팅, 그리고 정원의 별개의, 특성화된 부분들 중에서 오늘날 정원들에서의 인력 배치를 볼 것이다.

최근에 “벤치마킹(benchmarking)” 이 어떤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의 성공 또는 우수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조직들의 업무처리 모범 기준(best practices)과 결과들에 조사에 의해서, 한 조직이 다른 유사 조직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정원은 정원의 재정의 발전에서 자원(정부 기금 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다른 정원들은 그들의 장래의 성공을 위한 척도를 제공하는 자원(정부 기금 등)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5개의 중요한 조직적 그리고 운영적 영역들이 있음을 제안한다. 어느 한 조직이 업무 처리 모범 기준을 위한 벤치마킹하고 조사할 수 있는 5가지의 중요한 조직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 방문 또는 참여
- 재정적 경영: 수익과 지출
- 조직적 측면의 경영: 인적 자원, 회원제, 자원봉사제도
- 마케팅과 소통
- 공동체에 대한 봉사활동과 교육

미국에서 대형정원 운영자들(Directors of Large Gardens, DLG)은, 당시 적어도 2 백만 미국달러의 운영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원들(식물원들)과 수목원들의 비공식 기구인, 2004년에 처음으로 정원들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들을 의뢰하였다.

2006년에 그들은 초기 연구에 기초하여 어떤 변화들과 추가적인 것을 가진 또

다른 벤치마킹 연구를 의뢰하였다. 2개의 연구들은 EMD Consulting Group의 Richard Daley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는 전 정원 집행부 이사이며 그리고 DLG의 초대 의장이었다.

또한 2007년에 American Public Gardens Association(APGA)의 중소형 정원들의 벤치마킹 연구를 수행하였다(여기서 중소형 정원들이란 2백만 미국달러 이하의 운영 예산을 가진 정원들을 한정함). DLG와 APGA 연구들 사이에서 미국의 현재 정원 경영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의 좋은 원천이 되며, 21세기로 이동하며 정원들의 잠재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좋은 원천이 된다. 이 연구로부터 유사한 데이터들이 위에서 언급한 5개 영역들 하에서 재생산된다.

1) 정원의 방문객

2백만 미국달러 미만의 예산을 가진 정원들에서 방문자는 매년 거의 50,000 명이 평균이다. 소규모 정원들이 일반적으로 단지 대략 40,000명의 방문자들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 그룹에서 더 큰 예산을 가지는 정원들은 매년 150,000명을 유인함으로 이것은 넓은 변이를 숨기고 있다. 정원의 여러 가지 유형들 내에서, 전시용 정원들은 더 많은 방문자들을 유인하며(매년 평균 121,000명), 반면에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정원들은 연간 단지 40,000명을 유인한다. 아마도 서로 다른 임무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식물원들은 단지 연간 81,000명의 방문자들을 평균적으로 가지지만, 그러나 중앙값으로서 43,731명이 모든 정원 유형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정원들 사이에서 방문자 수의 폭넓은 변이를 암시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서 방문자들이 대표화되었을 때, APGA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시 또는 군이 소유한 정원들과 민간/공공 파트너십들은 비영리 또는 단과대학/종합대학이 소유한 정원들보다 매년 평균 방문자 수가 더 높았다. 시 또는 군이 소유한 그리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가진 정원들은 전형적으로 공원들(parks)과 같은 다른 공공 공간들과 인접해 있으며 그리고 종종 무료로 대중에게 개방되기 때문이다(APGA, 2007).

마지막으로, 방문이 정원의 주변 대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잠재적 관람객들과 교차 분석될 때, 만약 정원들의 잠재적 관객들이 100,000명 이상, 그러나 1.5백만 미만을 포함하는 대도시 인구 범위 내에 있다면 정원들은 방문자들을 유인하는데 더 큰 성공을 이룬다고 제안한다.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한다면, 더 작은 도시들에 있는 정원들은 더 큰 (1.5백만 명) 도시 지역보다는 그들의 공동체와 봉사활동 연계들을 설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

다. US\$2.5 million 또는 그 이상의 더 큰 예산을 가진 정원들을 위해서는, 평균 304,000명을 가지며, 매년 중앙값으로 관람객들은 196,000 방문자들이 된다. 여러 정원들에서 매우 높은 관람객들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값은 더 높다.

(최소 US\$10 million의 연간 예산을 가진 것으로 한정되는) 가장 큰 규모의 정원들이 연구되었을 때, 중앙값으로 관람객 수는 거의 700,000명의 방문자들이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큰 규모의 정원들에서 관람객 수의 중앙값 증가량은 2.8%였다. 비록 1/4 규모의 정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관람객수가 감소하였다.

2) 정원의 재정관리

그들이 정원을 운영하며 직면하는 주요한 도전들에 대한 정원 경영자들과의 논의에서, 재정적 생존에 대한 논점은 변함없이 등장한다. 미국에서, 독립적이며, 비영리의 정원들은 US\$500,000 미만의 평균 수익을 가진 가장 작은 예산으로 운영한다. 가장 큰 예산을 가지며 소형 또는 중형의 규모의 정원들로 분류되는 연구기관들은 US\$700,000 이상의 평균 수입을 가진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가지는 정원들이다.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과 연계된 정원들 그리고 시 또는 군 소유의 정원들은, 평균적으로, US\$600,000을 초과하는 수입들을 가진다. 이들 수입의 원천은 거의 공공 기금(34%), 민간 기금(32%), 그리고 자체 조달 수입(34%)로 분리된다. 자체 조달 수입은 일반적으로 회원의 회비와 입장료로부터 얻어진다.

APGA에서 정의한 67개의 “대형(large)” 정원들은 US\$2.5 million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정원들은, 중앙값으로서 운영 예산이 US\$6.7 million이었으며, 거의 US\$50 million까지 올라간다. 얻어진 수입의 지출에 있어서, 그 기금들은 광범위한 범위의 의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된다. 중소형 규모의 정원들에서, 가장 큰 지출은 행정(26.5%), 원예(19%), 그리고 운영(18.7%), 총합하면 비용의 64.2%이다. 방문자 서비스(10%), 교육(6.6%), 그리고 회원 발굴 (6%)은 지출에서 다음 3번째로 높은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연구, 출판, IT, 그리고 계약된 서비스들에 대한 잡다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지출의 범주는 전체 지출을 완성한다.

(US\$2.5 million 그리고 그 이상의) 초대형 정원들(largest gardens)에서, 유사성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이들 기관들에서, 원예는 지출의 18%까지 차지한다, 중소형 규모의 정원들과 퍼센트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 더 큰 기관들에서, 비록, 행정이 단지 11%를(두 번째로 높은 범위로) 차지하고, 그리고 멤버십과 개발은(세 번째로 높은 범주로) 7.5%를 차지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연구와 보존의 중요성이다. 멤버십과 개발과 거의 동일한

(7.2%) 지출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취합된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것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원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된 기금들이다.

유용가능한 평균 지출은 (중소형 규모의 정원들에서) US\$15,000 미만이고, 그러나 많은 소형 정원들은 US\$9000 미만의 마케팅 기금으로 운영한다. 아마도 더 작은 규모의 관광용 정원들을 마케팅함에 있어서 더 분명한 어려움은 단지 출판을 위해서 지출되는 평균 비용이 US\$1000 미만이라는 사실이다.

더욱더 실질적인 문제를 논하자면, 대부분의 소형 정원들은 한 개의 브로슈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도 어렵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소형 정원들에서, 마케팅 지출들은 모든 지출의 4% 미만이다.

(과학적 또는 연구용 정원들과 반대로) “전시용 정원들(display gardens)” 로 스스로를 분류하는 정원들로서, 몇몇 중소형 정원들은 그들의 제품들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서 비록 US\$50,000 이하이지만 약간 더 많은 기금들을 사용하고 있다.

초대형 정원들에서(US\$2.5 million와 그 이상의 예산을 가진),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지출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닌, 더 많다, 중앙값으로서 지출은 US\$360,000 이상이고 그리고 몇몇 기관들은 매년 US\$1 million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3) 정원의 조직관리

정원관리에 있어서 인력 자원들에 매우 의존적이다. 대규모 정원들에서 인력 자원들은 비용의 60%를 구성하며, 그리고, 그와 같음으로, 정원들은 아마도 인력 자원들에 매우 높게 의존하는 (주제공원들, 카지노들, 호텔들) 다른 주요한 관광 매력요소들과 시설들과 아마도 유사하다. 인력 자원들은 또한 정원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넓은 부분에서 정원들은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운영들과 원예)의 많은 영역들에서 전문가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원은 변함없이 연중 운영한다는 사실은, 1년 365일 동안 개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력 자원들의 요구들과 할당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은 업무 부담의 한 가지 해결책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 되어왔다. 정원 부문에서, 자유 지원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하기 원하는 관광산업에서 몇 개 안되는 부문들의 하나이다. 미국의 소형 정원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인원은 165명이고, 평균 6,861 시간 동안 작업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존 정도는 거의 분명하게 관광 매력요소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큰 기여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APGA 연구에서, US\$2 million 미만의 예산을 가지는 정원들은, 평균적으로, 319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진다.

비교하자면, 유사한 예산을 가지는 코네티컷(Connecticut)에 있는 우수한 지역 예

술 박물관인, New Britain Museum of American Art는 박물관 화랑들에서 일하고자 하는 50명의 자원봉사자들 또는 강사들을 가진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정원들은 식물원들과 전시용 정원들이다.

대학 및 시 정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한다. 그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존은 정원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비교적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정원들은 행정에 4명 이하를 가지고 운영한다(전일제로 3.5명을 가지는 전시용 정원들이 최대이고, 시간제로 1.85명의 직원을 가지는 식물원들이 최하임). 원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나머지 직원의 대수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단지 평균적으로 5명을 가진다. 분명히, 그와 같은 평균의 범위 내에서, 대형 정원들은 더 많은 원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반면에 소형 정원은 덜 채용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원의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DLG 연구에 따르면, 초대형 정원들에서(US\$10 million과 그 이상의 예산을 가지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동시간의 중앙값은 60,000 시간 이상이다.

APGA와 DLG의 벤치마킹 연구들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많은 정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다른 외곽의 인력들에 대한 의존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Framingham에 있는 the Garden in the Woods는 희귀한 그리고 멸종위기의 야생화들의 현장에서의 서식지 보존에 매우 깊게 관련되어있다. 그와 같은 목적에서, 정원들은 약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진다. 그들은 New England 지역에서 멸종위기종들을 탐색하고 지도를 그리며 그리고, the flowers and the garden을 대표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야생식물보호를 위한 협상을 수행한다. 유사하게, 치명적인 침입 식물들의 감소와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정원들은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역에서 침입 식물들을 제거하고 소멸할 일정들을 조정하며, 따라서 자생종들의 생존을 위한 전망을 밝게 한다.

4) 정원의 마케팅과 홍보

정원 미국에서 중소형 정원들을 마케팅할 때, 시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담하는 직원은 평균 1.16명이다. 당연히, 중소형 정원들(US\$1-2 million의 예산을 가지는) 중에서 더 큰 정원들은 평균 1.16명 이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평균 1.37명 정도이다.

대학교 정원들은 대부분 마케팅 또는 PR을 전담하는 사람들 가질 가능성이 없지만, 반면에 정원들은 공공/민간 정원 파트너십으로서 운영하며 그리고 정원에서 수집한 식물들을 전시함에 있어서 특성화된 정원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시용 정원에 고용된 마케팅과 PR 전담 직원들은, 아마도 마케팅 용량에서 홀로 활동하는, 마케팅 전담인원 1명당 250,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수목원에서는 마케팅 전담인원 1명당 대략 150,000명의 방문자들을 유인한다.

위의 방문연구에서처럼, 마케팅/PR 책임자는 거대한 도시 지역들 또는 더 작은 도시 지역들보다(인구 100,000명 미만) 차라리 더 작은 도시권역들에 위치할 때 방문자 유인에서 대부분 성공하는 듯하다.

대형 정원들(US\$2.5 million의 예산을 가진)에서, 전형적인 기관들은 마케팅과 홍보에 전담하는 직원을 평균 3.99명(중앙값으로 2.25명)을 가졌거나, 또는 직원의 3.1%,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19명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5) 정원관리를 위한 공동체 봉사활동

정원 교육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정원들의 3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원에서 교육받은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수는 어느 벤치마킹 연구에서나 평가를 위한 주요한 영역이 되어있다. APGA 연구는, 교육의 영역에서, 정원에서 교육을 받는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평균 인원수에서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정원의 크기였음을 보여주었다.

US\$100,000 미만의 예산을 가진 정원들은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성인들과 어린이들은 1,000명 미만이었고, 그러나 대형 정원들은(US\$1-2 million의 예산을 가진) 연간 평균 7,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US\$2.5-5.0 million의 예산을 가진 정원들에 대하여, 교육받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중앙값은 또한 대략 7,500명이다. 초대형 정원들은(US\$10 million 이상의 예산을 가진) 거의 60,000명까지(중앙값으로)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대부분 어린이들의 교육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중소형 정원들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가장 많은 참여자들을 유인하였다, 거의 6,000명, 그러나 학교와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상당한 수의 어린이들도 또한 있었다(1,000명 이상). 물론, 그와 같은 학교와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또한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중소형 정원들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은 평균 1,600명이었다.

사실상, 교육은 모두 교육에 전일제 전담직원을 적어도 1명은 가지고 있는 수목원, 식물원, 그리고 전시용 정원들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과대학은 1명보다 더 적은 인원을 가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종합대학의 연구진과 직원(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그와 같은 정원들이 제공하는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용 정원들과 교육시설 모두에 전력하는 교육 영역들의 교육과 지원은 오

늘날 정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영역의 하나이며, 그리고 정원 경영 문헌은 어린이용 정원의 개원, 계절별 교육 전시들,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배우는 기회들에 대한 뉴스들로 가득차 있음에 틀림없다.

영국에서, 유사한 벤치마킹 연구는 없었다. 비록 영국의 개별 정원들에 대한 조사는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 정원들의 동일한 유형이 적용될 것이라고 제안할 것이다.

정원방문 데이터는 대형 정원들에서 방문자 수는 또한 에딘버러, 에덴 그리고 큐(Edinburgh, Eden and Kew)와 같은 정원에 대하여 750,000명의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반면에 중형 정원들은 250,000-750,000 범위에 방문자 수를 예측한다. 아마도 National Trust의 소유이거나 또는 민간이 소유한, 소형 정원들은 연간 250,000명보다 적은 수의 방문자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아마도 더 이야기할 만한 것은 왕립 원예 협회의 의견이다. 협회는 적어도 연간 40,000명의 방문자들이 정원의 재정적 지속성을 위해서 요구된다고 알려준다(QuestRitson, 2007).

영국의 정원 마케팅은 또한 정원에 따라서 다양하다. Kew Gardens은 마케팅에 매년 £ 1/2 million 미만을 지출하고, 그러나 서머셋(Somerset)에 있는 Hestercombe와 같은 소형 정원은 그 부동산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단지 £ 20,000을 지출할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정원들은 전담하는 마케팅 경영자를 가지지 않고 그러나 공동체 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모든 봉사활동을 수행할 적어도 1명의 직원을 가진다. 따라서, Hestercombe에서, 마케팅 운영자는 또한 정원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자료를 올린다.

영국 정원에서, 직원들의 업무는 미국의 정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 영국의 National Trust 소유의 정원들 등에서, 1명의 방문자 서비스 직원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 직원은 혼자서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National Trust의 본부 직원들과 마케팅을 협력 및 조정한다. 거의 모든 National Trust 정원들은 전담하는 마케팅 직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6) 정원 마케팅을 위한 대중매체의 활용

어떤 장소를 관광 목적을 위해서 유리하게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정원들의 역량이 있어왔다. 꽃들과 정원의 이미지들은 주택들(Rose Cottage), 도로들(Orchard Way), 근린주거 지구들(Primrose' Hollow), 마을들(Welwyn Garden City), 도시들 ("Canterbury, the Garden City"), 군들("Kent - The Garden of England"), 주(state)들("New Jersey - The Garden State") 그리고 섬들("Kauai - The Garden

Isle“)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

정원들과 꽃들의 활용들은 이미지(비유적 묘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꽃들은 역동적으로 목적지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하와이의 사례에서, 전통적인 하와이안 화환은 관광객들에게 섬들에 대한 유혹과 교육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이제 하와이 문화의 상품화이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사례에서, 1990년대에 새로운 남아프리카 국기의 색상으로 전시된 극락조화, *Strelitzia reginae*, 품종은 Kirstenbosch National Botanical Garden에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그리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Nelson Mandela의 방문 후에 “Mandela’s Gold” 라고 명명되었다.

Michael Hall은 그와 같은 브랜딩에서, 이 경우에 뉴질랜드 Christchurch Botanic Gardens은 다음과 같은 어떤 미래를 예시한다: “환경적 자원에 대한 내적을 집중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관계성을 향하여 더 많은 중심의 이동을 한다.”

7) 정원 마케팅을 위한 잡지의 활용

미국에서, 잡지들은 정원들과 정원활동 정보의 전파를 위해서 선택하는 미디어이며, 그리고 이들 잡지들은 정원들에 대한 관광 사업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Travel Industry of America는 지난 5년 내에 정원 여행자들의 거의 1/4(25%)는 여행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home and garden magazine의 어떤 유형을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Better Homes and Gardens은 가장 인기 있는 home and garden magazine이었고, 정원 여행자들의 12%가 여행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그 잡지를 이용한다. 여행 아이디어를 위해 이용되는 다른 인기 있는 home and garden magazines은 Southern Living (7%), Country Living (7%), 그리고 Martha Stewart Living (4%)을 포함하였다. 정원 여행자들의 5%는 여행 아이디어를 위해서 어떤 다른 home and garden magazine을 이용하였다.

정원들과 정원활동에 대하여 전체를 또는 일부분을 할애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들은 185개가 있다. 이것은 1988년에 80개부터 증가하였거나, 또는 매년 3% 이상 성장하였다. 다음의 것이 미국 정원활동에서 중요하고 매력적인 것이다. 2011년에 Better Homes and Gardens은 3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잡지였다. 7,641,1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전에는 8번째에서부터 성장하여 3번째까지 올라왔다. 더욱이, 많은 라이프스타일 잡지들에서(Southern Living, Sunset Magazine, Martha Stewart Magazine), 정원들과 정원활동은 편집 내용의 1/3까지 차지할 수 있다.

정원용품으로부터의 광고 수입은 또한 잡지의 생존에 중요한 기여자이며, 그리고 2006년에 미국에서 정원활동의 비용충당 금액은 US\$26 million까지 되었다. 단지 구독자용 잡지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한 계절들에서 발행되는 정원들과 관련된

특별한 흥미를 가진 출판물에서도 우세함을 나타낸다.

독자들에 대한 분석표의 형태에서 잡지들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정원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과 특성들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며 그리고 따라서 아마도 정원들을 보기 위해서 여행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준다. 독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며, 중앙값으로 나이는 대략 50세, 미국인에 대하여 중앙값으로의 나이보다 10년 더 나이가 많다; 중앙값으로 수입은 또한 국가와 대부분의 주(state)들의 평균보다 더 높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혼자들이다. 교육 수준은 또한 일반인의 평균보다 높고, 그러나 가정에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40% 수준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는 이와 같은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며 그리고 또한 여행을 다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냄은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정원 잡지들은 특별한 정원 시장들을 겨냥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Garden Design 잡지는 교육 및 수입이 더 높은 인구통계학적 특징 가진 사람들에 호소력을 가진다. 대략 25만 명의 독자들을 가지며 그리고 수입은 US\$750,000이다. 독자들은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며(93%), 더 높은 중앙값으로의 수입을(US\$189,000) 가지고, 더 많은 나이를(54) 가지고, 그리고 주거지로서 주택의 중앙값으로의 가치는 US\$551,000인데, Better Home and Garden의 독자들을 위한 주택의 가치인 US\$209,282과 비교가 된다. 독자의 98%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며(Better Homes and Garden 독자들의 78%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그리고 그들의 총 가치는 US\$1 million보다 더 크다. 사실상, 비교할만한 유일한 특징은 잡지를 구매하는 사람은 여성이 우세하다(73%).

잡지를 구독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잡지들의 판매방식인 미국과는 달리, 영국에서 잡지들은 신문 판매대와 신문 판매업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구매된다. 틀림없이 가장 인기 있는 잡지는 BBC gardening magazine, Gardener's World 이다. 거의 250,000명의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335,000의 회원들이 Royal Horticultural Society의 월간 잡지를 받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원활동 잡지들과 여행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연결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잡지 발행회사의 위치가 관광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Birds and Blooms을 발행하는 Reiman Publications은 위스콘신의 Greendale에 방문자 센터를 가지고 있다(물론 정원 관광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년 125,000명의 방문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당신이 어느 영국 정원가에게 “Percy Chucker”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즉시 Percy Thrower를 기억할 것이다, 매우 즐거워하며, 그는 1969부터

1976까지 Gardeners' World라는 텔레비전 쇼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장기간 방영된 어린이 프로그램, Blue Peter의 정원가였다. Thrower는 “영국의 첫 번째 명성 있는 정원가”로서 BBC의 역사에서 묘사되고 그리고, 전설적인 Percy Thrower처럼, Gardeners' World의 그의 후계자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영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날, Gardeners' World 는 매주 25백만 명 이상의 방영자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BBC가 발행하는 Gardeners' World 잡지는 영국에서 판매량으로 가장 큰 정원활동 잡지이다.

정원활동은 첼시 플라워 쇼 기간 동안에 또한 영국 텔레비전에서 매우 특징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텔레비전에서 정원활동은 영국에서 목격되는 유행을 결코 달성한 적이 없다. 예외적으로, 아마도 PBS 텔레비전의 장기 방영된 정원 쇼로는 The Victory Garden이 있었다. The Victory Garden 는 1975에 처음 방영되었고 그리고 1980년에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그 쇼는 Roger Swain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는 영국 TV 정원의 특성이 가지는 어떤 부분의 유행을 접근 하였다. 500개 이상의 에피소드들이 제작되었고, 그리고 1994년에 가장 인기가 많을 때, 4.6백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 쇼를 보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늘날, 그 프로그램은 여전히 방송되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감소된 시청률을 가지며 그리고 그 쇼가 한 때 가졌던 재능 또는 명성은 없어졌다. 미국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The Victory Garden 은 케이블 채널들의 출현 그리고 특히 HGTV(Home and Gardening Television)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경쟁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HGTV가 처음으로 1994년 12월에 방송을 내보냈다. 프로그램 제공에서 폭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한 동안, Roger Swain은 People, Places, and Plants라 불리는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HGTV에서 방영되는 주로 북동부 지역의 쇼이며 People, Places, and Plants 잡지에 의해서 보완되어졌다. 그 텔레비전 시리즈는 더 이상 방영되지 않지만 잡지는 계속 발행되고 있고, 본래의 북동부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정원 관광 잡지로 인정된다. 특히 정원 방문을 위한 이벤트들과 장소들에 대한 내용이 실린 6월호는 매우 인기가 높다.

13년 동안, Erica Glasener에 의해서 운영된 프로그램인 Gardener's Diary 는 주중의 야간에 방영되는 정원 부문에 시청자들을 유인하며 상당한 수의 시청자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더 이상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방영되지는 않는다. Glasener는 그 시리즈들이 종영된 후 4년 동안에도 당시 사용된 정원의 장소들은 여전히 상당한 수의 방문자들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더 최근에, 작가이며 그리고 TV 스타인, P. Allen Smith는, PBS(공영방송망) stations에서 국가적으로 협약을 맺은 30분 분량의

TV 쇼를 가진, 충성스런 시청자들을 확보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P. Allen Smith는 (그리고 또한 Erica Glasener은 생방송에서) 그들의 장소들을 위해서 대중들에게 개방된 정원들을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쇼에서 부각된 정원들은 쇼가 끝난 수 개월간에 상당한 수의 방문자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남부 지역의 Victory Garden의 고향인, 조지아에 있는 Callaway Gardens은 Victory Garden을 촬영하기 위한 장소가 Callaway였다는 사실 때문에 1990년대에 그 장소의 인기에 많은 기여를 한다. 현재, HGTV의 프로그램 공급은 정원보다는 주택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한 가지 예외는 아마도 매년 New Year's Day에 캘리포니아 LA 근교 도시인 Pasadena에서 장미 퍼레이드의 생방송일 것이다.

8) 정원 마케팅을 위한 신문의 활용

영국과 미국의 정원들에 대한 신문들의 역할과 취재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정원 관련 취재범위는 일반적으로 주말 부문에 있고 그리고 종종 신문의 home and garden 부문으로 통합된다.

미국의 주요 신문들 중에서, 오직 몇몇 신문들만이 전담하는 정원활동 관련 편집인을 가진다. 많은 신문들은 변함없이 1년 중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들에 정원활동에 할애된 정원칼럼을 가진다.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은 여행의 선택으로서 정원들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정원 관련 문구들은 여행 부문에서 발견된다.

영국에서, 신문들은, 그리고 특히 일요 신문들은, 정원 관련 취재 내용으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Daily Telegraph는 그들의 토요일에 발행되는 신문이 온전한 정원활동 부문을 가진 유일하게 심도 있는 신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요일 신문들도 유사한 취재내용을 발행한다. 비록 종종 “특징들(Features)”, “생활양식(Lifestyle)” or “가정(Home)” 이라는 제목을 가진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9) 정원 마케팅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

21세기 초반에 소셜 미디어의 성장은 정원 시장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창출하였다. 한 연구의 주장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킹과 정원은 자연스런 동반자들이다; 정원가들은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종자들을 교환하며, 질문하고, 조언과 대화를 제공하는데 열정적이다” (British Columbia Landscape and Nurseryman's Association,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에 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가진 성인들의 66%가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들을 이용하였고, 나이가 50-64인 그룹의 단지 51%만이 이들 사이트들을 이용하였으며, 그리고 단지 그와 같은 성인들의 33%는 65세

이상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적 네트워킹은 더 젊은 연령의 무리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 사실과 관련지어,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상호연락을 위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단지 어떤 함께 나누게 되는 취미 또는 흥미를 위해서 주변과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용자들의 14%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원활동을 주도하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운송 수단과 같은 사회적 미디어는 여전히 초기적 단계임을 제시한다.

특히, 정원 관광을 위한 사회적 미디어의 이용에서, 2011년 Buffalo Garden Walk 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참여자들의 단지 6%만이 축제에 오기 전에 소셜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받았거나 또는 상담하였다는 사실에서처럼, 이와 같은 발견을 확증시켜 주었다.

최근에, 대부분의 정원들은 넓은 부분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의 회원제 기반한 상호 연락이 주요하다는 견해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다른 미디어 운송기들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특히 그들의 마케팅 복합물에 포함된다.

10) 정원 마케팅을 위한 언론과 홍보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정원들의 마케팅 예산들은, 특히 중소형 정원들에서, 매우 적다. 사실상, 주요한 발행물들에 광고지면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정원들에서 재정적 범위를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무료 인쇄물의 유인물과 PR이 대부분의 정원들을 위한 주요한 마케팅 도구가 된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Worcester에 있는 Tower Hill Botanic Garden과 같은 더 작은 규모의 식물원들은 매월 인쇄물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달(month)에는 정원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더 큰 정원들은, 종종 더 큰 시장에서는, 더 자주 인쇄물들을 보낸다.

특별한 전시 또는 “blockbuster” 급의 전시가 있을 때는 더욱더 구조화된 PR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국에서 Somerset에 있는 Hestercombe Gardens은 Tower Botanic Garden이 월 1회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인쇄물을 보낸다. 전시회의 성공에 주요한 부분인 PR의 사례는 2006년 6월 18일부터 2006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Chihuly at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의 전시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었다. 캠페인의 성격, 일정계획, 성과들, 그리고 캠페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들은 교훈적이며 그리고 넓은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 Chihuly exhibit이 정원으로 150,000명의 추가적인 방문자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Chihuly exhibit의 PR 캠페인의 요약이 다음 아래에서 제시된다.

전략: 전시가 유행하고 있는 다른 북미 정원들에서 초기의 Chihuly 전시들의 성공으로부터 그 전략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거기에는 기존의 시장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목표로 삼은 관람객들을 추구할 기회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관람객들에게, 아마도 전통적이지 않은, 전달할 PR을 이용할 것이 의도적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캠페인은 그런 다양한 관람객들을 겨냥하였다. 예술 애호가들, 박물관 관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여름 방학 중 뉴욕에 있는 관광객들, 특별한 이민족 그룹들, 가족들, 그리고 특히 새로운, 정원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방문자들과 같은 다양한 관람객들.

사용된 PR 도구들: 보도내용을 알리기 위한 가장 표준화된 수단은 인쇄물 발송 기계와 이메일 발송 도구였다. 이 도구들은 전시회 기간 안에 Chihuly Nights와 폐막일 공지로 보충되었다.

유사하게, 뉴스 송신 장치를 통한 배포를 위해서 작성된 기사들이 있었다. 현장에서, 사진작가들에게 특별한 촬영을 위한 기회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미디어를 위한 친화적인 관람들이(미디어의 날 관람) 목표로 삼은 미디어를 위해서 수행되었다. 미디어 관계자들의 몇몇은 또한 소재들의 개별적 알림들을 위해서 목표로 삼아졌다.

일정계획과 성과들: 물론, 캠페인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New York Times에게 향하게 하였다. 설치, 개막, 그리고 최고를 즐길 수 있는 이른 일정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이벤트들에 관한 기사 부분들에 진행 중인 목록들을 제공하는 것들로 캠페인의 내용들이 채워진다.

텔레비전은 Dale Chihuly와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관심을 끌도록 하였고, 그리고 다른 생방송 인터뷰들, 예술과 문화 부문, 기상정보들, 그리고 저녁 뉴스 리포트들은 텔레비전 보도 내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최소 195개의 인쇄물 항목들, 15개의 텔레비전 부문들, 7개의 라디오 이야기들, 그리고 204개의 인터넷 홍보들이 있었다. 앞서에서 언급한 것은 표준화된 PR 결과물로 여겨지는 반면에, 일반적인 PR 성과물들로부터 2개의 상당한 출발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마케팅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광범위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이용이었다. 이것은 NYBG website와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Chihuly exhibit을 목록으로 올린 것, 블로그들에 기사들과 소감문들을 올린 것, 소식란과 뉴스 토론방에 기사를 올린 것, 그리고 기사 지면을 얻기 위해서 온라인 리포터들과의 연계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시장들에 대한 성공적인 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PR campaign은 과학과 예술 공동체들, 그리고 Dig-it.com과 같은 사이트들을 통하여 더 젊은 관객들에게로 의미 있게 확장되었다.

성공에 기여한 인지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그것은 커다란 화제였다 - 당시의 정원박람회는 뉴욕 지역에서 Chihuly's art의 첫 번째 주요 전시회였다.
2. 그것은 다채로운 색상과 웅장한 시각적 전시회였다.
3. 예술, 건축, 그리고 화훼의 아름다움을 병치시키는 강력한 전시회였다.
4. 저명한 인사를 내세운 전시회였다.
5. 기존의 전시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었다. 그의 예술은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그것은 이제 새로운 무대, 이번 경우에는 정원들에서 병치되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술과 정원의 모두에서 새로운 시각적 각도가 되었다.
6. 그것은 계속되는 전시회였다. 특히, 초창기에 그 전시회의 인기는 그것을 "must see"로 만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개장을, 이번 경우에는 야간 개장으로 새로운 차원인, "Chihuly Nights"를 소개하는 것을 허가함,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추가적이고 다른 PR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7. 그것은 정원을 포함한 넓은 영역의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따라서 작가들과 미디어는 하나의 영역 또는 특징에 집중해서는 안 되었다.

11) 정원 저널리스트의 역할

대부분의 관광객 활동들과 달리,¹⁸ 미국에서 정원 및 정원활동은 저널리스트들의 그룹인, Garden Writers Association을 가진다. 이들은 정원들의 발행물을 위해서 집필활동하는 것에 특성화되어 있다. 그들의 회원들의 분석표는 2/3 이상이 실질적으로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고(작가들, 편집자들, 프로듀서들 그리고 쇼 진행자들), 반면에 나머지는 클럽들, 협회들, 개별 정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며, 그들 모두는 정원활동과 정원 방문의 성장과 개발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집필하고 있는 발행물들에서, 목적지인 정원들은 편집하고 있는 보도 내용의 주요한 부분들이다.

여행을 즐기는 대중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정량화될 수 없지만 방문자들을 이끄는 그들의 영향력과 힘은 어느 것보다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시인인, John Donne는 "사람은 하나의 섬이 아니다(no man is an island)" 이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특히 정원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제 공원들과 많은 다른 매력요소들과는 다른, 일반적으로 3시간미만 동안 머물 때, 그래서 사람은 목적지로서의

정원들과 함께 있다. 정원들은 따라서 목적지로서 그리고 지역의 관광 매력요소들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충족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정원들은 스스로 지역의 마케팅 기구들과 연계시켜왔다. 정원 컨소시엄을 내에서 또는 지역의 관광 목적지 내에 정원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Fáilte Ireland는 특별한 지역들의 정원들을 특징짓는 특별한 브로슈어를 작성하고 있다(south-east and south-west). 더 넓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정원들의 컨소시엄은 필라델피아의 50마일 반경 내에 21 정원들을 특징짓는 브로슈어를 가지고 있다. 2010년에 1,072,000명의 방문객들을 유인하였다. 그리고 코네티컷 주는 부분적으로 “Historic Gardens of Connecticut”이라는 제목을 가진 브로슈어를 재정 지원하였다. 그 브로슈어는 방문자들을 유인하는 그들의 주요한 원천들의 하나로서 특별한 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12) 정원 거버넌스

다시 말하자면, 관광 인프라의 많은 다른 구성요소들과는 달리(호텔들, 테마 파크, 유람 여객선들, 관광 운영자들), 이들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 소유이며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정원들은 다양한 소유형태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American Public Garden Association는 정원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4가지 유형을 인식하고 있다: 단과대학 또는 대학의 소유; 시 또는 군의 소유;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본적으로 민간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공공의 기금에 접근성을 가지)이다. 지배구조는 3가지 지배구조의 구성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지방자치단체의/교육의, 민간의, 또는 미국 국세청에서 501(c)3로서 등록된 비영리 기관인 트러스트에서 수용되는 것이다.

초대형 정원들은 독립된 비영리 기관들이고, 반면에 민간 정원들 그리고 대학 및 시 소유의 정원들은 중형 또는 소형 정원들인 경향이 있다. 많은 정원들은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시장에서 유리하게 되고자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여러 해를 거쳐 거의 모든 정원들은 지배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지배구조의 각각 형태는 21세기 관광시설들로서 그들의 운영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창출한다.

13) 공공소유의 정원-도시정부와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소유의 지배구조는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직접적인 지배구조로 특징지어지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장된 수입원을 가진다. 비록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축소되고 있다. 정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이상 정부기관들/대학들의 기금만을 의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기금이

축소되어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원들은 추가적으로 그들의 운영기금을 보충할 필요를 가진다. 정원 내에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외부의 다른 기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다른 새로운 기금 마련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간섭함으로써 종종 어려움에 놓인다.

14) 민간소유 및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원

정부의 소유권 부재는 민간정원들이 자체 수입 또는 개인의 재정지원에 매우 높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정원들은 법인 조직이며 그리고 501(c)3의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한다.

민간 소유이며 운영되는 정원들의 사례에서, 주요한 도전은 매일 매일 운영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운영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종종 회원제 또는 법인의 스폰서와 기부를 통한 기금 확보를 시도한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5년간 특히 어려운 도전이었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법인과 민간의 지원이 심각하게 삭감되었다.

어떤 전문 정원 운영자는, 민간정원 소유권에 대하여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어떤 정원이 정원 작업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능력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의 요인이 지배구조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어느 사업에서처럼, 좋은 민간 소유자와 좋은 공공/비영리 소유자가 있다. 그것은 진정으로 정원들의 본질에 의존한다.

몇몇 정원 소유자들은 아마도 결코 이익을 낼 수 없고, 반면에 다른 정원 소유자들은 이익을 내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은 소유자일 수 있다. 사유화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계획/공간분할 논점들이 가득하다; 주변의 먹이 주는 도로들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은 소유주의 통제를 벗어난다. 때때로 위원회를 가지는 것은 냉철한 차선의 생각들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을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서비스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은 또한 혁신을 단축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원들은 어느 다른 사업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긍정과 부정은 정말로 각각의 상황에 달려있다.

4.3. 해외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정원산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산업이 화훼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와 같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화훼산업의 생산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에 대략

1조 원까지 증가를 보였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3년에 대략 74백억 원을 나타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또한 농진청의 화훼 생산금액 중 정원활동식물과 산림청의 조경재 생산금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 각각 약 33백억 원과 약 72백억 원으로 정원식물재료의 총생산금액은 약 1.1억 원이다(표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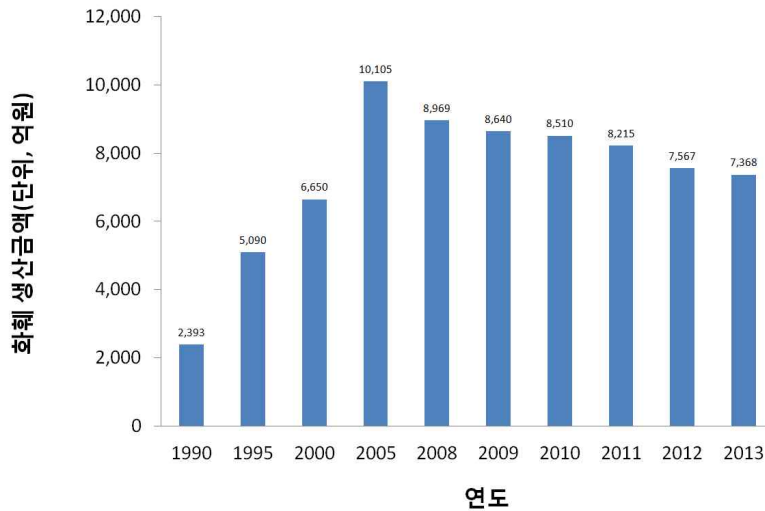


그림 4-2. 우리나라 화훼생산금액(1990-2013)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정원식물재료의 생산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정원식물재료의 총생산금액은 각각 약 1.3조 원과 약 2.8조 원이고, 국민총생산은 각각 11,147억 미국달러와 24,449억 미국달러이며, 인구는 각각 4,978만 명과 6,243만 명이였다. 이것을 간단히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영국과 비교하여 정원식물재료의 총생산금액, 국민총생산, 인구의 수준은 각각 46.4%, 45.6%, 79.7%이다. 그리고 만약 국내총생산과 인구에 비례하여 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원식물재료의 소비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원식물재료의 총생산금액은 1.6조 원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국 원예유통협회(HTA)의 분류기준으로 전환하여 해당 품목별로 비교하면, 기타정원식물 및 관상수의 생산금액은 오히려 영국보다 국내총생산 및 인구 수준에 비하여 높으며, 반면에 종자 및 구근과 화단용 식물의 생산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것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3-3). 국제적은 정원문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원문화가 발전한다면, 향후 종자 및 구근과 화단용 식물의 생산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은 영국 원예유통협회(HTA)의 마케팅 및 의사소통 전략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표 4-1. 우리나라 화훼의 품목별 생산금액 추이(2009-2013)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액	(%)	생산액	(%)	생산액	(%)	생산액	(%)	생산액	(%)	
화훼류	8,640	100	8,510	100	8,215	100	7,567	100	7,368	100	
정원 활용 식품	초화류 (화단용)	1,589	18	1,568	18	1,530	19	1,470	19	910	12
	관상수류	437	5	425	5	349	4	286	4	311	4
	화목류	483	6	623	7	548	7	417	6	334	5
	종자·종묘류	62	1	129	2	119	1	98	1	97	1
	구근류	46	1	39	0	41	0	56	1	29	0
	분화류 (초화류 제외)	2,785	32	2,749	32	2,766	34	2,500	33	1,595	22
계	5,402	63	5,534	65	5,352	65	4,827	64	3,276	4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4)

표 4-2. 우리나라 조경재의 품목별 생산금액 추이(2009-2013)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액	(%)	생산액	(%)	생산액	(%)	생산액	(%)	생산액	(%)
조경수	7,675	94	6,977	92	7,106	92	6,121	90	7,157	94
야생화	246	3	252	3	335	4	312	5	250	3
분재	286	3	362	5	308	4	350	5	229	3
계	8,208	100	7,590	100	7,749	100	6,783	100	7,636	100

출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2014); 2013 임산물 생산조사(산림청,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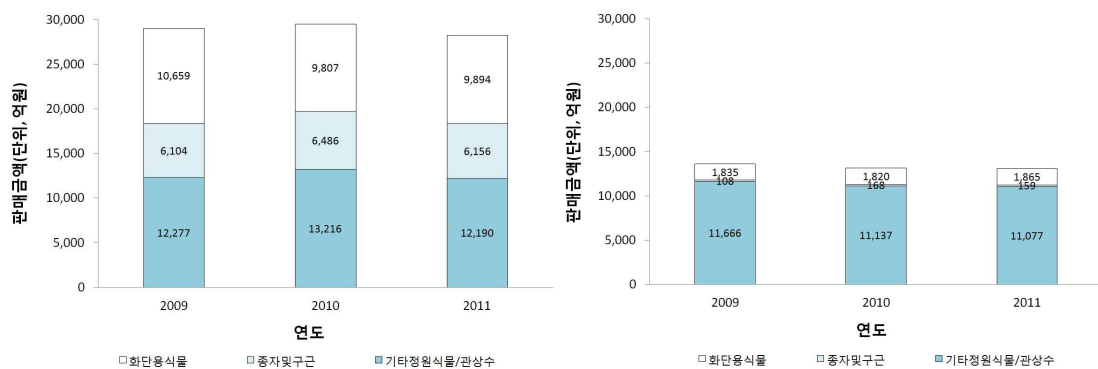


그림 4-3. 우리나라와 영국의 정원식물재료 생산금액 추이(2009-2011)

출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2014); 2013 임산물 생산조사(산림청, 2014);
HTA marketing & communications strategy 2012-2015(HTA, 2012)

4.3.1. 정원활동과 경제

영국에서 식물들과 정원용품들의 판매는 2000년대 전반기에 매우 강하게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은 20세기 후반에 주택 소유자들의 현저한 증가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공공과 기업 부분, 특히 쾌적성(amenity) 시장에서의 판매들은 또한 이 시기에 호황을 누렸다. 새로운 주택 건설, 유통센터, 오피스 단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수반하여 식물과 조경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Lehman Brothers 붕괴와 연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영국 정원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였다. 3년 6개월 후에 영국의 건설 환경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지만, 정원산업은 여전히 이와 같은 사태로부터 면역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주택들과 정원들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많은 영국인들은 자신의 과일과 채소들을 직접 재배하며, 외식보다는 차라리 가정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야외에서 식사하고, 그들의 정원에 야생동물을 유인하며, 그리고 매년 50억 파운드(8.8조 원)의 식물들과 정원용품들을 유통센터에서 구매하고 있다.

4.3.2. 인구변화

영국의 인구는 향후 수십년에 걸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핵심이 되는 4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소비자들과 동시에 중년 가족 삶의 단계에 있는 그룹들이 더욱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영국에서 정원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확대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의 연령기이다. 한편 증가하는 수명은 또한 점차 그들의 정원들에 더 많은 정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 소비자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실제로 정원 서비스들은 향후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영역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단지 오래된 정원들의 소유자들이 디자인, 조성 그리고 정원 관리 서비스를 찾는 데서 유도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야외 공간(outside room)’을 즐기기 원하는 그러나 지나치게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스스로 정원을 조성할 수 없는 더 젊은 주택소유자들에 의해서 유도될 것이다.

4.3.3. 소비자 동향

많은 젊은 소비자들은 또한 여가활동과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생활양식의 선택으로서 정원활동에 매료되고 있다. 많은 정원 유통센터들에 오전 중 방문 동향을 살펴보면, 정원활동들이 취학 전 아동을 가진 젊은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패션 유통업체인 Next는 ‘cool gardening’ 유행을 인지한 많은 기업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2011년에 그 첫 번째 Next Home & Garden 상점을 Sussex의 Shoreham에 있는 이전에 가정용품 할인매장으로 사용되던 장소에 개장하였다. 2012년 봄에는 Ipswich에 두 번째 상점을 개장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함축적인 자급자족과 더 넓은 환경적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식물을 재배하세요(Grow Your Own, GYO)” 라는 캠페인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강력한 공감을 가지게 하는 또 다른 유행이다. 전체 연령층의 소비자들은 점차 공공 및 개인 공간들에서 식물들의 환경적 유익들을 인식하고 있다. 정원산업은 각각의 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과 과일과 채소들의 재배에 대한 경험은 정원활동의 계절적 특성에 대한 더 큰 감동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절정에 다다른 봄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소비자의 주의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의(localism)’는 지속가능성이란 주제와 매우 가까운 관련성을 가지며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다시 새로운 관심을 창출한다. 새로운 관심들은 재배자들과 정원 유통업체들에게 지역 생산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농부들의 시장(farmers’ markets)’을 운영하는 많은 정원 유통센터들을 위하여, 공동체 그룹과 지역 이벤트들은 참여를 통하여 정원 유통센터들을 지원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3.4. 기술의 영향력

가장 중요한 유행들 중의 하나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신속한 채택이다. 이것은 최근 정원산업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 기술의 영향력은 무수하게 많은 다른 방법들 속에서 감지되고 있다.

디지털 의사소통의 폭증은 인쇄물과 방송 미디어의 전례 없는 붕괴를 유도하였고 그리고 영국의 미디어 소비 습성을 변화시켰다. Ground Force and Gardeners’

World와 같은 TV 시리즈와 Gardeners' World magazine이 2000년대 초반에 거대한 독자들을 유인하였지만, 2010년대 소비자들은 인쇄물과 온라인에서 더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들과 발행물들을 섭렵하며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 짧은 시간에 정원활동에 관한 정보를 즐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검색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소비자들은 전혀 없이 온라인에서 그들에게 유용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되었다.

상세한 특성과 품질 평가들, 전문가와 소비자의 품질평가들, 색상, 스타일 및 크기 선택사양, 가격조건과 유효성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또는 증가하는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컴퓨터를 통하여 연중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입과 1인당 소비를 가지며 온라인 유통체계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에 총 영국 인터넷 판매는 234억 파운드(41.4조 원)를 달성하였고 그리고 광대역 연결망을 가진(스마트폰 등과 같은) 성인들의 72%가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 온라인 유통업체를 이용하였다. Future Foundation은 2016년까지 여행, 의류 그리고 가정용품들의 50% 이상이 온라인으로 구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점 내 구매도 또한 평면 스크린의 정보 전시, 터치스크린 정보 포인트들, 바코드/QR 코드 인식기 등을 활용하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종종 비교하는 정보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차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유도될 것이다.

DIY, 육식, 부엌, 정원, 가구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인 Homebase는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실내장식과 가구의 사진을 중첩시키며 소비현상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내장식과 가구를 배치하는 대상공간에 대한 개념이 파티오(patio)와 정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점과 인터넷 유통망의 경계는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점차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품들을 공급하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상점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정원사업 서비스를 기대한다.

Garden Centre Group은 'click and collect' 서비스를 최근에 도입한 수많은 유통업체들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주요한 유통업체들에서 그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별개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지지될 수 없으며, '다채널방식(multichannel)'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개발에서 'mobile first'는, 말하자면 당신의 스마트폰의 웹사이트 또는 앱(App)을 먼저 디자인하고 그리고 다음에 책상용 컴퓨터/노트북 선택사양을 위해서 추가할 다른 기능들을 찾아보라, 새로운 사업운영의 지침이 되고 있다.

4.3.5. 정원서비스 시장의 성장

소비자들은 동일한 유통업체에서 배달되는 제품들과 그에 대한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받기를 원한다. 부엌과 욕실 유통업체들은 조립품, 설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방식을 주도하고 있다. PC World와 자사의 Tech Guys service와 같은 기술 관련 유통업체들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Next Home & Garden은 자사의 바닥 포장용 제품들에 대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정원 센터들이 이미 정원 디자인, 조성 그리고 유지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은 일부에서 ‘one stop shopping’의 편리함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유통업체 브랜드의 트러스트(기업 합동)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정원 서비스들은 이미 미국에서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원 서비스는 2020년까지 영국에서 정원 유통업체들의 거래액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잔디 관리 업체인 Green Thumb과 다른 잔디 관리 프랜차이즈들의 빠른 성장은 정원 서비스들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HT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원제 부문은 조경전문가협회와 연합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체들과 연계된 조경(landscaping) 부문이다. HTA의 조경전문가 그룹인 APL(the Association of the Professional Landscapers) 브랜드는 National TrustMark Scheme과의 연계로부터 이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4.3.6. 기후 변화

2008년 이후로, 영국 유통업체는 경기침체와 그리고 온라인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증가로 유발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정원 및 여가 유통 부문에 대하여 심지어 더 중요한 도전은 기후 변화에 있었다. 여러 해 동안의 특이한 기후는 정원 유통업체들에게 거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2년과 2013년 봄철의 장기화된 한파는 더욱더 심한 불행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원 유통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였다. 봄/여름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정원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영역과 소비자 유인으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왔다. 뿐만 아니라, 정원 유통업체들의 합병과 폐업과 같은 힘든 시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범주 그리고 제품들을 채택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정원 유통업체들은 레스토랑들 또는 크리스마스 상점과 같은 새로운 영역과 소비자 유인책으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유통업체들은 또한 핵심적인 차별성은 훌륭한 소비자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지식과 권위를 배달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원 유통업체들은 또한 모든 중요한 혁신들과 “새로움”을 제공하는 공급자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며, 뿐만 아니라 기후가 극적으로 상하로 요동치는 요구에 영향을 미칠 때 매우 잘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4.4.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관광의 초점으로서 정원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역설이다. 식물원들이 관광 산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력요소들 중에 있고 그리고 공공정원들의 수는 전 세계를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그 미래는 불확실하다. 거의 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금 지원을 받아오던 상황으로부터 (종종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의 예산), 증가하고 있는 정원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반면에 동시에 정원들은 높은 수준의 직원의 인건비에 직면하며, 물리적 인프라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과도한 방문자들을 유인해야 하는 불가능과 불편함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물 다양성의 손실은 식물원들이 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임무는 식물 다양성을 위한 필요성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시키고 소통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아마도 분명하게 현재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더 폭넓은 관람객들을 겨냥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이며,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들은 또한 돈, 시설, 그리고 직원들을 요구한다. 따라서, 21세기의 환경적 요구들은 전 세계 정원 공동체에게 상당한 도전을 제시한다. 그와 같은 중대한 도전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 정원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영국 Cornwall에 있는 Eden Project의 성공,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mosaiculture display의 의도된 성공,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Royal Botanic Gardens and Domain Trust,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 미국의 초대형 식물

원들과 공공 정원들과(New York Botanical Garden, Longwood Gardens) 같은 정원들에서 의해서 유인되는 최근 대규모 방문자들은 가장 분명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전세계를 통하여 더 작은 규모의 정원들은 방문자들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지만, 그들은 생존과 존재에 관하여 가장 큰 위협을 속에 있다.

David Rae (D. Rae, Edinburgh, Scotland, 2008, personal communication)는 지난 50년 이상 동안 정원들은 연구와 과학에 집중하길 선호하며 그들의 관광과 방문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1999년에, 펜실베이니아 Director of Chanticleer Garden는 정원들이 아름다움을 향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방문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해석보다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최근에 정원 전문가들은 방문자에게 관심을 집중을 하는 것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Maunders, 2006).

그런 집중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1960년대에, 정원에서 우세한 패러다임은 식물 연구였다. 1980년대에 박물관들의 인기가 성장한 것은 정원의 패러다임을 박물관 세계의 흐름들을 모방하는 것에 하나로 변화시켰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은 주요한 초점이고 정원 운영은 필연적으로 교육과정이었다.

21세기에, 교육은 여전히 우세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보존을 소개하는 교육으로 진화하였다. 지구온난화, 기술, 그리고 조류와 야생종들을 보호하는 정원의 역할과 같은 보존의 논점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교육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하여, 정원들은 더욱더 공공성을 가지고 더욱더 관련성을 가지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임무를 완수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정원은 방문자와 잠재적 방문자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라서 관광은 그들의 운영에서 중요한 구동력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문자 센터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 센터들의 건설을 볼 수 있다. 더욱더 관광에 방향을 맞춘 관람객들에 대하여 전망으로서 그리고 공공적 봉사활동으로서 정원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들로서 신축건물들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의 훌륭한 사례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타운에 있는 Kirstenbosch National Botanical Garden에서 발견된다. 지난 10년간 이와 같은 영역들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4.4.1. 지역사회로의 외연확대

많은 논의는 공공적 전시와 교육적 정원들에 집중된 반면에, 공동체 정원들은 또한 도시와 전원의 삶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미국 남부의 원주민

들은 좌식 농업을 하였고 그리고 Zuni(미국 원주민) garden은 많은 역사적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반면에 영국에서, 공공 토지와 텃밭의 제공은 초기 중세시대부터 농업과 정원활동에서 독특한 특징이 되어왔다.

19세기에 도시의 성장과 도시화는 정원활동을 시대착오적인 활동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2차와 3차 산업으로 이동하였고 그리고 식품은 더욱더 대외적, 국가적, 다국적 기업화되었다. 이런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학교 정원들이 19세기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원들과 정원활동의 쇠퇴는 20세기로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세기 후반에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정원들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특히 공동체 정원들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이 미국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그 협회는 다음과 같이 그 임무를 언급 한다: 협회는 공동체의 정원활동은 이웃과 공동체의 개발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함을 인식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극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을 아름답게 하며, 좋은 음식을 생산하고, 가족의 식비를 감소시키며, 자원을 보존하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운동, 치유 그리고 교육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의해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 (<http://communitygarden.org/about-acga/>, accessed January 31, 2013)

정원들로의 회귀 운동은, 그리고 특히 공동체 정원활동, 공공 정원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하여 정원들은 잠재적 관람객으로서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시카고 식물원은 21세기로 들어가면 정원 관광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정원가들의 공동체 봉사활동 종류들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시카고 식물원은 4가지 중요한 공동체 정원활동 프로그램들을 가진다: Neighborhood Gardening; School Gardening; Blooming Branches; Green Youth Farm. Neighborhood Gardening Program은 다양한 공동체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활동이다. 근린주구 개발 협회들, 에이즈 협회들, 국내 폭력 피해자 쉼터들, 그리고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본래, 시카고 식물원은 지역의 개발과 식물심기를 위해서 기금을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단지 자문 활동만을 한다. 1980년 이후로, 시카고 식물원은 200개 이상의 공동체 정원들과 연계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의 연간 규모와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에 30개의 정원들이 개발되었거나 또는 개선되었다.

시카고 식물원의 School Gardening Program은 학교들이 다음의 것들을 설립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가진다.

- 지역의 리더십 팀

- 교육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살아있는 연구소로서 이용하기 위한 식물원에서의 작업하는 정원
- 현직 교사들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양호하게 훈련된 교육 직원
-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전반에서의 school garden projects의 네트워크
- 정원활동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의 네트워크
- 다양한 학문분야를 융합하는 교육을 통한 활동적인 발견에 참여하는 학생 기구

Blooming Branches Program은 일리노이 도서관들을 통하여 제공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자격을 가진 마스터 정원가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정원들과 정원활동에서의 애로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일련의 행사이다.

Green Youth Farm Program은 대략 35명의 학생들에게 유기 농업에 대한 모든 측면들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 정원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종자를 파종하는 것부터 별집을 관리하고, 재배한 식물로 요리를 하며, 농장의 판매대들과 시장들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게 된다. 학생들은 농장에서 작업하는 소요한 봄과 가을에 주 당 4시간과 여름에는 주 당 20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받는다.

유사하게, 아틀란타 식물원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단절되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거의 모르고, 비만, 주의력 결여 장애, 그리고 다른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결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조성되었다.

아틀란타 식물원은 식용정원이 방문자들을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연결시켜주는 것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주요한 특징으로서 요리와 상호작용하는 정원을 조성하며,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아름답고 그리고 극적인 식용 식물들의 전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2010년에 식용 정원이 개소되었고, 그리고 운영 책임자는 식용 정원이 식물원 디자인의 차세대 진화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 식물원에서 식용 정원은 인간의 삶에 관련한 생활양식 정원들을 조성하며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근원으로 회귀시킬 것이다(like grandma's veggie garden). 그러나 어떤 도시에서는 방문자들과 식용 식물들을 요리하기 위한 야외 부엌과 피자 오븐과 같은 구성물들로 왜곡시킨다.

후주에는, 더 많은 정원들과 녹색화를 위해서 미국의 녹색운동가 유사한 운동이 있다. Jane Tarran(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08, personal communication)은 3개의 중요한 개발을 제시한다.

1. Community vegetable gardens: 공동체 정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관공서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그룹들, 거기에서 그들은 식용식물을 재배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용되는 않는 관공서 땅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 적당한 측면(빛이 양호한) 그리고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지붕 면적(sheds)을 가진 (필요할 때, 관수를 위해서). 참여자들의 정원은 단지 돈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식용식물을 재배하는 즐거움을 가진다.
2. 지역적 자생종을 포함하는 그리고 단지 이국적인 관상수를 포함하지 않는 집 앞 거리 식물심기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식물심기는 어떤 가로수들뿐만 아니라 또한 잔디, 관목들, 그리고 지피식물을 포함할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자동차들과 보도를 걷는 사람들을 위한 양호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물다양성과 공원들과 잔존하는 식생 간에 녹색 통로들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물 또는 비료를 요구하지 않는 더 지속가능한 식물을 이용하고 있다.
3. "From Garden to Table"라고 불리는 빅토리아 주에 초등학교에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채소와 허브를 재배하도록, 수확하도록, 요리를 하도록, 그리고 요리한 음식을 먹도록 허락한다(현재는 단지 호주의 한 개 주(state)에서 유효하지만, 그러나 곧 국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Stephanie Alexander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여러 개의 요리책을 집필한 호주의 훌륭한 가장 유명한 요리사의 한 명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시드니에 몇몇 초등학교는 또한 채소를 재배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시장을 개최한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부모들과 대중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한다.

4.4.2. 정원관광을 통한 종다양성의 교육

식물 중 34,000종이, 또는 전체 식물종의 10%,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Rinker, 2002). 이와 같은 심각한 논점을 고려할 때, 정원들, 그리고 특히 식물원들은, 이와 같은 많은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종들을 위한 서식지의 저장소가 되어왔다. 사실상, BGCI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식물원들이 그들의 수집 속에 대략 모든 식물종들의 1/3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Wyse Jackson and Sutherland, 2000). 1988년에, BGCI는 지구적 수준에서 식물보호를 소개하는 국제 자문 과정(international consultation process²)을 착수시켰고, 그리고 그 결과는 International Agenda for Botanic Gardens in Conservation가 되었다(Wyse Jackson and Sutherland, 2000).

이 보고서는 21세기에 식물원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식물원들을 위한 광범위한 의제(agenda)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계획은 (식물원을 포함한) 정원들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리고 보존의 실행에서 관광을 위한 인식과 역할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이하에 있는 부분에서,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몇몇 나라들에서, 관광과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개발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유지에 주요한 위협이 된다.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의 하나이며 그리고 몇몇 측면들은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관광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의 수용 용량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떤 핵심적 원리들에 의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이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의 영역에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CBD의 정당들의 회의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 대한 작업의 실천 중심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돕기 위해서 요청되었으며 그리고 과 프로그램 내에서 식물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식물원들을 중요한 관광 자산이고 간주하고 그리고 방문자들과 관광으로부터 식물원들에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한다.

더 큰 식물원 기관들은 전문적인 직원을 고용하는 홍보와 마케팅 부서들을 가지고, 그러나, 더 작은 정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직원에 의해서 홍보와 마케팅이 수행된다.

모든 식물원들의 도전은 사람들을 유인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중들을 참여시키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생물종다양성의 유지,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 문화, 식물 수집의 보존과 과학적 목적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호주의 Mount Tomah에 있는 Blue Mountains Botanic Garden은 지역의 공동체들이(Beeton, 1998) 안내되는 생태관광 오솔길과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지침들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Sissinghurst Castle Garden은 생태관광 활동을 위해서 주변의 산림지의 이용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반면에 중국 산시 성(Shaanxi Province)에 있는 새로운 Qinling Botanical Garden은 주변의 458 km² 면적의 이용을 위해서 주요한 시장 부문으로서 국제 생태관광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4.4.3. 정원관광의 재발견

Donal MacCracken(1997)은 1901년에 전 세계에 걸쳐 제국주의시대의 378개의 정

원들이(378 “Gardens of Empire“)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상업적 목적들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리고 따라서, 1914년에 시작되어 필연적으로 1966까지 완성된, 대영제국의 몰락과 더불어, 이들 정원들은 그들의 본래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

많은 정원들은 고난의 시대로 추락한 후에, 종종 관심, 정부 기금,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의 부족 속에서 놓였다. 이들 정원들의 관리인들은, 많은 사례들 속에서, 관광을 주요한 자원 조달원으로 보았다. 정원들이 그들의 선택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4.4.4. 새로운 형태의 식물원으로서의 정원

식물원과 유희적 정원들이 과거의 유물로 보이는 반면에, 정원들은 20세기 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정원 설립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서양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개방되었던 민간정원들은 점차 여름철 동안 그리고 종종 연중으로 개방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원들이 전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주목할 만한 것은 중동과 유럽에 있고, 영국에서는, 복권기금이 정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되며, 유럽의 다른 부분에서는, 유럽 연합의 개발 기금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원들을 새롭게 재개장하기 위해서이다.

4.4.5. 21세기의 정원관리

일반적으로 정원들은 변화하는 흐름들, 취향들, 그리고 영향력들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 반면에, 식물원들은 아마도 이런 움직임의 전면에 있다고 본다. 식물원은 홀로 방문자들을 유인하는 대부분의 민간정원들의 임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정원의 특징이 될 식물원의 운영과 개발의 영역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2007 APGA 컨퍼런스는 정원의 미래 문화를 정의하려는 주제를 가졌다. 정원의 미래 문화는 5개의 궤도들로 되어있다.

1) Planting the garden

우리들의 정원에 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정원의 운영과 원예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언급한다. 정원들이 미래를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운영, 원예 프로그램

램, 정책을 언급한다. 이것은 대부분 분명히 건축물에 옥상녹화 디자인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정원들의 디자인과 운영에서 지속가능성의 실행들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원 내에서 외래 식물들과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원들은 또한 많은 수의 방문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논점들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있다.

2) Leading the way - leadership and advocacy

공공 정원들에서 리더십과 변호(옹호)는 지구 온난화, 식물과 환경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연적인 일종의 확장이다. 이것은 사회적 논점들과 더욱더 깊게 관련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것의 목적에서, Atlanta Botanical Garden과 같은 정원은 식용 정원을 식물원 디자인의 차세대 진화로서 인식한다 -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의 삶과 연관된 생활양식으로서의 정원을 조성한다. 특별히, 그들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지나치게 단절되어서 어린이들은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거의 모른다. 비만, 정신집중 장애, 그리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결핍과 관련성을 가진다.

3) Operating the gardens of tomorrow

미래의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4가지 중요한 걱정들이 있는 듯하다. 기금의 원천들과 기부 문화의 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정원들은 운영에 있어서 다국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지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관람객들과 노동력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다.

4) Conveying new ideas

정원의 성장에 대한 영역은 정원들이 어떻게 그들의 방문자들과 소통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여기에, 정원들은 방문자의 개인 휴대폰에 유효한 식물에 대한 설명들과 같은 혁명을 가지는 기술과 기대의 영향력과 관련되거나 또는, 반대로, 점차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식물을 전시하며 인쇄 글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옮기는 것은 더욱더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적 접근에 대한 필요를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옮기는 사람에 대한 보다 폭넓은 범위의 훈련을 포함한다. 정원은 생태, 보존, 지속성에 대한 점차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런 주제들은 전통적인 훈련을 받은 식물학자들과

원예학자들에게는 새롭거나 또는 외국적인 것이 된다.

5) Cultivating communities

미래에 공동체의 경작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그리고 요리하는 것)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공동체의 경작은 공동체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의 다른 부분들과의 정원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식물원은 변함없이 공동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복원, 혁신, 보존은 종종 정원의 책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원 운영자는 오랜 동안 알고 있다. 동시대 문화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특징인 지역의 정서를 만들고, 정제하며, 그리고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정원 운영자는 오랜 동안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도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정원의 중요한 도전은, 모든 지리적 척도들에서, 공동체의 배양이 될 것이다.

4.5.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4.5.1. 당면과제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생산, 유통, 소비 및 관광부문별로 다음과 같다.

우선 정원재료 생산부문의 경우를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원예농가의 정원산업 인지도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원예농가들이 정원에 공급할 작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재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정원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 정원들의 경우는 경영능력 부족 및 경영상황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산업에 대한 생산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정책 강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등이 정원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정원산업 유통부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원산업에 대한 유통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정원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증가하고 산업 자체의 성장이 생기게 된다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당면과제는 정원산업 유통체계가 미비하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 간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원산업 소비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과 유사한 당면과제들이 있다. 이는 정원산업 소비 및 관광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정원 관련 분야들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원문화의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별히 정원관광과 관련하여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4.5.2.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역시 생산, 유통, 소비 및 관광부문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본다.

첫째, 정원재료 생산부문의 경우는 민간정원 경영개선과 공공정원 확산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우리나라 전통정원 연구개발 및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국내 정원 관련 생산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정원 관련 생산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가 구축되고 정원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둘째, 정원 유통산업 분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정원산업과 유통산업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aT센터의 역할 부여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국내 정원 관련 유통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 관련 유통통계를 정기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산업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역시 유통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정원산업의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산업에 체험, 교육 등을 포함하는 6차 산업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정원 관련 소비지원 인프라가 확충되는 한편으로 정원 관련 소비 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을 통한 정원산업지원과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과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에게 정원산업에 관심을 증가시켜줄 것이다.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과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충과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그리고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원산업의 소비 및 관광 활성화는 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원산업은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들이 속히 만들어진다면 그 성장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원예업, 조경업, 산림업 및 관련 관광산업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원과 공공정원을 발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에서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이 마련되고,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정원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V. 정원진흥 기본계획

- 5.1.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방향, 근거, 성격, 주요내용
- 5.2. 정원 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
- 5.3. 정원산업 SWOT 분석
- 5.4.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 5.5.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 5.6.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V. 정원진흥 기본계획

5.1.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방향, 근거, 성격, 주요내용

5.1.1.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방향

- 산림청은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를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목원법’이라 한다)에 편입시켜 추후 전국단위의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 수목원법을 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고, 2015년 7월 21일 시행예정에 있음
- 이러한 수목원법 등으로 인해서 그 고유영역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올바른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서 정원 관련 산업들과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와 정원의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원발전과 확대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진흥 기본계획은 민간 및 공공정원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됨

5.1.2.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근거

- 「수목원·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현재 위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은 정원의 확충 및 정원 사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수목원·정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
- 그러나, 수목원과 연계된 정원이 아닌 정원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수목원과 관련된 정원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원예, 조경, 산림산업을 포함시키는 정원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산업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 옳바르기 때문임
- 현재의 「수목원·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원산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음

5.1.3.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성격

- 정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발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
- 국가정원 및 공·사립·학교정원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제시
- 정원의 확충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교육적·문화적 기능 및 역할 강화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
- 필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의 기관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5.1.4.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정원 지원 및 정원 간 교류에 관한 사항
- 정원 정보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2. 정원 관련 국내의 여건 변화

5.2.1. 정원 관련 해외 여건 변화

1) 공공정원의 개념 대두와 점진적 확대

- 19세기 전후로 일반대중을 위한 공공정원의 개념이 대두됨과 동시에 영국은 지속적인 정원 문화를 형성함
- 19세기를 전후로 귀족중심의 정원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정원인 공공정원(공원)의 개념으로 전환됨
- 최근 건강하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삶과 문화에 대한 욕구의 증대, 선진국의 경우 지금껏 생활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정원을 찾아가는 시대에서 만들고 가꾸는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정원가꾸기가 중심인 되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기 시작
- 이에 미국에서는 미국식물원수목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otanic Gardens and Arboreta)를 미국공공정원협회(American Public Garden Association)로 명칭 변경과 함께 공공정원(Public Gardens)을 34개로 분류함
-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싱가포르, 그리스 등에서는 National Garden, Public Garden 및 Community Garden 등의 국립정원, 공공정원, 참여정원의 형식으로 조성함

- 해외의 경우 정원, 식물원 및 수목원등에서 교육, 전시, 보전, 수집, 증식 등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

표 5-1. 주요 국가의 국립정원, 공공정원, 참여정원

구분	국가	명칭
National Garden	미국	America's National Garden (The United States Botanic Garden)
	그리스	National Garden, Athens
	아일랜드	National Garden Exhibition Center
Public Garden	미국	Boston Public Garden
	싱가포르	Public Garden
Community Garden	캐나다	East Vancouver Community Garden

* 참고문헌: 김용식 외 (2013), 정원·식물원·수목원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 산림청.

2) 정원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한 정원산업의 확대

- 정원을 문화이벤트로 승화시킨 정원박람회의 역사는 18세기 중반 영국의 꽃 축제를 시작으로, 식물전시회, 원예축제와 국제산업장식미술박람회 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됨
- 정원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유사 이벤트도 다양해 영국의 첼시플라워쇼, 프랑스의 쇼몽 가든페스티벌, 벨기에 유리온실 내 겨울정원 축제 등은 매년 꽃과 식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식물학자, 원예가를 주축으로 전시회 수준으로 열리던 정원박람회는 꽃과 정원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관심과 두터운 수요층을 디딤돌 삼아 최근엔 단순한 정원축제 수준을 넘어 도시를 쇄신 또는 재생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도시미화운동 등으로 인해 정원에서 공원, 공원에서 도시 및 광역조경계획으로까지 분야가 넓혀지며, 영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원·식물원·수목원 및 정원박람회 등으로 분화하여 발달함
- 최근 들어, 공공정원의 개념이 재 발달되어 국립정원, 공립정원, 참여정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원박람회 등의 정원 산업이 활발해짐

- 영국을 비롯한 각종 정원박람회 및 플라워 쇼 등의 성행으로 정원 산업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산업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함

표 5-2. 정원 및 정원박람회 해외 사례

구분	국가	기관명	운영 및 관리주체	특징
정원	일본	Shinjuku Gyoen National garden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가정원으로 지정 및 공공 개방
	독일	Emscher Community garden	협동조합 (Emschergenossenschaft)	지역 공동체에서 관리
	캐나다	Vancouver Community Garden	Vancouver city	도시농업 일환으로 사유지공터 대상으로 빈곤층에 기부
	미국	Hakone Estate & Garden	Saratoga city & Hakone Foundation	미국 내 일본정원을 알리고자 조성된 후 대중에게 개방
	싱가폴	Gardens by the Bay	National Parks Board(NParks)	테마파크 형식으로 현대적 정원전시의 방향 제시
정원박람회	영국	Chelsea Flower Show	RHS	세계 최고 권위의 플라워쇼이며, 가든 디자인 흐름을 보여줌
	독일	Budsgartenschu	Budsgartenschu	주 단위는 매년, BUGA는 2년, IGA는 10년마다 개최하며, 침체된 도시계획 및 재개발의 기능

* 참고문헌: 김용식 외, 2013. 정원·식물원·수목원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 산림청.

3)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 강화

- 이에 따른 생물종의 감소는 정원 산업과 조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서식환경 악화가 가속화 될 것임
- 세계식물보전전략(GSPC 2020) 이행을 위한 산림생물분야 국제 공조체계
 -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 의무를 강화
 -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에는 알려진 위협종 식물의 최소 75%를 현지 외 보전토록 요구

- 생물다양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후대별 정원모델 구축의 필요성
 - 기후대별로 정원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역할을 하도록 함
 - 전국 기후대별 정원모델 구축방안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5.2.2. 정원 관련 국내 여건 변화

1)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추구에 따른 정원의 수요 증가

- 정원 및 원예, 조경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매년 빠르게 증가
 - 원예, 조경식물 관련 동호회, 블로그 활동 급증
 - 정원 관련용품에 대한 매출이 증대
-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건설 증가
 - '04~' 11년의 주택건설 실적(통계청)
 - 2011년 아파트 건설 : '04년 대비 12% 감소
 - 2011년 단독주택 건설 : '04년 대비 123%가 증가
 - 단독주택 뿐 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정원설치에 대한 관심 및 매출 나타남
- 정원 관련 학술연구 및 학술용역의 증가가 분명히 나타남
 -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음

표 5-3. 고양시 꽃박람회 최근 통계현황

년도		2012	2013	2014	2015
규모		25만m ²	10만m ²	15만m ²	15만m ²
참가업체	외국	40개국 146업체	32개국 190업체	35개국 120업체	25개국 120업체
	국내	168업체	120업체	200업체	200업체
관람객수		568,339명	553,912명	451,002명	600,000목표
사업비(억원)		51	35	35	45
수출계약액(천불)		33,154	31,060	34,400	3천만불이상

참고문헌: 고양시. 2015.

2) 순천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인식 변화

-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로서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2009년 9월 16일 유치가 확정
 - 2013년 4월 20일 ~ 10월 20일(6개월간)의 기간동안 23개국에서 83의 정원을 전시하였음
 -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에는 개최기간동안에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됨
 - 정원의 전시기능과 역할이 부각되었고, 정원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음

3) 교육, 문화, 휴양, 체험, 치유 및 복지 공간으로서 정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가로 국민의 휴양·자연체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수요는 매년 급속히 증가
- 국민의 문화패턴 전환으로 식물이용 생활화 등 새로운 문화로 정착
 - 식물 생활문화 수요 급증 및 확산 공간으로서 정원의 대중화 촉진
 - 교육·문화·경제적 기능 강화로 정원의 대중화의 가능성이 있음
- 교육, 체험, 휴양, 치유 등 산림문화 및 복지공간으로서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
 - 식물의 치유, 휴양, 문화, 심미적 기능 등에 대한 수요 급증
 - 사회, 문화활동의 소재로서 식물종과 정원의 기능에 대한 기대 확대
 - 정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정신적, 문화적 개념으로까지 새롭게 변화하고 확대

4) 정원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발굴

-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식물 이용형태의 다양화로 야생식물자원의 이용증가 및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관심 증대
- 식물산업에 대한 혁신적 기술적용 기회 증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기대

5.3. 정원산업 SWOT 분석

• 아래 표의 SWOT분석을 통해서 정원 및 정원산업에 대한 국내외 여건변화와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강점(strength)

-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인 운영
- 정원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가 활성화되고 있음
- 정원조성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약점(weakness)

- 관련 농가의 정원산업 인지도부족
- 현재 정원관련 시설 및 투자 부족
- 민간정원의 경영능력 부족
- 정원산업 관련 (생산, 유통, 소비)통계의 부재
- 관련 행정조직의 부재
- 관련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 정원산업 유통체계 미비

• 기회(opportunity)

- 국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증가
- 우리나라 전통의 정원문화 존재
- 정원관련 자생식물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의 필요성 대두
- 국제협약 등으로 인한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 필요성 증가
- 정원관련분야(원예, 조경, 산림)에 기존 유통체계의 존재 (예: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aT센터)
- 기존 유통 관련 기관들의 정원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위협(threat)

-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 민간정원 경영상황 악화
-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정책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 강화 전략[S+O]
 - 민간정원 경영개선 및 공공정원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연구개발 증대
 -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정원산업을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

- 돌파 전략[W+O]
 - 국내 정원 관련 지원 인프라 확충
 - 정원 관련 통계, 행정조직 마련
 - 정원 관련 예산의 마련 및 투자
 - 전통정원 확산, 정원자생식물 보호,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통한 정원 산업 활성화

- 육성 전략[S+T]
 -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을 통한 정원산업지원
 -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개선
 - 기후변화대응 정원 관련 식물생태계 보존전략 구축

- 우회 전략[W+T]
 - 정원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 정원산업 활성화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례 제정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표 5-4. 정원 및 정원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정원 및 정원산업에 대한 국내외 여건 SWOT 분석	
기회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증가 ✓ 우리나라 전통의 정원문화 존재 ✓ 정원관련 자생식물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의 필요성 ✓ 국제협약 등으로 인한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 필요성 ✓ 정원관련분야(원예, 조경, 산림)에 기존 유통체계의 존재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 기존 유통 관련 기관들의 정원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강화 전략[S+O]	돌파 전략[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 경영개선 및 공공정원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연구개발 증대 ✓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정원산업을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원 관련 지원 인프라 확충 ✓ 정원 관련 통계, 행정조직 마련 ✓ 정원 관련 예산의 마련 및 투자 ✓ 전통정원 확산, 정원자생식물 보호, 정원관련 생물자원 보호관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 경영상황 악화 ✓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정책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이 필요함 	육성 전략[S+T]	우회 전략[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을 통한 정원산업지원 ✓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개선 ✓ 기후변화대응 정원 관련 식물생태계 보존전략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산업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례 제정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필요

5.4.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5.4.1. 비전

- 미래형 농업을 주도하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원과 커뮤니티 정원의 기반 확립

5.4.2. 목표

- 정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

5.4.3. 전략과 전략별 과제 (6대 전략, 19대 과제)

1)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 (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 (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3) 국가정원 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2) 정원 관련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 (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 (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 (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 (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정원을 통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화

- (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 (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충

4) 정원의 물적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 (1)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 (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 (3) 국가정원 지원 및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 (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 강화

- (1) 정원산업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 (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 (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6) 정원산업을 위한 전통정원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

- (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 (2) 해외 정원 기술교류

5.5.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5.5.1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수립의 원칙과 과정

- 본 연구의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가 수립된 원칙과 과정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
 - 정원산업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서 장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도출된 장점과 문제점을 강점, 약점, 기회와 위기의 틀을 가지고 SWOT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 SWOT분석 전략을 도달하기 위한 정원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6개의 전략과 그 하위의 19개의 과제로 도출하였다.

표 5-5. 정원산업 국내 현황, SWOT 분석 전략 및 정원산업 진흥계획과 시장전망

정원 산업 범주	범주별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현황, 전략 및 계획과 전망			
		장점	문제점	SWOT 분석 전략	정원산업진흥계획 (19대 과제)*
생산	-정원관련 식물 및 재료 • 용품 및 소재 생산 산업 -정원연구 및 교육	-정원조성관련 기술력 우수 -우리나라 전통 정원문화 존재 -정원관련 자생 식물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의 필요성 대두 -국제협약 등으로 인한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 관리 필요성 증가	-원예농가의 정원 산업인지도 낮음 -정원시설 정부투자 부족 -민간정원 경영능력 부족 및 경영상황 악화 -정원산업 생산통계 부재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 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민간정원 경영개선과 공공정원 확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우리나라 전통정원 연구개발 및 지원 증대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내 정원 관련 생산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생산 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전통정원 확산, 정원자생식물 보호,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정원 관련 식물 생태계보존전략 -정원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1)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1) -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4) -국가정원 지원,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4)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6)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유통	-정원관련 식물 등 재료 • 용품 및 소재 유통 산업	-정원관련분야 (원예,조경,산림) 기존 유통체계의 존재 (예: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존 유통관련 기관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	-정원산업 유통통계 부재 -정원산업 유통체계 미비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산업과 유통산업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aT센터의 역할 부여 -국내 정원 관련 유통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유통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정원산업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5)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5)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소비	-정원관광 -정원연구 및 교육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정원관련 법률과 정부지원 활성화 - 국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증가	-정원산업 소비통계 부재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문화 확산의 필요성	-정원산업에 체험, 교육 등을 포함하는 6차 산업전략수립 -국내 정원 관련 소비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소비 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 을 통한 정원산업지원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개선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1)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충 (3)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4)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5)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 괄호안의 숫자는 6대 전략 중 포함된 전략을 의미함

5.5.2. 6대 전략 및 19대 추진전략

1)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a. 목표

- 희귀 및 특산식물의 보전 강화 및 홍보활동
-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 조사
- 희귀특산식물 보전체계 마련 및 홍보활동

b. 추진방향

-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을 위한 자생지 연구
- 희귀 및 특산식물 증식 및 보급을 통한 인식 강화
-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평가 및 활용

c. 세부추진계획

-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을 위한 자생지 연구
 - 지역적으로 쇠퇴종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 지역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 수립

- 희귀 및 특산식물 증식 및 보급을 통한 인식 강화
 - 국내 희귀 및 특산식물 목록 개발
 - 지역 희귀 및 특산식물 전시회 개최

-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평가 및 활용
 - 국내 정원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발굴
 - 핵심지역에 공공정원 설치 계획 수립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위한 자생지 연구 • 지역적으로 쇠퇴종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 지역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 수립						
■ 희귀/특산식물 증식/보급 통한 인식 강화 • 국내 희귀 및 특산식물 목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희귀 및 특산식물 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평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원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지역에 공공정원 설치 계획 수립 									



그림 5-1. 금새우난초(좌)와 한라솜다리(우)(<http://www.kna.go.kr>)

(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a. 목표

-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파악
-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및 보전
-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분포변화예측

b. 추진방향

- 전국적 규모의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활동
- 위성영상 및 국민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 정원 관련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취약종 분포현황 DB 구축

c. 세부 추진계획

- 전국적 규모의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활동
 - 전국의 민간 정원, 식물원 및 수목원 정보 활용
 - 정원 기후변화 취약종에 대한 보호 방안 구축
- 위성영상 및 국민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 위성영상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가능지점 예측

- 사진전 및 각종 공모전을 통한 국민참여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현황 DB 구축
 - 전국조사, 위성영상 및 국민참여를 통해 구축된 정보를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현황 DB로 종합화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취약종 모형구축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취약종 보호 전략 구축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전국 정원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 • 민간정원, 식물원, 수목원 정보 활용 • 정원 기후변화 취약종에 대한 보호 방안 구축						
■ 위성영상/국민참여 통한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 위성영상 통한 취약종 분포 예측 • 국민참여를 통한 취약종 모니터링						
■ 정원 관련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현황 DB 구축 • 취약종 분포 현황 DB 구축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취약종 모형/보호전략						



그림 5-2. 유전자원보관(<http://ccas.kei.re.kr/>)

(3) 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a. 목표

- 국가정원정보 공개, 통합 및 서비스 개선
- 국가, 공립, 민간 정원 통합정보관리 공유시스템 구축

b. 추진방향

- 정보서비스 제공 극대화를 위한 정원정보의 통합
-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교육인프라 확보
- 정원정보 통계확대 및 서비스 제공
- 정원생물자원 정보화 추진

c. 세부 추진전략

- 정보서비스 제공 극대화를 위한 정원정보의 통합
 - 정원 생물자원 정보화 기반 정비 및 보완
 - 원시자료의 확보체계 수립 및 정보 공유, 개방 기반 마련
 - 국가, 공공 및 민간 정원 보유 생물자원에 대한 전산화 지원
 - 정원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원생물정보 개방 및 통합
 - 검색 방식 표준 모델 정립 및 표준용어 DB 및 DB 스키마 및 검색, 저장 형식의 표준화 추진
 - 콘텐츠 및 DB구조 구축
 - 국가, 공공 및 민간 정원의 생물정보 개방 및 통합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교육인프라 확보
 - 사용자 중심의 정원생물자원정보 DB 구축
 - 다양한 DB구축 및 DB간 연계망 구축
- 정원정보 통계확대 및 서비스 제공
 - 정원 생물분류군별 정보 DB로 점차적으로 확대
 - 희귀 및 기후변화 취약종 등 종별 분포 및 환경 기초자료 서비스
- 정원생물자원 정보화 추진
 - 정원생물자원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정보화 계획 수립
 - 정보화 연구사업 도출

- 정원생물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정보화 업무 관리 및 통합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정원생물자원 DB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보서비스 극대화 위한 정원정보의 통합 • 정원 생물자원 정보화 기반 정비/보완 • 정원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교육인프라 확보 • 사용자 중심 정원생물자원정보 DB 구축 • 다양한 DB구축 및 DB간 연계망 구축						
■ 정원정보 통계확대 및 서비스 제공 • 정원 생물분류군별 정보 DB로 확대 • 희귀종 종별 분포 및 환경기초자료 • 기후취약종 종별 분포 및 환경기초자료						
■ 정원생물자원 정보화 추진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DB 및 시스템 관리 위한 전문인력 확보						



그림 5-3. 유전자원보관(<http://ccas.kei.re.kr/>)

2) 정원 관련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1) 유용정원식물자원 지속적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a. 목표

- 정원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식물자원 수집 및 자원화 소재 발굴
 - 유용정원식물자원 확보
 - 신소재 식물자원 탐색 및 발굴
 - 고부가가치 식물소재 증식법 개발, 분양

b. 추진방향

- 생물주권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유용식물자원 수집체계 확립
- 국내·외 정원식물자원의 유용성 탐색 및 소재자원 발굴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증식법 개발 및 분양을 통한 활용 기반구축

c. 세부 추진계획

- 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내·외 유용정원식물자원의 수집 강화
 - 국가차원의 장단기 세부추진 계획 수립, 운영
 - 국내 자생식물에 대한 분류군별 자원 확보 세부계획 수립·이행
 - 국외 유용정원식물은 산업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집중, 지역 선정 추진
 - 국외 유용식물자원 수집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비 우선적 자원 확보
 - 국외 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약정(MOU)을 통한 자원수집 경로확보



그림 5-4.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http://www.cbd-chm.go.kr/>)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체계 구축
 - 정원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통한 유용식물자원의 관리강화
 - 책임기관 선정 및 기능: 정원생물종 보존점수 확대
 - 관리기관: 관리기관 지정
 - 유용식물자원의 국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 유용식물자원 탐사시 수집된 현지자료 DB구축 및 정보공개
 - 국가식물자원 보존 및 이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특성 평가 및 증식체계 확립
 - 유용식물자원의 가치평가 지표개발 및 DB화
 - 수집식물의 자원 활용을 위한 3단계 가치평가 지표 개발
 - 유용식물자원 특성평가 및 자원이용가치 등급화
 - 자생식물자원의 품종화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활성화
 - 관상가치 등급이 높은 자생식물은 신품종 등록, 정원소재식물로 우선 보급
 - 고부가가치 천연물 소재발굴을 위한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분석 연구
 - 수집식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 수집식물 특성에 따른 발아율 향상기술 및 유향관리기술 개발
 - 국가 및 공공·민간정원의 전시원 조성을 위한 계절별 식물공급 시스템 구축

- 수요자에 대한 분양 활성화 및 자원화 촉진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수요자의 정보 활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접근성 개방
 - 보유자원 검색, 분양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웹기반 서비스
 - 공공·민간정원과 연계한 분양개체 확보 및 분양 추진
 - 정원별 상품화식물 개발 품목 및 종류의 특성화 지원
 - 정원별 보유식물 분석을 통한 특성화·자원화 식물 선발
 - 재배자생식물자원에 대한 법적 제재요건 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 • 국가정원식물자원 수집 세부계획 작성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외 유용정원식물자원 수집 		1,000종 (200종/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 상호교류협력약정(MOU) 추진 		3건/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관리 ■ 보전체계 구축 • 정원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확대 • 유용정원식물자원 국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15개 (3개/년)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정원식물자원의 증식체계 확립 • 유용등급 평가시스템 및 증식기술 개발 • 유용정원식물자원 분양 		300종 (60종/년) 300종 (500본/종)

(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a. 목표

- 산학연 R&D 네트워크 강화 및 산업화 선순환 구조 체계 확립
 - 정원생물자원화 정원기초연구지원사업단 구성:(’ 16까지) 2개 사업단
 - 정원식물산업화 연구벤처 지원 : 1개소/년

b. 추진방향

- 정원생물자원 산업화 R&D 투자 확대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 정원생물자원 공동활용 촉진 및 산업화 연구벤처 지원
- 자원 확보·평가·활용·산업화 등 선순환 지원체계의 One-Step 재편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
 - 정원생물자원의 산업화 R&D 투자 확대
 - 산업화를 위한 정원기초연구지원사업 및 대규모 사업단 과제 신설
 - 국립수목원간 역할 분담으로 산업화 가능 생물자원 개발 역량 집중
 - 민간의 연구역량 및 다학제간 R&D 네트워크 구축
 - 공사립수목원, 대학, 산업체 등 연구역량을 활용한 R&D 사업 확대
 - 산림, 원예, 조경, 정원, 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화 연구 강화
- 정원을 식물산업화 연구벤처 인큐베이터로 활용
 - 정원내 보유 및 발굴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벤처사업 지원
 - 식물자원산업화 벤처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발굴 자원의 산업화 촉진

- 정원, 대학, 생산자,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R&D 및 개발비용 지원
- 고부가가치 발굴 자원의 활용·확산을 위한 홍보·컨설팅 확대
 - 정원식물소재 및 정원소재 개발품 상설 성과 전시원 설치
 - 자원식물 Expo, 전시회 등을 통한 산·학·연간의 자원활용 연계
- 고부가가치 자원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선순환 활용체계 확립
 - 보유 및 발굴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선순환구조 강화
 - 정원식물자원의 확보, 평가, 공유·공급, 활용 등 산업화 연구축진을 위한 선순환 지원체계를 one-step으로 재편
 - 기술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민간 기술이전 확대로 산업화 촉진
 - 정원식물자원 이용 미니클러스터 구성으로 공급·개발·산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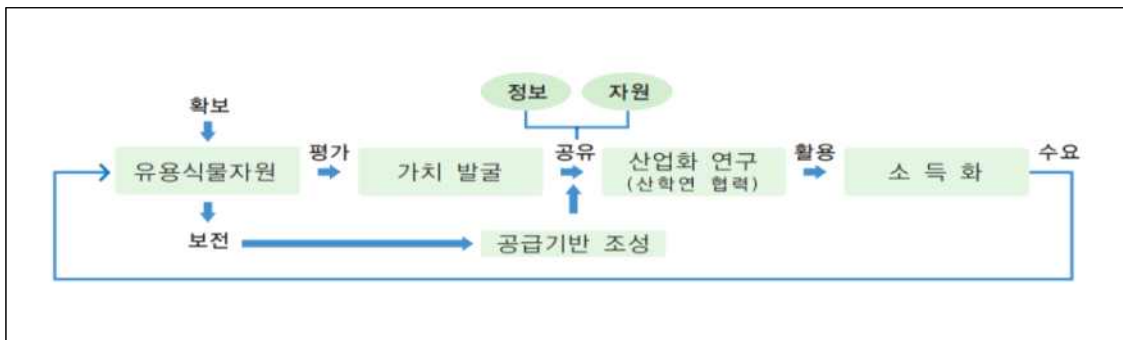


그림 5-5. 정원식물자원의 확보, 보전, 평가, 공유, 활용 등을 위한 선순환 구조

- 공급자와 수요자간 자원개발 이익 공유시스템 구축
 - 공급·수요자간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으로 보유자원의 공동이용 활성화
 - 정원 등 자원공급자와 산업체·대학간 연구협력 MOU 체결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산학관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 정원기초연구지원사업단 구성						2개
■ 정원식물산업화 연구벤처 인큐베이터 활용 • 정원식물산업화 연구벤처 지원 • 자원식물Expo개최(정원박람회와 연계)						2개소 (1개소/년) 1회/년
■ 정원 연계 선순환 활용체계 확립						

• 정원식물자원산업화 미니클러스터 구성						3개소
• 산학연 연구협력 MOU체결						5개소

(3) 야생화 및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a. 목표

- 야생화 및 정원소재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 지역 거점 가드닝 센터 구축
 - 야생화 및 정원조성·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창업지원

b. 추진방향

- 야생화 및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가드닝 센터 구축
-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한 야생화 및 정원 산업화 기반마련

c. 세부 추진계획

- 새로운 야생화 자원을 발굴하여 산업소재로 육성
 - 야생화 자원의 탐색·수집 및 소재 연구 강화
 - 기술이전 등 산업화 지원
 - 신종 및 미기록종 발굴을 통해 자원으로의 가능성 제고
 - 야생화 증식방법 및 산업화 연구를 통한 산업화 촉진
 - 야생화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량생산기술, 규격묘 생산기술 개발
- 정원을 야생화 산업 공급 기반으로 육성
 - 전국의 공사립 정원에 야생화 생산기반을 확충
 - 국가정원(생산·재배기술 개발), 공사립정원(기술이전) 등 역할 수행
 - 야생화 자원 고부가가치화
 - 야생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 야생화 꽃누르미(압화), 캐릭터 등 실생활에서 이용가능 상품 개발
- 정원 소재 산업화 지원
 - 잠재 정원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기반구축
 - 신규 정원소재 증식 및 관리 매뉴얼 작성·보급
 - 정원 부산물을 활용한 정원소재 개발 및 상품화
 - 다양한 정원 조성사업 및 행사 추진으로 공공수요 창출 촉진
 -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공공수요 창출

- 민간정원을 중심으로 균일한 정원 소재 식물의 대량 공급

■ 야생화 및 정원문화 산업화 기반구축

-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가드닝 센터 구축
 - 국가정원 조성지역 권역별로 거점 구축
 - 공공·민간정원 대상 지역별 가드닝 센터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창업인큐베이터 지원체계 마련
 - 가드닝 창업교실 운용을 통한 야생화 및 정원 창업지원
 - 야생화 및 정원관련 민원 일원화 창구 개설
 - 가드닝, 가든소재 및 가든 리모델링 관련 컨설팅 팀 지원



그림 5-6. 꽃누르미(압화)(<http://www.forest.go.kr/>)



그림 5-7. 순천정원박람회(<http://news.chosun.com/>)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야생화 산업소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화자원 탐색수집 야생화자원 산업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야생화 공급기반 국가·공공·민간정원 역할분담 야생화 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소개 산업화 지원 정원 소재 개발 공공수요창출 정원소재 유통체계구축 						1회/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화 및 정원문화 산업화 기반구축 가드닝센터 구축 수요자중심의 창업인큐베이팅 						

(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a. 목표

- 정원전문가 체계적 양성 및 질 높은 일자리 창출
 - 인력양성 목표 : 현장실무인력 150명, 연구인력 100명

b. 추진방향

- 성별 및 인력수급 균형을 위한 정원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원관리의 전문직업화 유도
- 가드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c. 세부 추진계획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 정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
 - 공·사립정원별 식물자원 조사, 보전 및 이용 등의 연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석·박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운영
 - 전문적인 이론지식과 실습경험을 갖춘 전문가드너 양성
 -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을 통하여 위탁교육 실시
 - 성별 및 인력수급 균형을 위한 정원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 현업인 대상 재교육 및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인턴쉽 제도 운영
 - 정원 현장근무자 대상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심분야별 현장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정원 현장인력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 운영
- 선진기술 확보 및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과정 지원으로 정원 분야 핵심인력 양성
-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정원 디플로마과정 참여 기회 제공

- 국·공·사립정원간 기술, 정보 및 인력 교류 활성화
 - ‘정원운영 전문화 워크숍’ 내실화
 - 국·공립정원간 직원 교류 추진
 - 이론과 현장기술의 보급을 위한 공공정원과의 교환근무제 운영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문직업화 유도
 - 국립정원 신규 조성에 따른 소요인력 확충
 -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단계별 확보
 - 정원전문가의 고용 확대
 - 공·사립정원별 정원전문가 채용 확대 시 각종 지원에 인센티브 부여
 - 정원전문가 자격인증제도 시행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발전시키고,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화 추진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정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 • 전문가드너 양성						
■ 현업인 대상 재교육 및 해외 인턴십 제도 • 정원 현장근무자 대상 재교육프로그램 • 해외 인턴십 과정 지원						
■ 국·공·사립정원간 기술, 정보 및 인력 교류 • ‘정원운영 전문화 워크숍’ 내실화 • 국·공립정원간 직원 교류 추진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문직업화 • 국립정원 신규 조성에 따른 소요인력 확충 • 정원전문가의 고용 확대						



그림 5-8. 가드너 양성(<http://www.valuegarden.org/>)



그림 5-9. 가드너 교육수료식(<http://www.시민정원.kr/>)

<참고자료> - 경기도 정원문화교육

□ 조경가든대학

- 교육목적 : 실내외 정원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고, 녹색문화 공동체를 구축
- 교육대상 : 경기도 및 타 시·도 거주자
- 교육기관 : 경기도내 소재한 대학, 평생교육원, 수목원·식물원
- 교육내용 : 실내외 정원조성에 관한 이론 및 실습(14주, 56시간)
 - 식물의 생리, 수목의 종류와 특성, 병충해관리, 전지·전정, 비배 및 월동관리, 식재 및 관수, 식물번식, 잔디관리, 정원계획과 설계 등
- 교육비 : 1인당 650천원(재단 400천원 / 자부담 250천원)

- ※ 타 지역 거주자는 자부담 100%
- 현재 교육수료인원 : 5,810명(2006년~2015년 상반기)

- 시민정원사
 - 교육목적 :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시민 양성
 - 교육대상 : 조경가든대학 수료생 및 관련학과 전공자
 - 교육기관 : 경기도내 소재한 대학, 평생교육원, 수목원·식물원
 - 교육내용 : 식물이해, 식물관리, 정원조성, 자기개발 등(30주, 120시간)
 - 교육비 : 1인당 750천원(재단 500천원 / 자부담 250천원)
 - 현재 인증인원 : 306명(2013년~2014년 / 2년간)
 - ※ 경기도지사 인증(경기도녹지보전조례 제21조2항)

- 주요성과
 - 경기도 정원문화의 구심체 역할 담당(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정원문화대상 등)
 - 경기도 정원문화 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푸르미회, 시민정원사 협동조합 등)
 - 민간녹화 활성화 및 생활주변 녹지 창출 선도(옥상, 자투리땅 등)
 - 공원녹지분야의 시민참여형 관리운영모델 제시(도시공원, 학교숲, 사회복지 시설 등)

- 활성화 방안
 - 지역단위 녹색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중앙단위 조직화
 - 녹색문화공동체 활동 평가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D/B 구축

3) 정원을 통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화

(1) 국민이 만족하는 정원복지 인프라구축

a. 목표

- 정원교육·해설·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정원복지 기반구축

- 정원 고유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치유정원 모델 개발 및 전시원 인증제 도입
- 치유정원 모델개발을 통한 정원복지 기반확대

b. 추진방향

- 전문성을 담은 정원 교육·해설·치유 개발 및 보급 확대
- 정원치유 기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원 확대
- 정원 특색 다양화를 통한 힐링(Healing) 기능 강화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의 전문성을 부각시킨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기반 구축
 - 국가·공공·민간정원별 특성에 맞춘 정원교육 및 해설 요소 체계화
 - (국가) 정원교육프로그램 및 정원해설가 양성·훈련 커리큘럼 개발
 - (공공) 기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성과측정
 - (민간) 정원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교육 기능 강화
 - 생물자원활용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식물분류, 정원식재, 야생화 등 식물 전문교육 영역 확대
 - 정원생물 탐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 정원에 내 보행 및 돌봄시설 개선으로 복지기반 확충
 - 무장애 데크로드, 휠체어 비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길 조성
 - 임산부 휴게실 겸 수유실, 어린이 휴게실, 유아용 시설 등 확충
 - 온라인, 모바일 교육 제공으로 자기학습식 해설의 첨단화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에듀테인먼트 요소 발굴 및 교육적 활용
 - QR코드용 해설 콘텐츠 개발 및 모바일앱을 활용한 Self_guide 해설 등
- 정원의 정원치유 기능 강화를 통한 정원복지 향유계층 확대
 - 치유전문정원 모델 개발 및 조성으로 정원복지 기반 확대
 - 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 유형별 collection으로 치유 목적 강화
 - 정원치유사,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치유정원 기능 활성화
 - 「치유전문정원 인증제도」 도입
 - 인증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조성 유도 및 질적, 전문성 증진
 - 치유전문정원 인증제 도입을 시작으로 전문정원 인증제로 확대
 - 정원 환경에 특화된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적용
 - 정원치유, 원예치료 등을 활용하여 치유프로그램 매뉴얼화
 - 교과과정 연계 교육에 스트레스 완화 등 치유 관련 프로그램 적용

d.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 전문성을 부각시킨 교육 · 해설 프로그램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교육 · 해설 요소 체계화 • 생물자원활용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1식
						1식
■ 정원의 정원치유 기능 강화를 통한 정원복지 향유계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전문정원 모델 개발 • 치유전문정원 인증제도 도입 •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적용 						1식
						1식
						1식

(2)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

a. 목표

- 정원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 국 · 공 · 사립정원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운영 (1,000명/년)
 - 정원의 공익활동 활성화로 사회공헌활동 강화 (10회/년)

b. 추진방향

- 지역사회 참여로 정원 이용문화 발전 및 정원복지 증진
- 시민공헌활동을 통한 정원의 사회 · 문화적 기능 활성화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로 복지기능 확대
 - 식물보전 · 복원사업 등 공익활동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
 -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하여 정원의 공익활동 활성화
 - 지역대학, 환경교육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원복지 확대
 - 시민단체, 학생, 소외계층 등이 참여하는 정원복지 서비스 운영
 - 일반인, 학생과 어린이 대상으로 휴양활동, 환경교육 강화
 - 장애인도 차별 없이 정원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우, 차상위자 등 소외계층 초청 정원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이용객과 함께하는 ‘쌍방향’ 교류 서비스 제공으로 정원복지 전달체계 강화
 - SNS서비스를 활용한 정원의 홍보 등 쌍방향 교류 활성화
 - 소외계층에게 정원복지 수혜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제도 도입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가족 또는 복지시설 단위로 제공
 - 식물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on line 식물클리닉상담코너 확대 운영
 - 다문화 가정의 정원복지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이용정보, 예약, 찾아가는 길 등 서비스 지원언어 다양화

-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및 서포터즈 제도 운영
 -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자원봉사제도 운영 및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개인, 단체, 일반인, 전문가 등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 폭 확대로 산림복지 확대
 - 「정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정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자원봉사를 한 시간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농진청 등록 정원의 입장 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원에서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정원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서 건전한 정원 이용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임

- 정원 자원봉사포털사이트 개설
 - 전국 정원의 자원봉사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 정원 서포터즈 제도 운영
 - 정원이킴이로서의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자발적 모임을 활성화

d.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로 복지기능 확대 • 공익활동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 • 쌍방향 교류 서비스 제공						10회/년 1식
■ 자원봉사 및 서포터즈 제도 운영 • 정원 자원봉사포털사이트 개설 • 정원 서포터즈 제도 운영						1식 1,000명/년

(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a. 목표

- 문화플랫폼으로서 정원에서 문화행사 확대
 - 식물 관련 행사 개최 (10건/년)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3건/년) 지원
- 정원의 다양한 문화요소를 접목한 상품개발
 - 정원 문화상품 브랜드화 추진 및 이미지 상품화

b. 추진방향

- 문화 창조공간으로서 정원의 가치 증대
- 정원별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문화서비스 확충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에 대한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
 - 정원을 사회문화복지 활동의 창구역할 수행
 - 정원의 유무형 시설을 휴식, 문화, 전시의 공간으로 활용 촉진
 - 선진 정원문화, 정원자재 및 정원트렌드 등의 정보제공 및 홍보
 - 정원관련 포털, 잡지, 가드닝북 등의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확대
 - 정원관련 미디어 물 중 우수컨텐츠에 대한 시상제도 도입·운영
- 녹색 문화의 장으로서 정원의 역할 강화
 - 식물을 이용한 관련 행사의 주기적 개최
 - 정원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원교육 영역 확대
 - 정원 고유 기능을 강화한 자체 행사 확대
 - ※ 정원전통지식알기 대회, 정원식물 관련 전시회·음악회, 정원 관련 행사 등
 - 정원을 문학·예술 등 타분야간 교류와 접촉의 장으로 활용
 - 참여·소통 및 데이터플랫폼으로서의 정원의 기능 강화
 - ※ 생물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민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생물문화정보 제공
 - 교육,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장소 등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정원의 역할 변화
 -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참여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가든쇼 등 정원관련 행사의 정기적인 개최로 정원문화 확산
 - 코리아가든쇼, 순천만국제정원페스티벌의 정기적 개최 지원

- 국가 이미지 홍보 제고 수단으로 한국정원 활용
 - 국외의 한국정원 조성 수요에 적극 대응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 국외 한국정원 조성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체구성 및 정보공유
 - 해외 주요 수목원
 - 식물원에 한국 전통정원 조성 추진으로 국가이미지 홍보
 - 해외에 기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 정원 문화상품 브랜드화 추진
 - 정원 문화상품 컨설팅사업 실시
 -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접목시켜 정원 문화가치 강조
 - 문화상품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 체계 구축 및 신상품 개발
 - 정원 이미지 상품화 제고
 - 정원 특산품 및 이미지 상품화를 위한 방안 마련

d.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녹색문화 장으로서의 정원의 역할 강화 ● 식물을 이용한 관련 행사의 주기적 개최 ● 협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총괄체계구축						연 10건 연 3건
■ 정원 문화상품 브랜드화 추진 ● 정원 문화상품 컨설팅 ● 정원 이미지 상품화						



그림 5-10. 실내정원(밖) 전경의 모습(www.scgardens.or.kr)



그림 5-11. 실내정원(안) 전경의 모습(www.scgardens.or.kr)

4) 정원의 물적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1) 정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특성화·전문화 추진

a. 목표

- 정원의 경쟁력강화 및 가치증진
 - 정원의 권역별 특성, 중점 식물수집종 선정
 - 정원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관리 선진화

b. 추진방향

- 정원의 비전 및 목표, 중점추진정책을 고려한 특성화·전문화
- 기후특성, 식생환경, 지역문화를 반영하여 추진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의 특성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조성 완료된 정원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거쳐 지원
 - 공립정원을 대상으로 특성화사업 지원
 - 정원별 특성화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원
 - 신규 조성 정원이 차별화·특성화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공립정원은 조성단계에서부터 타 정원과 차별화 및 특성화 방안 마련
 - 신규 조성타당성 심사시 차별화·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지원여부 평가
 - 특성화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전국 단위 정원의 전시원의 특성 현황 파악 및 분석

- 지원사업 완료 개소에 대한 연차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통한 지원중단 또는 예산차등 지원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정원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컨설팅

- 전문가 그룹으로 컨설팅팀 구성
 - 대학교수, 국립정원, 한국정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전시원 조성, 정원 경영·관리, 식물수집 전략 등 컨설팅

■ 정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원 관리의 전문성 강화

- 정원 보유식물종의 이력등록 관리 강화
 - 정원 보유종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보존가치 증진
 - 「정원 보유식물종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및 주기적인 실무교육 실시
 - 등록된 정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정원 운영·관리의 체계화 및 전문화
 - 「전국 정원 운영관리 현황 실태조사」 정례화하고,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온-오프 멘토링 및 상담지원체계 구축
 - 정원전문가 배치인원 확대 유도로 정원 운영·관리의 선진화
 - 정원 현장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도서 발간 및 보급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의 특성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심사기준 적용 평가						5개소
■ 정원 컨설팅 • 정원 특성화·전문화 및 경영전략 컨설팅						1회/년
■ 정원 관리의 전문성 강화 • 정원 보유식물종의 이력등록 관리 강화						5개소
• 정원 운영·관리의 체계화 및 전문화						5개소

(2) 정원 역량 평가 제도 도입으로 정원 경쟁력 확보

a. 목표

-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GSPC 2020 국가 의무이행 기반 구축
 - GSPC 2020 국가 목표의 80% 수준 달성 (2018까지)

b. 추진방향

-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정원의 질적 수준과 운영능력 향상
- 국가 지원의 공정함과 객관성 유지에 평가 결과의 활용
- 정원의 공익기능 수행에 따른 직·간접 국가지원 확대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제도 도입
 - 정원의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연구, 교육 및 보전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정원의 공익기능 수행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정원역량평가제도」 도입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강화 및 우수사례 홍보
 - 정부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선별기준으로 평가결과 활용
 - 정원 자체의 운영개선을 위한 차원 이외에 외부에서 개별 정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GSPC 2020을 반영한 정원별 이행목표 설정 및 평가
 - GSPC 2020에 대한 국가·공공·민간정원의 역할분담체계 마련
 - GSPC 2020의 16개 Target에 대한 국가·공공·민간정원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 평가항목에 따라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나누어 정원별 이행목표 부여
 - 정원별 이행목표치에 따른 정기적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 매년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정원별 GSPC 2020 이행실적에 따른 차별화된 국가 지원
 - 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원별 평가결과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과에 따라 차별화되도록 지원
 - 다양한 인센티브 및 공적지원방안 마련
- 정원의 운영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운영·관리 모니터링 분석으로 정원의 운영 선진화
 - 정원에 대한 이용객의 요구분석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정원별 내부시스템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분야별 표준화 및 매뉴얼 제공

- 정원의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로 자립도 증진
 - 사회적 요구에 대한 미래 트렌드 분석으로 시장의 선제적 대응 및 마케팅에 적용
 -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 및 확산 지원
 -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동사업 발굴로 시너지효과 제고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 지표 개발 및 평가제도 도입 •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홍보						2개
■ GSPC 2020 이행목표 설정 및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행실적에 따른 국가 지원						2개소 (1개소/년) 1회/년
■ 정원의 운영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정원의 운영 선진화 • 수입사업 모델 발굴로 자립도 증진						3개소 5개소

(3) 정원 확충 및 공공·민간 정원의 역량강화

a. 목표

- 정원생물자원의 현지의 보전 확대를 위한 국가정원 확충·정착
 - 국가정원 개원
- 공공, 민간정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거점화
 - 정원 식물보전실행계획 수립 및 보전연구 인프라 확충

b. 추진방향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 강화 및 정원생물다양성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후·식생권역별 정원 확충·정착
- 정원의 생물다양성 보존역할 강화 및 정원 가치창출

c. 세부 추진계획

- 기후대 식생권역별 국립정원 및 국립전문정원 확충
 - 국가정원을 단계별 확충·정착
 - 국립정원의 특성화로 국내외 정원생물다양성안정적 확보·보존 및 식물

- 관련 기초·응용 연구기반 확충으로 생물다양성 국가역할 강화
- 국립DMZ 정원 조성

- 정원을 정원생물다양성 보전의 거점으로 육성
 - 국립정원 식물보전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 GSPC 2020 국가이행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식물보전실행계획 수립
 - 국립정원을 거점으로 한 지역단위의 수집, 보전, 관리 전략수립
 - 지역단위의 현지내외 보전 방안 수립
 - 지역단위 생물다양성 거점지역에 대한 조사, 수집 증식 및 보전계획 작성(1회/2년)
 - 국가와 지역차원의 공동기획사업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립정원 연구인프라 확충
 - 독립적 조직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배치 강화
 - 지역단위의 표본관, 종자은행 등의 시설 확충
- 전국 정원 식물자원의 국가관리 및 공동이용기반 구축
 - 정원 보유종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정원 보유식물자원의 공동이용과 개발 촉진을 위한 합의 추진
 - 전국 정원의 보유 식물종 DB 구축 기술 지원
 - 책임·관리기관 지정제도를 활용한 보유자원 등록, 분양·반출 승인 등으로 정원 식물자원의 체계적 국가관리 실현
 - 정원식물자원 확보, 보전·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기관 지정
 - 국가와 지방정원간 식물자원의 Back-up system 구축
- 공·사립정원의 운영내실화 및 기술지원
 - 국립정원 운영의 내실화
 - 공원과 차별화된 정원 본연의 기능강화(수집, 증식, 보전 등)
 - 식물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관람규정 마련
 - 전문가 경영역량 분석을 통한 사립정원별 핵심가치 발굴
 - 연도별 경영문제점 자체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경영역량 강화지원 전문팀 구성을 통한 컨설팅 지원기회 제공
 - 사립정원의 아이টে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
 - ※ 분재 교육, 템플스테이 연계 참선 프로그램, 도심형 정원 조성 등



그림 5-12. 분재교육 현장(<http://www.koreabonsai.com/>)



그림 5-13. 템플스테이(<http://www.templestay.com/>)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원 확충·정착 • 국립정원 개원 또는 설계 (전국에 분포하도록 계획) • 국립정원 분원 개원 및 설계(DMZ, 울릉도 등) 						5개소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생물다양성 보전의 거점으로 육성 • 공공정원 식물보전실행계획 수립 • 지역단위의 현지내외 보전방안 수립 • 공공정원 연구 인프라 확충 						9개소 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자원 국가관리 기반 구축 • 정원 보유종의 체계적 통계관리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정원 경영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전문가 경영역량 분석 						1회

(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a. 목표

- 한국정원협회를 정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협회위상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마련
 - 정원의 컨설팅, 평가 및 전문 인력 관리기관으로 육성

b. 추진방향

- 증가하는 국내 정원의 질적 향상과 기술지원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협회의 전문성·공익성 강화를 통한 공익법인화 추진

c. 세부 추진계획

- 협회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마련
 - 한국정원협회의 공익법인화 추진
 - 공익법인제도를 명시한 정원법 개정추진
 - ※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협회의 위상, 성격과 지위를 구체화
 - ※ 정원보전협회처럼 법률에 협회 명기로 협회의 운영 안정화 및 질적 발전 유도
 - 정원의 정기 모니터링 및 평가 기관으로 제도화
 - 국가·자치단체 정원의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 공·사립정원의 역량평가제도 운영기관
 - 신규정원의 등록심사 및 평가기준에 알맞은 역할 유도
- 정원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관리기관으로 육성
 -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의 평가기관화
 - ‘가드너 자격증’의 관리기관으로 육성
 - 교육받은 가드너의 지원, 재교육 및 인력풀관리(경력인정, 교육 등)
 - 선진정원 운영 동향과약 가드너 기술 습득 해외연수지원
 - 국내 정원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 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 정원의 네트워킹 지원기관으로 육성
 - 정원의 해외교류 지원 및 사례 조사
 - 국내외 기관간의 정보교류 지원
 - 국내 정원의 조성·관리 컨설팅 기관으로 운영
 - 공공·민간정원에 대한 홍보 지원
 - 협회 홈페이지 등을 정원의 포털 사이트로 구축

- 홍보리플렛 및 정기간행물 제작으로 홍보지원
- 전국단위의 행사 기획 및 공·사립 정원에 대한 홍보 지원
 - 정원 주간 운영 및 축제 개최
 - 우리식물 바로알기 경연대회 개최지 확대
 - 정원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협회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마련 • 한국정원협회의 공익법인화 추진						법제화
■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관리기관으로 육성 •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의 평가기관화 • 가드너 자격증의 관리기관으로 육성 • 국내 정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1년 매년
■ 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 정원의 네트워킹 지원 • 공·사립정원에 대한 홍보 지원 • 전국단위 행사기획 및 공공·민간정원 홍보 지원						사이트구축 10회

5)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 강화

(1) 정원산업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a. 목표

- 정원산업지원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정부조직 마련
- 정원산업 관련 정부 부서들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
- 정원산업 실무와 현장의 필요에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

b. 추진방향

- 정원관련 법률들과 연계성 확보
- 정원관련 정부 부서들 간의 조율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 정원산업 종사자들 의견 반영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관련 법률들과 연계성 확보
 - 정원관련 법률에 총괄 정부조직과 기능을 명시
 - 수목원법, 도시농업법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보완

- 정원관련 정부 부서들 간의 조율
 -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으로 구성
 -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관련 부서들 간의 기능 분담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정부산하기관들의 역할 조율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 국회 세미나 실시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국회의원 공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예산 확보 노력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 관련 행정 및 농업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정원산업 산업계의 의견 반영
 - 정원관련 생산, 유통, 서비스 분야 종사자 의견 청취
 - 정원산업 현장 중심형 지원 업무 구축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관련 법률들과 연계성 확보						
■ 정원관련 정부 부서들 간의 조율						
■ 정원산업 총괄 정부조직 구축 위한 재원 확보						국회 세미나 연 1회
■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연 2회

■ 산업계 의견 반영						연 1회

(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a. 목표

- 정원산업 유통기능 활성화 전략 수립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 정원산업 역할부여 및 조직 구축

b. 추진방향

- 정원산업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 정원산업 지원 역할부여 및 관련 조직 구축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산업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 정원산업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석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용역)
 - 전략에 대한 실행 및 피드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 정원산업 지원 역할부여 및 관련 조직 구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 정원산업 유통 부문 지원 역할부여
 - aT센터를 통한 정원산업 유통부문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산업 유통기능 활성화 전략 수립						2016년 전략 완성
■ aT센터에 역할 부여 및 조직 구축						정원유통과 구축

(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부분 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a. 목표

- 정원산업 총괄 정부부서를 통한 정원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청과의 연계
- 정원산업 부문별 통계조사 및 피드백

b. 추진방향

- 정원산업 총괄 정부부서 내 정원산업 통계조사 기능 부여 및 통계청과 협력체 제 구축
- 정원산업 생산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 유통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 소비(관광)부문 연례 통계조사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산업 총괄 정부부서 내 정원산업 통계조사 기능 부여 및 통계청과 협력체제 구축
 - 정원산업 총괄 정부부서 내 정원산업 통계조사팀 구축 및 인력배치
 -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통계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 정원산업 생산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의 식물생산, 종자산업 및 관련된 소재 산업 등 생산부문 통계조사
 - 통계조사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공공정책 및 민간에서 활용
- 정원산업 유통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 유통 부문 통계조사
 - 통계조사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공공정책 및 민간에서 활용
- 정원산업 소비(관광)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의 관광과 같은 소비부문 통계조사
 - 통계조사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공공정책 및 민간에서 활용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산업 통계조사 기능부여 및 통계청 연계						
■ 정원산업 생산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 유통부문 연례 통계조사						
■ 정원산업 소비(관광)부문 연례 통계조사						

6) 정원산업을 위한 전통정원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

(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a. 목표

-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통정원 조성확산 및 활성화
-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
- 한국 전통정원의 효율적 유지관리

b. 추진방향

-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영향력 있는 법률에 관련사항/조례 추가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 전통정원 설치 지원
- 한국 전통정원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실시
- 해외에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
- 한국 전통정원 기금 신설 및 등록·심의제도 실시

c. 세부 추진계획

-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영향력 있는 법률에 관련사항/조례 추가
 - 전통정원조성과 관련된 조례는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등록, 한국 전통정원 수선 등의 비용지원,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음
 - 각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조례의 신설이 중요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 전통정원 설치 지원
 - 지자체에 전통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 전통정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도시공원, 신도시내 도시공원, 택지지구, 국내 박람회, 한옥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정원을 조성함
 - 지자체 자체개발방식은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고려하여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한국 전통정원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실시
 - 한국 전통정원에 관련한 조세감면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사업체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전통정원 조성용 토지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를 감면하

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해외에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
 - 한국전통정원의 보급은 한류문화의 확산 및 전통문화국가로서의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국제화시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며 홍보하는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인 현 상황을 하드웨어로 확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전략적 추진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사안을 진행하여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해외 전통정원의 개발방식은 정부주도하에 시범전통정원, 정원박람회, 해외 공간부지 활용과 지자체 주도의 자매결연도시 활용, 그리고 해외진출 기업이 하는 방식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 있음

- 한국 전통정원 기금 신설 및 등록·심의제도 실시
 - 한국 전통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재원조달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기금과 특별회계 가운데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존 기금 및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전통정원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과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으로 한국 전통정원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한국 전통정원 조성 법률에 관련사항/조례 추가						주요 대도시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한국 전통정원 설치 지원						주요 대도시
■ 한국 전통정원 조성 위한 조세감면제도 실시						
■ 해외에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						
■ 한국 전통정원 기금 신설 및 등록·심의제도						

(2) 해외 정원 기술교류

a. 목표

- 국제협약 등을 통한 정원 조성 기술, 식물도입 및 인적 교류 확대
- 국내 정원 관계자의 해외 훈련과정 지원

b. 추진방향

- 정원 조성 기술교류의 현행화
- 해외 정원과의 인적 교류 확대
- 전통정원 조성 기술의 국제교류 확대

c. 세부 추진계획

■ 정원 조성 기술교류의 현행화

- 국제협력기구 및 국제협약 등을 활용한 정원 조성기술 교류
 - 정원관련 MOU 체결 시 정원 조성 기술 교류 항목 추가
- 정원 조성 기술의 쌍방향 교류 추진
 - 해외에서도 한국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전통정원 조성기술 교류
 - 국내 전시원 조성 가이드라인의 해외 정원 제공
 - ※ 국가정원(분원) 확충에 따라 축적된 전문 전시원 및 온실 조성 가이드 라인작성 및 보급 (개도국 중심의 수요 대응)
 - 국내에서도 다양한 해외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전통 정원에 대한 조성 기술 교류

■ 해외 정원과의 인적 교류 확대

- MOU 체결을 통한 주기적 연수제도 도입
 - 국가정원이나 공공정원과 MOU 체결 시 인적 교류를 위한 연수제도 항목 추가
 - 해외 정원 조성 훈련과정 개설 시 관계자 연수 지원
- 국내 국가·공공·민간 정원 관계자의 국외 훈련과정 지원
 - 국내 정원 관계자의 선진지 견학 지원
 - ※ 효율적인 정원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국외훈련과정 훈련자로 공공·민간 식물원의 관계자 추천

■ 전통정원 조성 기술의 국제교류 확대

- 해외건설 진출기업 활용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거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

- 치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활용
 -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도시 내 한국전통정원을 도입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촉진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활용
 - 2015년 현재 상주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및 분관 등을 포함하여 총 248개소의 재외 공관이 존재
 - 재외 공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지도층과 교류, 접촉이 빈번한 장소로 외부공간 및 실내 공간에 한국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원조성과 기술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음
 - 외교통상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정원을 사업화하고 예산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등 활용
 - 현재 한국문화원은 19개국 23개소, 문화홍보관은 13개국 13개소가 운영중이며 이들 공간의 활용은 한류전파를 위한 거점으로서 타 홍보수단에 비해 파급효과 높음
 -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가 20개국 31개소 및 18개국 영사관에 재회문화홍보인력이 주재하는 바 이를 중심으로 외부공간에 정원을 조성한다면 매우 높은 기대효과를 성취할 수 있음
- 지방정부 자매결연 기념공원 활성화
 - 서울시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시와, 경기도는 중국 광저우 시에 기념정원을 조성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자매결연지역에 한국전통정원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권장과 지원이 필요

d.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일정					목표량
	15	16	17	18	19	
■ 정원 조성 기술 교류의 현행화 • 정원 조성 기술 교류 • 정원 조성 기술의 쌍방향 교류 추진 • 해외 정원 내 한국정원 조성						5개국
						3개국
■ 해외 정원과의 인적 교류 확대 • MOU 체결을 통한 주기적 연수제도 도입 • 국내 정원 관계자의 국외 훈련과정 지원						5개국
						10명/1년



그림 5-14. 2014 재외공관 현황(<http://nie.chosun.com/>)



그림 5-15. 한국문화원의 하늘정원의 모습(www.koreanculture.jp/)

5.5.3. 정원 간 교류를 확대

- 1) 국내 정원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 2) 해외 정원과의 인적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 3) 아시아 지역 정원 국제조직 구성 및 교류

5.5.4. 법 및 제도 정비

1) (가칭) 정원법 제정 및 검토

- 새로운 정원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함
- 정원산업적 측면에서 현 수목원법은 정원의 정의 및 개념과 정원활동이나 정원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구심이 들며, 정원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보임
- 따라서 정원산업적 측면에서 정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이 법에서 주체는 산림청장 단독이 아닌 농촌진흥청장과 공동이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적 측면에서 현 수목원법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과 같은 다른 정부조직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비효율적인 정원 행정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
- 따라서 정원에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정원법 제정은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중복을 막고 효율적으로 정원교육을 실시하며 정원산업 지원을 원활하게 할 것임
- 법적 측면에서 현 수목원법은 법률의 보완·수정 및 개정과정에서 정원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2015년 개정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정원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보여짐

2) 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

-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매우 축하할 일이며 이는 정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정원의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정책수립, 교육, 품질평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정원법(가칭)의 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행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정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서를 조직해야 하며 여기에는 원예, 화훼, 도시농업, 정원, 수목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원법(가칭) 제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함. 이를 통해서 정원관련 업무가 산림청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 기관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원 관련 업무와 지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나

갈등에 있어서 조정자 및 조율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등의 기능에 맞는 정원 관련 업무를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함

5.5.5. 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 1) 정원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정원의 확대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함
- 2) 정원에 대한 정보화 및 활용
 - 정원 및 정원산업, 정원교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정원기능 확대 및 사업화 등에 활용
- 3) 정원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최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과 정원산업에 이정표가 되어 올바른 정원문화와 정원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함
- 4) (가칭) 정원법의 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개발을 위한 정원진흥 계획이 되어야 함

5.5.6. 한국마스터가드너의 현황

1) Master Gardener 정의 및 역할

- Master Gardener의 정의
 - 농업을 매체로 한 생산적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선진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봉사자 (Volunteers)와 가드닝 나눔 전문가
 - AEDU(에듀)+Volun(블룬)+Tour(투어) : 도시농업 교육자+자원봉사자+교류협력
 - 원예와 정원의 예술·과학적 지식 등 지역 농촌진흥기관에서 Master Gardener교육을 이수한 후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일환으로 그 정보와 기술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
- Master Gardener의 역할
 -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람의 건강한 삶과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
 - 도시민에게 가드닝, 식물재배, 자연환경 보호 및 보존, 식생활을 교육
 - 지역사회의 도시텃밭(주말농장), 학교텃밭, 옥상농원 만들기 및 유지관리

- 공공정원 및 주변 조경시설 유지관리, 정원안내 및 순례, 원예치료 등
- 원예관련 정보지 발간, 언론매체 원예활동 기고,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2) Master Gardener 필요성

- 자연환경과 농업정보의 기술 수요증가에 따른 효과적 인력육성 필요
- 공동주거 단지와 지역개발 등으로 도시화 확대로 늘 푸른 녹지 조성관리와 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요 증가
- 그 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붐 세대 중심으로 전원생활의 제2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져 자연과 환경에 관한 교육과 정보의 필요

3) Master Gardener Program 동향

- 미국 : 1973년 시작, 현재 50개주 중 49개주 **10만여명** 회원활동
 - 캐 나 다 : 1996년 시작, 현재 10개주 중 4개주 **2천여명** 회원활동
 - 대한민국 : 2011년 시작, 현재 4개시군 **207명** 양성
- * 제주센터 : 2기 24명(2011년~2012년), 경기도원 : 3기 108명(2011년~2013년)
 양주센터 : 2기 40명(2013년~2014년), 고양센터 : 1기 35명(2014)

표 5-6. Master Gardener 교육관련 통계

도 및 시군명	운영년도	운영기간	수료자 인원(명)	인증 시간	자원봉사 시간	수료증 발급기관
	계	4개소 8회	207			
제주 농업기술센터	소계		24			
	2011년(1기)	10~12월	11	50	50	센터소장
	2012년(2기)	09~11월	13	50	50	센터소장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계		108			
	2012년(1기)	05~11월	28	120	50	도원장
	2013년(2기)	06~12월	40	139	50	도원장
	2014년(3기)	04~10월	40	119	50	도원장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계		40			
	2013년(1기)	07~12월	24	125	10	센터소장
	2014년(2기)	04~10월	16	109	10	센터소장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2014년(1기)	07~11월	35	70	50	센터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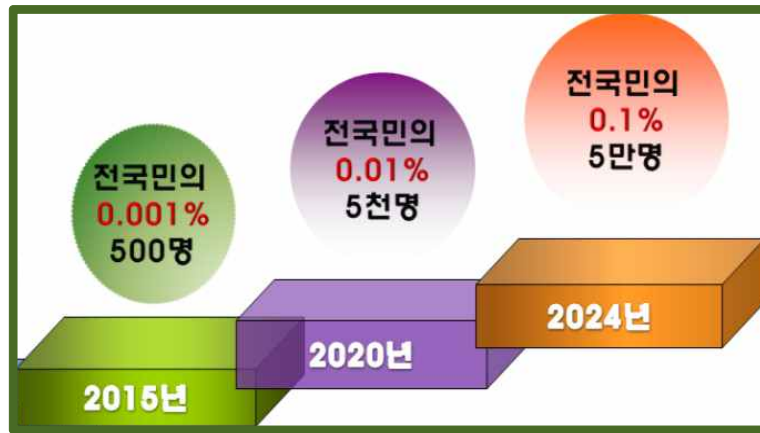


그림 5-16. 한국마스터가드너 증가의 비전

한국마스터가드너 협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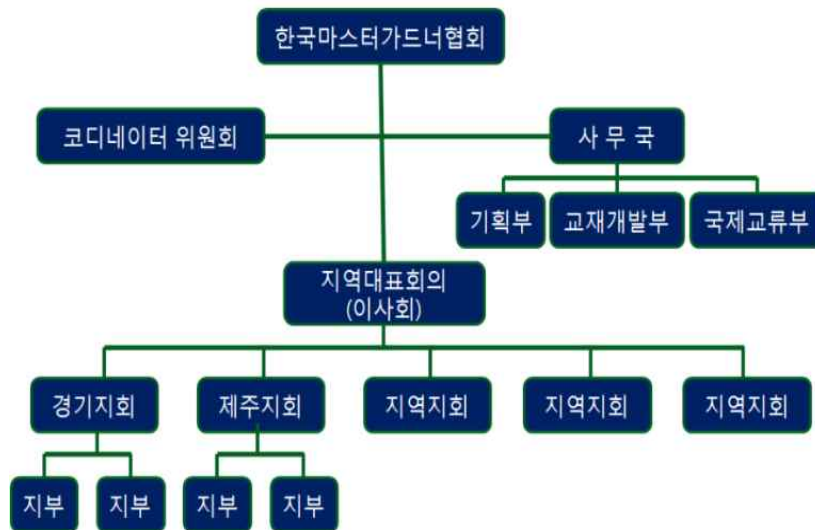


그림 5-17. 한국 마스터가드너 협회 조직도

4) 기대효과

- Master Gardener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2014) 207명 → (2024) 50,000명
- 생활속에 농업실천으로 Green City 구현
-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선진문화 창달을 통한
내면의 삶을 풍족하게 함

5.5.7. 정원대중화를 위한 원예의 역할 강화

1. 정원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2. 공동체정원 활성화
3. 종합 가든센터 및 정보센터 구축
4. 통합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5. 정원산업 관련 통계자료 구축
6. 법제화를 통한 정책 및 예산 지원
7. 복합문화공간인 정원 가치 제고 및 홍보

5.6.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5.6.1. 우선순위의 설정의 기준

- 정원진흥기본계획의 19개 전략의 우선순위는 전략의 시행기간에 따른 분류이다. 2015-16년에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단기과제와 2017-19년에 시행해야 하는 중기과제, 그리고 2019년 이후로 시행해야 하는 장기과제로 나눈다.
- 우선순위 설정의 또 다른 기준은 전략의 중요도이다. 각 전략을 중요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이를 전략의 기간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틀을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전략의 기간이 ‘단기’ 이고 중요도가 ‘상’ 인 전략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고 반면에 기간이 ‘장기’ 이고 중요도가 ‘하’ 인 전략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2.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 6-7에서 보여준다. 이 표는 전략의 시행기간과 전략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시행기간이 단기이고 중요도가 ‘상’ 인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이 된다.
- 단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2-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1)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가 포함된다.

- 중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3-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2) 해외정원기술 교류가 포함된다.
-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4-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다.

표 5-7.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중요도 \ 기간	상 (중요도 높음)	중 (중요도 보통)	하 (중요도 낮음)
단기 (2015-16)	(2-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1)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1-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1-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5-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6-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2-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중기 (2017-19)	(3-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2) 해외정원기술 교류	(1-3) 국가정원 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2-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4-3) 국가정원 지원 및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장기 (2019 이후)	(4-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4-1)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VI.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6.1. 기존법 개정안 또는 별도 정원법(안) 제정안
- 6.2. 정원관련 권한 분쟁시 해결책

VI.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안

6.1. 기존법 개정안 또는 별도 정원법(안) 제정안

6.1.1. 정원 관련 입법

1) 입법과정

그간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변경·관리되어 왔다. 그런데 수목원의 범주 안에 식물원 및 정원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가 오래 동안 논의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2년 제311회 회기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440)을 발의하였다.¹⁴⁾ 이 법령의 제안이유는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며,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상 ‘수목유전자원’은 수목원이 대부분 식물종에 대한 보존·연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유전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목원의 정의에서 식물원·정원 등도 수목원의 기능과 형태를 갖춘 시설이므로 수목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수목원의 범주에 식물원 및 정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관위 심사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사에서 철회되었고 본회의 심의·의결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후 이듬해인 2013년 제19대 316회 회기에 다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350)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수목원의 범위 안에 정원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그 제안이유는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며,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이

1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수목원 조성(변경)계획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안 제7조)과 인허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것(안 18조의2 5항 6항 삭제)이 주된 골자였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심사·법사위 심사·본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1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이 법률 제12416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정원의 육성·정원의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¹⁵⁾ 그래서 법률 제12416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률 제13027호, 2015.1.20., 일부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법)” 로 2015.7.21. 시행이 되었다. 소관부처는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이다.

2)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1) 입법 취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의 취지는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정원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본법의 목적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 가. 제명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원의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15)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지원이 이루어졌다. 즉,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2009.12.31 조례 제1146호 [시행일 : 2010.07.01.]가 그것이다. 이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 참조.

- 다.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함(안 제4조).
- 라.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면적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마.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사항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 바.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 아.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과 관련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사항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 카. 산림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원이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 타.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10).
- 파. 수목원의 운영 등 이해 당사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6.1.2. 수목원, 정원 관련 판례

1) 개요

판례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행한 법에 대한 公定의 解釋으로서 장래의 재판에 대하여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⁶⁾ 실정법상으로는 “대법

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다만 실무상으로 판례라고 할 때에는 대법원의 재판만이 아니라 하급심까지 포함하여 그냥 ‘법원’이 내린 법해석을 판례라고 본다. 여기서 판례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법해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히는 1개의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하여는 ‘재판례(裁判例)’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재판례들이 일련의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된 법해석을 ‘판례(判例)’라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관 전원이 모인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하여 변경하고, 이렇게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로서 성문법, 관습법, 조리(條理)가 재판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법원(法源)이 되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아니다. 즉 법원조직법에서도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동법 제8조), 이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오로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고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때그때 판결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진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최고법원(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판례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여 이전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데에는 아주 신중하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¹⁷⁾ 따라서 판례가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진 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실무의 태도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면 거기에 추상적인 법칙이 발생하고 다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법칙을 적용할 개연성을 가지므로, 판례는 성문법과 함께 중요한 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⁸⁾ 한편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국가¹⁹⁾는 판례가 1차적인 재판기준으로 작용하는 판례법(Case law)국가로서, 앞선 판례, 즉 先例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따라서 판례를 안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법(이른바 ‘있는 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법률이나 하위법령은 대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규율되는지는 판례를 보아야 알 수 있다. 판례는 법이 현실의 구체적인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

16)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5, 143면.

17)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광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8판 전면개정), 박영사, 2015, 26~27면 참조.

19) 영국(스코틀랜드는 제외), 미국(루이지애나주는 제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퀘벡주는 제외), 그밖에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

되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재판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어떻게 법문제로 연결되고, 이 법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과 항변을 펼치는지, 법원은 이 법문제에 대한 결정을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지를 모두 알게 해준다. 이 점에서 “판례는 구체적인 지식으로서 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한다” 고 한다.²⁰⁾

수목원, 정원 관련 판례를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웹DB인 ‘종합법률정보’를 통하여 검색하여 보면, 수목원의 경우 하급심 1건이 나오며, 정원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한문으로는 庭園이라는 의미보다는 定員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판결문 본문에 나오는 것은 장소의 의미만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수목원이나 정원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하급심 판결 1건이 유일하였다는 것이다.

2) 수목원 관련 법원 판결

의정부지법 2013.6.25. 선고 2012구합4543 판결²¹⁾ {아침고요수목원 사례}

○ 사실관계 :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고요수목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민정)

① 원고(아침고요수목원)는 2005. 9. 1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요 수입은 원예수목원 입장료이다. 원고는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2007, 2008년분 배당소득세를 지급하면서 입장료 소득 해당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면제 신고하였다.

② 피고(남양주세무서장)는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예수목원의 입장료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2. 4. 2.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97,874,710원(배당일자 2007. 3. 2.)을, 2012. 6. 4.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137,024,630원(배당일자 2007. 7. 3.)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245,784,0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③ 원고는, 2009. 4. 2. 1,662,500,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232,750,000원을, 2010. 3. 31. 1,206,500,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168,909,990원을, 2011. 6. 1. 1,045,000,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146,300,000원을 각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으로서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4. 피고에게 환급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위나.항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5, 145면.

21) 의정부지법 2013.6.25. 선고 2012구합4543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확정 [각공2013하,638]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9. 이 역시 기각되었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현행 삭제)

○ 법원의 판단 :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갑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구체적인 분석

① 원고 수목원 측의 주장

① 쟁점 1 :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화훼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화훼작물의 재배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위 입장료 수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쟁점 2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은 ‘일정 시설’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을 위 식물원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쟁점 3 :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총액 중 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

감한 금액'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계산방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입장료 수입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② 판단

① 쟁점 1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위 '농업소득' 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이라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농업소득' 을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을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비에 한한다)' 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 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즉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의 상위 분류인 '농업(01)' 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에 분류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② 쟁점 2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과 달리 '일정 시설' 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목원이 외부와 구분되어 입장료 징수 등의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유 식물의 특성 및 관람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원, 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그 면적이 넓다거나 관람 시설이 상당 부분 실외에 배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원이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쟁점 3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② 법 제6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text{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 \text{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또한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그 밖에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을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위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응당 그 모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이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단순히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규정할 뿐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모법에서 ‘농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까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위 시행령 조항은 ‘농업소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소득’만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위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일 것이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라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판결의 의의** :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수목원의 사업은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6.1.3. 2015년 수목원 및 정원법의 입법 평가

1) 수목원, 정원 관련 법체계

2015년 수목원 및 정원법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기존의 수목원법을 정원까지 확대시켜 정원을 추가 규율한 입법으로서, 수목원과 정원의 개념이 명쾌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입법목적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정원은 원예산업이 주된 영역으로 수목이 주된 영역인 수목원을 포괄하는 영역인데, 하위개념인 수목원이 상위개념인 정원을 포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서 정원은 주택에 딸린 정원을 제외하고 공동체 정원은 도시농업의 영역에서 농림부의 소관이며, 영국의 경우 규식물원의 담당부처는 농림부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이 현재 농림식품부의 소속되어 있기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 도시농업법 등 도시텃밭이나 도시정원과 관련된 농식품부 소관법령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권한쟁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원산업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거나 수목원 및 정원법을 대폭 개정함이 필요하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개념이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원법을 계기로 “6차산업=현대적 농업”이라는 범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업=1차산업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의 6차산업은 정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6차 산업 종사자들은 농업인으로 대우받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 현대적 의미의 농업에 맞는 법체계로 전환 필요

2002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주말농원 용도의 소규모 농지 취득을 인정하고 주말농원용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하였다. 이후 2007년 도시농업법에 따른 도시농업 활동의 확장으로 전통적 농업(1차산업~생산 중심)에서 현대적 농업(6차산업~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농업 농촌 기능 중심으로 농업을 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영리목적의 농업생산활동을 해야 농업이고, 그러한 생산공간이 농촌이라고만 한정하여 농림부의 업무영역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농업기능, 농촌기능이 있다면 농림부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농업은 비영리이고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도시농업법은 농림부 소관법률이다. 기존 관념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선진국의 농업농촌 문제는 그래서 우

리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잘 해결되는 기능중심의 접근방법이 있기에 비교적 적은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정원도 전통적인 농업개념에는 맞지 않지만, 현대적인 농업개념에는 잘 부합하고 정원산업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농업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능 중심으로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것은 선진국에서 농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농업을 정의하고 있다(Code rural)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농업의 정의를 또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에서 재배작물이나 축종이나 마릿수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영농일수를 90일, 영농면적을 1000㎡,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²²⁾ 우리나라의 열거식 정의방식²³⁾과 달리 프랑스에서 농업과 농업인 정의는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무엇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법 적용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²⁴⁾ 프랑스에서 농업의 정의는 농업법전 L.311-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 농업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애주기(life-cycle)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 또는 여러 단계의 일련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 “농업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농업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도 농업활동에 속한다.”
- “농업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법전 L.722-1조 이하에 나와 있다.

22) 예컨대,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면, 농산물 판매부진으로 수년간 적자라면 엄격한 법해석에 따르면, 휴업상태인가 아니면 아예 농업인이 아닌 것인가. 면적규모나 마릿수 기준도 마찬가지로 해석문제가 생긴다.

23)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1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2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3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4호, 5호).

24) 정부령 96.462호, 1996.5.29-관보1996.5.30.

- “L.311-1조 이하의 농업으로 정의된 활동을 실천하고 농업공제조합(MSA)²⁵⁾에 가입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한 다음
 - 영농활동에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투여할 것
 - 총 소득의 50%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 활동 또는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에서 확대된 활동으로부터 얻을 것
 - 농업공제조합(MSA)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보험(이른바 AMEXA)에 가입된 자일 것²⁶⁾
 - 농장의 총 소득의 25%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 획득할 것(1996년 5월 29일 데크레 제96.462호).²⁷⁾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에서 농업인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확장활동, 농촌관광 활동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업활동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 농업생산의 모든 형태: 예, 포도 재배, 원예, 수목 재배
- 농업의 모든 양식: 기존의 가축 (소, 염소, 양, 말 등), 특수 가축(양봉, 이국적인 애완동물 등), 선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고기, 갑각류 등 바다 낚시 활동 등, 승마 체험 활동(교육 활동), 임업 작업
- 농업 활동의 확장: 농산물의 가공, 포장, 마케팅
- 관광 활동: 농장시설, 농장 캠핑장, 승마농장, 농가 숙박시설
- 농업 계약자: 관개, 제방 작업, 식물과 동물의 생산주기, 농지 개선 작업, 위생 작업, 배수 작업, 조경, 시골 별장 산업,
- 농업 보험 에이전트: 농업인공제조합(AMA)의 임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정원산업도 6차산업으로서 농산업(Agri-business)²⁸⁾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이

25)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MSA) : 가입자격은 농장주, 농장관리인, 파트타임 농업인 등이며, 최소 정착면적(SMI)의 1/2 이상을 이용하여 연간 1,200시간의 농업활동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인이 가입되어 지원대상이 되도록 제한한다. 농업인이라면 가입이 필수적이며, 건강 보험, 가족 수당, 노령 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역할을 겸한다. 농업인과 그 가족, 농업노동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26) 일종의 농업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에서는 농업인산재보험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이다.

27) Décret n° 96.462, 29/05/1996 - JO du 30/05/1996

28) 농산업은 ‘농업 + 전후방역관산업으로서 농업관련산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농업이라는 용어만 쓰므로 농산업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 강학상 용어이다. 그러나 최근 1차산업인 농업에 가공과 같은 2차산업, 유통·판매·관광서비스와 같은 3차산업을 더하여 6차산업화하려는 측면에서 6차산업으로서 농업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를 보장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기능 중심의 현대적 농업으로 변화되는 입법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3) 수목원 정원법의 소관부처를 둘러싼 갈등

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간으로서 휴식, 건강증진 및 놀이의 생활공간이자 한 나라의 정원 및 건축문화가 드러나는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원산업의 진흥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분야로서, 이와 같은 정원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부 법령은 있으나, 정원진흥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관기관 및 관련 법령은 없던 실정이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 이후 정원 및 정원정책의 소관에 관하여 부처간 일부 이견이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과 공원시설²⁹⁾ 개념 속에 정원을 포함하고 있고, 정원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조성되어 휴식과 정서 함양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서,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주택·도로·해안·하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에 관한 정책은 도시와 주택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환경부는 산림청의 직무범위와 입법과정에서 정원의 개념이 기존의 수목원 또는 식물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 중복이 우려되므로 수목원, 식물원, 공원, 정원과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관리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매모호한 경우 환경부가 국립공원처럼 정원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정관련단체³⁰⁾의 경우 정원의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정

29)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양시설(정원)

30) 대한건설협회

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³¹⁾, 정원산업의 지원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통계법」 제22조와 통계청 고시 2007-53호에 따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정원조성공사, 정원수 식재 등은 조경건설업과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들었다.

표 6-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내 용	예 시
41226	조경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 외부환경 조성공사 · 조경 건설공사 · 정원 조성공사 · 녹지조성공사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조경수 관리 · 정원수 식재 · 정원관리 대리 ·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끝으로 그동안 수목원을 관리하던 산림청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목원 개념 속에 정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³²⁾, 국립수목원에서도 정원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³³⁾, 산림청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과 이를 위한 주관기관 지정과정에서 전남 순천시는 여러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

31)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3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정원전시원**).

33) 수목원에 적용 가능한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관한 연구(2010~2011),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꽃 야생화의 활용에 관한 연구(2014~2017)

품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담당업무가 아니거나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동 박람회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을 산림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생각건대, 위의 견해들은 각자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건설기본산업법에 수록하자는 대한건설협회, 산림청 모두 정원 및 정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들이다. 그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산림청이 가장 주도적으로 입법에 관여하였고, 또 순천만정원 박람회의 개최에도 주관기관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원은 수목원과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입업에 해당되는 수목원은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것에 크게 의문사항이 없다. 하지만 정원은 수목원과 그 성격이 다르다. 국어사전의 정원(庭園)에 대한 뜻을 보자. 정원은 “집안에 있는 뜰 혹은 꽃밭”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미관, 위락 또는 실용을 목적으로 수목을 심거나 그 밖에 특별히 설계한 땅, 집의 둘레” 등의 의미도 있다. 즉 정원에는 수목도 식재하지만, 잔디·화훼·연못·둘레길·수석·조각 등 인공적·자연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농진청에서는 화훼산업에 대해 관장하여 왔다.

따라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농진청을 배제한 입법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원에 대해 산림청과 농진청이 공동으로 관장하도록 농림식품부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1.4. 수목원 및 정원법의 개정의견

1) 개정 방향 : 원예산업이 주도하는 정원법

(1) 농업법적 시각에서 정원 개념의 재검토 : 수목원 개념과 차이를 중심으로

수목원 및 정원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원의 관리주체가 산림청인가 농촌진흥청인가 하는 점이다. 개정도 그에 맞추어 논의가 진척되어야 하기에, 선결문제로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수목원 정원법의 입법자의 의도가 어떠한 논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정부조직법상 사무분장을 해석하여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법이란 무릇 있는 법, 즉 현행 법에서 출발하여야 법적 안정성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목원 정원법에는 다음과 같이 수목원과 정원을 정의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27호, 2015.1.20., 일부개정]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제1호).

이에 반하여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제2호).

수목원 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해석하면, 수목은 일반적으로 樹木, 즉 목본 식물을 의미하지만, 수목원법에서는 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하는 초본·목본 산림식물 중 목본류를 지칭하고, 수목원이란, 이러한 산림식물 중 수목을 중심으로 수집, 증식, 보존, 관리, 전시, 연구하는 법정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정원은 산림식물 까지 포함하여 식물 전반을 전시, 재배,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수목원보

다 정원에서 관리하는 식물이 다양하며 넓기에, 수목원의 상위 개념이 정원임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목원은 특수한 식물인 산림식물을 수목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원에 대하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수목원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산림식물 중 수목이 주된 공간이 수목원이다. 반대로 원예산업이 주된 공간이 정원이다. 이를 법적 시각에서 보면, 주된 물건인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 물건인 종물이 따라간다는 주물(主物)-종물(從物) 법리와 부합하는 논리이다. 예를 들면 본체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별도의 화장실도 함께 처분되고, 시계 본체와 시계줄은 시계본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물의 성질과 소유권에 따라 그 전체 물건의 성질과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민법상 “주물(主物)-종물(從物) 이론“을 토대로 생각하면, 정원은 원예산업(꽃과 풀)이 주된 공간인 반면, 수목원은 임업(나무)이 주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산림청과 농진청의 사무분장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순천만 정원은 산림식물인 수목이 주가 아니므로 정원에 속할 것이고 산림청이 아니라 농진청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나 해석과도 일치한다.

(2) 정부조직법에 따른 사무분장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두며, 산림에 관한 사무를 위해 산림청을 두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6조).

<p>정부조직법</p> <p>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p> <p>③ 농촌진흥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p> <p>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p> <p>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p> <p>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p>

정부조직법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타법개정]” 제32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권한 위임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p> <p>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 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p> <p>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에 관한 사항</p> <p>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p> <p>나.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p> <p>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업 분야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p> <p>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p> <p>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p> <p>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p>

이에 따르면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서 농업농촌분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임업분야는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분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농촌분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임업분야는 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분장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는 국가기관 직제에도 나와 있다.

먼저 대통령령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5.26.] [대통령령 제 26277호, 2015.5.26., 일부개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소속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즉 원예와 축산분야는 농촌진흥청 주관업무라는 의미이다.

제2조(소속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둔다.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음으로 역시 대통령령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5.26.] [대통령령 제26278호, 2015.5.26., 일부개정] 제3조에는 산림청의 관장 사무가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등을 둔다. 임업분야는 산림청 주관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산림교육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②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편 농업의 범주와 임업의 범주가 규정되어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확인하면 정원의 관리주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농업에는 농작물재배업(원예산업 포함), 축산업, 임업과 관련산업으로 되어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농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는 농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까지 포함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증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3) 해결: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산림청(수목원)-농진청(정원)으로 사무 분담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산림청(수목원)-농진청(정원)으로 사무 분담을 한다. 권한 분쟁이 생기거나 모호한 부분은 농식품부가 조정역할을 발휘한다.

정원산업은 농업의 6차산업화, 현대적 선진국형 농업으로 국민의 자가치유, 교육이나 관광, 환경과 소비자보호 문제해결에 순기능하는 핵심산업으로 타부처보다 농식품부가 주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의 관리주체는 아주 중요하다. 과거 대부분이 농촌영역이고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주된 공간인 국립공원의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확정되고, 말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서 오랜 시간 주무부처였다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데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정원에서는 그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될 것이다. 정원에 대하여 산림청을 비롯하여 농업계 내부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부나 국토부가 관리를 자임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결하고 보면, 현재 수목원 및 정원법에서 많은 조항들이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제명, 정원의 정의,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정원지원센터의 지정·운

영,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서 원예산업의 주도성 확보가 필요하다.

2) 조문별 검토 의견

(1) 법률의 명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수목원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27호, 2015.1.20.,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법률의 명칭(이른바 ‘題名’)은 법률의 고유한 명칭으로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잘 나타내되, 알기 쉽고 간결해야 한다.³⁴⁾ 법률 명칭을 기존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수목원뿐만 아니라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제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원은 수목원, 식물원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엄밀히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 개정의견

따라서 제명은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옳다.

(2) 목적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가 담겨있다.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운용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³⁵⁾ 목적조항의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고 종합

34)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II), 2008, 245면 이하.

35)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III), 2008, 377면 이하.

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약칭이나 부가적인 설명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2개 이상의 조문이나 항·호·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법률 제1조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먼저 언급한 뒤, 목적을 서술하는 구조를 취한다.³⁶⁾

정원은 민간정원 및 공공정원을 포함하는 유사정원들의 최상위에 위치하므로, 그 목적은 다양한 정원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목유전자원은 수목에만 한정된 개념이므로 식물유전자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과 산업적 측면에서 전시, 연구 및 교육의 기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정원의 정의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개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

36)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Ⅲ), 2008, 377~378면에서는 “~을 규정함으로써 ~을 목적으로 한다.” 는 문장구조를 취하는 것이 목적조항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 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7.25.]

정의조항이란, 법률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된다.³⁷⁾ 정의조항은 당해법령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축약하여 입법기술상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당해법령에서 일상적인 용어와 다른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의조항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정원의 정의에서 주로 정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문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로 지정된 전통정원³⁸⁾을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관부처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평가된다. 그리고 단서에서 문화재³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하고 있으나, 정원의 정의와 다름의 여지가 있는 도시공원⁴⁰⁾, 자연공원⁴¹⁾ 등도 정원의 범위에서 제

37)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III), 2008, 386면.

38) 창덕궁 부용정, 경덕궁 향원정

3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유형·무형·민속 및 지정 문화재, 기념물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상임위원회 검토서).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원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정원에 대한 정의가 고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공간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개념의 정원개념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정원이란 민간의 정원활동 공간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유용한 식물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전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그 유형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정의는 용어와 정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도 있다.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원 전문가’로 수정하도록 하고,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한다.

정원산업의 정의는 정원의 조성 및 관리의 측면에서 정의되어 있기에, 더욱 포괄적으로 외연을 넓혀 “정원산업이란 정원 조성 및 관리, 정원재료, 정원전시, 정원 교육, 정원연구, 정원관광 등에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개정의견

조문의 호 순서 바꿈(정원 정의를 제1호로, 수목원은 2호로)

1. “정원”이란 민간의 정원활동 공간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유용한 식물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전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그 유형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 조성 및 관리, 정원재료, 정원전시, 정원교육, 정원연구, 정원관광 등에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4) 사업조항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사업을 ‘수목원 사업’ 과 ‘정원 사업’ 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원의 개념 정의와 목적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수목원법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

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수목원법’에서 ‘구 수목원법’과 ‘정원법’의 분리를 요구하도록 한다. 따라서 통합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정원 사업 관련 조문을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공공정원의 하나인 수목원의 사업 관련 조문을 배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총괄적 개념에서 정원 사업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수목원 사업 관련 조문을 생략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는 총괄적 개념에서 정원 사업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 및 수목원 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때, 결과적으로 수목원 사업이 정원 사업에 포함된다면, 제3조제1항에서 국립수목원이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제11조(입장료 등), 제12조(개원 및 휴원), 제13조(등록의 말소)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조문은 수정 또는 삭제하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 개정의견

제3조 ①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식물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식물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식물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식물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식물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식물자원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식물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식물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정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목원
 -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다.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라.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정원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전문개정 2015.1.20.]

2014년 법에서 수목원의 정의만 있었으나, 정원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2015년 개정법에서는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라 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체 또한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등과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공동체정원으로 분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수목원은 공공정원의 하위개념으로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은 ‘정원의 구분’으로 수정한다. 국가정원에서 “산림청장”이 조성하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원의 관리 감독 주체는 농진청이 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정시에 국가가 지정하는 정원에 농진청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원의 구분은 공공정원과 민간정원을 구분하여 각 호에 배치하며, 공공정원에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교육정원으로 구분하고, 민간정원은 사립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한다.

☞ 개정의견

제4조(정원의 구분)

1. 공공정원

-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다. 교육정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2. 민간정원

가. 사립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나.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만약, 정원법이 별도로 제정된다면, 제5조(국립수목원 등)와 같은 맥락의 조문들은 ‘국립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과 같은 행정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규제하기보다 장려하는 목적의 ‘조성적 법령’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며, 이를 심의하는 심의회 또는 정책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사전 협의에 관한 내용이 수반한다.

정원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계획이 필요한데, 문제는 정원 계획-정원 조성(시설물 건축)-일자리 취업-판매 등 수익활동-교육·연구·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림청만을 주무부처로 하기보다는 농진청, 농식품부(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또는 여러 부처의 통합(관련 사업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처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하였다.⁴²⁾ 또한 정원산업 종사자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도계획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시군구계획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도가 아무런 허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원정책의 집행은 결국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군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단위-시도단위의 계획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개별 계획을 수립한다. 단, 정원정책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시도계획에 미리 정하거나, 시군구의 재량사항으로 둔다.

국가예산주기 5년의 틀 내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은 5년 등 일정 주기로 주무부처에서 수립,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원진흥기본계획의 경우 통상 5년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수립, 시행, 검토의 사이클을 가지는 것으로 구상한 점은 의미가 있다. 이성과 같은 기본계획이 법률에서 제정될 경우 부처간 협의 및 농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체계 정비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원산업의 진흥에서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농식품부장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에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상향식 계획에 관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015년 정원법은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시·도지사와 국립수목원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 감사원 감사⁴³⁾에서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권장사항으로 운용하도록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수목원·정원실시계획을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위원회 심사보고서).

42) 이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는 계획 수립시에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타부처와의 관계를 개별 규정으로 두는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43) 2013. 3. 26. 감사원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중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적은 수목원진흥실시계획 등 4개 지역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마련 요구함.

수목원만을 수목원법에서 단독으로 규정하였을 때, 산림청장이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였지만, 정원이 포함되었으므로 농진청장도 정원진흥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도입되어야 타당하다.

즉 수목원은 공공정원의 하위개념으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은 ‘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으로 수정한다.

정원의 운영에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상 수평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농진청 역시 포함됨으로 올바른 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는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또는 ‘농진청장과 산림청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정원법 제정 또는 수목원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각 항과 호에서 수목원과 정원의 병기를 정원 단독으로 수정한다: ‘수목원·정원’을 ‘정원’으로 수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수목원장은 삭제한 후에 ‘국립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에서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개정의견

제6조(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현황
3. 정원에 대한 지원 및 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2011.7.25.]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총칙규정, 인허가규정, 그리고 부칙규정 등에서 사용한다. 총칙규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당해 법률과 다른 법률 간에 적용 범위 또는 적용 순위를 정하여 상호충돌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인허가 규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당해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할 경우 사용된다. 부칙규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법률의 제·개정이나 폐지가 있을 경우 일괄 제·개정 또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거둔다.⁴⁴⁾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

44)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Ⅲ), 2008, 1231면 이하 참조.

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신설 2015.1.20.>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시정요구)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신설 2015.1.20.>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중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15.1.20.>]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가 산림청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진청에서도 조성 및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정원의 운영은 당초 구 수목원법의 수목원 수준에서 산림환경보호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식물자원의 보존, 전시, 교육, 연구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됨으로 오히려 농진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 식물자원과 관련하여 작물은 농학(agriculture), 산림은 산림학(forestry), 그 외의 광범위한 식물자원은 원예학(horticultur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horticulture의 업무 영역은 단순한 식물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과 예술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은 미국, 호주 등의 식민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국토개발 또는 도시계획의 영역으로 부분적으로 정원(garden)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류인 미국의 조경학에서 정원이란 국토개발 또는 도시계획에서의 녹지체계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개정의견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농진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농진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진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중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15.1.20.>]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정원 및 일반에 공개되는 민간정원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정원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상임위 심사보고서). 따라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공공정원으로 기본적으로 공개를 목적으로 함으로 제18조의3제1항에서 괄호는 ‘국가정원은 제외한다’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서 제18조의3제1항에서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는 ‘다만, 제18조의5제2항에 --’로 수정하도록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수목유전자원’은 ‘식물자원’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 개정의견

18조의3(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4(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중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12로 이동 <2015.1.20.>]

제18조의5(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개정안은 개인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반에 공개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원의 보존가치가 있거나 산업적으로 유용한 정원소재 식물의 보존·증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국립수목원과 일부 민간수목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간정원은 식물원의 형태를 가지며 상업적인 전시, 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화훼류를 중심으로 한 원예적 예술 및 문화 활동이 중심이 되는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농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 개정의견

제18조의5(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농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농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개정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원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정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개정법에 의하면 규정은 모든 정원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바, 등록된 정원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예산 등의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등록된 정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그런데 수목원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해석하면, 국가정원을 제외한 지방정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는 국가의 책무 또는 평가기관의 위탁을 취하고 있다(법 제18조의3제1항,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 영 제8조의6제2항, 규칙 제15조의6). 이 경우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는 ‘농진청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정원은 본래 꽃, 채소, 허브, 과일 혹은 관상식물을 재배하는 장소이며, 정원에서의 주요한 프로그램은 앞서 열거된 식물들의 전시, 연구 및 교육이다. 따라서 제18조6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국가’를 ‘농진청장’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 개정의견

제18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농진청장은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농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개정법은 산림청장 등이 정원문화의 증진과 정원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정원관련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정원문화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정원관련 박람회 등 지원규정이 없어, 정원관련 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였으나, 위원회 대안과 개정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의 주체라고 명시하였다. 의미 있는 조항이다.

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기존에 입법과정에서 산림청장이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원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원문화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더러 안 제18조의9는 정원산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원문화’를 ‘정원산업’으로 수정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였다(법사위 검토보고서).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은 ‘농진청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오늘날 ‘정원산업’이란 정원 조성 및 관리, 정원재료, 정원전시, 정원교육, 정원연구, 정원관광 등에 관련한 원예산업이다. 이미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도시농업팀, 농진청 산하 농업실용화재단,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개정의견

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농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농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⁴⁵⁾으로서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는 정원의 촉진을 위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운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중앙에 “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두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다. 즉 중앙 정부 단위 - 광역 단위 - 기초 단위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정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정원과 관련하여 인증을 한다든지 평가, 모니터링, 경영지원, 교육지원, 홍보지원, 정보지원, 정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단위의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로 방문컨설팅, 현장애로사항 해결, 판로개척 등 정원산업 종사자들의 문제해결과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45) 중간지원조직이란 NPO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PO와 NPO, NPO와 행정기관,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도 하는 조직을 지칭하는데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미국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IO)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18조의9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농진청장’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본조에서 ‘정원산업’을 협의로 이해하여 제18조의9제21항에서 그 업무의 위계와 구성이 부적절하다. 오늘날 ‘정원산업’이란 정원 조성 및 관리, 정원재료, 정원전시, 정원교육, 정원연구, 정원관광 등에 관련한 원예산업이다. 따라서 제18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5호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지원센터는 정원 자체, 정원 전문가, 정원 관련 사업자, 일반 정원 방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 농업기술센터를 확대한 개념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 개정의견

제18조의9(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진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 및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2. 정원의 전시 및 정원관광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4.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진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신설 2007.1.3.>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1.>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5.1.20.>]

2014년 수목원법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며,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이에 정원전문가를 추가하고 있다(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정원은 산림청장의 관할영역으로만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원전문가는 농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조문 제목도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식물원 전문가 교육과정 등 다양한 정원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구 수목원법의 시행령 별표3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의 개념은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국한한 교육과정이다.

외국의 경우, 정원 전문가는 정원식물 및 토양 관련 전문가, 정원 조성 및 관리 전문가, 전시 및 이벤트를 위한 큐레이터, 정원교육 전문가 등 다양하다.

또한, 수개월 또는 1년 과정의 자격증 과정(certification), 2년 과정의 전문학사 과정(diploma), 4년 과정의 학사 과정(degree) 등 다양한 기간의 교육과정이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으로 수정하고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을 공공정원의 유형과 교육시간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는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을 공공정원의 유형과 교육시간에 따라서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장’은 ‘농진청장’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 개정의견

제18조의10(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농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5.1.20.>]

제18조의11제1항과 제2항에서 ‘산림청장’은 ‘농진청장’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제18조의11에서 ‘수목원 또는’은 삭제하도록 한다.

☞ 개정의견

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① 농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제18조의12(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본조신설 2007.1.3.]
 [제목개정 2015.1.20.]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5.1.20.>]

조문 제목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은 ‘정원 전문가의 활용’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제18조의12에서 ‘산림청장’은 ‘농진청장’으로 수정하고 ‘수목원 또는’은 삭제하도록 한다.

☞ 개정의견

제18조의12(정원 전문가의 활용) 농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전문개정 2011.7.25.]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 유형으로는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위임관청의 지휘·감독에 있지 아니한 대등한 행정관청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私人에 대한 위탁 등이 있다.⁴⁶⁾

따라서 산림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농진청장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도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중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5.1.20.>]

개정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 운영 등의 시정요구와 자료 제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변경등록, 일정 일수 이상 개관, 휴원 신고,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신고(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⁴⁷⁾,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기한을 해당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⁹⁾.

시·도지사가 수목원 운영자에게 시정요구서 제출을 요구하는 “그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자료” 사항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어 수목원 운영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규제 완화 등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6)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Ⅲ), 2008, 1006~1009면 참조.

4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4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49)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1.20.>]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2. 제18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5.]

6.2. 정원관련 권한 분쟁시 해결책

6.2.1. 농진청과 산림청의 업무분장 협의

정원관련 산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개념이 확립되지도 못하였고, 법의 제정도 이제 막 시작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원관련 산업을 어느 기관에서 관장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자는 의견, 환경부에서 관장하자는 의견, 산림청에서 관장하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농림식품수산부가 관장하고 정원에 관하여는 농진청이 권한을 행사하고, 수목원에서 관해서는 산림청이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업무범위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 유관 기관끼리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종종 국가

기관 사이의 분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사실 정원에 관해 2015년 7월부터 제정 시행되는 「정원법」은 기존의 「수목원법」을 토대로 변경한 것이다. 「수목원법」은 그간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였고, 수목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곳도 산림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순천만 정원 등 국가정원산업이 발전하고, 도시 농업이나 치유농업등의 개념과 정원의 개념이 합하여져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국회는 몇 차례의 법률안 제안 및 개정을 통해 「정원법」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원법」의 법적인 문제점 및 조문의 개정의 필요성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면 별도의 「정원법」의 제정의 필요성도 있음도 언급하였다.

「정원법」의 개정의 필요성의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이 ‘정원’ 관련 산업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정원관련 교육시스템을 갖추며, 관리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산림청이 정원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농진청이 관리감독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그 핵심이다.

법률안의 개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의 사무분장을 명백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미 「정원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에서는 기존의 「수목원법」을 母法으로 하였기에 정원 및 수목원의 관리 주체로 산림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의 개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특수한 사안으로 아직 정원의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고, 법령의 제정이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권한의 조정 및 재분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정원법」에 정원은 농진청이 관장하고 수목원은 산림청이 관장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어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할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둘째, 농진청과 산림청의 주무관 및 관리관들의 업무조정 협의가 필요하다. 실무차원에서 정원은 농진청이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수목원은 산림청이 수행하여 업무분장을 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농림식품수산부가 지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담당 기관의 공무원들의 오랜기간 동안 조율과 회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만약 법률의 개정이 쉽지 않고, 농진청과 산림청의 업무분장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법적인 판단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며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이는 소송경제적으로도 낭비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진청과 산림청이 정원 및 수목원의 업무분장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받는다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률개정이 쉽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무진 회의 및 청장간의 업무조율에서도 정원 및 수목원에 관한 업무분장이 쉽지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기관간 권한쟁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한쟁의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6.2.2.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연혁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⁵⁰⁾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기관간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의 권한쟁의제도가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심판만을 내용으로 한 것과는 달리, 현행 헌법의 권한쟁의제도는 그 심판사항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까지 포함시켜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의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살펴보자.

2)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50) 헌법재판소실무제요 199면.

-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위 조문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행하는 재판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95. 2. 23. 90헌라1)

권한쟁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가기관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청구인이 될 수는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의원내교섭단체 같은 부분기관도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독일에서는 정당은 적극적인 당사자로서 권한쟁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뿐이지만, 권한쟁의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해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국가기관인 정부로서는 전체로서의 정부뿐 아니라 그 부분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등이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당연히 권한쟁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농진청과 산림청이 정원산업의 권한 여부를 다툰다면 권한쟁의 심판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3) 권한쟁의 부정한 사례

만약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시계획사

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07.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헌공제37호])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07.14. 선고 98헌라1 전원재판부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헌공제29호])

또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4헌라3 전원재판부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헌공제111호])

4) 권한쟁의 긍정적인 사례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진해시를 상대로, 진해시 용원동 내의 일부인 계쟁 토지가 법률에 의해 그 관할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확인을 구하고, 진해시가 계쟁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계쟁토지에 대해 진해시장이 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08.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헌공제119호])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거나 다만,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05.25. 선고 2005헌라4 전원재판부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헌공제116호])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운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긍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6.03.30. 선고 2003헌라2 전원재판부 아산시와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헌공제114호])

5) 소결

정원산업에 관련된 업무분장 및 권한의 행사에 있어 농진청과 산림청의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여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행정관청의 내부 조율에 의한 업무범위의 조정이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VII. 결 론

정원산업은 원예·산림·조경의 융·복합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큰 선진국형 농산업 분야이다. 실제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정원산업은 원예부분, 특히 화훼 및 도시농업이 주도하는 도농융복합산업이다. 오늘날 화훼산업은 생산 및 판매 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및 정원관광을 통한 6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국가들이 현대적 개념의 정원산업의 기원과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으므로,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정원산업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육성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내·외 정원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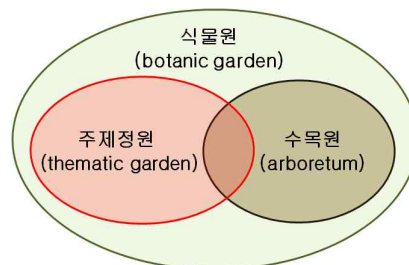
○ 정원의 정의

- 정원은 개인 또는 공공의 즐거움과 유익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이며 민간정원과 공공정원으로 구분된다.
- 민간정원(private garden)은 꽃, 채소, 허브, 과일 혹은 관상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택에 근접한 대지의 한 부분이다.
-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가지는 정원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식물원, 수목원, 대중에게 개방되는 민간정원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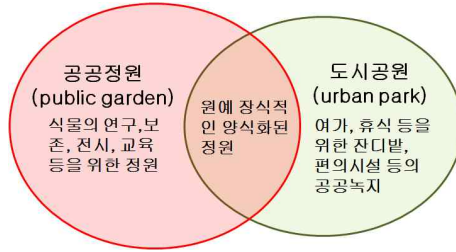
○ 이용목적에 따른 정원의 구분

- 민간정원
- 공공정원: 다목적정원, 장식정원, 보존정원, 대학정원, 치유정원, 주제정원, 축제정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 민간정원

○ 식물재료에 따른 정원의 구분



○ 공공정원과 도시공원의 구분



○ 식물원, 수목원, 공동체정원, 도시텃밭의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식물원 (botanic garden)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
수목원 (arboretum)	식물원의 일종 또는 식물원의 하위 개념으로서 수목을 중심으로 연구,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공동체정원 (community garden)	레크리에이션, 교육, 보존, 원예 실무연습, 약용식물 및 경제성 있는 식물들의 재배와 같은 특별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한정된 자원들을 가진 소규모 정원
도시텃밭 (allotment garden)	도시 내 일정한 지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개인 또는 가족에게 할당된 소규모 토지들로서 때때로 대중에 대한 식물 전시, 원예실무 교육 등을 수행함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원 조성현황

구분	특징	
	공공정원	민간정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원은 789개소임 □ 공공정원 및 역사유적은 National Trust, English Heritage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은 20,200,000개소가 있음(MINTEL, 2003) □ 5,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됨 □ 공개되는 민간정원들은 National Gardens Scheme(NGS), British Red Cross,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e 등의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원은 133개소임 □ Royal Botanic Gardens 등과 같은 주요 정원들은 대부분 주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개소 이상의 민간정원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음 □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2015년까지 비영리 단체인 Open Gardens Australia(OGA)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최근에는 주(state) 단위의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운영됨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원은 114개소임 □ 주요 정원들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대부분은 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왕성하지 않음 □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New Zealand Gardens Trust와 캔터베리 원예협회(Canterbury Horticultural Society) 등과 같은 지역 원예단체에 의해서 운영됨

○ 우리나라 정원 조성현황

구분	특징	
	공공정원	민간정원
우리 나라	<input type="checkbox"/> 산림청에 등록된 공공정원은 44개소임 <input type="checkbox"/> 2010년대 후반에는 118개소가 될 것임 <input type="checkbox"/> 대부분이 수목원의 형태를 가짐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수목원 및 식물원은 식물 보존 중심의 임무를 수행함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수목원 및 식물원의 재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존하며 전시, 교육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성을 위한 활동은 미약함: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공공정원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되고, 사립 공공정원은 개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됨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의 대중공개(open garden)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은 없음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원의 개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임 <input type="checkbox"/> 다만, 대부분의 공공정원들이 1990년대부터 조성되어서 다양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주거형태로 민간정원의 대부분은 베란다 정원의 형태를 가짐 <input type="checkbox"/> 서울 등의 대도시 주변 교외지역에서 민간정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정원들의 공개는 개인들이 직접 또는 시·군 등의 지원으로 이루지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영국의 National Gardens Scheme(NGS)과 같이 전문화된 비영리 단체가 부재함

- 정원산업의 범위는 정원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원용 식물, 비료 및 농약, 도구, 가구 등의 정원재료, 정원 조성, 관리 등의 정원서비스 그리고 정원, 정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정원관광으로 한정됨, 즉 정원재료, 정원서비스, 정원관광으로 한정됨
- 정원관광을 제외한 영국 정원산업의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대략 연간 90억 파운드 (15.9조 원)이며, 대략 28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짐
- 정원관광을 제외한 일본의 정원산업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정원식물에서 4.2조 원이며 화단용 정원식물의 생산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초본과 장식용 식물들의 품종개발 및 등록이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있음
- 영국에서 1989년 이래로 정원관광은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들의 하나가 되었음
 - 영국 정원들은 2009년에 39.1백만의 방문자들을 유인하였음(내국인 33백만 명 그리고 외국인 6.1백만 명)
 - 장래 민간정원 및 농장 방문이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호주에서 정원관광은 15세 이상의 호주 인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활동으로서 38.5%는 적어도 매년 한 개의 식물원을 방문함
- 뉴질랜드는 국가적 규모의 데이터 수집은 없지만, 개별적인 정원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정원관광이 세계적인 수준임

-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생산액은 약 11,966억 원, 유통액은 14,693억 원, 소비액은 약 828억 원이며, 총생산액은 27,487억 원으로 대략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임
- 정원관광은 국가적 규모의 데이터 수집은 없지만, 개별적인 정원들로부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임
 - 공공정원 방문, 플라워/정원 박람회 관람, 정원교육이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몇몇 공공정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00,000명 미만의 방문자수를 가지는 공공정원으로 보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원 전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방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정원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수목원, 정원 관련 법체계
 - 2015년 수목원 및 정원법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기존의 수목원법을 정원까지 확대시켜 정원을 추가 규율한 입법으로서, 수목원과 정원의 개념이 명쾌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입법목적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정원은 원예산업이 주된 영역으로 수목이 주된 영역인 수목원을 포괄하는 영역인데, 하위개념인 수목원이 상위개념인 정원을 포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외국에서 정원은 주택에 딸린 정원을 제외하고 공동체 정원은 도시농업의 영역에서 농림부의 소관이며, 영국의 경우 규식물원의 담당부처는 농림부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이 현재 농림식품부의 소속되어 있기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 도시농업법 등 도시텃밭이나 도시정원과 관련된 농식품부 소관법령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권한 쟁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원산업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거나 수목원 및 정원법을 대폭 개정함이 필요하다.
 -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개념이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산업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원법을 계기로 “6차산업=현대적 농업”이라

는 법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업=1차산업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의 6차산업은 정책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6차 산업 종사자들은 농업인으로 대우받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현대적 의미의 농업에 맞는 법체계로 전환 필요

- 2002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주말농원 용도의 소규모 농지 취득을 인정하고 주말농원용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하였다. 이후 2007년 도시농업법에 따른 도시농업활동의 확장으로 전통적 농업(1차산업~생산 중심)에서 현대적 농업(6차산업~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농업농촌 기능 중심으로 농업을 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영리목적의 농업생산활동을 해야 농업이고, 그러한 생산공간이 농촌이라고만 한정하여 농림부의 업무영역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농업기능, 농촌기능이 있다면 다 농림부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농업은 비영리이고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도시농업법은 농림부 소관법률이다. 기존 관념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선진국의 농업농촌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잘 해결되는 기능중심의 접근방법이 있기에 비교적 적은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정원도 전통적인 농업개념에는 맞지 않지만, 현대적인 농업개념에는 잘 부합하고 정원산업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농업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능 중심으로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것은 선진국에서 농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농업을 정의하고 있다(Code rural):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농업의 정의를 또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에서 재배작물이나 축종이나 마릿수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영농일수를 90일, 영농면적을 1000㎡,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등으로 열거 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열거식 정의방식과 달리 프랑스에서 농업과 농업인 정의는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무엇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법 적용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프랑스에서 농업의 정의는 농업법전 L.311-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 농업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애주기(life-cycle)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 또는 여러 단계의 일련의 활동” 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 “농업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농업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도 농업활동에 속한다.”

- “농업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 사업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에서 농업인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확장활동, 농촌관광 활동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 농업생산의 모든 형태: 예, 포도 재배, 원예, 수목 재배
- 농업의 모든 양식: 기존의 가축 (소, 염소, 양, 말 등), 특수 가축(양봉, 이국적인 애완동물 등), 선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고기, 갑각류 등 바다 낚시 활동 등, 승마 체험 활동(교육 활동), 임업 작업
- 농업 활동의 확장: 농산물의 가공, 포장, 마케팅
- 관광 활동: 농장시설, 농장 캠핑장, 승마농장, 농가 숙박시설
- 농업 계약자: 관개, 제방 작업, 식물과 동물의 생산주기, 농지 개선 작업, 위생 작업, 배수 작업, 조정, 시골 별장 산업,
- 농업 보험 에이전트: 농업인공제조합(AMA)의 임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 정원산업도 6차산업으로서 농산업(Agri-business)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기능 중심의 현대적 농업으로 변화되는 입법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수목원 정원법의 소관부처를 둘러싼 갈등

- 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간으로서 휴식, 건강증진 및 놀이의 생활공간이자 한 나라의 정원 및 건축문화가 드러나는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원산업의 진흥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분야로서, 이와 같은 정원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럼에도 과거 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부 법령은 있으나, 정원진흥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관기관 및 관련 법령은 없던 실정이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 이후 정원 및 정원

정책의 소관에 관하여 부처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개념 속에 정원을 포함하고 있고, 정원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조성되어 휴식과 정서 함양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서,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주택·도로·해안·하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에 관한 정책은 도시와 주택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고 주장하였다.
- 다음 환경부는 산림청의 직무범위와 입법과정에서 정원의 개념이 기존의 수목원 또는 식물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 중복이 우려되므로 수목원, 식물원, 공원, 정원과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관리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매모호한 경우 환경부가 국립공원처럼 정원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조경관련단체의 경우 정원의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원산업의 지원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통계법」 제22조와 통계청 고시 2007-53호에 따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정원조성공사, 정원수 식재 등은 조경건설업과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들었다.
- 끝으로 그동안 수목원을 관리하던 산림청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목원 개념 속에 정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국립수목원에서도 정원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산림청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과 이를 위한 주관기관 지정과정에서 전남 순천시는 여러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담당업무가 아니거나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동박람회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을 산림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농진청을 배제한 입법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원에 대해 산림청과 농진청이 공동으로 관장하도록 농림식품부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영국의 큐 가든과 위슬리 정원은 식물원의 본래 기능에도 충실하며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진입부에 위치시키고 있음
- 에든버러 식물원은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유리온실의 관람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에게 8,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9년에 진입부에 새롭게 건축된 John Hope Gateway에서는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도입하였고, 환경, 식물, 생태에 대한 교육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원 관련 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 시드니 식물원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인접하여 무료로 입장함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받아들이지만,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정부는 예산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며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있음
 - 영국 정원들이 2000년대에 진입부에 상업적 공간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던 것처럼 호주 정원들 역시 진입부에 다양한 상업적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의 아침고요수목원과 제이드가든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진입부에 상업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정원문화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방문객들, 즉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정원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원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정원용품에 대한 수요가 적음
 - 제한적으로 선물, 기념품, 분화 등을 위주로 한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국내외 정원들의 입장료, 입장객, 재정 현황

구분	입장료 (원)	입장객 (만명)	재정	비고 예산(억원)
큐 가든	26,500	195	정부 52%, 입장료 등의 수익 27%	935
에든버러 식물원	무료	80	지방정부가 97% 정도를 지원함	158
위슬리 정원	23,600	80	왕립원예협회가 운영, 재정자립 100%	(사립)
시드니 식물원	무료	380	주정부 45%, 보조금, 상품 판매 등 46%	391
오클랜드 식물원	무료	50	정부가 대부분 지원함	(자료없음)
아침고요수목원	9,000	90	개인 운영	(사립)
제이드가든	8,500	13	기업체 운영	(사립)

- 정원들의 접근성은 결국 방문자 수와 관련되는데, 큐 가든과 시드니 식물원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방문자 수도 상대적으로 많음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시설이 우수하며 두 개의 정원들은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방문자 수가 많음
- 국내·외 정원들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정원들은 이색적인 식물들의 보전 및 전시가 많으며, 따라서 기후대에 따라서 식물종을 분류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중국식 및 일본식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역사성을 지닌 정원을 조성하고 있음
 - 호주의 시드니 식물원은 도시공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호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주요한 장소에 전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물원은 실용적이며, 뉴질랜드에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고, 멸종위기 식물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정원조성 사례를 보여주는 정원들을 전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원들은 원예장식적인 정원, 정원양식을 나타내는 정원, 놀이를 위한 정원 등을 조성 및 전시하고 있음
- 국내·외 정원들의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구분	접근성	진입부	주요특징
큐 가든	매우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를 운영함	식물을 위주로 한 주제공원 기후대를 고려한 주제공원 중국식, 일본식 정원조성 역사성을 지닌 정원조성
에든버러 식물원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함 교육공간이 있음	실용적인 정원조성 교육전시 지역공동체 참여 정원조성 자생식물 정원조성 중국식, 일본식 정원조성

			역사성을 지닌 정원 조성
위슬리 정원	양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 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함	원예장식적인 정원 조성 원예실무를 위한 정원 조성 왕립원예협회 홍보 정원 조성 가정용 정원 조성 사례 전시
시드니 식물원	매우 양호	상품 판매 공간 없음	도시공원(urban garden)과 유사 자생식물 정원 조성
오클랜드 식물원	양호	정보제공 공간 있음 교육공간이 있음 카페를 운영함 상품 판매 공간 없음	실용적인 정원 조성 광범위한 자생식물 정원 조성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기법 전시 어린이 생태학습을 위한 정원 조성
아침고요수목원	매우 양호	식물 및 정원용품을 판매 함	원예장식적인 정원 조성 테마정원 조성 자생식물 정원 조성
제이드가든	매우 양호	기념품을 판매함 레스토랑을 운영함	유럽 양식의 정원 조성 상업적인 정원 조성

-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공정원은 먼저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며, 공공정원(public garden)으로서 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의 목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원예장식적인 정원 조성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 정원의 공간구성은 먼저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상업적 공간조성을 진 입부에 위치시킴
 -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을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유리온실들을 도입함
 - 다양한 문화권, 특히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정원양식들을 정원에 도입함
 -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생식물들 및 한국정원양식을 포함시킴
 - 가정의 정원활동 장려를 위한 실용정원 사례를 전시하는 정원들의 조성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 정원재료 및 서비스 산업의 시장전망 및 비전
 - 영국의 정원시장은 계속 새로운 형식과 범주와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원활동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들의 정원에 대한 흥미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40대 후반~50대에 있는 수 백만의 잠재적 추가 소비자들이 기대된다. 전통적인 상점과 인터넷 유통망의 경계는 또한 점점 낮아져 소비자들은 점차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품들을 공급하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상점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정원사업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 일본의 정원활동 시장은 2012에 2% 정도의 성장을 나타냈다. 시장규모는 3조1700억원에 달한다. 일본의 정원 환경은 일본 내 정원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동안에도 정원관련 식물과 용품의 지출액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홈앤가든 전문 유통업체들(Home and garden specialist retailers)은 정원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유통업체이고 2012년에 총 판매액의 78%를 차지하였다. 일본 정원활동 시장은 매우 과편화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정원활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2011년 지진의 결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접 식물을 재배하는 경향을 띠며 앞으로 도 계속될 전망이다.

○ 정원관광의 시장전망 및 비전

-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공정원을 유지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일은 쉽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입 창출에 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원관광을 위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 방문 또는 참여
- 재정적 경영: 수익과 지출
- 조직적 측면의 경영: 인적 자원, 회원제, 자원봉사제도
- 마케팅과 소통
- 공동체에 대한 봉사활동과 교육

○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 정원산업은 화훼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성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정원산업이 부딪히고 있는 당면과제들은 세계 경제적 위기, 노령인구의 증가, 젊은 소비자층의 경향, 온라인 정보, 서비스 방식의 변화 및 기후변화 등이다. 그러나, 영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 정원관광의 새로운 전략들

- 외국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정원관광의 새로운 전략들은 지역사회로의 외연 확대, 종다양성 교육의 기회 제공, 상업적 기능 확대와 다양한 외부 자금원 확보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 우리나라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생산부문의 정원산업 인식부족 및 정부의 적절한 지원체제 미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관련 조직 및 통계 미비와 관련 분야들 간의 협력체제가 없다는 점도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식물종 보유국의 보호정책 역시 도전이 된다.
- 정부의 정원관련 총괄 조직 구축 및 생산조직 인프라 제공 및 관련 통계조사 실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총괄조직은 국가정원과 공공정원을 발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에서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산업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하며 정원산업과 유통산업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aT센터의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 정원진흥기본계획

○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방향, 근거, 성격, 주요내용

- 산림청은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를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목원법’이라 한다)에 편입시켜 추후 전국단위의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 수목원법을 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고, 2015년 7월 21일 시행예정에 있다.
- 이러한 수목원법 등으로 인해서 그 고유영역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올바른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서 정원 관련 산업들과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와 정원의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원발전과 확대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진흥 기본계획은 민간 및 공공정원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 근거: 「수목원·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이고, 현재 이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은 정원의 확충 및 정원 사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수목원·정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성격: 정원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발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의 중
합계획으로서 국가정원 및 공·사립·학교정원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제시한다.
- 내용: 정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원 지원 및 정원 간 교류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원 정보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 정원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 정원 관련 국내 여건 변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추구에 따른 정원의 수요 증
가, 순천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문화, 휴양, 체험,
치유 및 복지의 공간으로서 정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 정원의 지식기반산업으
로의 발전 가능성 발굴.
- 정원 관련 해외 여건 변화: 공공정원의 개념 대두와 점진적 확대, 정원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한 정원산업의 확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
적 의무 강화

○ 정원산업의 SWOT 분석

○ 정원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 비전: 미래형 농업을 주도하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원과 커뮤니티
정원의 기반 확립
- 목표: 정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
- 전략과 전략별 과제 (6대 전략, 19대 과제)

- ① 정원 관련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 ①-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 ①-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①-3 국가정원 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 ② 정원 관련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 ②-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 ②-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 ②-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 ②-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③ 정원을 통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화
 - ③-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 ③-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③-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충
- ④ 정원의 물적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 ④-1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 ④-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 ④-3 국가정원 지원 및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 ④-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 ⑤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 강화
 - ⑤-1 정원산업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 ⑤-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 ⑤-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 ⑥ 정원산업을 위한 전통정원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
 - ⑥-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 ⑥-2 해외 정원 기술교류

○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정원산업범주	범주별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현황, 전략 및 계획과 전망			
		장점	문제점	SWOT 분석 전략	정원산업진흥계획 (19대 과제)*
생산	-정원 관련 식물 및 재료·용품 및 소재 생산 산업 -정원 연구 및 교육	-정원조성관련 기술력 우수 -우리나라 전통 정원문화 존재 -정원관련 자생식물 자원에 대한 보호 관리의 필요성 대두 -국제협약 등으로 인한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 필요성 증가	-원예능가의 정원산업인지도 낮음 -정원시설 정부투자 부족 -민간정원 경영능력 부족 및 경영상황 악화 -정원산업 생산통계 부재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관련 식물자원 보유국의 보호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괴	-민간정원 경영개선과 공공정원 확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우리나라 전통정원 연구개발 및 지원 증대 -정원 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내 정원 관련 생산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생산 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전통정원 확산, 정원자생식물 보호, 정원관련 생물자원보호관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정원 관련 식물생태계보존전략 -정원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1)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1) -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4) -국가정원 지원,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4)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6) -해외 정원 기술교류 (6)

<p>유통</p>	<p>-정원관련 식물 등 재료·용품 및 소재유통산업</p>	<p>-정원관련분야(원예,조경,산림) 기존 유통체계의 존재 (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존 유통관련 기관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p>	<p>-정원산업 유통통계 부재 -정원산업 유통체계 미비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p>	<p>-정원산업과 유통산업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aT센터의 역할 부여 -국내 정원 관련 유통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유통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정원산업 홍보 및 마케팅 전략</p>	<p>-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5)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 조사의 정기적 시행 (5) -해외 정원 기술교류 (6)</p>
<p>소비</p>	<p>-정원관광 -정원연구 및 교육</p>	<p>-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정원관련 법률과 정부지원 활성화 -국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증가</p>	<p>-정원산업 소비통계 부재 -정원관련 분야(원예, 조경, 산림)간의 협력의 필요 -정원문화 확산의 필요성</p>	<p>-정원산업에 체험, 교육 등을 포함하는 6차 산업전략수립 -국내 정원 관련 소비지원 인프라 확충 -정원 관련 소비 통계 구축 -정원 관련 총괄 행정조직 구축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의 지정을 통한 정원산업지원 -정원 관련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개선 -정원문화 홍보 및 마케팅 전략</p>	<p>-국가정원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1)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확충 (3)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4)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 (5) -해외 정원 기술교류 (6)</p>

○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

- 정원진흥기본계획 전략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 6-7에서 보여준다. 이 표는 전략의 시행기간과 전략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시행기간이 단기이고 중요도가 ‘상’ 인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이 된다.
- 단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2-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1)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기능 강화가 포함된다.
- 중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3-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2) 해외정원기술 교류가 포함된다.
-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4-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다.

중요도 \ 기간	상 (중요도 높음)	중 (중요도 보통)	하 (중요도 낮음)
단기 (2015-16)	(2-3)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2-4) 정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3)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4) 정원 관련 민간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5-1) 정원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부조직 구축 (5-2) 정원산업의 유통기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센터 기능 강화	(1-1) 정원관련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기반 구축 (1-2) 정원관련 기후변화 취약종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 (5-3) 정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통계조사의 정기적 시행 (6-1)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2-2) 정원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 전체계 구축
중기 (2017-19)	(3-1) 국민 체감형 정원복지 인프라 구축 (3-2) 정원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2) 해외정원기술 교류	(1-3) 국가정원 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2-1) 정원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4-3) 국가정원 지원 및 공공 및 민간정원 역량 강화	
장기 (2019 이후)	(4-2) 정원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	(4-1) 정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	

□ 정원산업발전을 위한 수목원 및 정원법의 개정

○ 개정 방향: 원예산업이 주도하는 정원법

- 농업법적 시각에서 정원 개념의 재검토 : 수목원 개념과 차이를 중심으로
- 수목원 및 정원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원의 관리주체가 산림청인가 농촌진흥청인가 하는 점이다. 개정도 그에 맞추어 논의가 진척되어야 하기에, 선결문제로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 2015년 수목원 정원법에서 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제1호).
- 이에 반하여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수목원 정원법 제2조 제2호).

- 수목원 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해석하면, 수목은 일반적으로 樹木, 즉 목본 식물을 의미하지만, 수목원법에서는 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하는 초본·목본 산림식물 중 목본류를 지칭하고, 수목원이란, 이러한 산림식물 중 수목을 중심으로 수집, 증식, 보존, 관리, 전시, 연구하는 법정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정원은 산림식물까지 포함하여 식물 전반을 전시, 재배,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수목원보다 정원에서 관리하는 식물이 다양하며 넓기에, 수목원의 상위 개념이 정원임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목원은 특수한 식물인 산림식물을 수목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원에 대하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수목원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산림식물 중 수목이 주된 공간이 수목원이다. 반대로 원예산업이 주된 공간이 정원이다. 이를 법적 시각에서 보면, 주된 물건인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 물건인 종물이 따라간다는 주물(主物)-종물(從物) 법리와 부합하는 논리이다. 예를 들면 본체인 부동산을 처분하면 별도의 화장실도 함께 처분되고, 시계 본체와 시계줄은 시계본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물의 성질과 소유권자에 따라 그 전체 물건의 성질과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 민법상 “주물(主物)-종물(從物) 이론“을 토대로 생각하면, 정원은 원예산업(꽃과 풀)이 주된 공간인 반면, 수목원은 임업(나무)이 주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산림청과 농진청의 사무분장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순천만 정원은 산림식물인 수목이 주가 아니므로 정원에 속할 것이고 산림청이 아니라 농진청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나 해석과도 일치한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사무분장

-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두며, 산림에 관한 사무를 위해 산림청을 두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6조).

- 정부조직법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타법개정]” 제32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권한 위임 사항에 따르면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서 농업농촌분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임업분야는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분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먼저 대통령령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소속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즉 원예와 축산 분야는 농촌진흥청 주관업무라는 의미이다.
 - 다음 역시 대통령령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는 산림청의 관장 사무가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등을 둔다. 임업 분야는 산림청 주관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해결: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산림청(수목원)-농진청(정원)으로 사무 분담
- 농식품부가 주관하되, 산림청(수목원)-농진청(정원)으로 사무 분담을 한다. 권한분쟁이 생기거나 모호한 부분은 농식품부가 조정역할을 발휘한다.
 - 정원산업은 농업의 6차산업화, 현대적 선진국형 농업으로 국민의 자가치유, 교육이나 관광, 환경과 소비자보호 문제해결에 순기능하는 핵심산업으로 타부처보다 농식품부가 주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원의 관리주체는 아주 중요하다. 과거 대부분이 농촌영역이고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주된 공간인 국립공원의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확정되고, 말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서 오랜 시간 주무부처였다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데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정원에서는 그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될 것이다. 정원에 대하여 산림청을 비롯하여 농업계 내부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부나 국토부가 관리를 자임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해결하고 보면, 현재 수목원 및 정원법에서 많은 조항들이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제명, 정원의 정의,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

가, 정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서 원예산업의 주도성 확보가 필요하다.

□ 정원 관련 신규사업 및 연구 제안(2016)

가. 국내 정원산업 통계 연구

- 연구목적: 최근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원산업에 대한 통계구축을 통해서 산업지원과 정책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산업의 성장 및 국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예상 목차
 - 정원산업의 특징 및 국내외 환경분석
 - 정원산업 통계조사: 정원산업의 정의, 범위, 유사산업 통계조사 벤치마킹, 모집단 및 표본설정, 통계조사수행, 통계조사 결과분석
 - 정원산업통계조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 결론: 통계조사의 결과를 일반국민, 관련 기업 및 정부에서 활용

나. Experian 기업의 모자이크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활용한 국내 정원 관련 인구의 사회경제적 구분에 따른 전략 및 정책 연구

- 연구목적: 영국 HTA (2012)는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의 인구 코호트 그룹별 정원관련 필요와 경제적 규모 등을 조사하고 이를 모자이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표현함. 우리도 이와 같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원의 수요와 이에 맞는 공급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예상 목차
 - 연구의 목적 설정 및 분석을 위한 기법 연구
 - 모자이크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활용한 정원 수요인구 파악
 - 모집단과 표본의 선정
 - 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득별 및 지역별 분류 및 조사
 - 조사결과의 그룹화 (예: 40대 사무실 정원 소비층) 및 전략수립
 - 본 통계조사연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 결론: 본 연구조사 결과를 일반국민, 관련 기업 및 정부에서 활용

참 고 문 헌

- 고양시. 2015. 고양시 꽃 박람회 현황 (2012-2014). 고양시.
- 곽윤직 외. 2003. 민법주해(XIV). 서울: 박영사.
- 곽윤직, 김재형. 2013.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 경기농림진흥재단. 2015. 조경가든대학. greencafe.gg.go.kr/사업소개/녹화사업/조경가든대학/조경가든대학이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4. 한국 전통정원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www.law.go.kr/main.html.
- 국립수목원. 2015. www.kna.go.kr.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ca.coop.
-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I~IV). 200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권오승 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상용. 민사판례평석. 법원사. 1995.
- 김오경. 2011. 국내 전문 가드너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완순. 2015. 원예분야 정원산업의 규모와 전망. 한국화훼산업 발전 네트워크와 정원 산업화 심포지엄 계획. pp. 29-38.
- 김용식 외. 2013. 정원·식물원·수목원의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 산림청.
- 김인혜, 허근영, 강호철, 사공영보, M. Wrigley. 2007. 19세기 영국과 오스트랄라시아 소규모 주택 정원의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0(2):26-43.
- 김인혜, 허근영. 뉴질랜드 Cottage 정원 양식의 기원 및 변천.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1(4):83-96.
- 김재형. 민법론 I. 서울: 박영사. 2004.
-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1995.
- 김태진, D.L. Ham. 2004. 조경수목관리 직종의 전문가 양성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비교연구: 미국의 수목관리자 양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3):19-30.
- 김태진. 2008. 가드닝 실무 나만의 명품정원. 경기농림진흥재단.
- 농림축산식품부. 2012. 2012 화훼재배현황.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4.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4. 화훼재배현황 조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2015. Master Gardener 운영 매뉴얼. 전주: 농촌진흥청.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2015. glaw.scourt.go.kr.
- 독일법령(JURIS). 2015. bundesrecht.juris.de.
- 라펜트. 2014.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라펜트 2014년 10월 8일.
- 미국판례(Westlaw). 2015. www.westlaw.com.
-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배영길. 부동산공법.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0.2.
-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2015. law.e-gov.go.jp.
- 사동천. 「농업법강의」. 홍익대학교출판부. 2007.
- 산림청. 2009.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
- 산림청. 2013. 임산물 생산조사. 대전: 산림청.
- 산림청. 2014.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대전: 산림청.
- 서정일. 2009. 낙안읍성 역사 자료관엔 별교는 없다? 오마이뉴스 2009년 8월 1일.
- 서정일. 2009. 낙안읍성 역사자료관엔 별교은 없다? 오마이뉴스. 2009년 8월 1일.
- 성낙인. 헌법학. 제7판. 법문사. 2007.
- 송재일. 농지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 신학기. 2015. 한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화훼산업 발전 네트워킹과 정원 산업화 심포지엄 계획. pp. 5-9.
- 아침고요수목원. 2015. www.morningcalm.co.kr.
-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5.
- 오대민. 2015. 한국 마스터가드너 현재와 미래.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18(3, 별호): 191-195.
- 워크숍 자료집, 2013. 4. 19.
- 이성창, 임희지, 김상일. 2009. 주택 재건축의 또다른 제안: 도시형 타운하우스. 서울: SDI 정책리포트.
- 일본 법령. 2015.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law.e-gov.go.jp)
- 정상우 외. 201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제이드가든. 2015. www.hanwharesort.co.kr.
- 차현숙. 2011.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4.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통계청. 201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 프랑스 법령. 2015. Legifrance. www.legifrance.gouv.fr.
- 한국관광공사. 2015. korean.visitkorea.or.kr.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2013년 유통실태 종합.
www.kamis.co.kr/customer/circulation/domestic/analysis.do.
- 한국농업법학회. 2002. 농업법 판례연구. 서울: 삼지원. 2002.
- 한국마스터가드너 협회. 2015.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정관. 한국마스터가드너 협회.
-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2. 수목원식물원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림청.
-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5. www.kabga.or.kr.
- 한국조경신문. 2015. 전 세계 분포된 일본정원, 400곳 넘는다. 2015년3월18일.
- 한승원, 서효원, 정순진, 김재순, 송정섭, 장하경. 2012. 정원가꾸기의 사회·경제학: 즐거운 취미에서 거대한 산업까지. 농촌진흥청.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2015. www.elis.go.kr.
- 허근영, 기정훈, 송재일, 김인혜, 손경찬, 조은주, 허근숙. 2015. 정원분야의 원예 주도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해석 및 대응 제언. 전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황적인.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지관련 법제의 변천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황적인. 「경제법총서 V 농업법」. 삼지원. 1999.
- 황환주. 2014. 정원 대중화를 위한 원예의 역할. 한국원예학회·한국조경학회 공동주최 ‘정원 대중화’ 심포지엄. 2014년12월11일.
- ACIL Tasman. 2004. Canberra international gardens and aboretum: preliminary assessment of expenditure and revenue: brief for George Tomlins. Retrieved on 22nd September, 2006 from (www.aciltasman.com.au/images/pdf/ACIL_Tasman_Arboretum_brief_131204.pdf).
- Advisory Group. 2013. Flowers and ornamental plant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Alland, E. 1982. William Robinson, father of the English flower garden. London: Ebenezer Baylis and Son Ltd.
- American Public Gardens Association. 2013. Definition of a public garden. Retrieved on 22nd September, 2012 from (publicgardens.org/content/definition-public-garden).
- Argoon, A. 2014. Open gardens Australia scheme to close after 27 years of charity fundraising. Herald Sun Melbourne September 01, 2014.
- Atkins, R. 2001. Gardens of England and Wales: for charity’ s sake. In B. Hunningher (Ed.) Making Gardens: The National Gardens Scheme. (pp. 14-29). London: Cassell.
- Auckland Council. 2015. aucklandcouncil.govt.nz.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Year book Australia: cultural and recreation-botanic

- gardens, zoological parks and auariums(www.abs.gov.au/Ausstats/abs@.nsf/0/6F4A0209363ECAD3CA256F7200832F8FD?Open).
- Ballantyne, R., J. Packer, and K. Hughes. 2008. Environmental awareness, interests and motives of botanic gardens visitors: Implications for interpretive practice. *Tourism Management* 29:439-444.
- Barabé-Bouchard Véronique et Héralil Marc, *Droit rural*, Paris : Ellipses, 2007.
- Barnett, R. 1993. *Garden style in New Zealand*. Auckland: Random House New Zealand Ltd.
- Benfield, R.W. 2013. *Garden tourism*. Boston: CABI.
- Bennett, E.S. and J.E. Swasey. 1996. Perceived stress reduction in urban public gardens. *HortTechnology* 6(2):125-128.
- Bhatti, M. and A. Church. 2000. I never promised you a rose garden: gender, leisure, and home-making. *Leisure Studies* 19:183-197.
- Bhatti, M. and A. Church. 2004. Home, the culture of nature and the meanings of gardens in late modernity. *Housing Studies* 19(1):37-51.
- Billinge, M. 1996. A time and place for everything: an essay on recreation, re-creation and the Victorian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2(4):443-459.
- Bond, C.F. 1892. *Cottage gardening*. Cambridge: Bond's Almanac.
- Bradbury, M.(1995) *A history of the garden in New Zealand*. Auckland: Penguin Books.
- Bradbury, M. and M. Woodside(2005) Harry Turbott, landscape modernist. In M. Abbot, ed., *Looking forward to heritage landscapes: Proceedings of the New Zealand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 2005 Conference*. Dunedin: NZILA. pp.458-471.
- Canterbury Horticultural Society. 2015. chsgardens.co.nz.
- Centennial Parklands. 2015. www.centennialparklands.com.au.
- Christchurch City Council. 2015. www.christchurch.org.nz/about/gardencity.aspx.
- Companies and Markets.com. 2013. Japanese gardening market driven by the population turning to gardening as a hobby. <http://www.companiesandmarkets.com/News/Consumer-Goods/Japanese-gardening-market-driven-by-the-population-turning-to-gardening-as-a-hobby/NI7258>. Companies and Markets.com.
- Connell, J. 2004.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 the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s of garden visitors in Great Britain. *Tourism Management* 25(2):229-247.
- Connell, J. 2005. Managing gardnes for visitors in Great Britain: a story of continuity and change. *Tourism Management* 26:185-201.

- Connell, J. and D. Meyer. 2004. Modelling the visitor experience in the gardens of Great Britain. *Current Issues in Tourism* 7(3):183-216.
- Constantine, S. 1981. Amateur gardening and popular recreation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Journal of Social History* 14:389-403.
- Council Heads of the Australian Botanic Gardens. 2005. Australia's botanic gardens. Retrieved on 15th June, 2005, from (www.anbg.gov.au/chabg/abg/index.html).
- Crilley, G. and B. Price. 2005. The Adelaide Botanic Gardens visitor service quality survey. Adelaide: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Recreational Management,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 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 2015. www.dallasarboretum.org.
- 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 2008. Dallas arboretum and botanical garden briefing for 7th September, 2008. Retrieved on 12th November 2014 from <http://www.dallascityhall.com/council_briefings/briefings0908/dab_091708.pdf>.
- Darwin-Edwards, I. 2000. Education by stealth: the subtle art of educating people who didn't come to learn. *Roots* 20:37-40.
- Eagleton, T. 1985. Capitalism,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F. Frascina and J. Harris, eds., *Art in modern culture*. London: Phaidon.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5. Home and Garden in Japan. www.euromonitor.com/home-and-garden-in-japan/report. Euromonitor International.
- Evans, M. 2001. Gardens tourism: is the market really blooming? *Insights* 12:153-159.
- FloraCulture. 2012. The future for the horticultural world: how to survive. www.FLORACULTURE.EU.
- Foster, J. 1997. Networking for education. In *Kings Park and botanic garden conservation into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forth international botanical gardens conservation congress, 25-29 September, 1995, Perth*, pp.335-338.
- Fox, D. and J. Edward. 2008.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market for small, medium and large horticultural shows in England. (http://eprints.bournemouth.ac.uk/10624/1/Understanding_the_market_-_final.pdf)
- Gardenvisit.com 2015. www.gardenvisit.com.
- Girouard, M. 1978. *Life in the English country house*.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nna, M. and M.A. Hall. 1982. *English heritage monitor*. London: English Tourist Board.
- Harris, W.R., J.R. Clark, and N.P. Matheny. 2004. *Arboriculture*. 4th Edition. Prentice Hall. pp. 1-12.

- Hayashi, Y. 2007. Japan planting seeds: planting seeds annual report. Tokyo: GAIN Report.
- Hunningher, E. 2001. Making gardens: the national gardens scheme. London: Cassell.
- Hyams, E. 1970. English cottage gardens.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 i2i Events Group. 2014. The UK Garden and Leisure Market -Your Independent and Authoritative Report on the UK Retail Market for Garden and Leisure. i2i Events Group.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www.imf.org.
- Lavelle, C and M. Lavelle. 2010. Allotment gardening. London: Hermes House.
- Lipovska. 2013. The fruit of garden tourism may fall over the wall: small private gardens and tourism.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 6:114-121.
- Littlejohn, D. 1997. The fate of the English country hou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dler, P. 1997. The fall and rise of the stately hom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ssingham, B.(1966) Miss Jekyll, portrait of a great gardener. London: The Camelot Press Ltd.
- McCracken, D. 1997. Gardens of Empire: botanical institutions for the Victorian British Empire.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MINTEL. 2000. Home interest and gardening magazine report. London: MINTEL International Group.
- MINTEL. 2003. Gardening review. *Leisure Intelligence*, September 2003. London: MINTEL International Group.
- Mintz, S. and S. Rode. 1999. More than a walk in the park?: demonstration carts personalize interpretation. *Roots* 18:24-26.
- Motomura, C. 2010. The Japan nursery sector. Tokyo: GAIN Report.
- National Garden Scheme. 2012. www.ngs.org.uk.
- New Zealand Gardens Trust(NZGT). 2015. www.gardens.org.nz.
- Nottle, T.(1992) Old fashioned gardens. Auckland: Godwit Press Ltd.
- Open Space Greening Program. 2015. www.grownyc.org/openspace.
- Owen, C. 2012. Rising to the challenge: HTA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strategy 2012-2015. London: The Horticultural Trades Association.
- Owen, J. 1998. Gardening on a grand scale. [online], Accessed at:

- <http://community.seattletimes.nwsourc.com/archive/?date=20000716&slug=4032054>
(accessed on 15th March, 2012).
- Palmers, S.J. 1974. Palmers manual of trees, shrubs & climbers. Auckland: A. W. Palmer & Sons.
- Patmore, J.A. 1983. Recreation and resources: Leisure Patterns and Leisure Places. Oxford: Blackwell.
- Pimlott, J.A.R. 1964. A nation of gardeners? *New Society* 3(82):18-19.
- Rae, D.A.H. 1996. Botanic gardens and their live plant collections: present and future roles. Department of Botany, University of Endinburg, Scotland. PhD dissertation.
- RHS Garden Wisley. 2015. www.rhs.org.uk/gardens/wisley.
- Royal Botanic Gardens & Domain Trust. 2015. www.rbgsyd.nsw.gov.au.
- Royal Botanic Gardens Edinburgh. 2015. Inside the botanics. Retrieved on 8th March, 2015 from <http://www.rbge.org.uk/assets/files/about_us/Inside_The_Botanics.pdf>.
- Royal Botanic Gardens Kew. 2006. Summary of the 121st meeting of the trustees of the Royal Botanic Gardens, Kew held on 27th April, 2006. Retrieved on 22nd September, 2006 from (www.wakehurst.org/aboutus/trustees/summary_apr06.pdf).
- Royal Botanic Gardens, Kew. 2015. www.kew.org.
- Royal Parks. 2015. www.royalparks.org.uk.
- Sharpley, R. 2007. Flagship attractions and sustainable rural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the Alnwick Garden, England.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5(2):125-143.
- Sinclair, K. 1988. A history of New Zealand. Auckland: Penguin Books.
- Stone, R. 2003. Privet: theologies of privacy in some modernist urbanism. In I.B. Whyet (Ed.), *Modernism and the Spirit of the City* (pp. 209-236). London: Routledge.
- Tannock, D. 1916. Manual of gardening in New Zealand. Christchurch: Whitcombe and Tombs.
- Taylor, L. 2008. A taste for gardening: classes and gendered practices. Aldershot: Ashgate.
- The Garden Centre Group. 2012. Corporate Responsibility Strategy 2013. The Garden Centre Group.
- The Garden Centre Group. 2013. Corporate responsibility strategy 2013. London: The Garden Centre Group.
- The Horticultural Trade Association. 2012. Rising To The Challenge -HTA Marketing & Communication Strategy 2012-2015. The Horticultural Trade Association.

- The National Horticultural Forum. 2006. A case study analysis and overview of the UK horticultural production industry and its future over the next 10-20 years. London: promar International.
- Thompson, K., L.C. Austin, R.M. Smith, P.H. Warren, P.G. Angold, and K.J. Gaston. 2003. Urban domestic gardens: putting small-scale plant diversity in context. *Journal of Vegetation Science* 14:71-78.
- Tinniswood, A. 1998. *The polite tourist. A History of Country House Visiting*. London: The National Trust.
- Towner, J. 1996. *An historical geography of recreation and tourism in the western world 1540-1940*. Chichester: Wiley.
- U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0. *The Japanese Nursery Sector*.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Report. U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Wikipedia. 2015. en.wikipedia.org.
- Willison, J. 1997. Botanic gardens as agents for social change. In *Kings Park and botanic garden conservation into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botanical gardens conservation congress, 25-29 September, 1995, Perth, pp. 339-344.
- Wilson, J., Vallee, L. and Fagg, M. eds. 2006. *Directory of Australian Botanic Gardens and Arboreta*(www.anbg.gov.au/chabg/bg-dir/index.html).
- Wood, D. and M. Wrigley(2006) *Understanding the landscape - study guide II*. Palmerston North: Massey University Institute of Natural Resources
- Wyse Jackson, P.S. and L.A. Sutherland. 2000. *International agenda for botanic gardens in conservation*, London: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 Young, J. and D. Hay. 1919. *Flower gardening in New Zealand*. Auckland: Whitcombe and Tombs.